

WTO 체제 개혁과 한국의 다자통상정책 방향

서진교 김종덕 박지현 김민성 안덕근



WTO 체제 개혁과 한국의 다자통상정책 방향

서진교 · 김종덕 · 박지현 · 김민성 · 안덕근



연구보고서 18-20

WTO 체제 개혁과 한국의 다자통상정책 방향

인 쇄 2018년 12월 24일 발 행 2018년 12월 31일

발행인 이재영

발행처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주 소 30147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세종국책연구단지 경제정책동

전 화 044) 414-1179 팩 스 044) 414-1144

인쇄처 (주)유성사(02-837-0700)

©2018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정가 10,000원

ISBN 978-89-322-1719-2 94320

978-89-322-1072-8(세트)



서 언

최근 미국, EU, 일본 등 선진국들의 주도하에 WTO 체제 개혁 논의가 전개되고 있습니다. 이전에도 WTO 체제 개혁에 관한 논의가 있었지만 선진국들이구체적인 의제를 제시하며 개혁방향을 선도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특히이번 WTO 체제 개혁 움직임이 예사롭지 않은 것은 그 이면에 미·중 간 통상분쟁이 내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선진국이 제시한 투명성 제고 및 통보 강화는 다분히 중국의 '중국제조 2025'를 겨냥하여 이에 사용되는 산업보조금을 견제하려는 의도가 있습니다. 또한 중국 국영기업의 불공정 행위를 효과적으로 규제하고, 중국을 포함한 거대 개도국에게 더 이상 개도국 우대를 허용하지 않겠다는 선진국의 의도도 이번 WTO 체제 개혁 논의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선진국 주도의 WTO 체제 개혁 논의에 중국 등 개도국의 반응은 아직 뚜렷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년 다보스 포럼을 계기로 중국, 인도 등이 WTO 체제 개혁에 대한 그들만의 목소리를 낼 것으로 예상됩니다.

사실 WTO 체제 개혁 논의는 비단 중국을 겨냥한 선진국들의 공세적 의도가 아니더라도 진작 그 한계와 문제점을 놓고 다양한 개혁방안이 논의되어왔습니다. 특히 '총의(consensus)'에 의한 의사결정방식이나 '일괄타결방식(single undertaking)'은 그 비효율성을 놓고 이전부터 다양한 문제 제기가 있었습니다. 더욱이 최근에는 글로벌 가치사슬(GVC)의 확대와 글로벌 무역의 디지털화등에 따라 이러한 변화를 반영할 다자무역규범의 제정이 절실했음에도 불구하고 WTO가 이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해 다자무역기구로서 WTO의 신뢰에 손상이 간 것도 사실입니다.

이에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서는 WTO 체제 개혁 논의에 대한 우리나라의

대응전략을 수립하고, 이를 감안하여 우리나라의 중장기 다자통상정책 방향을 모색하고자 이 연구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본 연구를 통해 WTO 체제의 성과와 한계를 확인할 수 있었으며, WTO 개혁 논의에 대하여 의제별로 우리나라의 협상대응 방향을 제시할 수 있었습니다. 아울러 우리나라의 중장기 다자 통상정책의 새로운 방향으로 WTO 체제 내에서 한국의 위상 제고, 포용적 무역의 선도, 양자 및 지역무역협정의 다자화, 다자통상정책의 지속가능성 강화등 네 가지를 제안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정책 제언으로 담았습니다.

본 연구는 본원의 서진교 선임연구위원, 김종덕 연구위원, 박지현 전문연구원, 김민성 전문연구원과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의 안덕근 교수가 공동연구진으로서 원고를 집필하였습니다. 본 연구의 심의과정에서 좋은 의견을 내주신고려대학교의 강문성 교수, 산업통상자원부의 정경록 세계무역기구과장, 김애경 사무관과 함께 배찬권 원내자문위원에게도 감사드립니다. 아무쪼록 이 보고서가 우리나라의 WTO 협상 대책과 다자통상정책의 새로운 방향을 정립하는데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18년 12월 원장 이재영



국문요약

GATT 체제를 대신해 1995년 출범한 WTO 체제는 어려운 가운데 DDA라는 다자무역협상을 출범시켰다. 그러나 DDA가 17년이 넘도록 가시적 성과를 도출하지 못하면서 WTO 다자무역체제에 대한 신뢰가 손상되고 있다. 그러나 그동안 WTO의 성과가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다. 복수국간협상이긴 하지만 WTO 출범 이후 정보기술협정(ITA) 및 정부조달협정(GPA)의 타결을 통해 상품시장 개방이 확대되었고, 서비스 및 지재권 분야의 무역규범도 안정적으로 정착되었다. 이를 통해 세계 상품교역은 양적으로 3배 이상 증가하였으며, 개도국의 상품시장 점유율도 WTO가 출범한 1995년 28%에서 2017년 43%로증가하였다.

회원국 수의 확대는 WTO 체제의 또 다른 성과이다. 회원국 수의 증가로 인해 WTO 내 의사결정의 어려움과 복잡함이 가중되는 부작용이 있었으나 다른한편 개도국을 성공적으로 세계경제에 편입시켜 단일의 WTO 규범이 적용되게 함으로써 GATT 체제보다 투명하고 예측가능한 단일무역체제하에서 새로운 비즈니스 창출 기회를 확대시킨 점은 WTO의 성과가 분명하다.

분쟁해결제도의 강화와 함께 무역원활화협정(TFA) 합의 및 이행은 WTO 체제의 가장 큰 성과로 간주되고 있다. 정보기술협정이나 정부조달협정이 복수 국간협정인 데 비하여 무역원활화협정은 WTO 설립 및 DDA 협상 개시 이후 타결된 최초의 다자무역협정이라는 점에서 그 의의가 남다르다.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교역 비용의 감소, 교역 환경의 개선 등으로 인해 1조 달러 이상의 수출 증가, 2,000만 개의 수출 관련 고용 창출, 약 9,600억 달러의 세계 GDP 증가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러한 성과 못지않게 WTO 체제의 한계와 문제점도 분명히 있다. 무엇보다도 오래전부터 지적되어온 지배구조 문제는 대표적인 사례이다. WTO 체제에서 의사결정은 총의(consensus)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으나, 회원국 수 확대는 회원국간 효율적 의사결정을 저해하는 결정적 요인이 되었다. 일괄타결원칙도 다자통상체제의 정합성과 안정성 유지에 기여를 하였으나 동시에 WTO 체제의 경직성 문제를 야기하였다. 분쟁해결절차 역시 이행분쟁에 이어 보복조치 승인절차로까지 이어지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결국 승소국이 보복승인을 받을 때까지 패소국의 불이행을 지켜보아야 하는 상황이 WTO 체제의 신뢰와 공정성을 손상시키고 있다. 그 외에도 서비스무역에서 세이프가드조치 미비, 개도국 우대의 한계와 문제점 등이 WTO 체제 운영과 관련하여 주요한 문제로 지적되어왔다.

그러나 이러한 WTO 자체의 문제 이외에 급격히 변하고 있는 글로벌 통상환경에 WTO가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도 현행 WTO 체제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이다. 2000년대 들어 세계적으로 급속히 확산된 자유무역협정의이면에는 WTO 다자체제가 새로운 무역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했다는이유가 있다. 2000년대 초부터 급속히 확산된 글로벌 가치사슬(GVC)에 따라생산의 국제분업화로 'made in world'가 보편화되었고,이에 따라 다자 차원의 공통 규범 마련 및 관세인하가 절실히 요구되었다. 그러나 WTO 차원에서이를 해결하는 데 있어 핵심 역할을 하는 DDA는 선진국과 개도국의 대립으로진전이 없었다.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 이후 세계경제의 성장 둔화가 지속됨에 따라 세계

각국은 자국 내 산업보호를 위하여 보호주의 성향의 무역정책을 강화시켰다. 그러나 WTO는 이에 대해서 효과적인 처방을 내리지 못하였다. WTO 회원국들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보호주의 배격과 다자무역체제 강화를 강조해왔지만 말뿐인 선언에 그쳤고, 실제 비관세조치는 금융위기 이후 꾸준히 증가해 2008년 위기 이전에 비해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한편 지금까지 추구해온 무역자유화는 주로 상품교역에서 국경장벽, 특히 관세철폐에 중점을 두었다. 그러나 실질적인 시장접근은 국경장벽 외에 국경에서의 통관절차나 국내시장에서의 규제 등 다양한 비관세조치가 더 큰 영향을 준다. 이러한 상황에서 관세라는 국경장벽의 철폐는 상대적으로 대기업에게 유리한 시장환경을 만들어주었다. 대기업은 중소기업에 비해 국경에서의 통관절차나 국내 규제 등을 극복하는 데 보다 우수한 인력과 자본을 보유하고 있다. 그 결과 무역자유화로 국경은 열렸으나 중소기업은 복잡한 통관절차와 국내 규제 등으로 인해 시장진입에 실패한 반면 대기업은 시장진입에 성공해 무역자유화로 인한 혜택이 상대적으로 대기업으로 집중되었다. 또한 무역자유화 이후노동소득의 비중이 점차 감소하면서 다자통상협상에서 무역자유화 혜택의 불균등 배분 문제가 지적되었고, 급기야 무역의 포용성(inclusiveness)과 함께 지속가능성이 국제무역의 중요한 화두로 부상하였다.

이러한 상항에서 최근 선진국들을 중심으로 WTO 체제 개혁에 대한 논의가 가속화되고 있다. 특히 이러한 WTO 체제 개혁 논의는 선진국들이 구체적인 의제를 제시하면서 논의를 주도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리고 현 WTO 개혁이 '미·중간 양자 통상분쟁의 다자화'라는 성격을 지니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나 라의 신중한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다.

WTO 체제 개혁에 대한 선진국들의 다양한 주장 가운데 투명성 제고 및 통보 강화는 향후 일정 부분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투명성 제고 및 통보 요건 준수가 WTO 기능의 원활한 이행에 필수 요소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WTO 회원국의 통보의무 준수를 위한 다양한 규제 강화가 예상된다. WTO 상소기구 역할과 기능 재정립은 논란이 따르겠지만 결국 미국의 불만을줄이는 방향으로 개혁이 이루어질 전망이다. 미국이 상소위원 임명을 거부하는 가운데 상소기구 정지라는 초유의 사태를 막는 것이 우선이기 때문이다. 개도국 세분화도 개도국들의 강력한 반발이 예상되지만 선진국들의 바람대로 일정한 정도의 세분화는 불가피할 것이다. 개도국간 이질성이 확대되는 현실에서 개도국도 그들 사이의 발전수준 격차를 무시하고 모든 개도국의 동일한 의무이행을 주장하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복수국간협상도 기존 DDA의 일괄타결방식과 병행해서 활발히 추진될 전망이다. 다만 개도국들이 원하는 DDA 일부 이슈는 현재와 같은 일괄타결방식이 그대로 적용될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EU가 언급한 '신축적 다자주의(flexible multilateralism)'가 새롭게 논쟁의 중심에 위치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 등 선진국 주도의 WTO 체제 개혁 논의가 개도국의 반발로 그들이 원하는 최소한의 개혁에 미치지 못할 경우 WTO 다자체제는 선진국 연합 및 이에 동조하는 국가들과 그 외의 개도국 연합으로 양분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 경우 현 WTO 다자체제는 사실상 더 이상 존속이 어려워지는 최악의 상황을 맞을 수도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최근 WTO 체제 개혁 논의에 신중하

게 대비할 필요가 있다.

투명성 제고 및 통보 강화의 이면에는 중국의 산업보조금에 대한 정보 입수 및 제제라는 미국 등 선진국들의 의도가 있다. 따라서 향후 보조금에 대해서는 보다 엄격한 분류 및 규제가 예상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이에 대비해 현재 운용 중인 보조정책이 WTO 규정에 합치하는지 등을 엄격한 잣대로 재검토해야 하며, 역통보에 따른 다른 WTO 회원국의 상계관세 부과 가능성을 최소화해야 할 것이다.

개도국 지위의 유지는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DDA 농업협상 대책의 기본 전 제였다. 그러나 최근 선진국들의 개도국 세분화 주장을 감안해볼 때 향후 우리 나라의 개도국 지위 유지는 어려울 가능성이 높다. 특히 농업부문은 개도국과 선진국 간 의무이행의 수준 차가 크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선진국 의무이행 시농업부문에 상당한 부정적 영향이 예상된다. 따라서 이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 향후 WTO 체제 개혁 논의는 세부 이슈별로 활발히 전개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의 이해가 걸린 부분, 특히 투명성 및 통보 강화, 개도국 세분화 등의 의제에 대해서는 관련 논의에 적극 참여하여 우리나라의 입장을 최대한 반영시켜야 한다.

한편 이러한 WTO 체제 개혁 논의와 글로벌 통상환경의 변화를 감안한 우리 나라 다자통상정책의 새로운 방향으로는 WTO 체제 내에서 한국의 위상 강화, 포용적 무역의 선도, 양자·지역무역협정의 다자화, 다자통상정책의 지속가능 성 강화 등을 제시해볼 수 있다. WTO 체제 내에서 우리나라의 위상을 강화하 기 위해서는 다자통상 전문인력의 배양과 함께 WTO 사무국 등으로의 파견을 확충해야 한다. 아울러 WTO가 주관하는 다양한 사업에 적극 참여하여 한국의 기여를 여타 회원국에 각인시켜야 한다. 우리나라가 WTO 각료회의를 주관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 될 수 있다. 동시에 교착상태에 빠진 DDA를 복원하기위해 선진국과 개도국 모두의 지지를 받는 새로운 제안을 하는 것도 다자통상무대에서 우리나라의 위상을 실질적으로 높이는 효과적인 방안이다.

포용적 무역을 선도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무역원활화협정의 이행을 확 산시키는 것이 효과적이다. 우리나라가 강점을 가지고 있으면서 개도국들도 원 하는 전자통관시스템 및 싱글윈도우 등을 중심으로 개도국에게 맞춤형 컨설팅 을 제공하는 것이 좋은 방향이 될 수 있다. 포용적 무역의 핵심은 개도국 및 중 소기업의 실질적 시장접근이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주도 아래 비관세장벽 철폐 를 위한 복수국간협상을 출범시켜 협상을 리드하되, 먼저 비관세장벽(NTBs) 을 DB화하고 이에 기초해 공통의 철폐안을 작성해 단계적 철폐를 유도하는 전 략을 구사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개도국을 위한 한국식 GSP 프로그램을 개발 하는 것도 중요하다. 예를 들면 (최빈)개도국을 2~3개 그룹으로 나누어 이들이 희망하는 상품시장 개방 및 기술 · 자금지원 내용을 취합해 이를 부분 · 혼합적 으로 수용하는 방안을 생각해볼 수 있다. 이러한 한국식 GSP 프로그램 개발 및 추진은 포용적 무역을 선도하는 효과적인 방안이다. 한편 우리 중소기업의 세 계화를 위해서는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협력진출과 이에 따른 애로사항 해결을 위해 다자 및 양자 차원에서 맞춤형 해결체제를 구축(해당 기업-KOTRA-해당 대사관)할 필요가 있다. 물론 애로사항 해결 시마다 해당 관계자에게 인센티브 를 부여하는 소프트웨어식 제도적 접근도 병행되어야 한다.

양자 또는 지역무역협정의 다자화를 위해서 먼저 지금까지 우리나라가 추진 해왔던 FTA를 하나로 묶을 수 있는 공통의 틀이 필요하다. 관세의 경우 개방 폭이 가장 큰 품목을 기준으로 모든 FTA에서 해당 상품 관세감축 스케줄을 하나로 통일시킬 수 있을 것이다. 서비스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단일의 틀을 만들수 있으며, 기타 관련 제도나 규범에도 같은 방법을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다자통상정책의 지속 가능성 강화를 위한 방안으로 환경상품협상(EGA) 재개 및 주도, WTO 분쟁해결제도의 신축적 운영에 기초한 무역과 환경의 조화, 환경보조금 허용을 위한 신 다자무역규범 추진 등을 생각해볼 수 있다. 파리기 후협약의 이행 등 이제는 다자무역체제에서도 지속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도 이러한 흐름에 맞추어 다자통상정책에서 지속가능성을 강화해야 한다. 먼저 중단된 환경상품협정 재개를 우리나라가 주도하면서 논란이되는 상품범위는 환경 전문 순수과학자들에게 위임하는 전략을 생각해볼 수 있다. 아울러 WTO 다자무역체제에서도 환경보호를 위한 무역조치를 논의해야한다. 또한 WTO 차원에서 환경보조금 허용 등 환경을 고려한 신 다자무역협약을 추진하는 방안도 생각해볼 수 있다.



차 례

서언	. 3
국문요약	- 5
제1장 서론	17
1. 연구의 배경과 필요성	18
2. 연구의 목적 및 구성	21
3. 기존 연구와의 차별성	24
제2장 WTO 체제의 성과와 한계	29
1. WTO 체제의 성과 ·····	30
가. 무역자유화의 진전	30
나. 지식재산권 보호체계의 강화	42
다. 분쟁해결제도의 정착	43
라. 무역원활화협정 합의	47
2. WTO 체제의 한계와 문제점 ·····	50
가. 제도적인 한계	50
나. 통상환경 변화에 대한 WTO의 대응 미흡 ······	64
제3장 WTO 체제 개혁에 대한 국제 논의와 정책 시사점	73
1. 미국의 WTO 체제 개혁에 대한 주장 ······	75
가. 투명성 제고 및 통보 강화 ·····	
나. WTO 분쟁해결제도 개선 ·····	

다. 신 무역 이슈	80
라. 기존 DDA 이슈 ·····	81
2. EU의 WTO 체제 개혁에 대한 제안 ·····	84
가. 투명성 제고 및 통보 강화	84
나. 분쟁해결제도 개선 ·····	86
다. 신 무역 이슈	88
라. 기존 DDA 이슈 ······	89
3. 캐나다의 WTO 체제 개혁에 대한 제안 ·····	93
가. 통보 및 투명성 제고	94
나. 분쟁해결제도의 개선	95
다. 신 무역 이슈	96
라. 기존 DDA 이슈	97
4. 향후 전망과 정책 시사점	103
가. 향후 협상 전망	103
나. 정책 시사점	108
제4장 우리나라 다자통상정책의 신 방향	·· 113
1. WTO 체제 개혁의 근본 방향 ·····	··· 114
가. 의사결정방식의 개선: 참여 국가 수 확대 및 투명성 제고	··· 114
나. 일괄타결방식의 개혁: 신축적 다자주의	··· 117
다. 분쟁해결 이행체계의 개선: 보복조치의 다자간 확대	119
2. WTO 협상 대책 ·····	122
가. 투명성 제고 및 통보 강화	123
나. WTO 분쟁해결제도의 개혁 ·····	125

다. 개도국 세분화 논의	129
라. 복수국간협상방식의 활성화	132
3. 다자통상정책의 신 방향	135
가. WTO 체제 내 위상 강화 ·····	135
나. 포용적 무역의 선도 ·····	149
다. 양자·지역무역협정의 다자화 ·····	160
라. 지속 가능한 다자통상정책	163
제5장 정책 제언	173
1. WTO 체제 개혁 논의에 대한 우리나라의 입장 ·····	174
2. 우리나라 다자통상정책의 신 방향	179
참고문헌	188
부록. WTO 체제 개혁 제안에 대한 주요국 반응	203
Executive Summary	218

표 차례

丑 1-1.	보고서의 구성	23
垂 2-1.	WTO 농산물 수출보조금 철폐	33
표 3-1.	미국의 제안: 투명성 제고 및 통보 강화	77
丑 3-2.	EU의 WTO 현대화 제안 주요 내용	92
표 3-3.	WTO 개혁을 위한 캐나다의 제안 주요 내용	99
표 4-1.	WTO 사무국 직원의 국가별 분포1	38
垂 4-2.	WTO 역대 사무총장 및 사무차장 구성1	139
垂 4-3.	WTO 각료회의와 주요 내용1	44
丑 4-4.	C의무로 가장 많이 통보된 조치 ······]	155
표 4-5.	TFAF 지원 국가 및 지원 금액1	156
垂 4-6.	주요 FTA별 쇠고기 관세감축 스케줄 및 양허세율,	
	수입점유율	62
垂 4-7.	MEA와 다자무역협정 주요 원칙 간의 상충관계1	64
垂 4-8.	WTO 불합치 환경보호 관련 무역조치에 대한 WTO 차원의	
	해격방안 1	66

K

그림 차례

그림 2-1.	세계 상품무역 및 관세율 추이(1995~2017)30
그림 2-2.	WTO 회원국의 평균 MFN 관세율 ···········31
그림 2-3.	WTO 회원국의 교역 추이31
그림 2-4.	WTO 회원국의 상품무역 비중(2017)33
그림 2-5.	Article XII 회원국의 무역 성과33
그림 2-6.	WTO에 통보된 농산물 수출보조금 사용액(1995~2013) \cdots 34
그림 2-7.	ITA 제품의 세계 수출 추이(1996~2016) ·······36
그림 2-8.	GPA 회원국 수 추이(1996~2017) ····································
그림 2-9.	세계 10대 서비스 수출 및 수입국: 2016~17년41
그림 2-10.	WTO 분쟁 제소 연도별 추이(1995~2018년 7월) ··········· 44
그림 2-11.	회원국별 WTO 분쟁해결제도 활용 추이(1995~2015) 46
그림 2-12.	개도국 및 최빈개도국 A/B/C 의무 비중49
그림 2-13.	지역별 개도국 및 최빈개도국 A/B/C 의무 비중 ······49
그림 2-14.	21.3조 이행분쟁 제소 추세54
그림 2-15.	GATT/WTO 회원국 증가 추세 ······62
그림 2-16.	세계적인 FTA 체결 추이65
그림 2-17.	'WTO 플러스' 요소를 포함한 FTA66
그림 2-18.	2000년대 관세와 비관세조치 추이70
그림 4-1.	주요국 Aid for Trade 지원 추세: 2010~15년 ······142
그림 4-2.	세계 소득불평등 변화(코끼리 곡선, 1980~2016) 150
그림 4-3.	세계 불평등 구성의 변화152
글상자 1. ㅁ] · 중 반덤핑 분쟁 사례 ·······78

제1장 **K**

서론

연구의 배경과 필요성
 연구의 목적 및 구성



1. 연구의 배경과 필요성

최근 선진국 주도로 세계무역기구(WTO: World Trade Organization)체 제 개편에 대한 논의가 구체화되고 있다. 지난 9월 유럽연합(EU: European Union)이 WTO 체제 현대화 구상을 발표한 데 이어 캐나다가 WTO 체제 개혁안을 제시하면서 선진국들이 WTO 체제 개편 논의를 주도하고 있다. 캐나다는 지난 10월 24~25일 미국과 중국을 제외한 WTO 주요 12개국 통상장관을 오타와로 초청해!) WTO 체제 개혁에 대한 각료급 회의를 개최하기도 하였다. 이후 미국은 EU, 일본, 아르헨티나, 코스타리카와 공동으로 WTO 체제 개혁의 핵심 의제인 '투명성 제고 및 통보 강화'에 대해 기존 제안을 수정하여 새로운 제안을 한 바 있다.

WTO 체제 개혁에 관한 논의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2003년 12월 칸쿤 각료회의 결렬 이후, 2004년 WTO 출범 10주년을 맞아 그동안 다자통상체제의 성과와 한계를 점검하는 보고서가 다수 발간된 바 있다.²⁾ 또한 2006년 도하개발어젠더(DDA: Doha Development Agenda)가 일시 중단되었을 때도 WTO 다자체제의 문제점과 한계에 대해 많은 지적이 있었으며, 회원국들 사이에서 WTO 다자체제에 대한 회의도 고조되었다. 그러나 당시 WTO 체제의 한계나 문제점에 대한 지적은 이후 구체적인 WTO 개혁 움직임으로 이어지지 않았다.³⁾ 이는 2008년 미국발 세계 금융위기와 이후 유로지역의 경제 불안, 보호주의 성향의 조치 확산, 반세계화・반무역자유화 등으로 WTO 개혁 이슈가

¹⁾ 캐나다가 WTO의 양대 거인인 미국과 중국을 제외한 이유는 양국이 WTO 체제 개편의 핵심 당사국으로서 제시된 주요 이슈에 관해 서로 대립하고 있기 때문으로, 논의의 진전을 위해 두 국가를 초청 대상에서 제외한 것으로 보인다. 오타와 통상장관회의에 초청된 WTO 회원국은 우리나라를 포함해 EU, 노르웨이, 스위스, 브라질, 칠레, 멕시코, 호주, 뉴질랜드, 일본, 싱가포르, 케냐 등 12개국이다.

²⁾ 이의 대표적인 예로 WTO가 10주년을 기념해 2004년 발간한 Sutherland *et al.*(2004)의 *The Future* of the WTO: Addressijng Institutional Challenges in the New Millennium의 있다.

³⁾ 당시 WTO의 핵심 문제로 지적된 것은 의사결정방식의 비효율성, 일부 핵심 회원국들에 의한 비민주적 운영, DDA 일괄타결방식의 문제, 분쟁해결제도의 복잡성 및 구속력 등이었다. 이에 대해서는 서진교 외(2008), 『WTO 체제의 개혁 방향과 한국의 대응」을 참고.

뒤로 밀려나 WTO 체제 개혁에 대한 추동력이 상실되었기 때문이었다. 그 외 WTO를 이끄는 주요 회원국들이 국내 문제에 발목이 잡혀 WTO 체제를 개혁하고자 하는 정치적 의지가 약했다는 점도 당시 WTO 개혁 논의가 계속되지 못한 주요 원인 중 하나였다.

그러나 이번 WTO 체제 개혁 움직임은 미국, EU, 일본, 캐나다 등 소위 WTO 핵심 선진국들이 주도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리고 투명성 제고와 통보 강화, WTO 분쟁해결제도의 개혁, 21세기 글로벌 무역환경 변화를 감안한 신 무역규범 제정 등 구체적인 의제를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다는 점에서 지금까지 의 WTO 체제 개혁 논의와 성격을 달리한다. 특히 WTO 개혁 논의가 사실 중 국을 겨냥하고 있다는 점에서 최근의 미·중 양자 통상갈등이 WTO 다자무대 로 옮겨오고 있는 것으로 해석될 수도 있어 우리나라의 신중한 대응이 요구된 다. 즉 투명성 제고와 통보 강화는 중국의 불투명한 산업보조금 지급 및 운용 현황을 밝혀내 이를 규제하기 위한 첫 단추일 수 있다. WTO 분쟁해결제도의 개혁도 비록 미국이 수년 전부터 꾸준히 제기해온 문제이긴 하지만, 보조금을 둘러싼 중국과의 분쟁해결에서 미국이 유리한 고지를 확보하려는 의도도 내재 되어 있다. 21세기 글로벌 무역환경을 반영한 신무역규범의 제정도 선진국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전자상거래, 투자원활화 등이 주요 의제이기는 하지만 이 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중국의 지재권 이전 강요, 투자 제한 등의 이슈를 다루고 있다. 개도국 세분화는 중국과 같은 거대 개도국에게 더 이상 개도국 우대 혜택 을 부여하지 않겠다는 의도가 분명하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의 핵심 양대 수출 시장인 미국과 중국 간 무역 갈등이 WTO 다자체제로 옮겨올 수 있어 WTO 체 제 개혁에 대한 우리나라의 입장 정립은 그리 간단한 문제가 아닌 상황이다.

한편 이러한 WTO 체제 개혁 논의에서 우리나라도 완전히 자유롭지는 않다. 개도국 세분화만 해도 우리나라 농수산 부문에 가장 민감한 사안이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WTO 농업협상 대책은 은연중에 우리나라의 개도국 지위 유지를 전제로 하고 있었다. 그런데 개도국 세분화를 통해 우리나라가 개도국 우대

조치를 활용할 수 없게 된다면 기존 우리나라의 농업협상 대책은 근본적으로 수정되어야 한다. 산업보조금도 우리가 안심할 수만은 없다. 우리나라도 특정 산업부문의 기술 발전을 위하여 다양한 보조정책을 운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최근의 선진국 주도 WTO 개혁 논의는 사안별로 우리나라의 신중한 접근과 철저한 준비를 요구하고 있다.

다른 한편 WTO 체제 개혁은 위와 같은 선진국들의 의도와 관계없이 시대적 요구이기도 하다. 무엇보다도 영국의 EU 탈퇴, 유로지역의 보수화, 트럼프 행정부의 탄생 등 그동안 지속되어온 무역자유화 및 세계화에 반대하는 반세계화 · 반무역자유화의 물결이 그것이다. 이에 WTO 내부적으로도 과연 무역자유화의 예택이 회원국 모두에게 적절히 배분되었는지 많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개도국들은 그동안의 무역자유화로 인한 혜택이 대부분 선진국이나 다국적 대기업에게로 돌아갔다고 주장하고 있다. 관세감축이나 철폐로 인하여 국경의 장벽이 낮아졌으나 국경을 넘어 소비시장에 이르는 과정에는 여전히 많은 비관세장벽이 존재하고, 이 때문에 비관세장벽을 돌파할 인적 · 물적 능력과 자원이 부족한 개도국과 중소기업은 무역자유화의 혜택을 볼 수 없었다는 것이다. 이에 포용적 무역(inclusive trade)이 글로벌 무역의 화두로 부상하고 있다.

또한 세계경제의 디지털화·서비스화가 급속도로 진행되면서 글로벌 무역의 특성도 빠르게 바뀌고 있다. 특히 서비스산업이 중요해지면서 급속한 기술발전에 따른 글로벌 무역의 디지털화로 다자 차원의 신통상규범 정립은 더 이상 미루기 어려운 상황이 되었다. 5세대 인터넷망, 인공지능, 3D 프린팅, 양자컴퓨터와 나노기술 등과 같은 기술혁명으로 인해 21세기 무역환경에 적합한새로운 다자무역규범의 제정 필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도 커진 상황이다.

이에 선진국 주도로 본격화되고 있는 최근의 WTO 체제 개혁 논의에 대해 그 의미와 영향을 검토하여 우리나라의 입장을 정립하는 데 필요한 연구의 필 요성과 중요성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특히 주요 이슈별로 그 의미와 주요국의 반응, 우리에게 미칠 수 있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최적의 협상 대안 을 제시하는 연구는 우리나라의 WTO 대응 차원에서도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 아울러 WTO 체제 개혁은 미·중 통상갈등의 다자화라는 측면에서 향후 세계경제 및 무역질서에 큰 변화를 초래하는 출발점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만큼 우리의 신중한 대처가 요구되고 있기도 하다.

우리나라의 다자통상정책은 비단 위의 WTO 체제 개혁 논의가 없더라도 재정립이 필요한 시점이다. 기술혁명과 4차 산업혁명으로 대두된 글로벌 통상환경의 변화에 대해 우리나라의 다자통상정책은 어떻게 변해야 하는지, 글로벌 통상에서 화두로 떠오른 '포용적 무역'과 기후변화 및 환경보전을 감안한 '지속가능성'은 우리나라의 다자통상정책에 어떻게 반영할 수 있는지 등 변화한 글로벌 통상환경에 맞추어 다자통상정책의 새로운 방향을 연구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WTO 체제의 개혁을 둘러싼 선진국과 개도국 간 이해 대립과글로벌 통상환경의 변화를 감안하여 우리나라의 다자통상정책 방향을 연구하는 것은 시의적절할 뿐만 아니라 그 의의도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2. 연구의 목적 및 구성

본 연구는 최근의 선진국 주도 WTO 체제 개혁의 의미를 분석하고 글로벌 통상환경의 변화를 감안하여 우리나라의 다자통상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하고 있다. 그러함에 있어 특히 다음과 같은 점을 분석하는 데 연구의 중점을 둔다.

첫째, 그동안 WTO 체제가 거둔 성과와 한계를 살펴본다. 1947 GATT 체제를 대신하여 1995년 출범한 WTO 체제는 비록 첫 번째 다자무역협상인 DDA를 출범시키는 데는 성공하였으나 아직까지 이렇다 할 만한 성과를 내지는 못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역원활화협정(TFA)의 타결 등 나름 일정한 성

과는 거두었다. 이러한 관점에서 1995년 WTO 출범에 따른 성과와 한계를 분석한다.

둘째, 최근 선진국이 주도하고 있는 WTO 체제 개혁 논의가 갖는 의미를 분석하여 우리나라의 WTO 협상 대책 수립은 물론 우리나라의 다자통상정책 방향 정립에 주는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한다. 앞서 언급한 대로 최근 WTO 체제개혁 논의는 종전 논의와는 그 성격을 달리하고 있어 큰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아야 한다. 특히 제시된 의제를 중심으로 그 의미와 우리에게 미칠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우리나라의 향후 WTO 협상 대책 방향을 제시하는 데 중점을 두다.

셋째, 앞의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다자통상정책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한다. 특히 급속히 발전하는 기술혁명과 디지털 무역화, 포용적 무역 등 글로벌 통상환경의 변화를 감안하여 우리나라가 추구해야 할 다자통상정책의 방향을 모색하는 데 연구의 중점을 둔다.

본 보고서는 다음과 같이 구성되었다. 제2장에서 WTO 체제의 성과와 한계를 살펴본다. 1995년 출범한 WTO 체제는 그 첫 번째 다자무역협상인 도하라운드(DDA) 부진으로 그 성과가 가려져왔다. 그러나 WTO 체제는 어려운 가운데 DDA를 출범시켰을 뿐만 아니라 정보기술협정(ITA)의 타결, 정부조달협정(GPA)의 타결, 농산물 수출보조금의 철폐 등과 같이 상품과 서비스 시장의 개방을 촉진하는 부분적인 성과를 거둔 것도 사실이다. 특히 무역원활화협정의타결 및 이행은 WTO 출범 이후 합의·도출된 최초의 다자무역협정으로 WTO의 대표적 성과 중 하나이다.

물론 WTO 체제의 한계와 문제점도 존재한다. 의사결정방식의 복잡함과 비효율성 같이 지금까지 계속해서 지적되어온 지배구조의 문제 외에 일괄타결 협상방식, 분쟁해결 이행의 문제 등 많은 자체적인 문제와 한계를 가지고 있다. 아울러 글로벌 가치사슬이나 반세계화, 반무역자유화 등과 같은 세계사적 흐름과 디지털 경제 등 급격한 기술 발전에 따른 글로벌 통상환경의 구조적 변화 등

에 WTO가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고 표류해온 것도 대표적인 문제 중 하나이다. 제2장에서는 이러한 WTO 체제의 성과를 포함하여 그 자체의 문제점과 한계를 살펴보았다.

제3장에서는 최근 WTO 안에서 논의되고 있는 WTO 체제 개혁 또는 현대화 논의를 분석하고 그 의미를 살펴보았다. 미국, EU, 캐나다 등 선진국들이 주도하는 WTO 체제 개혁안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그것이 뜻하는 의미를 분석하였다. 그에 대한 개도국들의 반응을 포함해 주요 이슈별로 향후 협상도 전망해 보았다. 최근 WTO 체제 개혁은 다분히 중국의 산업정책을 겨냥하고 있어서 미·중 무역갈등의 다자화라는 특성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 장에서 이러한 WTO 체제 개혁방안이 우리나라의 다자통상정책 방향정립에 주는 정책적 시사점도 도출해보았다.

제4장에서는 제2, 3장에서 논의된 WTO의 성과와 한계, WTO 체제 개편안에 대한 분석 등을 종합해 우리나라의 다자통상정책 방향을 제시하였다. 우선

표 1-1. 보고서의 구성

	구	성	
제2장	제3장	제4장	제5장
WTO 성과와 한계	최근 WTO 체제 개혁과 정책 시사점	우리나라의 다자통상정책 방향	정책 제언
■ WTO의 성과 - 무역자유화	■ 미국의 WTO 개혁 제안	■ WTO 체제 개혁의	
- 서비스규범 - 지재권보호	■ EU의 WTO 개혁 제안	근본 방향	■ 정책 제언
- 분쟁해결 - 무역원활화	■ 캐나다 WTO 개혁 제안	■ WTO 체제 개혁에 대한 한국의 입장	- WTO 내 위상 강화 - 포용적 무역의 선도
■ WTO 한계	■ 개도국의 반응		- 지역무역협정 다자화 - 지속가능 다자통상
- 제도적 한계 - 새로운 환경 변화에 대응 미흡	■ 협상 전망 및 정책 시사점	새로운 4대 방향	

자료: 저자 작성.

WTO 체제 개혁과 관련하여 근본적인 문제점에 개선 방향을 제시하였다. 이후 우리나라가 추구해야 될 다자통상정책의 새로운 방향으로 WTO 체제 안에서 한국의 위상 제고, 포용적 무역의 선도, 지역무역협정의 다자화, 다자통상의 지속 가능성 강화 등 4가지를 설정하고 각각의 방향에 따른 세부 실천방안을 제시하였다. 이어 제5장에서는 지금까지 결과를 요약하여 정책 제언으로 마무리하였다.

3. 기존 연구와의 차별성

WTO 개혁에 대한 기존의 국내외 연구는 상당히 제한적이다. 지난 십수 년간 FTA 등 지역무역협정의 급속한 확산과 글로벌 가치사슬의 확대, 디지털 무역 확산 등 글로벌 통상환경의 급격한 변화 등으로 인해 WTO 다자체제에 관한 연구가 상대적으로 관심을 받기 어려웠을 것이라는 점이 원인 중 하나일 것이다. 그나마 최근의 해외 연구 중 대표적인 것이 ICTSD(International Centre for Trade and Sustainable Development)와 WEF(World Economic Forum)가 주도하여 추진한 E15 프로젝트⁴⁾에 의한 연구 결과물이다.5) 그러나 이 연구들은 WTO 체제 자체의 개혁을 연구대상으로 하기보다 DDA의 실질적 진전을 위해 필요한 세부 의제를 분석한 것으로 본 연구와 같이 WTO 체제 자체의 개혁이나 개선방안을 연구내용으로 한 것은 아니다.

WTO 체제 전반에 걸친 개혁 연구로 최근의 해외 연구 또한 거의 없다. 그나마 Patterson(2010) 과 Linarelli(2011) 등이 WTO 체제 자체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나름 해결방안을 제시하고 있으나, 통상법적 관점이란 한계를 넘지

⁴⁾ E15 Initiative란 지속가능발전의 글로벌 무역 및 투자체제를 강화하기 위하여 세계적인 전문가와 연구소가 정부 및 기업계, 민간부분에 전략적 분석 및 권고를 하기 위해 설립한 프로젝트이다. 관련 연구 결과는 모두 WEF와 ICTSD가 공동으로 발간하였다.

⁵⁾ 해당 연구 결과는 ICTSD 홈페이지(https://www.ictsd.org, 검색일: 2018. 7. 12))에 게시되어 있다.

못하고 있다. 오래된 연구이기는 하지만 WTO 체제 개혁 연구는 Sutherland et al.(2004)이 대표적이다. WTO 출범 10년을 기념하여 그동안 제기되었던 WTO 체제의 문제점을 적시하고 나름 해결방안을 제시하고 있으나 연구 시점 상 최근 WTO 개혁 논의를 반영하지는 못하고 있다. 그 외 WTO 체제 전반에 관한 개혁 연구는 거의 없으며, 대부분은 의사결정방식이나, WTO의 투명성에 대한 연구, 분쟁해결제도에 관한 연구 등 세부 주제를 대상으로 한 연구들이다.6)

국내 연구로 종합적 성격의 연구는 서진교 외(2008)가 있다. 이 연구는 GATT 창설 이후 진행된 다자무역협상의 전개 과정과 특징을 살펴보고 그때 까지 WTO 내·외부에서 제기되었던 WTO 체제의 문제점과 한계를 분석하였다. 그리고 그 결과에 기초해 WTO 체제 개혁방안을 제시하였다. 물론 최근의 선진국 주도 WTO 체제 논의를 담지 못하고 있다는 점과 아울러 급변하는 국제통상환경의 변화를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단점이긴 하지만 WTO 체제의 근본적인 개혁방안에 대해서는 본 연구의 기초가 되었다.

안덕근(2012)의 연구는 WTO 체제 지배구조의 문제점을 통상법적 관점에서 분석해 우리나라의 정책대안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본 연구 수행에 많은 도움이되었다. 특히 WTO 체제의 근본적인 문제점으로 지적되어온 의사결정방식과 일 괄타결방식, 분쟁해결기능의 문제점과 WTO 사무총장 등 지배구조의 문제점을 자세히 검토하고 다자체제의 강화 차원에서 우리나라가 고려해야 할 상황을 재인식하게 되는 환경을 조성하였다는 점에서 이 연구의 기여를 찾을 수 있다. 또한 Ahn, Lee, and Park(2013)은 WTO에서 제기된 분쟁이 협의(consultation)나 합의(settlement) 등 비사법적 분쟁(non-litigated dispute) 해결방식으로 가게 되는 법적 절차와 경제학적 이유를 이론적 · 계량적으로 분석하였다. 비대칭정보하의 합의협상이론(theory of settlement bargaining with

⁶⁾ 의사결정방식에 관한 연구로 Schott and Watal(2000)이 있으며, WTO 투명성에 관한 연구는 Oxfam(2000)이 대표적이다. 분쟁해결제도에 관해서는 통상법 관점에서 최근까지 많은 연구가 있다.

asymmetric information) 분석에 따라 제소국(complainant)과 피소국 (respondent) 양국간의 크기, 분쟁해결기구가 가지는 제소국과 피소국에 대한 정보의 비대칭성, 제소국의 보복가능성(retaliatory power), 피소국의 평판 (reputation) 등을 합의 방향을 결정하는 주요 요인으로 주목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한 계량분석 결과 양국간 경제격차(GDP disparities)가 클수록 비송사건이 될 가능성(likelihood, 우도)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피소국이 평판(reputation)에 대한 우려가 적거나 제소국이 보복(retaliation)을 하지 않을 가능성이 낮을수록 비사법적 분쟁해결방식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논문은 경제적인 격차 등 구조적인 문제는 어쩔 수 없다고 해도 분쟁 당사국간 정보 공유 및 소통의 확대를 통해 고비용의 불필요한 분쟁을 줄이고 분쟁의 원만한 해결 가능성에 주목하고, 이를 위한 다자 차원의 논의 활성화를 주장하고 있다.

한편 최근 연구로 서진교, 박지현, 김민성(2018)은 최근 선진국들의 WTO 개혁 제안을 분석해 그 의미와 향후 전망, 한국에 주는 정책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다. 이 연구는 본 연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WTO 체제 개혁 관련 최근 논의 동향을 먼저 알리기 위해 연구 결과의 일부를 요약해서 제출한 의미의 자료이다.

기타 본 연구와 직접적인 관련은 없으나 본 연구에서 다루고 있는 세부 의제와 관련해서는 주로 통상법 분야에서의 연구가 있다. 안덕근, 김민정(2017)은 WTO 체제하 무역기술장벽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을 다루고 있으며, 유지영(2017)은 미국이 취하고 있는 국가안보위협에 따른 수입억제조치를 통상법 차원에서 다루고 있다.

본 연구는 최근의 WTO 체제 개혁 논의를 반영함은 물론 글로벌 통상환경의 변화를 감안하여 우리나라의 새로운 다자통상정책 방향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기존 연구와 차별되며, 이러한 부분이 본 연구의 독창적 기여이기도 하다. 이를 구체적으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WTO 체제의 성과와 한계를 다양한 각도에서 살펴본 국내

최초 연구이다. 기존 국내외 연구는 WTO 체제의 성과나 한계를 분야별로 검 토하거나 살펴보는 데 그치고 있다. 일부 종합 연구가 있으나 10년 전에 이루 어진 연구로 최근 WTO 체제 개혁에 대한 논의를 담지 못하고 있으며 특히 디 지털 경제나 포용적 무역 등 최근의 글로벌 무역의 구조적 변화를 반영하고 있 지 못하다. 그러나 본 연구는 WTO 체제의 성과를 상품과 서비스로 구분해 살 펴보았으며, 기타 제도적인 관점에서도 분쟁해결제도와 지재권보호가 갖는 WTO 체제상의 성과와 한계를 정리하였다. 따라서 WTO 출범 이후 해당 체제 의 성과와 한계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보고서는 본 보고서가 국내외를 막론하 고 처음이라 할 수 있다.

둘째, 최근의 WTO 체제 개혁에 대해 분석한 연구 역시 본 보고서가 처음이다. 이는 선진국 주도의 최근 WTO 체제 개혁안이 2018년 9월 이후 제시된 만큼 연구 수행 시간상 본 연구가 갖는 유리함이기도 하다. 특히 WTO 다자통상을 연구하는 국내외 연구 중에서 미국, EU, 캐나다 등의 제안서를 구체적으로비교·분석해 그 의미를 제시한 것은 이 연구가 처음이고 이에 후속 국내외 연구에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최근 WTO 체제 개혁 논의가 미·중 양자통상의 다자화라는 점을 제시한 것은 이 연구의 핵심 주장의 하나로 의미하는 바가 크다. 아울러 다자통상에 대한 연구가 극히 제한적인 국내외 여건상 본 연구가 갖는 의미는 더욱 크다고 할 수 있다.

셋째, 글로벌 통상환경의 변화를 분석해 이를 감안하여 다자통상정책의 방향을 제시한 것도 이 연구가 처음이다. 다자통상정책 방향을 제시한 대부분의 국내 연구는 최근의 국제통상환경 변화를 감안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본 연구는 글로벌 통상의 서비스화 · 디지털화, 그리고 반무역자유화, 반세계화의 움직임과 그 의미가 강조되고 있는 포용적 무역 등 새로운 글로벌 통상환경의 변화를 감안하여 우리나라가 취해야 할 다자통상정책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고 있으며, 바로 이 점이 정책연구로서 본 연구의 가장 큰 기여이기도 하다.

제2장 **《**

WTO 체제의 성과와 한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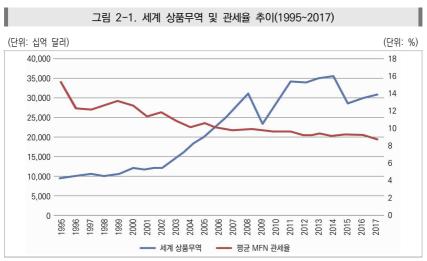
1. WTO 체제의 성과

가. 무역자유화의 진전

1) 상품 무역자유화

가) 세계무역의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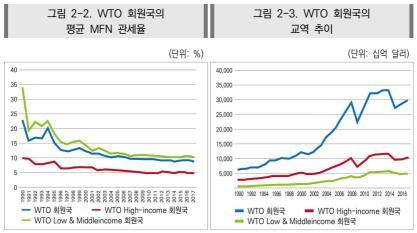
GATT 체제 이후 WTO 체제의 가장 대표적인 성과는 상품교역에서 시장개 방을 크게 확대한 점이다. WTO 체제 출범은 그동안 시장개방에서 제외된 농산물을 포함해 상품교역에서 전면적인 시장개방의 확대를 이끌었고, 이는 자연스럽게 무역의 증가로 이어졌다. WTO 출범 이후 세계 상품교역은 양적으로 3배이상 성장하였다. 특히 개도국의 무역 증가가 두드러졌는데, 세계 상품교역에서 차지하는 개도국의 점유율가은 WTO가 출범한 1995년 28%에서 2017년



자료: WITS(검색일: 2018. 11. 15); UN Comtrade(검색일: 2018. 11. 15).

43%로 크게 증가하였다.

시장개방의 확대는 무역장벽의 감축측면에서도 잘 나타난다. WTO 출범 이후 관세감축은 우루과이라운드(UR) 결과에 따른 것이지만, WTO 체제하에서도 다양한 관세감축(철폐) 협상이 있었다. 예를 들면 정보기술협정(ITA) 협상은 정보통신분야 상품의 무세화를 목표로 지난 1996년 제1차 WTO 각료회의에서 시작되어 타결된 협상으로 지난 2015년에는 ITA 확대협상이 타결되기도하였다. 8)이에 따라 WTO 회원국의 평균 MFN 실행관세율은 1995년 15%에서 2017년 8%대로 대폭 낮아졌으며, WTO 회원국간 교역도 증가하였다.



자료: WITS(검색일: 2018. 11. 15); UN Comtrade(검색일: 2018. 11. 15).

나) 개도 회원국의 다자무역체제 편입

WTO 체제의 또 다른 성과는 회원국 수의 확대를 통해 개도국들을 성공적으

⁷⁾ UNCTADstat, http://unctadstat.unctad.org/wds/TableViewer/tableView.aspx(검색일: 2018. 11. 16)에서 저자 계산.

^{8) 1996}년 정보기술협정(ITA)에서는 컴퓨터, 휴대폰 등 203개 주요 정보기술상품이 무세화되었고, 2015년 ITA 확대협상에서는 전기기기, 의료기기, 계측기기 및 소재, 부품, 장비 등 연관제품으로 범위가 확대되어 201개 품목의 관세가 단계적으로 철폐될 예정이다. 산업통상자원부(2015. 7. 27), 「정보기술협정확대협상 품목리스트 최종합의」참고.

로 세계경제에 통합시킨 점이다. WTO 회원국 수는 출범 당시 128개국에서 현재는 164개국으로 전 세계 국가의 3/4 이상이 WTO라는 단일의 다자무역체제로 편입되었다. 회원국 수의 증가로 인해 WTO 내 의사결정의 어려움과 복잡함이 가중되긴 했으나, 다른 한편 더 많은 국가에 WTO 규범이 적용됨으로써 GATT 체제보다 투명하고 예측가능한 단일무역체제하에서 새로운 비즈니스 창출 기회가 확대되었다.

WTO 발족 이후 신규 회원국 가입 현황을 보면 1996년이 16개국으로 가장 많고, 1997년 4개국, 1998년에 1개국, 1999년에 2개국, 2000년에 5개국으로 1997~2000년 사이에 총 12개 국가가 신규로 WTO에 가입하였다.⁹⁾ 이후 2001년 중국, 2005년 사우디아라비아, 2012년 러시아가 가입하면서 세계 주요 경제권들이 단일경제시스템으로 편입되었다. 현재 아제르바이잔, 벨라루스, 수단, 이라크 등 22개국(LDC 8개국 포함)이 WTO 가입 협상을 진행 중이다.

WTO 회원국 수 확대에 따라 WTO 회원국의 무역이 전 세계 상품무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995년 88%에서 2017년 98%로 증가하였다. 10) 이에 WTO 가 세계무역 모두를 담당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국가별로 보면 중국, 미국, 독일이 세계 상품무역의 약 30%를 차지하고 있으며, 2017년 기준 중국의 비중이 11.5%로 세계 1위의 무역국이다(미국은 11.1%로 2위). 한편 1995년 이후 WTO에 가입한 회원국들(Article XII 회원국)11)의 연평균 무역성장률이 세계성장률보다 높게 나타나 여전히 WTO 가입이 무역 증가에 도움이 되고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9) 1996}년의 경우 국내 비준의 지연으로 1995년 WTO 발족과 함께 기탁서를 제출하지 않은 국가들이 포 함되어 있어 모두를 신규 가입국으로 보기는 어렵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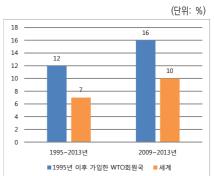
¹⁰⁾ WTO(2018e), p. 23.

¹¹⁾ 제12조 회원국(Article XII members)은 1995년 이후 WTO에 가입한 회원국으로 구성되며, 소위 '최근 가입국(RAMs: recently acceded members)'이라고 불렸으나 현재는 Article XII 회원국이라 고 언급한다. 1995년 이후에 가입한 최빈개도국 및 EU 회원국은 제외하며, 2015년 9월 현재 33개국 이다. 33개 WTO 회원국들은 세계 무역과 생산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WTO 규범의 적 용범위를 전 세계적으로 확장시켰다.

그림 2-4. WTO 회원국의 상품무역 비중(2017)

그림 2-5. Article XII 회원국의 무역 성과





자료: WTO(2018e), p. 23.

자료: WTO(2015a), p. 27.

다) 농산물 수출보조금의 철폐

WTO 출범 이후 다자 무역자유화협상에서 무역원활화협정 타결 이외에는 가시적 성과가 도출되지 않았지만 각료회의를 통해서 나름 부분적인 성과는 거 두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농산물 수출보조금의 철폐이다.

농산물 수출보조금은 당초 2005년 홍콩 각료회의에서 철폐시한을 정하고 철폐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다른 협상분야에서의 합의를 전제로 했기 때문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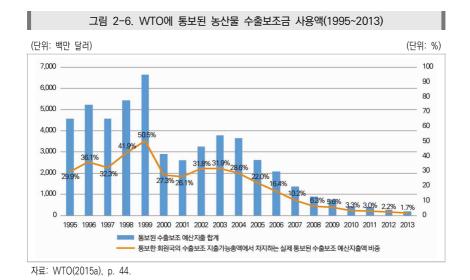
표 2-1. WTO 농산물 수출보조금 철폐

	수출보조금 철폐	예외 조항
선진국	- 즉시 철폐	- 가공농산물, 유제품, 돼지고기 등은 일정 요건*에 한해 2020년까지 예외 인정
개도국	- 2018년 말까지 철폐	- 농업협정문 제9.4조의 수출물류비 보조는 2023년 말까지 철폐

주: * 2016년 1월 1일부로 최빈개도국(LDC)으로 향하는 상품에 대한 수출보조를 철폐할 것, 나이로비 각료결정이 채택되기 이전 3개년 중 최소한 한 번은 해당 품목의 수출보조를 WTO 농업위원회에 통보한 적이 있을 것, 수출보조 물량은 2003~05년 평균 수준을 초과하지 않아야 할 것. 신규 품목이나 신규 시장에 대한 수출보조를 지급하지 않을 것. 자료: 서진교, 이효영(2016), pp. 7~8.

다른 분야 협상에서 진전이 없자 사실상 사문화된 합의가 되고 말았다. 그러나 이후 2013년 발리 각료회의를 거쳐 2015년 나이로비 각료회의에서 선진국은 즉시 철폐하고, 개도국은 2018년 말까지 농산물 수출보조금을 철폐한다는 합의가 도출되었다.

한편 1995~2013년 기간 동안 WTO에 통보된 WTO 회원국의 농산물 수출 보조금은 그 지급 실적이 크게 감소하였다. 수출보조 지출가능총액에서 실제 사용된 수출보조금 비중도 1999년 51%에서 2013년 2%로 급격히 감소했다. 이러한 감소 추세는 2000년 이후 국제 농산물 가격의 전반적인 상승과 함께¹²⁾ 수출보조금이 무역을 왜곡시키는 가장 문제가 많은 보조금이라는 인식의 확산, 그리고 그로 인한 WTO 회원국들의 전반적인 농업보조금 정책의 개혁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12) WTO(2015a), p. 43.

라) 정보기술협정(ITA) 타결

1995년 이후 WTO 회원국들은 우루과이라운드의 결과를 이행하는 것 외에 몇 가지 중요한 협정을 체결하여 상품 및 서비스시장의 추가 개방을 단행하였다. 특히 정보기술협정, 정부조달협정, 무역원활화협정 등에서 합의가 이루어진 것은 큰 성과이다.

정보기술협정(ITA)은 1996년 WTO 제1차 각료회의에서 체결된 이후, 2015년 7월 ITA 확대협상이 타결되었다. ITA는 WTO에서 협상된 최초이자 주요한 무세화협정이다. 1997년 7월 1일 발효된 ITA는 29개 WTO 회원국이 참여했으며, 관세철폐 대상품목은 통신기기, 컴퓨터, 과학기기, 반도체 등 총 203개 품목(HS 6단위)이다.

한편 1차 ITA 협정에 이어 2015년 타결된 ITA 확대협상에서는 기존 ITA에 포함되지 않거나 새롭게 등장한 품목인 GPS 네비게이션 시스템, 광학렌즈, 자기공명 영상장비, 새로운 반도체, 통신위성 및 터치스크린 등을 포함하여 총 201개 품목(HS 6단위)의 관세를 철폐하기로 하였다. 추가 201개 품목의 연간 교역액은 1조 3,000억 달러 이상으로 전 세계 무역의 7%를 차지한다. 13) 이는 세계 자동차 무역이나 섬유, 의류, 철강의 교역보다 큰 규모로 세계 GDP 성장 및 일자리 창출에 상당히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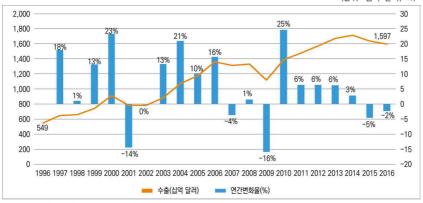
한편 ITA 발효는 개도국을 포함한 WTO 회원국에게 새로운 IT 기반 산업 및 관련 서비스 기반 구축을 유도함으로써 글로벌 생산네트워크에 편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현재 ITA는 세계 IT 제품 무역의 97%를 차지하는 82 개 WTO 회원국이 참여하고 있다. 14) ITA는 참여국에만 관세철폐 의무가 적용되는 협정이지만, 최혜국대우원칙에 따라 그 혜택은 모든 WTO 회원국에게 적용되다.

¹³⁾ WTO(2015a), p. 36.

¹⁴⁾ WTO(2018), "Information Technology Agreement," https://www.wto.org/english/tratop_e/inftec_e/inftec_e.htm(검색일: 2018. 11. 16).

그림 2-7. ITA 제품의 세계 수출 추이(1996~2016)

(단위: 십억 달러, %)



자료: WTO(2018d), p. 88.

정보기술제품 무역은 지난 수십 년 동안 빠르게 증가하였다. ITA 발효 이후 IT 제품의 수출은 3배 이상 증가해 1996년 5,490억 달러에서 2016년 1조 5,970억 달러를 기록하였다. 현재 IT 제품의 수출은 전 세계 상품수출의 약 15%를 차지하고 있다.15) ITA 무역의 확대는 정보처리 및 통신의 기본 인프라를 제공하여 디지털 기술의 적용 및 사용을 촉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특히 컴퓨터 및 휴대전화의 높은 활용성은 인터넷 접근을 증가시키고, 디지털 경제가 성장하면서 새로운 교역 기회 또한 창출되고 있다. 디지털 제품보급률이 증가하고 새로운 제품이 발명됨에 따라 IT 제품의 무역 확대는 계속될 전망이다.16)

¹⁵⁾ WTO(2018d), p. 88.

¹⁶⁾ Ibid., p. 88.

마) 개정 정부조달협정 타결

WTO 개정 정부조달협정(revised GPA: Government Procurement Agreement)은 기존 GPA의 개정협정으로 2014년 발효되었다.¹⁷⁾ 정부조달은 각국 정부의 중요한 전략분야로 세계경제의 15%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¹⁸⁾ 현재 47개 회원국¹⁹⁾이 정부조달협정에 가입되어 있으며, 10개 회원국²⁰⁾이 가입협상을 진행 중이다. WTO²¹⁾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연간 800억~1,000억 달러의 정부조달시장 개방 효과가 있으며, GPA 참여를 통해 연간 1조



자료: WTO(2018a), p. 123.

¹⁷⁾ 정부조달에 관한 새로운 협정(1994년 GPA)은 1994년 4월 15일 마라케시에서 체결되었으며, WTO 설립 협상과 동시에 1996년 1월 1일에 발효되었다. 1994년 GPA 시행 2년 이내에 GPA 당사국은 1994년 협정의 built-in 조항에 따라 본 협정의 재협상을 시작했다. 협상은 2011년 12월에 종료되었으며, 2012년 3월 GPA 개정의정서가 최종 채택되었다. 개정된 GPA는 2014년 4월 6일에 발효되었다(아르메니아, 한국, 아루바, 스위스 제외, 한국은 2016년 1월 14일 개정 GPA 발효). GPA 발효 이후 회원국들은 국내 이행작업을 진행 중이다.

¹⁸⁾ WTO(2015a), p. 47.

¹⁹⁾ 아르메니아, 캐나다, EU(28개국), 홍콩, 중국, 아이슬란드, 이스라엘, 일본, 한국, 리히텐슈타인, 몰도바, 몬테네그로, 아루바, 뉴질랜드, 노르웨이, 싱가포르, 스위스, 대만, 우크라이나, 미국.

²⁰⁾ 알바니아, 호주, 중국, 조지아, 요르단, 키르기스스탄, 오만, 러시아, 타지키스탄, 마케도니아.

²¹⁾ WTO(2015b), p. 72.

7,000억 달러에 달하는 전 세계 공공조달시장에 진출할 수 있다.²²⁾ 세계 조달시장 확대를 위해서는 중국의 GPA 가입 여부가 중요하다. 중국이 GPA에 가입할 경우 조달시장의 규모는 3조 1,000억 위안(약 528조 원) 수준으로 확대된다.²³⁾

2) 서비스규범 제정 및 무역자유화

WTO 체제 출범의 가장 큰 특징이자 기여는 GATT 체제에서 전혀 다루지 못했던 서비스교역을 국제통상규범의 틀 내로 편입한 점이다. 무역적자 문제에 시달리던 미 레이건 행정부는 당시 가장 높은 경쟁력을 갖춘 서비스산업의 세 계시장 개방화를 추진하였고 이는 WTO 체제에 GATS 도입이라는 놀라운 성 과로 이어졌다. 24)

우루과이라운드 협상 초기만 해도 GATT 체약국들은 서비스교역의 정의에 대한 합의나 통계자료 확보의 어려움 때문에 서비스부문의 실질적인 규범 도입에 매우 회의적이었다. ²⁵⁾ 이러한 상황에서 서비스교역을 4가지 모드로 구분해 정의하고, 투자와 직결되는 상업적 주재를 모드 3, 노동자 고용 문제가수반되는 인력 이동을 모드 4로 포함시켜 포괄적으로 GATS 체제하에서 서비스규범을 도입한 점은 실로 획기적인 변화라 할 수 있다. 당시 경제학자들이서비스를 상품과는 달리 교역 불가 경제행위로 간주하여 대부분의 국제무역이론에서도 서비스교역을 포함하지 않은 점을 감안하면 정교한 이론적 뒷받침이제공되기도 전에 실무적인 합의에 의해 세계무역의 새로운 지평이 열리게 된것이다.

새롭게 도입된 서비스규범은 기존의 상품무역과 달리 기본 통상규범으로 인

²²⁾ WTO(2018a), p. 125.

²³⁾ 박혜리(2018), p. 9.

²⁴⁾ 레이건 행정부는 공식적으로는 자유무역을 주창했으나 실제로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가장 보호주의 적인 통상정책을 운용했다. 보다 자세한 논의는 Cooper(1989)와 Deardorff(1991) 참고.

²⁵⁾ Croome(1995), pp. 102-109.

식되던 비차별원칙(최혜국대우원칙과 내국민대우원칙)이 구체적 약속 항목으로 취급되어 개별 회원국의 선택에 따라 준수 수준 및 여부가 결정되는 구조이다. 이러한 구분에 따라 내국민대우는 서비스양허표와 서비스협상으로 나뉘어졌다. 또한 최혜국대우원칙에서도 상품교역과 달리 부속서를 통해 한시적으로의무적용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26)

점부되어 보다 세부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서비스무역에 대한 규범이 최초로 정립되는 시점에서 통신서비스와 금융서비스가 갖는 중요성을 보여준다. 통신서비스는 전통적으로 국가독점사업으로 운영되어왔다. 그러나 1980년대 중반 이동통신기술이 급속히 발전하면서 새로운 기술 진보의 핵심 부문으로 인식되었고 서비스규범 도입 시 호환성과 경쟁원칙 도입에 선진국들의 관심이 집중되었다. 금융서비스의 경우에도 대다수 개도국들이 보험시장과 은행 및 증권시장을 개방함으로써 선진 금융기법을 앞세운 선진국들의 진출 가능성이 큰 분야로 인식되었고 이에 따라 규범 제정과정에서 선진국들의 관심이 집중된 분야였다. 최근 인터넷 기술의 발전으로 하드웨어 인프라 자체를 다루는 통신서비스보다 디지털 무역 또는 전자상거래 방향으로 규범 제정 논의가 옮겨갔으나, 선진국들의 FTA에는 예외 없이 통신 및 금융서비스를 다루는 별도의 장(Chapter)들이 포함되어 있다. 1996년 4월 기본통신서비스에 대한 규제원칙을 규정한 '참조문서(Reference Paper)'가 채택되었는데, WTO 체제 내에서 유일하게 경쟁규범을 수용한 법적 문서로서 의미가 크다.27)

²⁶⁾ 상품협정은 GATT 체제 출범 시 잠정적용의정서(Protocol of Provisional Application)를 통해 기존 국내법 우선 원칙을 명시하는 경우에 한해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²⁷⁾ WTO 출범 후 1차 각료회의인 싱가포르 각료회의에서 경쟁규범을 WTO 틀 내에서 제도화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하기로 합의하였으나, 이후 도하협상 중간에 개발도상국들의 반대로 의제에서 누락되었다. 따라서 경쟁규범은 아직 WTO 체제 내에 일반적으로 수용되지 못하고 있으나 통신서비스 부문에서는 참조문서를 통해 이미 법제화되어 있다는 점은 특기할 부분이다. 특히 이러한 참조문서상의 경쟁규범은 Mexico - Measures Affecting Telecommunications Services(DS204) 분쟁에서 핵심 쟁점으로 다루어진 바 있다. 보다 구체적인 논의는 Marco Bronckers(2000), "The WTO Reference Paper on Telecommunications: A Model for WTO Competition Law?" in NEW DIRECTIONS IN INTERNATIONAL ECONOMIC LAW: Essays in Honour of Professor John H.

한편 WTO 서비스시장 개방구조는 전격적인 개방을 주장한 미국과 이에 반대하여 보수적 입장을 견지한 EU 등 여타 국가들의 주장이 섞인 혼합방식으로합의되었다. 즉 서비스시장 개방은 개별 회원국들이 명시적으로합의하는 분야로국한하는 EU의 포지티브 방식이 채택된 반면, 일단 개방을합의한 부문에대해서는 서비스 양허안에 제한사항을 명시적으로 기재하지 않는 한 별도의 규제 없이 개방되는 것으로 간주하는 미국의 네거티브 방식이 절충되어현재 WTO의 혼합방식이 채택된 것이다.

미국과 EU는 WTO 출범 이후 각자의 FTA 협상을 통해 자신들의 서비스시장 개방방식을 지속적으로 확대시키고 있다. 특히 미국은 한 · 미 FTA 제13.6조에서 신금융서비스 조항을 도입하여 자국의 금융기관에 허용하는 모든 신금융서비스를 FTA 회원국의 금융기관에도 허용하도록 하였다. 28) 미국은 이러한 규정을 확대, 서비스분야에 특화하여 복수간서비스무역협정(TiSA: Trade in Services Agreement) 협상에서도 서비스산업 전체에 포괄하여 적용하는 '신서비스(New Services)' 조항을 강력히 고수한 바 있다. 29) 서비스산업은최근 기술 진보와 결부되어 새로운 형태의 서비스가 계속 창출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처럼 서비스시장의 자유화를 새로운 형태의 서비스부문으로자동 확대하는 것은 향후 시장경쟁구조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2017년 세계 서비스무역 동향을 보면 서비스 수출은 미국이 압도적인 1위를 유지하고 있으며, 특히 2위인 영국과 큰 격차를 보이고 있다. 서비스 수입은 중국이 미국에 이어 2위를 차지하고 있다. 서비스교역에서 미국이 비교적 대규모의 흑자를 기록하고 있으며 영국도 흑자를 보이고 있다. 이 두 국가를 제외하면 서비스교역 규모가 큰 국가들은 일반적으로 서비스 무역수지가 대체로 균형

Jackson, pp. 371-389 참고.

²⁸⁾ 미국은 2000년대 들어 체결한 대부분의 FTA에서 신금융서비스 조항을 포함시켰는데 가장 최근 타결한 TPP에도 동일한 조항을 반영했다.

^{29) &}quot;Old Fault Lines Re-Emerge Ahead Of TISA Deadline For Revised Offers"(2016. 4. 22), 온라인 기사(검색일: 2018. 7. 12).

을 이루고 있다. 다만 중국은 지속적으로 대규모 서비스 무역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그림 2-9. 세계 10대 서비스 수출 및 수입국: 2016~17년 상위 10대 수출국 미국 ■→ 영국 ● 네덜란드 아일랜드 ● 일본 싱가포르 300 500 600 700 800 100 상위 10대 수출국 ● 미국 ■ 중국 프랑스 🧶 네덜란드 🥦 영국 ■ 아일랜드 **의** ▋ 인도 400 500 100 200 300 600 ■2016 ●2017

나. 지식재산권 보호체계의 강화

국제규범 차원에서 WTO 체제의 큰 성과로 지적재산권(지재권) 보호체계의 강화를 들 수 있다. 지재권은 원래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 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에서 전담하였다. WIPO는 지재권에 대한 포괄적인 권한하에 저작권, 특허, 상표권 등 지재권을 분야별로 세분화하여 25개의국제협정을 시행하는 국제기관으로 지난 1967년에 설립되어 2018년 현재 회원국 수는 191개국이다.

WIPO와는 별도로 자체적인 지재권보호협정을 마련하여 이를 운용하는 국제기구는 현재 WTO가 유일하다. 사실 전세계의 지재권보호체계는 WTO에서 '무역 관련 지재권보호협정(TRIPs: Agreement on Trade-Related Aspects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을 시행하면서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였다고도 볼 수 있다.

TRIPs는 저작권, 특허, 상표권, 지리적 표시, 의장, 집적회로 배치설계 등 6개 지재권에 대하여 최소한의 보호수준을 설정하였다. 이러한 최소보호수준은 WTO 분쟁해결제도를 통해 모든 WTO 회원국들에 대해 예외 없이 적용되었다. WIPO는 동일한 지재권에 대해 다양한 협정을 적용하였기 때문에 회원국들이 각기 여건에 맞추어 보호수준이 상이한 국제기준을 선택하면서 혼란과 마찰을 초래하였다. 더욱이 그러한 합의조차 제대로 이행되기 어려운 구조적 한계를 가지고 있었다. 이에 반해 WTO는 TRIPs 의무 위반 여부를 분쟁해결절차에서 다루고 판결이 나는 경우 그 결과를 적절히 이행하지 않는 이행패소국에 대해서는 교차보복권한을 승인함으로써 협정의무 준수를 강행하게 되어 있다.30) 뿐만 아니라 WIPO 지재권협정에는 전혀 도입된 적이 없는 최혜국대우

³⁰⁾ DSU 제22.3(c)조에 규정된 교차보복제도는 TRIPs 협정상의 지재권 위반 사안에 대해서도 상품이나 서비스교역에 대한 무역보복을 허용하는 것으로써 개도국들의 TRIPs 협정상 의무이행을 촉진하기 위 해 도입되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 2018년 9월까지 교차보복에서 지재권 사안이 제기된 경우는 개 도국이 미국을 상대로 판결 미이행에 대해 보복조치를 부과하는 상황에서 발생하였다.

가 TRIPs에 수용되면서 전격적으로 국제사회에 지재권에 관한 최소기준이 TRIPs가 설정한 수준으로 확정되고 보편화되었다.31)

WTO 체제를 통한 지재권보호체계의 발전은 2000년대 들어 급속히 발전한 인터넷 기술혁신과 소위 디지털경제 출현의 발판이 되었다. 한편 지재권보호는 향후 산업발전의 향방을 가르는 중요한 변수로서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미·중 간 통상분쟁의 핵심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는데, 이러한 경향은 앞으로 갈수록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 분쟁해결제도의 정착

GATT 체제에서 분쟁해결제도는 법적 구속력이 미비한 GATT 규범 자체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32) 절차적으로도 분쟁해결을 효과적으로 다루기 어려운 구조적 결점 때문에 UR 협상 초기부터 핵심 쟁점으로 부각되었다.33) 이에 국 제사법기구로는 유일하게 상소절차를 허용하고 패널절차에서는 비교적 자유롭게 패널위원을 선임하는 반면, 상소절차를 위해 7명으로 구성된 상소기구위원 중 3명을 임의로 선정하는 절차를 채택하는 등 실험적 제도를 토대로 출범한 WTO 분쟁해결제도는 WTO 체제의 핵심으로 간주되었다.

2018년 7월 현재까지 총 561건의 소송이 국제경제 상황 및 여건과 큰 관련 없이 매년 꾸준히 제기된 점은 UR 협상을 통해 도입된 WTO 분쟁해결제도가 무역관계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통상분쟁을 다루는 법적 장치로서 확고한 입지를 확보하였음을 나타낸다.34) 최근 들어 WTO 판결이 축적되고 법적체계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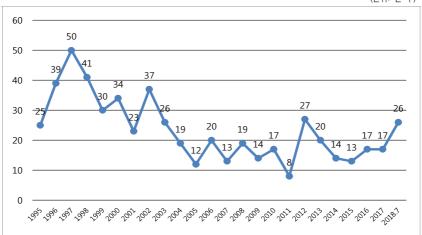
³¹⁾ GATT 제1조가 최혜국대우 조항이고 제3조가 내국민대우 조항인 데 반해, TRIPs 협정은 제3조에 내 국민대우원칙이 먼저 제시되고 제4조가 최혜국대우원칙 조항인 점은 지재권보호체계에서 내국민대 우원칙과 최혜국대우원칙의 위상을 보여주는 부분이다.

³²⁾ 분쟁해결제도뿐만 아니라 GATT 체제의 전반적인 문제점을 진단하여 개편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추후 WTO 설립의 청사진을 제시한 저술은 Jackson(1990) 참고. 동 저술의 의의는 이후 많은 학자들이 다루었는데 대표적인 예는 Howse(1999)를 참고.

³³⁾ Croome(1995), pp. 147~154, pp. 262~267.

³⁴⁾ 이러한 관점에서 2018년 7월까지 통계로 이미 26건의 분쟁이 제기된 점은 최근 발생한 미ㆍ중 무역

(단위: 건 수)



자료: WTO 분쟁해결제도 홈페이지, https://www.wto.org/english/tratop_e/dispu_e/dispu_status_e.htm(검색일: 2018, 11, 30) 자료를 이용해 저자 계산.

공고히 확립되면서 소송 건수는 전체적으로 감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한편 WTO 출범 이후 최근까지의 분쟁해결 기록에 따르면 미국과 EU의 참여가 여타 회원국들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다. 미국의 경우 122건을 제소하고 147건 제소당했으며, 143건에 제3자로 참여했다. 이는 총 561건 중 73%에 달하는 수준으로서 전체 분쟁의 3/4에 관여한 것이다. EU의 경우 99건의 제소와 85건의 피소, 174건의 제3자 참여가 있으며, 이는 총 분쟁의 64%에 해당한다. 그러나 EU의 개별 회원국들이 별도 분쟁에 참가한 사건을 포함하는 경우, 103건의 제소와 111건의 피소로 전체 참여율은 69%로 증가한다. 분쟁해결에 대한 미국과 EU의 압도적인 참여는 여타 회원국들에 비해 교역 규모가큰 요인도 있으나, 상대적으로 법적 절차를 통한 분쟁해결에 친숙한 사회·정책적 분위기와 함께 통상법 전문인력이 정부 내에 다수 확보되어 있다는 점도

분쟁과 트럼프 행정부의 보호주의조치의 심각성을 보여준다. 이에 관한 보다 상세한 설명은 Bown and Kolb(2018), "Trump's Trade War Timeline: An Up-to-Date Guide," https://piie.com/blogs/trade-investment-policy-watch/trump-trade-war-china-date-guide(검색일: 2018. 7. 5).

중요한 이유이다.35)

GATT 체제에서 분쟁해결 참여가 미미했던 개도 회원국들이 WTO 체제에서 분쟁해결 참여가 크게 증가한 점은 주목할 만한 부분이다. 절대적 분쟁 참여 건수는 미국이나 EU에 미치지 못하나 무역 규모를 감안할 때 인도, 브라질, 아르헨티나, 멕시코 등의 참여가 매우 적극적인 것으로 판단된다. 중국도 2001년 12월 WTO 가입 이후 10년의 이행기간이 설정되면서 실제 분쟁해결 참여는 그 이후부터 시작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2002년 3월 미국을 상대로 철강 세이프가드조치를 제소하면서 분쟁해결절차에 본격적으로 참여하였다. 현재까지 중국은 17건 제소 및 42건 피소, 그리고 147건에서 제3자로 참여했다.

이와 같은 개도국들의 활발한 분쟁해결제도 참여는 전반적으로 WTO 체제의 법원칙 준수와 법체계 확립의 중요성을 강화함으로써 국제통상체제의 '법의지배(Rule of Law)' 원칙을 공고히 확립하는 기반으로 작용하였다. 이는 환경,인권, 금융 등 여타 분야의 국제규범과 뚜렷이 대비되는 WTO 체제의 가장 중요한 특징으로 자리 잡았다.3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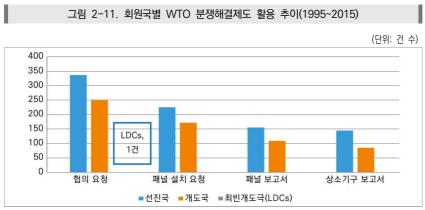
이러한 분쟁해결제도의 경제효과에 대해 최근 다양한 계량경제학 방법을 통해 긍정적인 평가가 제시되고 있다. 37) 특히 Shin and Ahn(2018)에서는 이러한 분쟁에서의 법적 승소가 제소국과 제3자 참여국들에게 긍정적 경제적 효과를 발생시킬 뿐만 아니라 소송에 직접 참여하지 않은 회원국에게도 긍정적인경제효과를 초래한다는 점을 엄밀한 계량분석을 통해 입증하였다. WTO 소송에 따른 시장개방과 무역 이익의 개별적 크기는 소송 참여국에게 가장 크지만, 최혜국대우원칙에 따라 전체 WTO 회원국에게 창출된 무역개방의 이익 총량의 크기는 소송국과 제3국의 이익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다. 동 계량분석 결과

³⁵⁾ 관련 논의는 Reich(2018) 참고.

³⁶⁾ 이러한 관점에서 최근 트럼프 행정부에 의한 보호주의 통상조치의 남발은 WTO 체제의 '법의 지배'원 칙을 허물어뜨리는 심각한 위협요인으로 우려된다. 이와 관련하여 보다 상세한 논의는 Bacchus (2018) 참고.

³⁷⁾ 관련 연구로는 Bown(2004), Bown and Reynolds(2017), Chaudoin, Kucik, and Pelc(2016), Kucik and Pelc(2016) 등이 있음.

는 WTO 분쟁해결제도가 직접적인 무역관계를 가진 분쟁 당사국들뿐만 아니라 전체 WTO 회원국들에게 최혜국대우원칙에 기반하여 큰 경제적 효과를 창출함으로써 WTO 체제 유지를 위한 공공재적인 외부효과를 발생시키는 핵심적인 기여를 보여준다. 다시 말하여 WTO 분쟁해결제도가 소송을 제기한 제소국에게 양자간 무역 차원에서만 효과를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다자간 무역 차원에서 더 큰 경제효과를 창출함으로써 WTO 체제 유지와 발전에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는 점이 검증되었다.



자료: Reich(2018), p. 8.

한편 개발도상국들의 분쟁해결절차 참여를 지원하기 위해 새로이 설립된 WTO 법자문센터(ACWL: Advisory Center for WTO Law)는 회원국들의 자발적인 기여금을 토대로 설립되어 국별 경제수준에 따라 차등적인 가입비 및 법률자문비용 구조를 적용함으로써 실효성 있는 지원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특히 WTO 사무국 출신의 법률전문가를 적극적으로 유치함으로써 공신력 있는 법률전문성을 확보하여 개발도상국들의 신뢰를 구축하고 소송대리 기능뿐만 아니라 다양한 역량강화사업을 통해 회원국 전반의 분쟁해결 역량을 제고한점은 중요한 기여로 평가된다. 이러한 ACWL의 안착 사례는 개발도상국들의

적절한 참여를 증진코자 하는 다른 국제사법기구들에서 참고할 수 있는 중요한 모델이다.

라. 무역원활화협정 합의

무역원활화협정의 타결 또한 WTO 체제의 큰 성과 중 하나이다. 무역원활화는 2004년 7월 DDA 기본골격에 대한 합의인 7월 패키지가 합의됨에 따라 뒤늦게 DDA에 편입되었다. 이후 조기수확 의제로 선정되어 집중적으로 논의한끝에 2013년 12월 발리 WTO 각료회의에서 극적으로 타결되었다. 그러나 무역원활화협정 타결안에 대한 법률 검토를 하는 과정에서 식량안보용 공공비축보조의 허용 문제를 놓고 미국과 인도가 대립하는 바람에 2014년 11월 특별이사회에서 무역원활화협정의 WTO협정 편입을 위한 의정서가 채택되었다. 무역원활화협정은 회원국 2/3 이상이 국내비준을 완료하고 의정서를 기탁함에따라 2017년 2월 22일 정식 발효되었다.

무역원활화협정은 3개의 절(section)로 구성되어 있다. 제1절은 상품의 신속한 이동, 반출, 통관을 위한 조치로 무역규제 투명성 강화, 수출입 관련 수수료 및 요금 합리화, 수출입 절차 간소화·효율화·조화 및 표준화, 통과의 자유, 세관 협력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제2절은 1절의 무역원활화 조치를 이행하는 데 있어 개도국 및 최빈개도국에게 신축성을 부여하는 개도국 및 최빈개도국 우대에 관한 내용이다. 제3절은 WTO 무역원활화위원회의 설립 및 운영 방안, 국별 무역원활화위원회 설립 등 기관협정 및 최종규정에 관한 내용이다.

무역원활화협정은 WTO 설립 및 DDA 협상 개시 이후 타결된 최초의 다자 무역협정이라는 점에서 가장 큰 의의를 갖는다. 또한 무역원활화협정의 개도국 우대 방식은 개도국 스스로가 무역원활화협정에서 합의된 조치를 자국의 상황 에 따라 A/B/C 의무로 분류하여 이행일과 함께 WTO에 통보할 수 있도록 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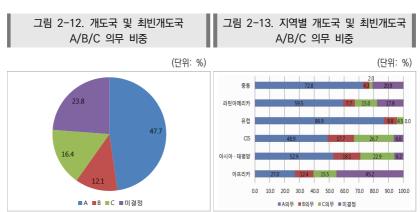
여 여타 WTO 협정과는 차별화되는 접근 방식을 채택하였다.38) 더욱이 무역 원활화 조치의 이행 정도와 시기를 개도국 및 최빈개도국의 이행능력과 연계시 켜, 이행능력이 부족한 국가의 경우 이행능력이 획득될 때까지 이행의무가 부 과되지 않도록 하였다. 이외에도 B/C 의무이행일 연장을 위한 절차인 조기경 보 메커니즘. B/C 의무가 이동. 분쟁해결절차의 적용 유예기가 부여 등 여타 WTO 협정에 비해 개도국 및 최빈개도국에게 많은 신축성을 부여하고 있다. 이러한 차별화된 개도국우대 방식이 협정 타결에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은 사실 이나 이행 시기나 이행 정도에 대한 예측성을 감소시킬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경제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무역원활화협정의 타결로 인해 교역비용의 감소, 수 출 증가. 교역환경의 개선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Hufbauer and Schott(2013)은 무역원활화협정의 타결로 인해 1조 달러의 수출 증가, 2.060만 개의 수출 관련 고용 창출, 9,600억 달러의 전 세계 GDP 증가가 발생할 것으 로 예측하였다. OECD(2015)에 따르면 WTO 무역원활화협정을 이행할 경우 국가의 소득수준과 이행수준에 따라 10.4~17.4%의 잠재적인 교역비용 감소 효과가 발생하며, 이행수준이 높을수록, 소득수준이 낮은 국가일수록 무역원 활화협정의 이행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WTO(2015c)에서는 CGE 모형 을 활용하여 WTO 무역원활화협정 이행에 따른 경제효과를 분석한 결과 무역 원활화협정 이행 시기와 정도에 따라 7.500억~1조 달러의 수출과 연평균 0.34~0.54%의 GDP가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하였다.

한편 협정 발효 1년이 경과한 현시점에서 협정 이행 현황을 살펴보면 2018 년 11월 현재 139개국이 무역원활화협정의 수락을 위한 국내 비준 절차를 완료하였으며, 이 가운데 114개 회원국이 A/B/C 의무에 대해 통보하였다.39 114개 회원국의 통보문을 분석해 보면 A의무를 통보한 회원국은 114개국, B

³⁸⁾ A의무는 발효 즉시 이행해야 하는 의무, B의무는 발효 후 이행까지 과도기간이 필요한 의무, C의무는 이행을 위한 과도기간 및 지원이 필요한 의무를 말한다.

³⁹⁾ WTO Trade Facilitation Agreement Database(2018), Notifications List(검색일: 2018. 11. 21).

의무와 C의무를 통보한 회원국은 각각 73개국, 63개국이며, 11개 회원국이 아직 통보를 하지 않았다. 개도국 및 최빈개도국이 제출한 통보문의 A, B, C 의무 비중을 분석한 결과 2018년 11월 현재 A의무 비중이 47.7%로 개도국 및 최빈개도국에서 현재 이행되고 있는 무역원활화 조치는 과반 이하인 것으로 나타났다. 무역원활화협정의 모든 조치를 A의무로 통보하여 발효 즉시 모든 조치를 이행하기로 한 국가는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칠레, 홍콩, 이스라엘, 멕시코, 싱가포르, 대만, 터키로 8개 국가이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현재 이행되고 있는 무역원활화 조치의 비중에 있어 차이가 큰데, 유럽과 중동은 A의무 비중이 각 25.8%로 높은 편이나 아프리카는 A의무 비중이 27.0%로 낮다.



자료: WTO Trade Facilitation Agreement Database(2018), Implementation Notifications(Categories A, B, C), 온라인 자료(검색일: 2018. 11. 21).

2. WTO 체제의 한계와 문제점

가. 제도적인 한계

- 1) 지배구조의 한계와 문제점
- 가) 의사결정구조의 복잡성

WTO 체제의 의사결정구조는 WTO 설립협정 제9조에 상세히 기술되어 있다. 우선 GATT 때부터 채택해오던 '총의(consensus)'에 따른 의사결정방식을 지속한다고 되어 있다. 이때 총의는 앞서 언급한 대로 회의에 참석한 회원국들이 공식적으로 의제에 반대하지 않는 경우라고 설명하고 있다. 40) 그러나 WTO 설립협정에서 GATT 의사결정방식을 이어받는다고 명시하고 있지만, 정작 GATT에는 합의에 의한 의사결정원칙이 어디에도 명기되어 있지 않다.

한편 합의가 도출되지 못하는 경우 투표로 의사결정을 하는데, 회원국당 1표가 부여된다. 41) 각료회의와 일반의사회에서 투표를 하는 경우 다수결 원칙이 적용된다. 그러나 분쟁해결기구에서의 의사결정은 투표가 아니라 합의에 의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42) 현재 상소기구위원 선임이 중단되는 것은 미국이 이 조항에 의거, 합의 도출을 막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다.

WTO 체제에서 의사결정은 사안에 따라 다수결 투표도 가능하지만 사실상 모든 의사결정은 합의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 현재까지 일반이사회에서 투표

⁴⁰⁾ 세계무역기구 설립을 위한 마라케쉬 협정, 각주 1.

^{41) &#}x27;1국가 1표' 원칙은 민주적인 방식으로 간주될 수 있으나, 실제로 경제 규모나 무역 현실이 전혀 반영되지 않기 때문에 선진국들이 투표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IMF는 국별 지분에 따라 가 중투표권을 부여하고 있다. IMF(2018), "IMF Executive Directors and Voting Power," http://www.imf.org/external/np/sec/memdir/eds.aspx(검색일: 2018, 8, 2).

⁴²⁾ 세계무역기구 설립을 위한 마라케쉬 협정, 제9.1조, 및 DSU 제2.4조.

로 의사를 결정한 유일한 사례는 에콰도르의 가입 결정인데,43) 당시 EU가 바나나의 차별수입조치에 대해 에콰도르가 소송을 제기할 것을 우려하여 에콰도르 가입합의에 반대 입장을 고수하자 해당 사안을 표결에 붙이게 된 것이다.44) 그러나 이후 투표에 의한 의사결정에 대해 논란이 일자 일반이사회는 1995년 11월 WTO 의사결정에 관한 결정문을 채택했는데, 다소 모호하고 상충된 표현들이 포함되어 있으나 요지는 가급적 투표를 사용하지 않겠다는 의미라 할수 있다.45) 즉 논란 끝에 투표를 통해 에콰도르의 가입을 승인한 후, 이러한 의사결정방식의 활용 여지를 확대하기보다는 오히려 그러한 상황을 최대한 방지하는 형태로 분위기가 바뀐 것이다.

이처럼 합의에 기초한 WTO의 의사결정체계가 공고해진 상황에서 회원국 수의 확대는 회원국간의 의사결정을 저해하는 결정적인 요인이 되었다. 더욱이 기존의 GATT 체제와는 달리 WTO 출범 이후 다수의 구 공산권 국가들이 WTO에 가입함에 따라 회원국들 간의 이질성이 확대되었고, 특히 중국의 위상

On occasions when the General Council deals with matters related to requests for waivers or accessions to the WTO under Articles IX or XII of the WTO Agreement respectively, the General Council will seek a decision in accordance with Article IX:1. Except as otherwise provided, where a decision cannot be arrived at by consensus, the matter at issue shall be decided by voting under the relevant provisions of Articles IX or XII.

The above procedure does not preclude a Member from requesting a vote at the time the decision is taken.

Consequently, if any Member has a particular problem with a proposed decision regarding a request for a waiver or an accession to the WTO, it should ensure its presence at the meeting in which this matter will be considered. The absence of a Member will be assumed to imply that it has no comments on or objections to the proposed decision on the matter.

⁴³⁾ Footer(2005), p. 154.

⁴⁴⁾ WTO(1995a)에 의하면 당시 투표는 정족수 부족으로 일반의사회 회의에서 직접 하지 못하고 우편투표로 하였다. WTO(1995b)의 에콰도르 가입의정서에서 "The Protocol is open for acceptance in the Office of the Director of the Accessions Division, Room 2079"라고 명시된 부분이 이러한 상황을 시사하고 있다.

WTO(1996)에 의하면 실제로 에콰도르는 1996년 1월 21일자로 공식 가입하자 2월 5일 바나나분쟁 에 대한 혐의 요청을 제출했다.

⁴⁵⁾ Ehlermann and Ehring(2005), p. 64.

WTO(1995c)의 본문은 이하와 같다.

이 급부상하면서 WTO를 이끄는 리더십에 마찰이 고조되어 합의를 통한 WTO 체제 개편은 한층 더 어려운 과제가 되었다. 또한 사실상 미국과 EU가 이끌어오던 GATT 체제와는 달리 WTO 체제에서는 중국, 인도, 브라질, 인도 네시아, 남아프리카 등 주요 개도국의 위상과 역할이 제고되면서 이해갈등이 선진국과 개도국의 대립으로 변질, 그만큼 타협이 어려워졌다. 실제 도하협상이 17년째 공전하면서 회원국들 사이에서 총의에 의한 의사결정방식을 개편하고자 다양한 논의가 제기되었다. 46) 예를 들어 EU 회원국간 의사결정방식 등을 비롯하여 다수결 투표방식 도입 등 다양한 방식이 거론되었으나, 이를 합의하기 위해서 다시 총의가 필요해 현 의사결정방식을 개정하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나) 일괄타결(Single Undertaking) 구조의 문제

동경라운드 이후 GATT와 별도로 보조금, 반덤핑, 기술표준 등 모두 9개의 복수국간무역협정이 마련되었다.47) 그러나 복수국간무역협정에 대한 가입이 GATT 체약국의 선택사항으로 주어지면서 프리라이더(Free rider) 문제를 초 래하였고,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WTO 출범 당시 '일괄 타결' 원칙이 부과되었다. 이러한 일괄타결은 국제통상체제의 정합성과 안정성 유지에 중대 한 기여를 하였다.

그러나 WTO 체제를 예외 없는 일괄타결방식으로 운영하면서 체제의 경직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었고 이에 대한 해결책의 일환으로 개도국들은 개도국우대에 더욱 집착하였다. 이는 선진국들로 하여금 개도국 우대에 대해 부정적이거나 보수적인 입장을 견지하게 만들어 회원국간 괴리를 증폭시키는 악순환

⁴⁶⁾ Ehlermann and Ehring(2005): Lawrence(2006); Hufbauer and Schott(2012): Elsig(2010) 참고.

⁴⁷⁾ 복수간무역협정은 WTO 체제에서도 허용되나 부속서 4에 포함되었던 4개의 협정 중 2개는 폐기되고, 현재 정부조달협정과 민간항공기협정만 발효 중이다.

을 초래하였다. 또한 '일괄타결' 원칙하에 WTO 체제가 국제통상체제의 틀을 안정적·효과적으로 관리하고 있지만, 동시에 최혜국대우원칙의 예외로 운영되 는 FTA를 통해 회원국들이 자국에 특화된 차별적 특혜무역체제를 적극적으로 구축하고 있다. 따라서 표면적으로는 분쟁해결제도를 기반으로 WTO의 무역 규범이 효과적으로 시행되고 있으나 다른 한편에서는 WTO 체제에서 이탈하 는 특혜무역체제가 그 어느 때보다 확산되고 있다.

도하협상에서 진전을 이루기 어렵게 되자 미국, EU, 일본 등 주요국들이 주도하여 WTO 협상과 별도로 추진한 서비스무역협상(TISA)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정보기술의 진보가 서비스산업과 융합하여 새로운 형태의 산업을 창출해가는 상황에서 도하협상을 통해 WTO 서비스규범을 개편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판단되자 여건이 비슷한 국가들만 별도로 모여 서비스에 특화된 FTA추진에 나선 것이다. 2016년 중반까지 활발하게 전개되던 TiSA협상은 트럼프대통령의 취임으로 미국이 협상 타결에 의지를 보이지 않으면서 현재 더 이상의진전은 이루어지지 않지만 WTO 회원국들이 경직된 WTO 체제의 '일괄타결'원칙을 이탈하여 대안을 강구하려는 최근 상황의 대표적인 사례이다. 결국 경직적인 '일괄타결'원칙하에서 다양한 회원국들의 이해를 반영하기 어렵게 되면서 점차 체제 자체를 이탈하려는 경향이 가속화되었다. 향후 WTO 체제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WTO 체제의 근간으로 간주되던 '일괄타결' 원칙을 어떻게 어느 정도 수정할 수 있을지가 관건으로 보인다.

2) 분쟁해결제도의 한계와 문제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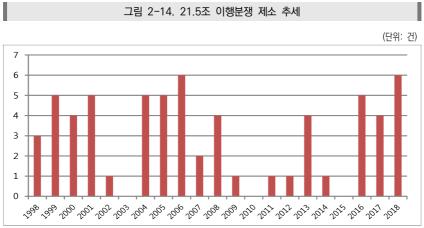
가) 분쟁판결의 이행

WTO 분쟁해결제도는 국제사법절차로서는 드물게 기존 체제를 전면 개편 하여 설립 직후부터 많은 회원국들의 신뢰를 확보했다. 이는 WTO 출범 이후 최근까지의 분쟁통계에 잘 나타난다. 1995년 WTO 출범 이후 2018년 9월까지 무려 566건의 분쟁이 제기될 만큼 WTO 회원국들은 분쟁해결절차를 통한 객관적이고 공정한 분쟁해결을 지지하였다.

그러나 WTO 분쟁해결절차는 GATT 체제와 달리 판결과정에서 정치적인 타협 여지를 전적으로 배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사안에 따라 당사국의 이행능 력이나 수용역량을 넘어서는 판결이 내려질 경우 이를 적절히 처리할 방안을 찾지 못하고, 이행분쟁에 이어 보복조치 승인절차로까지 이어지는 사례가 증가 하고 있다.

이행분쟁은 1998년 처음 제기되어 현재까지 총 63건이 제소되었는데, 미국에 대한 제소가 26건으로 가장 많고, EU에 대한 제소가 11건, 캐나다에 대한 제소가 6건 제기되었다. 이처럼 주요 선진국들에 대한 제소가 전체 이행분쟁의 77%를 차지하는 상황은 WTO 분쟁해결제도 운용의 공정성에 대해 논란을 야기하고 있다.

특히 이들 분쟁사건 중 최종적으로 보복조치 승인까지 진행된 사건은 총 13



주: 패소국이 분쟁해결기구의 권고사항을 적절히 이행했는지 여부에 대해 논란이 제기될 경우 원패널이 소환되어 '21.5조 분쟁절차'로 일컬어지는 이행분쟁절차를 통해 판결을 하게 되어 있음.

자료: http://worldtradelaw.net/databases/searchcomplaintscompliance.php(검색일: 2018. 11. 30) 참고하여 저 자 작성.

건인데, 그중 8건이 미국에 대한 것이며, EU가 3건, 브라질과 캐나다가 각각 1 건씩을 기록하고 있다. 더욱이 미국의 덤핑 및 보조금 보상(United States - Continued Dumping and Subsidy Offset Act of 2000) 사건의 경우, DS217에서는 EU, 브라질, 칠레, 인도, 일본, 한국 등 6개국이 보복승인을 받았고, 동일한 분쟁사안을 다룬 DS234에서는 캐나다와 멕시코가 보복승인을 받은 점을 감안하면, 미국이 WTO 분쟁해결절차상 압도적인 보복승인 대상국이다.

사실 WTO 분쟁해결제도상 보복조치 승인권한을 도입하여 이행체계를 강화한 배경에는 분쟁해결소송의 판결에 대한 개발도상국들의 이행을 촉진하고 자하는 미국의 강한 의지가 있었다. 그러나 분쟁해결제도를 기획했을 뿐만 아니라 직접적인 분쟁 당사국으로 가장 많은 분쟁에 참여한 미국이 판결의 이행에 있어 최대의 문제국으로 대두된 점은 제도의 운용에 근본적인 논란을 초래하였다. 특히 개도국들이 WTO 협정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분쟁해결소송 결과대부분이 이행되는 데 반해, 미국이 패소하여 국내조치나 제도를 수정해야 하는 경우 이행하지 않고 승소국이 보복승인을 받을 때까지 불이행을 고수하는 상황은 WTO 체제 운영의 공정성에 커다란 우려를 야기하였다. 더욱이 보복조치가 패소국으로부터 수입을 제한하는 조치인 경우 양자간 교역구조상 수입이적거나 수입품의 대체품을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에서는 실제로 보복조치를 부과하기 어렵다. 실제로 미국에 대해 보복조치권한을 받은 대다수 국가들이 실질적인 보복조치를 부과하지 않은 점을 감안하면 미국의 불이행은 WTO 체제에서의 심각한 법적 불균형 문제를 초래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는 WTO 탈퇴까지 거론하고 있다. 미국의 이러한 반발을 초래한 직접적인 계기는 소위 '제로잉(zeroing)' 분쟁이 제공하였다. 제로잉은 반덤핑관세 부과를 위한 덤핑마진 계산과정에서 수출가 격이 정상가격보다 높아 네가티브 덤핑마진이 발생하는 거래를 '0'으로 처리하여 덤핑마진을 인상하는 기법이다. ⁴⁸⁾ WTO 상소기구는 거듭된 소송판결을 통

해 원심뿐만 아니라 미국만 활용하는 연례재심절차와 소비자, 지역, 기간을 특정하여 덤핑한다는 '표적덤핑(Targeted Dumping)'의 경우에 일괄적으로 제로잉 관행을 금지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다.

제로잉과 관련된 미국의 행동은 EU와 극명히 대비된다. WTO 체제에서 미국을 제외하고 유일하게 제로잉 기법을 채택하던 EU는 WTO 분쟁에서 패소하자 전격적으로 역내 제도를 개선하고 판결을 수용하였다. 특히 제로잉에 대한기본 입장을 완전히 바꾸어 여타 회원국과 함께 미국의 제로잉 관행을 WTO에 제소하는 데 적극 동참하였다.

제로잉 분쟁은 WTO 분쟁해결상 유일하게 하급심인 패널이 상소기구의 판결을 번복하는 판결을 제시하는 등 법적으로도 전례가 없는 논란을 야기시켰다. 49) 그러나 제로잉을 금지하고자 하는 상소기구의 입장은 명확하며, 결국 표적덤핑의 상황에서까지 제로잉 적용을 금지하는 판결을 확정함으로써 사실상모든 상황에서 제로잉을 금지시켰다. 미국은 이러한 상소기구의 입장에 반발하여 상소기구위원 선임과정을 중단시킴으로써 사실상 분쟁해결절차를 고사시키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나) 분쟁해결기구의 권한 범위

WTO 분쟁해결제도는 설립 직후 회원국의 사용이 활성화되는 긍정적 측면이 있었으나 다른 한편 급격히 '미국화(Americanize)'된다는 비판을 받기도하였다.50)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도 분쟁해결제도, 특히 상소기구의 판결에 매우 비판적이다.

⁴⁸⁾ 미국과 EU가 반덤핑관세를 인위적으로 인상하는 가장 대표적 수단으로 지목되어왔다.

⁴⁹⁾ Lewis(2012).

⁵⁰⁾ WTO의 법률국과 상소기구 법률자문관을 역임하고 미국 듀크대 법대 교수를 거쳐 현재 제네바국제대 학원 교수로 재직 중인 Joost Pauwelyn 교수는 WTO 분쟁해결제도를 운영한 지 10년도 채 안 된 2003년에 이미 절차의 과도한 '미국화' 경향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했다(Pauwelyn 2003).

WTO 패널은 일반적으로 법률국(Legal Affairs Division)에서 담당하는데 무역구제 및 보조금 관련 사안은 규범국(Rules Division)에서 전담한다. WTO 출범 이후 2018년 9월까지 규범국에서 다룬 분쟁은 전체 566건 중 306 건으로 약 54%에 달할 만큼 패널단계에서는 무역구제분야 전문변호사들로 구성된 규범국의 역할이 법률국보다 더 크다. 이같이 패널단계에서는 무역구제분 쟁의 특수성이 제도적으로 반영되어 있다.

반면 상소기구는 위원이나 상소기구 사무국의 법률자문관에게 무역구제사 안에 관한 특별한 전문성을 요구하지 않는다. 이는 현재까지 선임된 27명의 상 소기구위원들 중 무역구제사안에 대해 전문성을 인정할 만한 위원이 기껏해야 5명 이하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현실적인 문제로 지적된다. 실제 상소기구 판결 문 작성을 지원하는 상소기구의 사무국 법률자문관 중에서 무역구제분야의 경 혐이 있는 전문가는 소수에 불과하다.

이러한 구조하에서 무역구제사안에 대한 패널의 중요한 판결이 대부분 상소 기구에 의해 기각되거나 번복되었다. 특히 미국의 조치에 대한 패널의 호의적 인 판결이 상소기구에 의해 거의 대부분 기각되자 미국은 크게 반발하였다.51)

법적 권한 측면에서는 상소기구가 상급심으로 패널의 법률 해석에 관한 최종 권한을 가진다. 그러나 패널위원들 중에는 실제로 UR 협상이나 당시 문안 작성 작업에 참여하여 협정문의 입법의도나 취지를 나름 명확히 이해하는 경우가 있다. 52) 이렇게 패널단계에서 해당 협정문의 취지나 정책 등을 감안한 문맥상 이해에 따른 해석과 상소기구의 상대적으로 단순 법률 해석 간에 괴리가 발생하게 되었다. 53)

⁵¹⁾ 미국 USTR의 WTO 판결에 대한 문제 제기와 미국 의회의 우루과이라운드협정 승인 당시 WTO 판결에 대해 부과한 다양한 조건 등에 대해서는 Bacchus(2018) 참고.

⁵²⁾ WTO 패널위원과 상소기구 선임절차 및 구성 등에 대해서는 Johannesson and Mavroidis(2015) 참고.

⁵³⁾ 예를 들어 US-Definitive Anti-dumping and Countervailing Duties on Certain Products from China(DS379) 분쟁의 상소기구 판결에 대해 UR 협상 당시 주제네바 대표부 홍콩 대사로서 보조금협상그룹 의장을 역임한 Michel Cartland, 그리고 당시 EU 보조금협상그룹 수석대표 Gerard Depayre, 당시 보조금협상그룹 사무국에서 근무했으며 후에 WTO 규범국 국장을 역임한 Jan Woznowski가 상소기구 판결의 해석상 오류에 대해 지적하면서 "온전히 학문적 연습(purely

이와 같은 분쟁해결제도에 대한 논란의 근본적인 저변에는 사법기구로서의 분쟁해결기구 역할이 과도하게 확대되는 데 대한 우려와 반발이 있다. 사실 이러한 문제는 WTO 체제 자체의 본질적인 문제에 기인한 면이 크다. WTO 설립 이후 최초로 출범한 다자 무역협상인 '도하개발어젠더('도하협상' 또는 DDA)'는 2001년 개시 이래 지금까지 아무런 타협 가능성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2017년 12월 아르헨티나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개최된 11차 각료회의에서는 각료선언문조차 합의하지 못하는 지경에 이르렀다.54) UR 협상 당시 미국 행정부의 신속처리권한(Fast Track Authority) 아래 의회 입법절차 시한을 맞추기 위해 GATT 체약국들은 1993년 12월 15일에 협상 타결을 선언했다. 그러나 시한에 쫓겨 소위 '기설정의제(Built-in Agenda)'라고 불리는 많은 쟁점들을 WTO 설립 이후 협상의제로 남겨두었는데, 서비스 세이프가드조치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뿐만 아니라 새로 도입된 세이프가드협정, 위생 및 검역에 관한 협정 등의 적용과 해석에 있어서도 여러 논란이 초래되었고 분쟁해결양해(DSU) 자체의 적용에 있어서도 이행 판정과 보복승인 간 절차적 순서에 대한 문제 등이 제기되었다.

이와 같은 산적한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협정을 재정비해야 하는 DDA의 타결 기미가 보이지 않자 사법기능을 담당하는 패널과 상소기구가 점차 모호한협정의 명확화 작업을 판결로 대체하고 있다는 해석도 가능하다. 이는 불가피하게 패널이나 상소기구가 비교적 단순한 협정문에 대해 '해석'이라는 이름으로 예기치 못한 기준이나 적용방식을 만들게 하였고, 이러한 상황은 다시

academic exercise)"이 되지 않아야 한다고 비판했다(Cartland, Depayre, and Woznowski 2012, p. 1015). 이와 같은 비판들은 결국 미국이 2016년 5월부터 본격적으로 상소기구위원들의 선 임과정을 저지하는 빌미가 되었다. 이에 대한 미국 정부의 DSB 발언문은 WTO(2016), "Statement by the United States at the Meeting of the WTO Dispute Settlement Body," https://www.wto.org/english/news_e/news16_e/us_statment_dsbmay16_e.pdf(검색일: 2018. 7. 15)를 참고.

⁵⁴⁾ 부에노스아이레스 각료회의 관련 자료는 WTO(2017), "Eleventh WTO Ministerial Conference," https://www.wto.org/english/thewto_e/minist_e/mc11_e/mc11_e.htm(검색일: 2018. 7. 15) 참고.

WTO의 과도한 사법기능에 대한 회원국의 우려와 불신을 촉발하는 악순환을 초래하였다. 정책적인 측면에서는 이러한 패널과 상소기구의 노력이 WTO 체제의 공정성과 안정성을 제고하는 데 중요한 기여를 하였다. 그러나 쟁점에 따라서는 법적 해석 논거가 취약하여 판결 자체의 신뢰성이 저하되는 문제가 갈수록 확대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3) 서비스 무역규범의 한계와 문제점

가) 서비스 무역구제조치의 결여

서비스 무역에 대한 통상규범의 확립은 WTO 체제의 최대 성과 중 하나이다. 그러나 GATS는 세이프가드조치가 미비한 불완전한 법규이다. 세이프가드조치는 시장개방으로 수입 급증이 발생할 경우 초래되는 국내시장의 심각한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조치로, 자동차에 비유하면 핵심 브레이크 장치에 해당한다. 새롭게 서비스시장을 개방하는 자동차를 설계하면서 긴급 시 제동을 걸수있는 브레이크를 구비하지 못한 셈이다. 이는 UR 협상에서 최초로 서비스시장 개방안을 마련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추가적인 서비스시장 개방이 이루어지지 못한 핵심적 이유 중 하나이다. 일단 개방안에 합의하는 경우 예상치 못한 국내시장의 피해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서비스 수입을 제한할 수단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일부 선진국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WTO 회원국들은 서비스시장 개방에 상당히 보수적이고 신중한 입장을 고수하는 것이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WTO 출범 직후부터 정책 차원에서는 서비스 산업의 경쟁력 제고가 중요한 정책과제로 강조되면서 서비스시장 개방이 강조 되었으나, 실제 통상협상에서 서비스시장을 개방한 경우는 극히 제한적이다. 최근 FTA 협상에서 서비스부문이 예외 없이 포함됨에도 불구하고 서비스 세이 프가드조치가 결여되어 있어 사실 서비스시장에 대한 의미있는 개방 합의는 FTA 차원에서도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따라서 WTO 체제에서 서비스시장 개방에 대한 논의를 진전시키기 위해서는 조속히 세이프가드조치에 대한 합의가 도출되어야 한다. GATS 제10.1조에서는 WTO 출범 이후 3년 이내에 서비스 세이프가드조치에 대한 합의를 도출해 시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2018년 현재까지도 WTO 회원국들은 아무런 가시적인 결과를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다.

GATS는 GATT와는 다르게 현재 아무런 무역구제조치를 규정하지 않고 있 다. 제15조에는 보조금 규정이 있으나 보조정책의 시장왜곡효과 가능성에 대 해 언급하며 상계조치를 포함하여 적절한 규범을 조속히 마련하도록 권고하고 있을 뿐이다. 이는 농업협정에서 비록 보조금협정과는 차별되지만 나름 농업보 조금의 구체적인 규범을 제시하고 있는 것과 대비된다. 서비스산업의 경우 세 부 산업부문으로 들어가면 근본적으로 상이한 구조와 형태의 산업들이 섞여 있 어 일괄적으로 보조금 규범을 제시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다. 또한 서비스교역 은 상품교역과는 다르게 4가지 교역방식을 포괄하고 있어 상계조치의 적용가 능성이 상당히 제한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비스의 보조금 규범에 대한 합의가 필요한 것은 분명하다. 더욱이 GATS에 반덤핑조치에 관한 언급이 일 체 없는 점도 주목할 부분이다. 상품교역에서 저가수출에 대한 반덤핑조치는 서비스교역 차원에서 적용되기 어렵지만. 여전히 정상가격 이하의 서비스 수출 로 교역 상대국에게 산업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개연성은 크다. 이러한 문제를 무역구제조치 차원에서 다루어야 할 것인지 아니면 경쟁정책 차원에서 다루어 야 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조만가 WTO에서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서비 스교역 모드 3에 의해 불가피하게 투자의제가 WTO에서 논의되는 것과 유사 한 방식으로 향후 서비스 무역구제 논의 차원에서 경쟁의제가 WTO로 도입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나) 서비스산업 범위의 구조적 한계

GATS에서 포괄하는 서비스산업에는 본질적으로 서비스교역 모드가 다른 산업부문과 함께 포함되어 있다. 예를 들면 모드 3의 상업적 주재 형태로 주로 교역이 이루어지는 금융서비스와 모드 2의 해외소비 형태가 주를 이루는 관광서비스가 같은 규범 체계로 다루어진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외국의 보험, 증권, 은행 등 금융서비스 공급을 허용하는 경우 금융건전성 규제와 금융 관련 신용정보관리 일환으로 현지 주재를 요건으로 하는바, 모드 3의 상업적 주재 — 즉투자 — 에 대한 요건이 핵심 사안이 된다. 반면 관광서비스의 경우 대부분이국내 수요자가 해외관광지로 여행을 가는 해외소비이므로 정부가 별다른 규제를 부과하기가 어렵다. 따라서 대다수 WTO 회원국의 서비스 양허표에 관광서비스 개방에 대한 제한사항이 없다. 이처럼 구조적으로 다른 산업부문이 혼재되어 있는바, GATS 협정하의 무역구제조치 또는 보조금 규범 등 산업별 특성이 고려되어야 하는 구체적인 사안들에 대해서는 합의가 도출되기 어려운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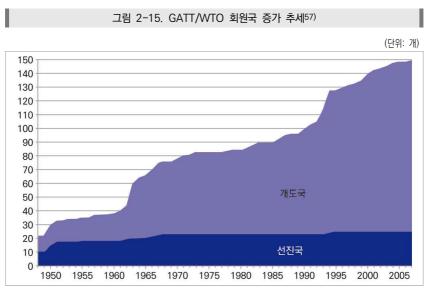
현재 상품교역을 다루는 GATT 체제는 사실상 공산품(즉 비농산물)과 농산물 시장으로 구분되어 있다. 보조금 규범도 따로 규정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DDA 협상도 이러한 구분하에 진행된다. 이는 향후 GATS 규범을 보다 정교하게 발전시키기 위해서 사업구조나 교역구조 또는 성격이 유사한 산업부문을 구분하여 다루어야 할 필요성을 제기한다. 현재까지는 금융서비스와 통신서비스만 별도의 구체화된 규범이 마련되어 있다. 금융서비스의 경우 최근의 FTA에서는 세이프가드조치 성격의 무역제한조치들이 포함되기도 한다.55) GATS 규범 발전을 위한 논의에서 이러한 특성화된 규범들이 어떠한 서비스산업군에 확대 적용될 수 있을지 많은 협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⁵⁵⁾ 예를 들어 한 · 미 FTA 제13.10조와 TPP 제11.11조가 이에 해당한다.

4) 개도국 우대의 한계와 문제점

가) 개도국 참여 확대의 명암

개도국의 가입은 GATT에서 개발 문제가 본격적으로 다루어지게 된 케네디라운드협상 이후 대폭 증가한 후, WTO가 설립된 1995년을 기점으로 다시 급격히 증가한다.56)



자료: WTO(2007), p. 289.

⁵⁶⁾ GATT/WTO 회원국이 반드시 증가한 것만은 아닌데, 레바논은 1949년, 중화민국(Republic of China)은 1950년, 시리아는 1951년 GATT로부터 공식 탈퇴했다. 세 국가는 여전히 GATT 서문에 최초 GATT 창립국으로 명시되어 있다. 이후 중국(People's Republic of China)은 2001년 12월 11일자로, 대만은 2002년 1월 1일자로 WTO 회원국 지위를 얻었다. 그러나 대만의 경우 중국의 반대 로 Taiwan이나 Republic of China라는 국호를 사용하지 못하고 Separate Customs Territory of Taiwan, Penghu, Kinmen and Matsu라는 명칭으로 가입했는데, 공식 회의에서는 통상적으로 Chinese Taipei로 호칭된다. Chinese Taipei 가입 관련 내용은 가입의정서에 기술되어 있으며, WTO(2001a)을 참고하기 바란다. 한편 레바논과 시리아는 현재 WTO 가입협상을 진행 중이다.

⁵⁷⁾ WTO(2007), p. 289.

WTO 체제에서 개도국 가입의 특징은 구 공산권 국가들이 대거 가입한 점이다. 36개 신규 가입국 중 11개국은 구 소련연방에서 독립한 국가들이며 가입시점에서 공산국가가 아닌 약 15개 국가들도 그 이전 상당 기간 공산권 경제체제를 운영하던 아프가니스탄과 예멘 등을 포함한다. 더욱이 냉전체제에서 공산권을 대표하며 서구 시장경제권과 경쟁을 주도하던 러시아와 중국이 가입하면서 WTO 회원국 간의 경제적 이질성이 한층 확대되었다.

이러한 상황은 WTO 체제에 두 가지 차원의 문제를 야기한다. 우선 경제적으로 발전수준이 낮은 개도국들의 참여가 급증하면서 체제 운용과 관련하여 개발 문제의 정치적 중요성이 커졌다. 극명한 사례가 WTO 출범 이후 최초로 합의된 다자무역협상의 명칭이 도하 '개발어젠더(Development Agenda)'로 명명된 점이다. 그러나 회원국의 다수가 개도국으로 분류되는 상황에서 개도국 특혜대우(S&DT: Special and Differential Treatments)는 사실 일부의 규범이행역 량이 미진한 개도국에게만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제한적인 혜택이 아니라 거의 대다수 회원국들에게 규범이행의무를 유예하는 체제상 심각한 허점(loophole) 이 될 소지가 있다.

게다가 개도국 구분도 명확한 기준이 없어 개도국 특별대우의 수혜국에 대해 심각한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일례로 개별 국가의 국내가격과 이자율 등 상대 비용을 감안한 구매력 기준 국내충생산 규모는 현재 중국이 홍콩과 마카오를 제외하고도 EU나 미국보다 크다. 58) 또한 인도, 러시아, 인도네시아, 브라질도 세계 10대 경제권에 포함된다. 따라서 국제통상규범 차원에서 개도국 특별대우를 어느 국가에게 어떠한 형태로 허용할 것인지의 문제는 OECD 개발원조 차원에서 어떠한 국가를 지원하는지와는 차원이 다른 문제가 되고 있다.

더욱이 구 공산권 국가들의 가입으로 촉발된 비시장경제에 대한 무역구제조 치나 보조금규범 적용 문제는 경제체제와 통상규범에 관한 본질적인 논란을 초 래하였다. 특히 중국의 수출과 경제 규모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막대한 정부

⁵⁸⁾ IMF, World Economic Outlook Database(검색일: 2018. 8. 2).

지원에 기초한 산업육성정책이 괄목할 만한 성과를 이루면서 WTO 규범의 공 정성과 효과에 대한 회의가 확산되기 시작했다.

중국의 경우 대부분의 주요 산업부문은 국영기업과 국영은행을 통해 관리되는 상황에서 관세인하와 보조금 규제를 통한 시장경쟁조건 확보가 구조적으로 어렵다는 인식이 점차 강해진 것이다. 냉전시대에 운영된 GATT 체제에서는 사실상 공산권 국가들이 거의 배제된 상황이라 일부 예외적인 상황에서만 경제 체제의 이질성에 따른 문제가 제기되었다. 그러나 현 WTO 체제에서는 세계 수출의 핵심으로 중국이 부상하면서 경제체제에 따른 국제통상규범의 적용 가능성과 한계에 관한 근본적인 문제가 핵심 쟁점으로 주목받고 있다. 또한 이 문제가 현재 미국과 중국 간 무역마찰의 근간인바, WTO 규범의 전면적인 재편 없이는 당분간 양국간 무역충돌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측면에서 2018년 5월 31일 미국 USTR, EU 무역집행위원, 일본 경제산업성 장관이 공동으로 사실상 중국을 겨냥하여 비시장경제의 보조금정책과 국영기업을 다루는 새로운 통상규범 마련에 합의한 점은 주목할 부분이다.59)

나. 통상화경 변화에 대한 WTO의 대응 미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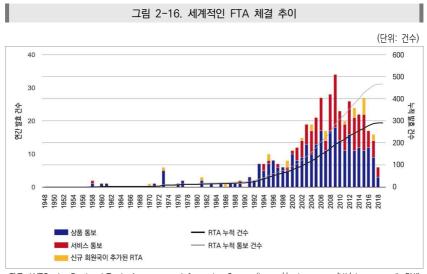
1) 자유·지역무역협정의 확산과 WTO의 대응 미흡

2000년대 들어 세계적으로 급속히 확산된 자유무역/지역무역협정의 이면에는 기존의 WTO 다자무역체제가 새로운 무역환경에 효과적으로 적절히 대응하지 못했다는 문제점이 존재한다. 2000년대 이후 글로벌 통상환경에 새롭게 등장한 이슈 중 하나는 글로벌 가치사슬(GVC: Global Value Chain)이다.

⁵⁹⁾ European Commission(2018), "Joint Statement on Trilateral Meeting of the Trade Ministers of the United States, Japan, and the European Union," http://trade.ec.europa.eu/doclib/docs/2018/may/tradoc_156906.pdf(검색일: 2018. 8. 2).

생산의 국제분업체계, 국제적인 생산네트워크로 인해 기존과 달리 'made in world'가 보편화되면서 다자 차원의 공통 규범 및 관세인하가 절실히 요구되었다. 그러나 WTO 차원에서 이를 해결하는 핵심 역할을 하는 DDA는 선진국과 개도국의 대립으로 진전이 없었다. 결국 WTO 회원국들은 언제 합의가 될지도 모르는 다자협상에 기대기보다 GVC상 국가들과 양자 또는 복수국 간 FTA를 체결하게 되었다.

2018년 11월 기준 WTO에 통보·발효중 FTA는 약 450개 이상으로 WTO 회원국들의 시장개방은 DDA와 같은 다자무역협상이 아니라 양자 또는 다자 FTA 협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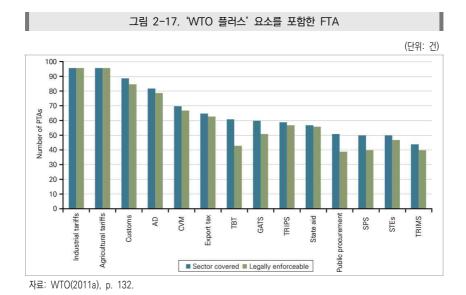


자료: WTO, the Regional Trade Agreements Information System(https://rtais.wto.org/UI/charts.aspx#, 검색 일: 2018. 10. 17).

특히 다자무역협상의 경우 타결이 된다고 하더라도 기존 관세를 대략 1/3~1/2 정도 감축하는 수준에 그치는 데 반해 FTA의 경우 기본적으로 관세 철폐를 목표로 무관세 합의를 도출하고 있어 시장개방의 폭도 기존 다자무역협

상보다 크다. 게다가 대부분의 국가들이 WTO 차원에서는 논의하기 꺼려하는 농산물을 포함해 서비스, 규제 등 포괄적인 시장개방을 FTA 협상에서 논의하고 있어 그 내용을 보면 사실상의 소규모 다자협상과 큰 차이가 없다. 이에 따라 WTO 회원국들은 FTA를 더욱 활발히 추진하게 되었으며, 이것이 FTA의 급속한 확대로 나타났다고 판단된다.60)

문제는 최근 FTA들이 관세인하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제품표준 및 적합성 심사, 위생검역기준, 무역구제, 지재권보호 및 투자규범 등 다양한 내용을 다루면서 그동안 WTO 체제에서 겪어보지 못한 규범의 이질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다. 무역규범의 경우 개별 FTA에서 각기 다양한 형태로 특성화된 조항들이나 규범들이 도입되면 국별 교역구조에 따라 제도적 차별이나 규범의 파편화 현상이 초래될 수 있다. 예를 들면 최근에 FTA를 통해 DDA에서 논의된 내용을 도입하고자 하는 시도가 나타나고 있는데 소위 'WTO 플러스(+)'



60) 최근에는 양자 FTA가 갖는 모순으로 인해 양자 FTA가 줄고 다자 또는 메가 FTA를 추진하려는 경향이 나타난다. 방식으로 FTA를 타결하려는 움직임이 그것이다. [그림 2-17]은 최근의 FTA가 추진하는 WTO 플러스 요소를 보여주고 있다.

FTA에서 WTO와 다른 규범을 도입함으로써 규범 다변화 또는 이질화 현상 이 가속화될 수 있다. 일례로 한 · EU FTA는 제3.14조에서 최소부과원칙을 규 정하는 데 반해. 한 · 미 FTA에서는 그러한 규정이 없다. 즉 한 · EU FTA에서 는 반덤핑 또는 상계관세의 크기가 마진 미만이라고 해도 그것으로 국내산업에 대한 피해 제거가 충분할 경우 관세는 마진 미만이 되어야 한다. 이처럼 FTA를 통해 최소부과원칙을 제시한 경우 대개 국내에서 이미 최소부과원칙을 사용하 는 국가들이 FTA 협정문에 이를 명시한 데 지나지 않아 국내법과의 충돌은 없 다. 그러나 원론적으로는 우리 정부가 미국산과 EU산 철강제품에 대해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는 경우 EU에 대해서는 최소부과원칙을 적용하는 반면 미국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음으로써 반덤핑관세에 큰 차이를 둘 수 있는 것이다. 또 는 위생 및 식품검역조치와 관련하여 지역주의워칙을 적용하는 사안도 예를 들 어 특정 국가에 대해서만 FTA에 합의하는 경우 해당 국가에서 위해한 SPS 위 험요인이 발생하면 여타 지역과 구분하여 위험요인이 없는 지역에서 생산한 상 품의 수입을 허용하는 반면 그러한 합의를 하지 않은 국가에 대해서는 전면적으 로 수입조치를 부과할 수 있게 된다.61) 이러한 상황이 야기되는 경우 FTA가 단 지 관세인하뿐만 아니라 무역규범의 차별을 통해 무역전환을 초래하게 되는바. 세계무역체제 차원에서는 무역차별의 문제가 더욱 심각해지게 된다. 이와 같은 문제에 대하여 WTO가 명확한 기준을 제시한 바도 없고 대다수 WTO 회원국 들이 관행적으로 그러한 요소를 자국의 FTA에 도입하고 있기 때문에 이 같은 규범의 다변화, WTO와의 이질화 현상이 확산될 전망이다.62)

WTO 회원국들은 지난 2006년 FTA에 대한 투명성 제고 차원에서 통보기 능을 강화하는 절차에 합의했으나,63) 여전히 그러한 통보절차를 통해 FTA의

⁶¹⁾ SPS협정상의 지역주의 개념과 적용에 대해서는 Saika(2017) 참고.

⁶²⁾ 규범 다변화 현상에 대한 보다 엄밀한 법적 분석은 Ahn(2008) 참고.

⁶³⁾ WTO(2006).

WTO 합치성을 제고하기에는 미진한 점이 많다. 앞으로도 FTA와 WTO 간의 조율 문제는 국제통상체제의 핵심 과제로 대두될 전망이다.

2) 글로벌 무역의 디지털화와 WTO의 대응 미흡

세계 무역은 빠르게 디지털화되고 있다. 세계 컴퓨터 보급률은 2010년 약 35%에서 2018년 50% 이상으로 증가하였다. 세계 인터넷 사용률도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 2018년 말 기준으로 세계 인터넷 사용자 수는 39억 명에 달해 전세계 인구의 절반 이상이(약 51.2%) 인터넷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 선진국의 경우 총 인구대비 인터넷 사용자수 비율은 2005년 51.3%에서 2018년 80.9%로 증가했으며, 개도국도 2005년 7.7%에서 2018년 45.3%으로 대폭 증가해 인터넷 사용에 관한 한 디지털격차도 점차 줄어들고 있다.64)

인터넷과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글로벌 무역이 급속도로 디지털화되고 있다. 전자상거래 소매판매금액은 2014년 1.3조 달러에서 2021년에는 4.9조 달러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특히 최종 소비재의 경우 2040년에 총구매의 95%가 온라인 쇼핑을 통해 이루어질 것으로 추정되고 있기도 하다.65)소위 밀레니엄 및 X-세대가 온라인쇼핑의 최대 이용자로서 밀레니엄 세대의 67% X-세대의 56%가 온라인쇼핑을 이용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66)

이와 같이 인터넷 플랫폼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 나타나자 이를 둘러싼 국가간 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이에 대한 다자차원의 신무역규범 수립이 절실히 요청되었다. WTO도 이의 중요성을 인식, 전자상거래 논의를 출범시켰으나 관심 부족과 함께 선진국과 개도국의 이해대립 등으로 실질적 진전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에 디지털상거래에 대한 무역규범 수립은 WTO를

⁶⁴⁾ ITU releases 2018 global and regional ICT estimates, https://www.itu.int/en/mediacentre/Pages/2018-PR40.aspx(검색일: 2018. 12. 12).

⁶⁵⁾ https://www.shopify.com/enterprise/global-ecommerce-statistics(검색일: 2019. 3. 1).

⁶⁶⁾ https://kinsta.com/blog/ecommerce-statistics/(검색일: 2019. 5. 1).

지나 양자 FTA나 Mega FTA, 또는 복수국간협상에서 집중적으로 논의되어 왔으며, 결국 지역무역협정 등에서 다양한 형태의 전자상거래 또는 디지털상거래에 대한 무역규범이 만들어졌다.⁶⁷⁾

디지털상거래는 기업의 거래비용을 대폭 절감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기업과 국내외 소비자 간 거리와 시간의 제약도 감소시켜 기존 시장의 확대는 물론 4차 산업혁명과 맞물려 새로운 시장을 창출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WTO 차원에서도 조속히 관련 논의를 제도적으로 체계화시켜 다자규범 정립에 노력을 배가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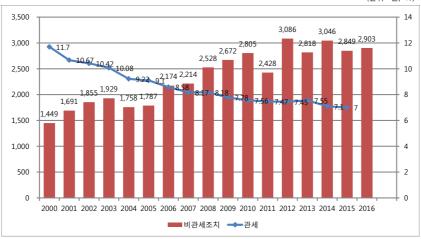
3) 신보호주의 및 반세계화에 대한 대응 미흡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 이후 세계경제의 성장 저조가 지속됨에 따라 세계 각국은 자국 내 산업 보호를 위하여 보호주의 성향의 정책을 펼쳐왔다. 그러나 WTO는 이와 같은 흐름에 대해서 유효한 처방을 하지 못하였다. WTO 회원국들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보호주의의 배격과 다자무역체제 강화 등을 강조하였지만 결국 말뿐인 선언에 그쳤고, 금융위기 이후 지속적으로 늘어난 비관세조치는 2008년 위기 이전 수준으로 낮아지지 않고 있다.

신보호주의 및 비관세조치의 확산에 대해서는 WTO하에서 DDA와 같은 다자무역협상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왔다. 그러나 DDA가 교착 상태에 빠지면서이 부분에 대한 진전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특히 공산품 시장개방 및 비관세조치 축소는 수년째 논의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⁶⁷⁾ 대표적으로 CPTPP나 USMCA 등에서 디지털상거래에 대한 장을 들 수 있다. 최근 WTO 차원에서도 디지털무역 복수국간협상을 재출범시켜 신규무역규범 논의를 활성화시키고 있다.

(단위: 건, %)



주: 통계에 반영된 비관세조치는 총 7가지(SPS, TBT, 수량 제한, 반덤핑, 상계관세, 세이프가드, 특별세이프가드)로 2000년대 이후 조치 건수가 미미한 관세할당과 수출보조금은 제외. 자료: 조문희 외(2017, p. 22, 재인용).

아울러 영국의 브렉시트 결정 이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반무역자유화 움직임에 WTO가 효과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 그동안 추구해온 무역자유화 정책도 최근 반무역자유화 정서 확산의 한 원인이다. 지금까지 추구해온 무역자유화는 주로 상품교역에서 국경장벽, 특히 관세철폐에 중점을 두었다. 그러나 실질적인 시장접근은 국경에서의 장벽 이외에 통관절차나 다양한 국내 규제 등 비관세장벽이 더 큰 영향을 준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경장벽의 철폐는 중소기업보다 상대적으로 대기업에게 더 유리한 환경을 만들어주었다. 대기업은 중소기업에 비해 통관절차나 국내 규제 등 다양한 비관세장벽을 넘어 국내 시장으로 진출하는 데 있어 상대적으로 우수한 인적 · 물적 자원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무역자유화로 인해 국경장벽인 관세는 철폐되었지만 복잡한 통관절차와 다양한 국내 규제 등으로 중소기업은 시장진입에 어려움을 겪었다. 반면 대기업은 보유한 인적 · 물적자원과 인간관계를 이용해 비관세장벽을 넘어 국

내시장에 진입할 수 있었다. 결국 무역자유화로 인한 이익은 상대적으로 대기 업에 집중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이러한 무역자유화 혜택의 불평등 분배구조와 이민정책 등이 원인이 되어 브렉시트나 트럼프 대통령의 당선 등 극우파 정권이 등장했다고 해석할 수 있 으며, 반무역자유화 정서 또한 이러한 무역자유화가 초래한 양극화(소득 격차 확대)나 불평등의 심화와 무관하지 않다.

한편 반무역자유화 정서 및 보호주의의 확산은 DDA 협상 부진과도 밀접히 연계되어 있다. DDA 협상에 실질적 진전이 없고 그 기대감이 떨어지면서 경제 성장 및 소득증대의 동력으로서 무역자유화에 대한 인식이 낮아졌다. 그리고 이것이 다시 이해관계가 맞는 국가들끼리의 양자나 복수국간 FTA, 또는 메가 FTA 등으로 구체화되면서 무역자유화나 혜택이 WTO 다자 차원에서 공유되지 않고 특정 그룹에만 제한적으로 적용되는 바람에 다시 WTO 체제의 신뢰가 손상되는 악순환으로 나타난 것이다.

제3장 **《**

WTO 체제 개혁에 대한 국제 논의와 정책 시사점

- 1. 미국의 WTO 체제 개혁에 대한 주장
- 2. EU의 WTO 체제 개혁에 대한 제안
- 3. 캐나다의 WTO 체제 개혁에 대한 제안
- 4. 향후 전망과 정책 시사점

WTO 체제에 대한 개혁 논의는 2003년 12월 멕시코 칸쿤에서 개최된 제5차 WTO 각료회의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인도와 브라질이 개도국의 대표주자로 부상하면서 기존의 일본과 캐나다를 제치고 미국, EU와 함께 'New Quad'를 형성하였다. 이로써 WTO 다자무역협상에서 인도와 브라질 등 개도국이 미국과 EU 같은 선진국과 어깨를 나란히 하면서 개도국의 힘을 과시할 수있게 되었다. 그때부터 WTO 내 모든 이슈에 대해서 선진국과 개도국 간 대립구조가 형성되었다. 일부에서는 DDA 출범 자체가 문제였다는 시각도 있다. 상업적 이익에 기초한 종전까지의 다자무역협상이 '개발'이라는 정치적 고려요인을 도입하면서 '개발어젠더'로 바뀌는 순간 선진국과 개도국 간 대립은 예정되어 있었다는 주장이다. 이에 따라 DDA는 대부분의 의제에서 선진국과 개도국이 대립하였으며, 지금까지 이렇다 할 만한 진전을 보지 못하면서 WTO 다자무역체제에 대한 신뢰가 계속해서 손상되어왔다.

이러한 흐름에 최근 변화가 일고 있다. 미국, EU, 일본, 캐나다 등 선진국들이 구체적인 개혁안을 제시하면서 WTO 체제 개혁 논의를 주도하고 있다. 특히 선진국들의 WTO 체제 개혁이 실상 중국의 보조정책 및 불공정 무역행위등을 겨냥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의 입장에서도 WTO 개혁 논의에 신중한 대응이 요구된다.

본 장에서는 최근 선진국이 제안한 WTO의 체제 개혁방안을 비교·검토해 그 의미를 파악하고, 향후 협상방향을 전망해 보았다. 그리고 그에 기초하여 관련 WTO 협상에서 우리나라가 어떠한 입장을 취해야 하는지를 모색하였다. 아울러 선진국들이 주장하는 개혁방안이 내포하고 있는 의미를 파악해 향후 우리나라가 추구해야 할 다자통상정책의 방향 정립에 주는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1. 미국의 WTO 체제 개혁에 대한 주장

미국은 자국의 안보와 번영을 촉진하는 통상정책 수립을 위해 '2018 Trade Policy Agenda'68)를 통해 다음의 5가지 정책 우선순위를 발표한 바 있다. 해당 우선순위는 ① 국가안보정책을 지원하는 통상정책의 채택 ② 미국경제의 강화 ③ 미국 국민 모두를 위한 보다 나은 통상거래(trade deal) 협상 ④ 기존 통상협상에서 미국법과 미국의 권리 강화 ⑤ 다자무역체제 개혁 등이다.

이를 2017년의 Trade Agenda와 비교하면 국가안보(national security)와 다자체제 개편이 새롭게 등장하여 강조되고 있으며, 미국 법률의 공격적 적용에 관한 내용이 대폭 늘어난 것이 특징이다. 2017 Trade Policy Agenda⁶⁹⁾에서 국가안보는 자유롭고 공정한 무역(free and fair trade) 외에 부가적인무역정책의 목표 10개 중 9번째였다. 그러나 2018년에는 가장 중요한 정책 기조로 제일 앞에 제시되어 있다. 또한 2017 Trade Policy Agenda에서도 WTO 다자체제에 대한 비판은 있었지만 그것은 미국의 국내법 적용 등을 통해문제를 해결한다는 의미가 강했고, 양자무역협정 추구나 다자협력은 크게 언급되지 않았다. 반면 2018년 보고서에서는 WTO 체제 안에서 활동하되, 다자무역체제를 개혁(reform)하겠다는 목표를 분명히 밝히고 있다. 즉 기존 GATT/WTO 체제를 존중하지만 미국의 시각에서 볼 때 불합리한 부분은 개선하고 다자협의를 통해 이룰 수 있는 부분은 이를 적극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다. WTO 다자무역체제에 대한 미국의 불만은 트럼프 행정부 이전에도 있었으며, 트럼프 행정부 출범으로 그러한 불만이 더욱 표면화된 것으로 볼 수 있다.

⁶⁸⁾ USTR(2018), 2018 Trade Policy Agenda and 2017 Annual Report.

⁶⁹⁾ USTR(2017), 2017 Trade Policy Agenda and 2016 Annual Report.

가. 투명성 제고 및 통보 강화

미국 USTR의 라이트하이저(Robert Lighthizer) 대표는 2017년 12월 제 11차 WTO 각료회의에서 과잉 생산된 중국산 제품이 미국 등 다른 WTO 회원 국들의 경제에 영향력을 미치는 현상과 국영기업에 대한 보조금 지급 등 중국의 불공정한 무역관행을 WTO가 제대로 바로잡지 못하고 있는 데 대해 강한 불만을 표시하였다.70) 이는 같은 해 10월 미국이 제안한 '투명성 제고 및 통보 강화'에 대한 미국의 의지를 강조한 것으로 미국은 WTO 통보의무가 DDA 실질적 진전의 전제라고 인식하고 통보의무 준수를 강력히 요청하였다.

미국은 동 제안서에서 WTO 협정문상 통보의무를 일일이 열거하고 이러한 의무를 준수하지 않는 회원국에 대해서 징벌적인 조치(punitive action)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징벌적 조치로는 해당 국가의 대표가 WTO 내 각종 위원회에서 의장에 선출되는 것을 배제, WTO 회원국 웹사이트 접근 금지, WTO 내의 훈련 및 기술 지원 거부, 역통보71) 등이 제시되었다. 특히 2년 연속 통보의무를 준수하지 않는 회원국에게 WTO 회원국의 자격을 정지시키는 벌칙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미국의 이러한 제안은 각료회의 직전에 제출되어 각료회의에서 실질적 논의가 이루어지기에는 시간이 부족했으며, 특히 통보의무 미준수에 대한 벌칙부과에 부정적 입장이었던 개도국들의 반대로 이에 대한 논의는 다른 의제에 묻혀버렸다. 이후 미국은 WTO 체제 개혁에 대하여 그 필요성만을 언급하다가 지난 11월 1일 EU, 일본, 아르헨티나, 코스타리카와 공동으로 기존 제안을 보완하는 새로운 안을 제시하였다. 새로운 제안은 기존 제안과 대부분 동일하며, 추가적인 벌칙으로 통보 미준수 회원국에게 WTO 분담금 증액을 제시하

^{70) &}quot;EU and Japan Join U.S. in Criticizing China at WTO Summit"(2017. 12. 12), 온라인 자료(검색일: 2018. 8. 20).

⁷¹⁾ 역통보란 A 회원국이 WTO에 통보할 내용을 B 회원국이 독자적으로 또는 다른 회원국과 연합해 조사한 뒤 이를 WTO에 통보하는 것을 의미한다.

고 있다. 아울러 통보능력이 떨어지는 회원국의 사정을 감안하여 벌칙 적용의 예외를 허용하고 있다.

표 3-1. 미국의 제안: 투명성 제고 및 통보 강화

	미국 제안(2017. 10)	미국 등 5개국 공동제안(2018. 11)
대상	· WTO 협정상 모든 통보	ㆍ 좌동
역통보	· 권장	· 역통보 장려
미통보 시 벌칙	· WTO 내 기구 의장 취임 불가 · 매년 사무총장과 협의 · 상품무역위에 통보 · 일반이사회에서 논의 · 회원국 자격 일시 정지	 WTO 분담금 증액 WTO 내 기구 의장 취임 불가 회원국 자격 정지 단 통보능력 미비 회원국에게 예외 인정 일반이사회에서 논의
기타	· 통보 인센티브 없음.	· TPRM 역할 강화

자료: 저자 작성.

WTO 다자체제에 대해 미국이 가진 불만의 중심에는 WTO가 중국의 불공정한 산업정책을 효과적으로 제어하지 못했다는 인식이 존재한다. 미국은 중국이 2001년 WTO에 가입한 이래 다자무역체제의 이익을 최대한 누리고 있는 반면, 현 WTO 체제는 중국의 다양한 불공정 무역행위를 효과적으로 규제하지 못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72) 2018 Trade Policy Agenda 보고서는 중국의경제체제가 WTO 가입 이후 거의 변화되지 않았으며, 중국은 여전히 시장에 대한 정부 개입이 심하고 국내산업보호라는 명분 아래 가격과 비용을 왜곡시키고 있으며, 중국의 이러한 정책은 국제무역체제에 심각한 가격왜곡과 생산과잉을 초래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따라서 미국은 중국이 시장메커니즘에 대한 정부간업을 줄이고, 시장성과를 왜곡하고 WTO 원칙을 약화시키는 행위를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⁷²⁾ 박성훈, 한홍렬, 송유철, 강문성, 송백훈(2017), p. 158 인용.

- □ 중국은 자국의 수출기업과 생산자에 대한 미국의 반덤핑 조사에서 미국이 덤핑 판정 또는 덤핑 마진 산정 시 중국의 국내가격을 사용하지 않고 비시장가격(또는 비용)을 사용하는 문제에 이의 를 제기
- o 중국은 2001년 WTO 가입의정서에 따라 일정 기간 이후 자동적으로 시장경제지위를 부여받기 로 한 조항을 근거로 이같이 주장
- o 그러나 미국은 이 같은 중국의 주장은 잘못된 해석으로 중국의 가입의정서 일부 조항(Section 15(a)(ii))이 만료되는 것이지 WTO 회원국이 비시장가격(또는 비용)을 채택하지 않을 수 있는 권한이 소멸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
 - GATT 1994에 의하면 WTO 회원국은 시장경제 환경하에서 결정된 것이 아닌 가격이나 비용을 거부할 수 있는 재량권이 있음
 - 이러한 재량권은 6.1조와 6.2조에 명시되어 있음
 - 중국의 WTO 가입의정서 15조에도 국내가격(domestic price)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시장경제' 환경 성립이 중요, 그렇지 않은 경우 국내가격(비용) 불인정
 - 과거 폴란드, 루마니아, 헝가리 등 동유럽 국가들이 시장경제로 체제전환을 시작하여 시장경 제지위를 인정받았을 때에도 이러한 과정을 거쳤음
- o 실제로 WTO 회원국은 일반적으로 GATT와 WTO 규정하에서 시장경제가 성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결정된 가격을 인정하지 않음

자료: WTO(2016b), "United States - Measures related to price Comparison methodologies," WT/DS515/1; USTR(2018)을 중심으로 저자 정리.

나. WTO 분쟁해결제도 개선

2018 Trade Agenda에서 드러난 미국의 WTO 관련 또 다른 불만은 회원 국간 무역분쟁을 해결하는 분쟁해결메커니즘(DSM: Dispute Settlement Mechanism)이다. 미국은 패널이나 상소기구(AB: Appellate Body)가 WTO 협정에 규정된 회원국의 권리와 의무를(미국의 입장에서 볼 때) 제약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미국이 분쟁해결에 제소되었을 때 패소 비중이 높은73) 것도 미국의 불만 중 하나인데, 미국은 WTO 회원국들이 협상에서 얻지 못한 것을 분쟁해결제도를 통해 얻으려 한다고 비판하고 있다. 이러한 불만으로 미국은

⁷³⁾ 고준성 외(2017, p. 127)에 따르면 미국이 WTO 분쟁해결기구에 제소되었을 때 미국이 패소하고 패 널 또는 상소기구의 결정을 이행하는 경우가 91.3%에 이른다.

현행 WTO 분쟁해결제도의 개혁을 요구하며, WTO 상소기구위원의 임명을 거부하고 있다.74)

미국이 현행 상소기구와 관련하여 불만을 가지고 있는 점은 다음의 다섯 고 지이다. 첫째, 상소기구가 규정에 명시된 90일의 상소심 심리기간을 무시해왔 다는 점이다. 미국은 2001년 이후 계속해서 분쟁해결양해(DSU) 제17.5조에 서 상소심 심리기간은 90일을 초과할 수 없다는 규정을 근거로 상소기구가 특 별한 설명 없이 규정된 상소심 심리기간 90일을 무시하는 것에 대해 우려를 제 기해왔다. 둘째, 상소기구위원 임기가 만료된 자의 상소심 관여에 대해 불만을 제기해왔다. 상소기구는 운영절차규칙(Working Procedures) 제15조를 근 거로 상소기구위원이 임기가 만료된 자의 심리 관여를 '승인'했는데, 미국은 이 에 대해 임기만료 상소위원의 심리 관여 여부 결정은 상소기구가 아닌 분쟁해 결기구(DSB: Dispute Settlement Body)에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셋째, 상 소기구가 분쟁해결에 필요하지 않은 쟁점에 대해 견해를 표명하고 있다는 점도 우려하고 있다. 미국은 상소기구 또는 패널이 분쟁해결과 관련이 없는 쟁점 또 는 분쟁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은 쟁점에 대해 입장을 표명하는 것에 우려를 나 타내고 있다. 특히 미국은 이러한 행위는 분쟁해결기구의 권고나 판정이 사안 의 만족스러운 해결 달성을 목표로 한다는 DSU 제3.4조 등과 배치된다고 주장 하고 있다. 미국은 분쟁해결제도의 목표는 입법이나 새로운 해석을 하는 것이 아니라 회원국 사이의 분쟁이 해결되도록 돕는 것이라고 보고 있다. 넷째. 상소 기구가 사실심리 및 한 국가의 국내법을 심사하고 있다는 점이다. 미국은 상소 기구가 패널의 사실관계 판단을 서로 다른 법적 기준에 근거하여 재검토하는 것에 불만이다. 미국은 DSU 제17.6조에서 "상소는 패널보고서에서 다루어진 법률 문제 및 패널이 행한 법률 해석에만 국한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 하고 상소기구가 패널의 사실관계 판단 또는 분쟁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는 사실에 기초하지 않은 채 새로운 결론에 도달하는 것에 우려를 표명해왔다.

⁷⁴⁾ 이에 대해서는 서진교, 박지현, 김민성(2018)을 참고.

마지막으로 미국은 선행 판정례가 판례로서 다루어져야 한다는 상소기구 주장에 반대하고 있다. 상소기구는 분쟁해결양해(DSU: Understanding on Rules and Procedures Governing the Settlement of Disputes)상의 관련 근거도 없이 상소기구 판정이 사실상(effectively) 판례(precedents)로서 기능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패널도 합리적 이유 없이 이러한 상소기구의 입장을 따르고 있음을 우려하고 있다. 특히 미국은 의무에 관한 구속력 있는 해석을 채택할권한은 WTO 회원국들로 구성된 각료이사회와 일반이사회에 있다고 보고 상소기구와 패널의 이러한 태도는 WTO 설립협정 제9조 2항에 위반이라고 주장해왔다.

다. 신 무역 이슈

미국은 21세기 글로벌 무역환경의 변화를 감안한 신 무역 이슈에 대해서 아직은 구체적인 입장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다만 전자상거래 관련 협상에는 꾸준히 참여하고 이를 주도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미국은 디지털무역이 미국경제의 모든 분야에 막대한 가치를 제공하고 있으며, 미국기업들은 외국 정부가 디지털무역에 제약을 가할 경우 중대한 도전에 직면한다고 보고 있다.

이에 미국은 2017년 12월 이후 70개국의 WTO 회원국과 연합하여 전자상 거래 및 디지털 경제 관련 이슈의 협상 가능성을 포함한 예비작업을 시작하였 다. 관련하여 트럼프 행정부는 이러한 논의를 디지털무역 규제를 다루는, 상업 적으로 의미 있는 새로운 규범 개발의 포럼으로 활용하고, WTO 내에서 디지 털 무역규범 정립을 위해 WTO 회원국과 협력해나갈 것임을 밝히고 있다.

라. 기존 DDA 이슈

1) 협상방식

미국은 WTO의 협상방식으로 지난 2015년부터 복수국간협상을 지지해왔다. 특히 WTO 전체 회원국이 참여하지 않더라도 마음이 맞는 국가끼리의 협상을 통해 일정한 성과를 도출해내고 이후 여건에 따라 합의 결과를 다자화하는 방안을 선호해왔다. 이에 따라 협상방식에 대하여 미국이 구체적인 제안을하지는 않았지만 뜻이 맞는 국가끼리의(like-minded countries) 협상을 통한분야별 접근(sectoral approach)을 추구하면서 복수국간협정(plurilateral agreements)을 추진할 것으로 전망된다.

2) 개도국 우대

미국은 DDA를 통하여 항상 중국의 개도국 우대에 반대 입장을 표명해왔다. 특히 WTO 규범이 미국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적용되는 반면 중국을 비롯한 거 대 개도국들에는 특혜적으로 적용되고 있다는 점에 불만을 나타냈다.

WTO에서 국가 구분은 최빈개도국과 개도국, 선진국 등 3개이다. '최빈개도 국(LDCs)'은 UN 기준을 차용하여 UN에서 최빈개도국으로 인정되면 WTO에서는 자동적으로 최빈개도국이 된다. 그러나 '개발도상국'을 지정하는 WTO의기준은 없다. 이에 따라 어떤 국가든 자국이 개도국이라고 스스로 자기선언 (self-declare)을 할 수 있다. 개도국이 되면 WTO 협정에 따라 개도국에 제공되는 개도국 우대조치뿐만 아니라 현재 또는 향후 협상에서 개도국에 부여되는 새로운 신축성을 부여받을 수 있다.

미국 등 선진국들은 브라질, 중국, 인도 및 남아프리카공화국과 같은 거대 국

가들이 세계경제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소득 국가들과 동일한 신축성(개도국 우대 등)을 부여받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새로운 무역규정이 제정되기 전에 개도국 우대 등과 같은 무역규정에 대한 예외 협상은 없어져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이에 미국은 WTO 규정의 완전한 이행이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기본 요소가 된다는 입장이며, 이때 개도국 우대 조항의 역할은 개별 사안에 따라 특정 WTO 회원국이 특정 WTO 협정에서 특정 약속을 완전히 이행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정도에 한해야 한다는 것이다.

3) 기타

가) 농업

미국은 기본적으로 지난 2013년 발리 각료회의를 계기로 DDA 협상이 종료 되었다고 보고 있다. 이에 농업협상이 다시 논의된다면 이는 기존의 DDA가 아 니라 WTO하 농업협상으로 기존 DDA와 달리 개발(development)에 대한 고 려가 없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트럼프 행정부는 현재 세계 농업이 직 면한 현실적인 국제무역 문제를 다루기 위해 WTO 회원국들이 농업협상을 다시 시작하고 활성화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단 이때의 농업협상은 DDA 협상이 아 니며, 아울리 협상 재개를 위해 각국이 의무적 통보(mandated notifications) 를 적시에 제공해줄 것을 요청하고 있기도 하다.

아울러 미국은 농산물에 대한 해외시장의 규제장벽에 대해서도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충분한 과학적 근거가 부족한 상대국의 규제는 안전한 방법과 기술을 사용하는 미국 농민들에게 불필요한 부담을 주고, 국제표준에도 부합하지 않아 불필요한(부당한) 장벽을 초래하고 있다는 것이 미국의 시각이다. 이에 제 11차 WTO 각료회의에서 미국은 16개 WTO 회원국과 연합하여 이러한 장벽이 생산, 무역, 식품안전 및 농산물에 상당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우려를

기술한 공동 각료성명(ministerial statement)⁷⁵⁾을 발표하였다.

아울러 식품 및 농산물 수출규제 장벽을 줄이기 위한 작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있는데, 농산물 생산과 무역을 저해하고 방해하는 농약(pesticide)관련 문제를 다루기 위해 공동 각료성명에 나온 권고사항7이 이행을 진전시킬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미국은 이러한 계획(initiative)은 공공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농약 사용과 관련된 위험을 평가, 관리 및 통보하는 위험분석의 중요한역할을 재확인하는 동시에 전 세계의 농민들이 농약 및 기술을 안전하게 사용하고 식품 및 농산물 무역을 촉진할 수 있도록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나) 수산보조금

WTO 회원국은 2001년 처음으로 유해 수산보조금을 규범화하는 작업을 시작하였다. 같은 해 세계수산무역은 약 570억 달러를 기록하였는데 당시 세계 어류의 약 15~18%가 과잉어획 상태에 있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2016년 기준 세계수산무역은 1,260억 달러로 세계 어획 능력은 2001년에 비해 약 50% 증가하였다. 식량농업기구(FAO)는 세계 어류의 약 31%가 현재 과잉어획된 상태에 있으며, 약 60%는 효율적인 관리 없이 과잉개발 위험에 처해 있다고 추정하고 있다. 한편 수산보조금은 어업자원의 지속 불가능한 남획(unsustainable exploitation)의 주요 요인으로 간주되고 있으며, 세계 수산보조금은 매년 200억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77)

⁷⁵⁾ WTO(2017b), "Trade in Food and Agricultural products joint statement of undersigned Ministers," WT/MIN(17)/52.

⁷⁶⁾ 공동 각료성명에 나온 권고사항은 아래와 같다.

①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 Alimentarius Commission)의 역량과 효율성을 높여 농약 최대산 류허용기준(MRLs)에 대한 국제적이고 위험을 근거로 한(risk-based) 기준 설정을 위해 협력.

② 국가 MRLs 설정 시 규제시스템의 투명성과 예측가능성 개선.

③ MRL 설정에 있어 국가, 지역 및 국제 수준에서 더 높은 조화(harmonization) 달성.

④ 특히 개도국에서 위험성이 낮은 대체 농약 및 소량사용 농작물(minor-use crops)을 위한 농약에 대한 점근을 확대할 수 있는 방법에 혐력.

⁷⁷⁾ USTR(2018), p. 32.

미국은 이러한 어업자원의 과잉어획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긴급조치가 필요하며, 과잉어획과 과잉능력을 유발하는 보조금 및 불법어획 활동을 지원하는 보조금에 대한 강력한 금지조치를 지지하고 있다. 아울러 수산보조 프로그램의 투명성 및 통보를 강화하는 한편 중국과 인도를 포함한 최대 수산물보조금 제공국, 생산국 및 수산물 수출국에게 특별대우나 면제를 허용하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2. EU의 WTO 체제 개혁에 대한 제안⁷⁸⁾

EU는 새로운 무역환경의 변화에 WTO가 적절하게 대응하고, 그 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현행 WTO 체제의 현대화(modernization)가 필요하며, 이를 추진하기 위한 방안으로 다음과 같은 WTO 체제 현대화에 대한 제안을 제출하였다. EU의 WTO의 현대화방안은 \triangle 규범 제정(rule making) \triangle 투명성 \triangle 분쟁해결 등으로 구분해볼 수 있다.

가. 투명성 제고 및 통보 강화

1) 투명성 및 보조금 통보 개선

EU는 WTO의 보조금 및 상계조치에 관한 협정(SCM 협정)에 따라 회원국들이 해당 보조금을 WTO에 통보해야 하지만 이를 제대로 준수하지 않고 있으며, 특히 회원국이 제공하는 보조금에 대한 포괄적인 정보 부족이 현행 SCM 협정 적용에 있어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라고 지적하였다. 아울러 보조금에 대한

84 • WTO 체제 개혁과 한국의 다자통상정책 방향

⁷⁸⁾ WTO(2018b)를 바탕으로 작성.

투명한 정보가 없으면 회원국들이 보조금 관련 조치를 검토할 수 없으며, 이에 따라 관련 규범의 집행이 상당히 어려워진다고 주장하였다.79)

따라서 EU는 WTO 회원국이 통보 의무를 완전하게 준수할 수 있도록 인센 티브를 제공해야 하며, 투명성 제고와 보조금 통보 개선을 위해 보조금을 적시 에 통보하지 않을 경우 해당 보조금을 SCM 협정 위반 보조금으로 간주하거나, 심각한 손해를 야기하는 조치가능 보조금으로 간주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2) 통보 관행 개선

EU는 통보 의무를 준수하지 않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통보 관행을 개선할 것을 제안하였다. 첫째, 상품무역에 대한 통보의무를 감독하는 개별 위원회가 효과적인 방법으로 회원국이 제출한 통보를 검토하되, 구체적으로 △ 당사국이 통보를 지연했을 경우 지연 이유를 설명하고 상대국의 질의에 대해 실질적인 답변을 제공 △ 사무국이 통보 수준 및 질의에 답변한 내용을 질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허용 △ 통보에 대한 질의, 답변 등을 WTO가 관리하는 공공 데이터베이스에 입력해 추후 언제든 확인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 등을 제안하였다.

둘째, 통보 준수를 위한 인센티브 제공을 제안하였다. EU는 많은 WTO 회원 국, 특히 개도국의 경우 통보의무와 기한 내 통보이행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음을 인정하고, 통보 의무를 준수하는 회원국에는 통보기술을 지원하고, 정보 및 모범사례를 공유할 것 등을 제안하였다.

셋째, 의도적이고 반복적인 의무불이행에 대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제안하였다. EU는 통보준비를 위한 능력이 부족하고 정당한 이유로 기한 내에 통보하지 못하는 경우와 체계적으로 고의성을 가지고 통보의무를 다하지 않는 경우를 구

⁷⁹⁾ 최근에는 보조금에 대한 통보가 더욱 이루어지지 않아 보조금 통보 실적이 전혀 없는 회원국이 2018년 3월 말 현재 회원국의 절반 이상인 90개국에 이르렀다고 주장하였다.

분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후자는 다자무역체제의 규범과 정신에 대한 심각한 위반이기 때문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하면서 EU는 통보의무 불이행 회원 국에 대해 WTO 참여와 관련된 특정 권리를 제한할 것을 제안하였다(예: WTO 산하기구의 의장 취임 제한 등).

넷째, 역통보 방식을 허용하고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제안하였다. 특히 공 동으로 역통보를 준비할 때 같은 생각을 가진(like-minded) 회원국들과의 협 력을 확대하고, 회원국에 대한 중립성을 지키면서 WTO 사무국이 참여할 수 있는 방법 등을 제안하였다.

마지막으로 무역정책검토(TPR) 제도의 검토 기능을 강화할 것을 제안하였다. EU는 WTO 사무국에 회원국의 무역정책검토보고서에서 통보실적을 평가할 수 있도록 하는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TPR 운용의 효율성을 증대시킬 것을 제안하였다. 또한 통보에 대한 정보는 보고서에서 별도 챕터로 확대될 수 있으며, 통보의무 준수에 대한 질적 측면을 체계적으로 강조하고, 마지막 검토 이후회원국의 통보 실적이 어떻게 개선되었는지 기술함으로써 보다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나. 분쟁해결제도 개선

EU는 분쟁해결 상소기구 기능과 관련한 분쟁해결양해(DSU: Understanding on rules and procedures governing the settlement of disputes) 조항의 포 괄적인 개정을 제안하였다.

1) DSU 제17.5조 및 상소기구 심리기간 90일 문제

EU는 DSU 제17.5조의 개정을 통해 상소기구와 당사국 간의 협의하에 상

소기구 보고서의 90일 연장을 허용할 것을 제안하였다. 상소기구는 판결보고 서가 90일을 초과할 경우 상소절차 초기(또는 상소 제기 이전)에 당사국과 협 의함으로써 해당 문제에 대해 상소기구와 당사국 간의 불필요한 오해를 해소 할 수 있음을 강조하였다. 즉 DSU 제17.5조90일 규정을 변경하기보다 상소 기구의 투명성 및 협의 의무를 강화함으로써 해당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입 장이다.

이와 함께 EU는 상소기구위원 정원을 현행 7명에서 9명으로 증원할 것을 제 안하였다. 이는 상소기구의 효율성을 높이는 한편 상소기구위원의 지역 균형을 맞추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2) 임기 만료 상소위원에 대한 규정

EU는 WTO 상소기구작업절차(Appellate Body Working Procedure) 제 15조를 DSU상에 성문화할 것을 제안하였다. 즉 DSU에 임기 만료된 상소위원의 임기연장을 명시할 것을 제안하였다. 예를 들어 DSU 안에 임기가 종료된 상소위원은 임기 중 발생한 심리(미결된 상소)에 한해 이를 완료하기 위해 관여할 수 있다는 내용을 DSU에 만듦으로서 임기 만료 상소위원의 심리 관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제안하였다.

3) 분쟁해결에 불필요한 평결(findings)

EU는 상소기구가 분쟁해결에 필요하지 않은 쟁점에 대해 설명, 판단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DSU 제17.12조 개정을 통해 "분쟁해결을 위해 필요한 범위까지(to the extent this is necessary for the resolution of the dispute)" 란 문구를 추가할 것을 제안하였다. 이는 분쟁을 해결하는 데 불필요한 상소기구의 긴 '자문의견' 또는 'obiter dicta' 제시에 대한 우려에 따른 것이다.

4) 사실관계 판단에서 국내법의 의미

EU는 DSU 제17.6조에 따른 상소심의 범위에 국내법의 의미에 관한 검토는 포함되지 않음을 명확히 할 것을 제안하였다.⁸⁰⁾

5) 선례(precedent) 및 상소기구위원의 독립성

EU는 상소기구와 WTO 회원국 간의 정기적인 교류(예를 들어 연례회의)를 통해서 DSU의 제17.14조에 따라 채택된 상소 보고서에 대해 회원국이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제도적으로 보장할 것을 제안하였다. 이는 상소 보고서에 대해 회원국에 의견을 개진할 기회를 주어, 선례구속의 적용을 받지 않도록 하려는 목적이다. 아울러 상소기구위원의 임기를 현행의 4년보다 긴 6~8년 단임제를 제안하였다.

다. 신 무역 이슈

1) 디지털 무역장벽 해결 요구

EU는 전자적 수단에 의한 무역에 대해 일체의 부당한 장벽을 없애고, 소비자를 위한 안전한 온라인 환경을 보장하기 위해 디지털 무역에 관한 규범 수립이 중요하다고 주장하였다. 이는 강제 기술이전(소스코드 공개와 같은) 문제와도 상호 연계성이 있으며, 특히 새로운 규범은 서비스무역뿐 아니라 모든 경제부문에 적용되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⁸⁰⁾ DSU 제17.6조는 "상소는 패널 보고서에서 다루어진 법률 문제 및 패널이 행한 법률 해석에만 국한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시장접근 장벽, 외국인투자자 차별대우, 국경간 왜곡 문제 해결 필요

EU는 서비스 및 투자 부문에서 다양한 차별적 조치와 시장왜곡적인 조치가 있음을 지적하고, 이와 관련하여 새로운 규범 도입을 제안하였다. EU는 현재 WTO GATT, GATS, TRIMS, TRIPs 등에 강제적 기술이전 문제와 관련된 많은 규정이 있으나, 이러한 규정은 모두 적용범위가 제한적이어서 외국인 소유권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요건(합작회사요건, 외국인 지분제한)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불충분하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명확하지 않은 규정에 근거한 행정적 검토 및 허가 절차, 광범위한 재량권을 허용하는 과정, 허가 제한 등을 다루기 위해서는 새로운 규범이 필요하며, 영업 기밀(trade secrets)과 같은 분야에서의 특정 규범도 강화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아울러 EU는 제안서에서 서비스 및 비서비스 분야의 내국민대우의무 강화와 최혜국대우의무의 적용을 받도록 비차별적이고 투명한 규제 및 집행절차 보장을 제안하였다.

라. 기존 DDA 이슈

1) 협상방식

EU는 현재 WTO 협상이 정지되어 있는 것 자체가 협상방식에 있어 보다 유연성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다자간협상과 복수국간협상을 모두 활용할 것을 제안하였다. 즉 다자간 합의 도출이 가능한 분야에서는 다자간 협상과 결과에 대한 지원을 유지하되, 다자간 합의 도출이 어려운 분야에서는 참여의사가 있는 복수국간에 협상을 추진하도록 허용하는 것이다. EU의 복수국간협상에 따르면 복수국간협상은 모든 회원국들에 개방되며, 협상 결과는 최혜국대우의무의 적용을 받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이와 같은 복수

국간협상이 용이하도록 관련 WTO 협정 개정 가능성 검토를 제안하였다.

이외에도 EU는 다양한 협상과정과 이행 및 모니터링 등의 WTO 기능을 지원하기 위하여 WTO 사무국의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2) 개도국 우대

EU는 개도국 그룹에 세계 최대 무역국이 포함되어 있고, 이러한 국가에 특혜가 부여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개도국 우대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이에 따라 EU는 개도국 '졸업' 개념을 제시하고 개도국의 자발적인 개도국 졸업을 권장하고 있다.

예외조치가 필요할 경우 적용기한을 설정하되, 핵심 조항의 예외적용은 가급적 제외시키고 모든 협정에서 신축성 부여는 참여 회원국 수와 협정 준수 의지를 고려해야 함을 제안하였다. 이러한 제안의 구체적인 이행방안으로 개도국세분화, 졸업제도, 졸업 유예기간 설정, 이행과 관련된 지원 등 여러 가지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한편 EU는 회원국들이 기존 협정에 추가적으로 개도국 우대를 요구할 경우 \triangle 개발목표 명확화 \triangle 규범 영향 및 예외조치로 예상되는 편익의 경제적 분석 \triangle 다른 WTO 회원국에 미치는 영향 분석 \triangle 추가 개도국 우대 적용기간 및 범위 설정 등을 사례별로 분석한 이후에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기타

가) 국영기업

EU는 많은 국가에서 기업들이 시장을 왜곡시키는 정부지원을 받아 혜택을 보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특히 국영기업을 통해 전달되는 보조금 문제를 강조하 였다. 즉 국영기업이 보조금을 지원하는 경우 보조금협정에서의 '공공기관 (public body)'이라는 개념 적용이 쉽지 않아 상당수 국영기업이 보조금협정의 규율 밖에 있음을 지적하였다. 이에 따라 EU는 국영기업이 공적기관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사례별 분석을 토대로 공공기관의 개념을 명확하게 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나) 무역왜곡적인 보조금

EU는 산업보조금이 합법적인 정책 수단인 경우도 있지만, 생산과정을 방해하고 기업성과에 영향을 미치며 경쟁을 왜곡할 수 있어 글로벌 경제에 심각한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는 시각이다. 특히 보조금협정은 산업보조금을 규율하기위한 주요한 수단이지만, 최근 몇 년 동안 산업보조금 규율에 효과적이지 못하였다고 언급하였다. 특히 EU는 조치가능보조금이라도 과잉생산을 유발하는경우 국제무역을 심각하게 왜곡시킬 수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이에 따라 EU는현행 규범에서 원칙적으로 허용되는 보조금이라도 문제가 되는 보조금(예: 과잉생산을 야기하는 보조금)에 대해서는 더욱 엄격히 규율할 것을 제안하였다.예를들어 금지보조금 목록을 확대하거나 보조금협정 제6.1조의 유사한 '심각한 손해에 대한 의미'를 확대 적용할 것을 제안하였다. 또한 엄격한 규율 적용을 받을 수 있는 보조금 유형에 무제한 보증(guarantees), 신뢰할 만한 구조조정계획이 없는 파산 또는 부실기업에 지원하는 보조금 등을 포함해야한다는입장이다.

표 3-2. EU의 WTO 현대화 제안 주요 내용

이슈	주요 내용			
1. 통보 및 투명성 제고				
투명성 및 보조금 통보 개선	• 통보의무 준수 회원국에 인센티브 제공 • 미통보 시 보조금협정의 보조금으로 추정되거나 심각한 손해를 야기하는 보조금으로 추정			
통보	통보지연 시 당사국이 지연 이유 설명 사무국이 통보 수준 및 질의답변 내용 질적 평가 통보에 대한 코멘트와 답변 내용을 WTO 공공 DB에 게시 통보의무를 충족하는 회원국에 기술지원 및 정보, 사례 공유 의도적, 반복적인 통보 의무불이행 국가에 대한 WTO 관련 권리 제한 (WTO 기구 의장 취임 제한 등) 역통보 활용 TPR 제도의 검토 기능 강화(사무국에 통보실적을 평가할 수 있는 권한 부여, 통보에 대한 별도의 챕터)			
2. 분쟁해결제도 개선				
DSU 제17.5조 및 90일 이슈	• 상소기구 절차 90일 초과 금지(단 당사국이 합의하는 경우 연장 가능) • 상소위원 수 7명에서 9명으로 증원			
임기 종료된 상소위원에 대한 규정	• DSU에 상소위원의 임기 연장 명시			
사실관계 판단에서 국내법 의미	• DSU 제17.6조에 따른 상소심의 범위에 국내법의 의미에 관한 검토 제외			
선례(precedent) 문제	• 선례구속 적용을 받지 않도록 상소 보고서에 대한 회원국의 의견 표명 기회 부여			
상소위원 독립성	• 상소위원 임기 6~8년의 단임제			
	3. 신 이슈: 전자상거래, 투자 등			
디지털 무역장벽	• 디지털 무역 관련 새로운 규범 수립			
서비스 및 투자 장벽을 해소하기 위한 새로운 규범 수립	• 강제 기술이전 요구에 대한 조치 필요 • 외국인 소유권 금지 및 제한 규정, 불명확한 행정 검토 및 허가 절차, 광범위한 재량권 허용, 허가 제한 등에 대한 규범 요구 • 영업 기밀과 같은 특정 규범 강화 필요			
	4. 기존 DDA 이슈			
협상 방식: 다자간·복수국간 협상	• 다자간협상과 복수국간협상 모두 활용 - 복수국간협상 결과는 MFN 기초에서 적용			
개도국 우대	전체적 또는 협정별 개도국 졸업 제도 도입 예외조치에 기한 적용 핵심 조항들의 예외적용 제외 학원국 수 및 협정준수 의지 고려한 유연성 부여 이행 방법: 개도국 세분화, 졸업 제도, 졸업 유예기간 설정, 이행 관련 지원			
국영기업 규범 개선	• 공공기관(public body) 개념 명확화 - 국영기업의 공공기관 포함 여부 사례별 분석			
무역왜곡적인 보조금 규율	• 금지보조금 목록 확대 • '심각한 손해 의미' 확대 적용			
지속가능개발목표(SDGs) 달성	• 유해한 수산보조금 철폐			

자료: WTO(2018b)를 참고하여 저자 작성.

3. 캐나다의 WTO 체제 개혁에 대한 제안81)

캐나다도 지난 9월 WTO 체제 강화 및 현대화에 대한 자국의 제안서를 제시하였다. 이후 이에 대한 논의를 위해 9월과 10월에 주요국 통상 장·차관회의를 주최한 바 있다. 이에 참여한 국가는 주최국인 캐나다를 포함하여 EU, 일본, 노르웨이, 스위스, 호주, 뉴질랜드, 싱가포르, 한국, 멕시코, 케냐 등 총 13개국이며, 미국, 중국, 인도, 남아프리카공화국 등은 제외되었다.82)

캐나다는 WTO 체제의 강화 및 현대화를 위해 ① WTO 모니터링 기능의 효율성 및 효과성 개선 ② 분쟁해결제도의 보호 및 강화 ③ 21세기에 적합한 무역규범의 현대화라는 3개의 요소를 제안하고 각 요소별로 구체적인 조치들을 제시하였다. WTO 모니터링 기능의 효율성과 효과성 개선은 투명성 제고 및 통보 강화에 관한 내용이며, 21세기 무역규범 현대화에는 전자상거래, 투자원활화와 같은신규 이슈, 기존 DDA 이슈, 개도국 우대 등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캐나다 제안은 초기 제안인 1차와 차관급회의 이후 회원국의 의견을 반영한 2차 제안으로 구분된다. 1차 제안과 2차 제안의 기본골격은 동일하고 내용도 유사하다. 다만 캐나다는 2차 제안에서 회원국의 지적에 따라 일부 항목에서 제시한 구체적인 조치를 삭제하고 보다 포괄적인 내용으로 대체하였다. 이는 향후 논의가 계속되어야 하는데 초기 단계에서 특정 제안을 통해 향후 논의방 향을 제한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고, 한층 열린 시각에서 다양한 시각과 입장을 반영하고자 하는 의도로 해석된다.

2차 제안에서 캐나다는 회원국의 고위급 지지가 중요함을 강조하였다. 또한 개혁을 위한 단계별 접근을 제안하였는데, 첫 번째 단계는 행동 체제(format)로 단기적으로 가장 현실적인 방안은 복수국간협상 참여라고 주장하였다. 캐나다는 우선 기존 협정 안에서 논의할 수 있는 또는 공식적인 제도 개혁을 요구하

^{81) 1}차 제안서는 Government of Canada(2018), 2차 제안서는 WTO(2018c)를 바탕으로 작성.

^{82) &}quot;Canada's WTO Reform Proposal" (2018. 9. 7).

지 않는 제안을 중심으로 점증적이고 신축적인 방식으로 대안을 논의해 실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두 번째 단계는 행동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으로 현재 가장 시급한 사안은 분쟁해결제도와 모니터링 기능의 개선임을 주장하였다. 장기적으로는 복수국 간협정의 활용에 대한 총의(consensus) 구축, 개도국 세분화의 수용, 무역규범 개선을 위한 체제와 이슈에 대한 우선순위 선정을 위해 보다 높은 수준의 정례기구와 분쟁해결제도의 개선에 대한 숙고가 필요하다고 언급하였다.

마지막으로는 WTO 회원국간 다양한 이니셔티브가 결국 무역규범의 미래와 다자무역체제 기구에 대한 공통의 비전으로 수렴될 필요가 있으며, 회원국간의 참여와 조율, 건설적으로 참여할 의지가 있고 준비되어 있는 다른 회원국을 포함하기 위한 대화의 점진적인 확대가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가. 통보 및 투명성 제고

캐나다는 규제 기반의 다자무역체제가 잘 작동하기 위해서는 기존 협정의 이행, 관리 및 운영에 대한 모니터링이 매우 중요하다고 보았다. 이는 회원국이 투명하게 정보를 공유하고 이를 검토할 수 있을 경우 다른 회원국의 국내 조치가무역왜곡이 가장 적은 조치로 이행되기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캐나다는 정책대화(informed policy dialogue)를 중요시하고 있는데, 이는 정책대화를 통해 무역왜곡조치와 잠재적 무역분쟁을 방지할 수 있으며, 새로운 이행 약속 (commitments)에 대한 논의에도 긍정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언급하였다.

캐나다의 모니터링 기능 개선은 WTO 정례기구를 보다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만드는 것을 포함하고 있으며, 필요한 조치로 국내 조치에 대한 통보 및 투명성 개선, 심의를 위한 역량 및 기회 강화, 특정무역현안 해결을 위한 기회 및 메커니즘 개선 등을 제안하였다. 2차 제안에는 추가적으로 이러한 요소에

대한 효율적 해결책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고위급의 지지가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캐나다는 국내 조치에 대한 통보 및 투명성 개선을 위해 \triangle 통보 필수요건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 \triangle 통보에 대한 인센티브 및 기술지원 제공 \triangle 역통보 활용 \triangle 잔존하는 격차(remaining gap)를 보완하기 위한 WTO 사무국의 독립된 정보 수집을 제안하기도 하였다.

한편 심의 기회 및 역량 강화를 위해서 1차 제안에서 △ 주제별 토론회 촉진 △ 모든 WTO 의장들로 구성된 조정위원회(coordinating) 설립 △ 의장 임기 연장 및 부의장 임명 △ 여타 국제기구 및 기타 이해관계자의 참여 증진 △ 주제 별 이슈에 대한 사무국의 정성 평가 등 구체적인 조치를 제시하였다. 그러나 2차 제안서는 구체적인 조치 대신 주제별 이슈를 심의할 수 있도록 WTO 정례기구의 작업 정비, 논의 주도 회원국의 대표 및 이를 지원하는 WTO 사무국의 역량과 책임을 증진할 수 있는 조치 실행 등 포괄적인 내용으로 바꾸었다.

특정무역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기회와 메커니즘 개선과 관련해서는 △ 모든 정례기구에서 이용 가능한 보다 견고한 메커니즘 마련 △ 관련 기구간에 특정 무역현안에 대한 정보 공유 △ 적절한 경우 신임할 수 있는 제3자 중재 및 조정회부를 제시하였다.

나. 분쟁해결제도의 개선

캐나다는 업무 과중에 따른 상소기구의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 재판회부를 자제하는 행동강령의 개발 △ 중개(mediation) 등 대체 분쟁해결제도의 개선 및 활용 △ 심사관할권(jurisdiction of adjudication)으로부터 특정 분쟁 또는 이슈 제외 등을 제시하였다. 캐나다는 분쟁해결절차가 복잡해지고 장기화됨에 따라 그 접근성이 저해되고 있으며, 특히 단기적인 무역왜곡조치와 일방

적 보호조치가 만연하므로 WTO 판결은 분쟁 특성에 따라 보다 유연해져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를 위해 분쟁유형에 따른 대체절차, 소송절차 특성에 따른보충적 절차 등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하였다.

이외에도 캐나다는 1차 제안에서 분쟁해결의 신속화, WTO 의무 해석에 대한 회원국의 감시 강화, 절차적 측면에 대한 논쟁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들을 제안하였으며, 2차 제안에서는 이 중 상소위원의 재임명 및 기간 연장을 제외한 상소심리의 개선방안 등을 제시하였다. 2차 제안에서 캐나다는 상소기구기능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상소기구의 기능, 회원국의 권리와 의무 간의 불균형과 연관되어 제기되는 우려사항을 해결해야 한다고 설명하면서 우회적으로미국의 우려를 전달하기도 하였다.

다. 신 무역 이슈

캐나다는 WTO의 무역규범이 오래전에 제정되어 현재 세계경제의 요구 사항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긴급히 업데이트를 할 필요가 있으며, 단기적으로 모든 회원국이 모든 의무를 준수해야 하는 일괄타결(single undertaking)이 일어날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지적하였다. 대신 회원국간에 다양한 요구사항과 개발 및 능력 수준의 차이를 반영한 규범 제정과 협력에 대한 대체 접근방법이 필요하며, 이러한 접근방법은 차별화된 협상 참여, 개발 수준에 따른 차별적인 우대 허용 등을 포괄한다고 설명하였다. 캐나다는 21세기 통상규범을 현대화하기 위해서 차별화된 협상 참여(복수국간 협상), 개발 수준에 따른 개도국 우대 차별화, 신 이슈(다자협상의 미해결 사항, 새로운 규범협상, 최근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경쟁 조건을 왜곡하는 이슈 해결 등)를 제안하였다.

캐나다는 무역규범의 현대화가 필요하다는 것에는 동의하나 우선순위에 대해서는 의견이 일치하지 않고 있으며, 회원국간 의견 수렴을 촉진하기 위해 필

요한 것과 우선순위를 파악하기 위해 지속적이고 개방적인 정책적 대화가 즉시 시작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를 위해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할 작업은 과거 미해결 사항, 새로운 규범, 경쟁 조건의 왜곡 등과 같은 이슈에 대해 다자 체제에서 성과를 낼 수 있는 이슈와 복수국간 이니셔티브에서 더 좋은 성과를 낼수 있는 이슈, 규범을 개선할 수 있는 기타 접근법을 파악하는 것이라고 언급하였다. 과거 미해결 사항으로는 고관세 및 경사관세, 농업보조, 개발 등 DDA 이슈를 포함한 과거 다자협상의 미해결 사항에 대한 논의를 제안하였다. 새로운 신규 이슈로는 디지털 무역, 포용적 무역, 지속가능 개발, 중소기업, 투자, 국내규제와 같은 새로운 규범에 대한 논의를 제안하였다. 경쟁 조건의 왜곡에 대한 최근의 우려사항 해결에 대해서는 SOE의 시장 왜곡 효과, 산업보조금, 기술이전, 기업 기밀, 투명성 등의 논의를 제시하였다.

라. 기존 DDA 이슈

1) 협상방식

캐나다는 WTO 회원국은 자국이 동의하지 않는 의무를 준수하길 원하지 않은 것처럼 더 많은 의무를 부과하기 위해 다양한 분야에서 논의가 진전되는 것을 방해할 수 없음을 지적하고, 이러한 의무 부과는 정치적 선언문에서부터 복수국간 이니셔티브와 같이 높은 수준의 구속적인 협정까지 다양한 형태가 될수 있다고 설명하였다. 단 구속적인 이니셔티브는 포용적, 개방적이고 다른 회원국의 가입이나 향후 다자화를 위해 명확한 규범을 제공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더불어 이러한 복수국간협상은 WTO의 법적 체제 안에서 또는 체제 밖에서와 같이 여러 형태로 논의될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 WTO의 법적 체제 안에서 논의될 경우는 ITA와 같이 바람직한 결과를 달성하기 위한 충분한 수준 (critical mass)에 도달하거나 무임승차의 위험도가 낮아질 경우 모든 회원국

의 동의를 요구하지 않고 MFN 기반으로 혜택을 확장하는 개방형 협정과, 일부 제한적인 영역에서 적용 가능한 GPA와 같이 모든 회원국의 동의하에 차별하는 비개방형 협정이 있을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 WTO 체제 밖에서 논의되는 경우는 TiSA와 같은 비개방형 협정으로 이러한 협정은 투명성이 떨어지고 WTO 분쟁해결제도의 적용을 받지 않을 수도 있다.

더불어 행동수단을 위한 선택사항(Option for instruments of Action)에 대한 부속서를 작성하여 복수국간협상(plurilateral instruments)과 다자협상(multilateral instruments)하에서 실현 가능한 접근법에 대해 제안하였다.

복수국간협상은 2017년 나이로비 각료회의에서 채택된 것과 유사한 정치적의지에 관한 선언문에서부터 디지털 무역, 포용적 무역, 지속가능 개발, 중소기업, 투자, 국내 규제 등과 같은 새로운 규범에 대한 구속적인 법적 협정까지 다양하게 활용 가능하다고 설명하였다. 운영행동(operational action)을 위해서는 복수국간 행동규범(plurilateral codes of conduct) 또는 절차에 관한협정(procedural agreement)을 고려해볼 수 있다고 언급하였다.

복수국간 추진체계에서는 운영행동에 대해 다자적 총의가 달성될 수 있으나, 협정이행약속이 여전히 높은 분야에서 비구속적인 문서 채택(non-binding instruments), 공식 결정, 유권 해석 등을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캐나다는 WTO 기구가 업무의 절차적 측면과 기존 이행약속에 대한 증가분 조정 (incremental adjustments)을 모두 포괄하는 비구속적 문서(non-binding instrument)를 채택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기존 의무의 해석에 영향을 주려는 의도가 아니라는 것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일반이사회와 DSB는 그들의 업무를 운영하기 위해 공식적인 결정을 좀 더 활용할 수 있으며, 이러한 추진체계에 의해 만들어진 새로운 의무의 범위에는 제약이 있다고 언급하였다. 나이로비 각료회의에서 채택된 수출경쟁에 관한 결정은 새로운 의무도 이러한 추진체계를 사용해 만들어질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덧붙였다. 캐나다는 유권해석은 특정 기존 의무의 명확화를 위해 WTO 협정의 제9.2조에

따라 채택될 수 있으며, 과거 미완결된 협상의 완료, 상업적 관례의 변화로 인해 나타나거나 기존에 존재했던 간극의 해소, 과거 분쟁에서 나타난 해석의 기각 등에 활용될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

2) 개도국 우대

캐나다는 개발수준에 따라 무역에 참여하고 새로운 이행의무를 수용하는 능력이 다르며, 이러한 차이가 상호주의와 신축성 간에 균형을 추구하는 방식으로 수용되어야 하나 이를 달성하는 방법에 대한 회원국 간의 의견 충돌은 새로운 다자규범의 협상 진전에 있어 가장 큰 장애가 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모든국가들에게 동일한 수준의 신축성이 허용될 필요가 없으며, 또한 그러해서도안 된다는 점을 인정할 수 있을 정도의 새로운 접근법이 필요하다고 역설하며,무역원활화협정의 차별화된 개도국 우대 방식이 하나의 좋은 사례가 될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 따라서 새로운 접근 방법에는 무역원활화협정의 특성에 기초하여 이행 과도기간 부여,의무의 이행과 이행 능력 획득 간의 연계 등의 요소가 포함될 수 있다고 제안하였다.

표 3-3. WTO 개혁을 위한 캐나다의 제안 주요 내용

	1차 제안서	2차 제안서
주제1 WTO 모니터링 기능의 효율성 및 효과성 개선	1. 통보 및 투명성 개선	1. 통보 및 투명성 개선
		·통보 필수요건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
	·통보 필수요건에 대한 검토	·통보에 대한 인센티브 및 역량 부족
	·통보에 대한 인센티브, 유인책 또는	국가에 대한 기술지원 제공
	기술지원 제공	·역통보
	·자발적인 통보 및 역통보(counter	·누락된 통보에 대한 WTO 사무국의
	notification) 장려	독자적인 정보 수집 및 작업 수행
	·누락된 통보에 대한 WTO 사무국의	·통보와 투명성에 대한 고위급 지지는 보다
계인	독자적인 정보 수집 및 작업 수행	효율적 해결책 개발을 위해 중요한 모멘텀
		제공

	1차 제안서	2차 제안서
주제1 WTO 모니터링 기능의 효율성 및 대선	2. 국내 조치가 무역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심의를 위해 회원국들의 능력 향상 및 기회 제공	2. 국내 조치가 무역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심의를 위해 회원국들의 능력 향상 및 기회 제공
	·회의의 빈도 및 시기에 대한 검토 ·주제별 토론 촉진 ·WTO 내 다양한 기구간의 조율 및 일관성을 위해 WTO의 모든 의장들로 구성된 조정위원회(coordinating committee) 설립 ·의장의 임기를 2년으로 연장, 부의장 임명 ·여타 국제기구 및 이해관계자의 참여 증진 ·사무국은 주제별 이슈에 대한 정성 평가 수행	·복수 기관들과 다양한 출처로부터 입수한 정보를 토대로 주제별 이슈에 대해 보다 시기적절하고 연관성 있는 심의를 허용할 수 있도록 WTO 정례기구의 작업을 정비 ·논의를 주도하는 회원국 대표뿐만 아니라 이를 지원하는 WTO 사무국의 역량과 책임을 증진할 수 있는 조치 실행 ·고위급 지지는 무역에 대한 다자간 대화에 있어 새롭고 창의적인 접근방법을 개발하는 데 중요
	3. 특정무역현안 해결을 위한 기회 제공 및 메커니즘 개선	3. 특정무역현안 해결을 위한 기회 제공 및 메커니즘 개선
	·WTO 내 모든 기구에서 특정무역현안에 대한 상세한 절차 마련 ·관련 기구간에 특정무역현안에 대한 정보 공유 장려 ·중재 및 조정을 위한 메커니즘 개선 및 관련 기구간의 경험 공유	·모든 정례기구에서 이용 가능한 견고한 메커니즘 마련 ·관련 기구간에 특정무역현안에 대한 정보 공유 ·적절한 경우 신임할 수 있는 제3자 중재 및 조정 회부 ·고위급의 지지는 정례기구에서 특정무역현안 해결에 대한 새로운 아이디어를 위한 모멘텀 제공
	1. 판결로부터 일부 분쟁 및 이슈 전환	1. 판결로부터 일부 분쟁 및 이슈 전환
주제2. 분쟁해결 절차의 보호 및 강화	·재판회부를 자제하는 행동강령 개발 ·분쟁해결에 대한 대체 메커니즘 개발(소규모 분쟁의 경우 간소화된 중재 절차, 중재 또는 조정 활용 등) ·상소기구의 심사관활권(jurisdiction of adjudication)으로부터 특정 유형 분쟁, 특정 이슈를 제외시키기 위한 메커니즘 개발(회원국의 결정 또는 패널위원/상소 위원(adjudicator)에게 특정 이슈에 대한 심리나 판결을 거부할 수 있는 권한 부여)	·재판회부를 자제하는 새로운 이행 약속 (renewed commitments) ·분쟁해결을 위해 중재와 같은 대체 메커니즘 개선 및 활용, 판결 범위의 축소 ·심사관할권으로부터 특정 분쟁 또는 이슈를 공식적으로 제외 ·분쟁해결제도의 강화와 보호를 위해서는 공식적인 분쟁에 대한 의존을 줄이려는 고위급의 지지가 중요

	1차 제안서	2차 제안서
주제2. 분쟁해결 절차의 보호 및 강화	2. 판결 절차의 간소화	2. 판결 절차의 간소화
	·분쟁 유형에 따른 대체 절차 개발 (절차 단계 다양화, 증거나 서류 제출 제한 등 제소국 재량에 따라 선택) ·소송 절차의 특성에 따른 보충 절차 개발 (증거법, 사실관계 확정을 위한 접근 모델, 전문가 협의 등)	·특정분쟁 유형에 따른 대체 절차 개발 ·소송절차의 특성에 따른 보충 절차 개발 ·패널과 상소기구 간의 더 많은 상호작용 위한 메커니즘(예를 들면, 파기 환송) 개발 ·분쟁해결제도 간소화와 그 적용에 관한 논의 진전을 위해 고위급 지지 필요
	3. 분쟁해결의 신속화에 집중	3. 상소심리(appellate review)의 개선 및 보장
	·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한다는 분쟁해결 제도의 목표 명확화 ·국내 조치 검토 시 패널위원/상소위원(adjudicator)이 적용할 심리 기준 명확화 ·사실 확정 및 국내법 운영 관련 패널 판정의 존중을 위해 상소기구의 심리 범위 명확화	·분쟁에서 발생하는 이슈에 대한 주제별 토론회 개최 ·유권해석(authoritative interpretation)의 채택 절차에 대해 논의하는 공식적 경로(formal pathway) 개발 ·분쟁해결제도의 주요 목적이 특정 분쟁의 해결이며, 이런 목적 달성에 필요한 판결만 요구된다는 것을 명확히 함으로써 권고적 의견(advisory option)에 대한 범위 축소 ·상소기구가 패널, 특히 사실 확정이나 국내법의 운영과 관련된 부분에 적용할심리기준을 명확히 하여 상소심리 법적이슈에 집중 ·패널에서 소수 의견과 상소기구 보고서에 대한 의견 표출을 허용하여 판결담화(adjudicative dialogue)를 장려하고 패널과 상소기구에 의해 채택된 해석은 오직 관련된 분쟁에만 적용되는 것을 강조 ·상소기구가 기한을 맞추지 못할 경우 관련 국가와 협의에 관한 지침 개발
	4. WTO 의무의 해석에 대한 회원국의 감시 강화	
	·DSB의 판결에 대한 회원국들의 의견 전달을 위해 분쟁이슈에 대한 주제별 토론 개최 ·정정을 위한 유권해석(corrective authoritative interpretations) 절차의 강화	
	5. 절차적 측면에 대한 논쟁 해결	
	·상소기구가 90일 안에 결론을 내릴 수 없을 경우 상소기구와 당사국 간의 협의 절차 복원 ·상소위원 재임명에 대한 명확한 절차 마련 ·상소위원 기간연장에 대한 조건 규정	

	1차 제안서	2차 제안서
	1. 차별화된 협상 참여(복수국간 협상)	1. 규범의 현대화를 위한 우선 순위 파악
	·복수국간 협정 모델 파악(ITA와 같은 MFN 방식, GSP와 같은 비MFN 방식, TiSA와 같은 WTO 체제 밖의 협정 방식) 및 지지 ·복수국간 협정의 WTO 통합을 허용하는 WTO 체제 업데이트	·고관세 및 경사 관세, 농업보조, 개발 등 DDA 이슈를 포함한 과거 다자협상의 미해결 사항에 대한 논의 ·디지털 무역, 포용적 무역, 지속가능 개발, 중소기업, 투자, 국내 규제와 같은 새로운 규범에 대한 논의 ·SOE의 시장 왜곡 효과, 산업보조금, 기술이전, 기업 기밀, 투명성과 같은 경쟁 조건의 왜곡에 대한 최근의 우려 사항해결에 대한 논의
	2. 개발 수준에 따른 차별화 (개도국 우대)	2. 규범의 현대화를 위한 수단
주제3. 21세기 무역 규범의 현대화	·개도국 우대를 위한 모델 플랫폼 개발 (예 WTO 무역원활화협정 방식) ·특정 국가의 경우 이행 과도기간을 부여 하고, 장기적으로 모든 회원국에 의한 모든 의무의 완전한 이행 추구 ·의무, 국가, 필요한 이행 기간에 따라 달라지는 요구 사항(need)의 범주를 개발 ·최빈개도국의 경우 가장 부담되는 의무의 이행과 이행능력 획득을 연계	·MFN 방식으로 혜택을 확장하는 개방형 협정(ITA 방식) ·차별화하는 비개방형 협정(GPA 방식) ·WTO 체제 밖에서 진행되는 비개방형 협정(TiSA 방식)
	3. 균형잡힌 작업 계획	3. 개발차원
	·고관세 및 경사 관세, 농업보조, 개발 등 DDA 이슈를 포함한 과거 다자협상의 미해결 사항에 대한 작업계획 파악 ·디지털 무역, 서비스, 포용적 무역, 지속가능 개발, 중소기업, 국내 규제 등 새로운 규범에 대한 협상 ·SOE의 시장 왜곡 효과, 산업보조금, 기술이전, 기업 기밀, 투명성과 같은 경쟁 조건의 왜곡에 대한 최근 우려 사항 해결	·특정 국가의 경우 이행 과도기간을 부여하고, 장기적으로 모든 회원국에 의한 모든 의무의 완전한 이행 추구 ·의무, 국가, 필요한 이행 기간에 따라 달라지는 요구 사항(need)의 범주를 개발 ·최빈개도국의 경우 가장 부담되는 의무의 이행과 이행능력획득을 연계

자료: 1차 제안서는 Government of Canada(2018), 제2차 제안서는 WTO(2018c)를 참고하여 저자 작성.

4. 향후 전망과 정책 시사점

가. 향후 협상 전망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미국, EU, 캐나다, 일본 등 선진국을 중심으로 WTO 체제의 개혁방안이 구체적으로 논의되고 있으나, 실상 이러한 논의에 대한 개도국들의 참여는 아직 저조한 수준이다. 비록 캐나다가 주도하여 WTO 체제 개편 논의를 이끌고는 있으나 개도국 대부분은 선진국이 제시한 WTO 체제 개편의 구체적인 내용과 의미를 파악하는 데도 한계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WTO 체제 논의는 개도국의 참여 저조로 한계를 보일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WTO 체제 개편 논의는 2018년보다는 2019년에, 그리고 2020년 제12차 각료회의를 앞두고 WTO 논의의 최대 화두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리고 이러한 논의가 성공적으로 추진될 경우 제12차 각료회의의 최대 성과물이 될 수도 있다.

하지만 아직도 넘을 산이 많은 것도 사실이다. 일단 WTO 체제 개혁의 최대 당사국인 미국과 중국이 구체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미국이 다른 선진 국과 연합하여 투명성 및 통보 관련 제안을 했지만 그 이외 분야에서는 기존 불만을 재언급하는 수준이다. 중국 역시 특별한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다가 최근 통보와 관련해 벌칙보다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언급을 했을 뿐이다. 이에 따라 WTO 체제 개혁은 주요 이슈별로 향후 전망이 상당히 다를 것으로 예상된다.

1) 투명성 제고 및 통보 강화

투명성 제고 및 통보 개선은 향후 일정 부분 강화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예상

된다. 이는 투명성 제고 및 통보요건 준수가 WTO가 실제 그 기능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필요한 필수 전제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그 어떤 WTO 회원국도 이를 명시적으로 반대할 수 있는 명분이 없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WTO 회원국의 통보의무 준수를 위한 다양한 규제 강화가 예상된다.

다만 통보의무를 준수하지 못한 회원국에 대한 벌칙을 놓고서는 이를 주장하는 선진국과 이를 반대하는 개도국들의 대립이 예상된다. 즉 개도국들은 강한 벌칙보다는 통보를 유인하는 인센티브를 주장할 것이고 이에 대해 강력한이행 준수를 원하는 선진국들이 벌칙의 수위를 놓고 대립할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명성 제고 및 통보 개선의 대의를 거부하기 어렵기 때문에투명성 제고 및 통보 개선은 일정 부분 강화될 수밖에 없으며, 통보의무를 지키기 못할 경우 어느 정도의 벌칙조항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다. 특히 역통보의경우 벌칙이 아니기 때문에 새롭게 활용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이며 사실현재도 미국에 의하여 다양한 역통보가 이루어지고 있다.

한편 통보된 회원국의 통보 내용을 검토하는 모니터링 기능은 이전보다 강화될 것이 확실시된다. 이를 위해서는 기존 무역정책검토제도(TPRM)의 기능과 역할이 한층 강화될 수밖에 없다. 아울러 WTO 사무국의 역할이 강화되어회원국들의 무역정책이나 통보 내용을 정성적으로 검토하고 모니터링 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2) WTO 상소기구의 역할 명확화

WTO 상소기구의 역할과 기능 명확화는 논란이 따르겠지만 우선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만일 상소기구의 역할과 관련하여 미국이 제기한 문제가 해소되거나 해결책이 만들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2019년 말이 되면 상소기구의 정지라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진다. 즉 미국이 2019년 말까지 계속해서 상소기구위원 선임을 거부하는 가운데 상소기구의 기능 재정립 등 관련 개혁에

대한 미국의 요구가 적절히 수용되지 않을 경우 WTO의 분쟁해결기능은 정지될 수도 있다.

따라서 WTO 회원국들은 이러한 사태를 방지하기 위하여 일차적으로 상소기구의 개편을 포함한 분쟁해결제도의 개혁에 관해 다양한 논의와 집중적인 입장 절충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분쟁해결제도 개혁의 핵심에 있는 미국이 아직까지도 분명한 입장을 밝히지 않아 아직은 분쟁해결제도의 개혁 방향을 전망하기가 용이하지 않은 측면이 있다.83) 특히 가능성은 높지 않지만 미국이 자국의 국내법에 우선되는 현행 WTO 분쟁해결 판결 자체에 불만을 가지고 이 것을 고쳐보려고 할 경우 현행 분쟁해결제도의 폐지는 물론 WTO 체제 자체를 원하지 않을 수도 있다. 즉 과거 힘에 의한 GATT 체제로의 회귀를 원할 수도 있다고 볼 수 있으며, 이 경우 WTO 다자체제는 사활의 중대한 기로에 놓이게 될 것이다. 다만 미국도 WTO 체제의 붕괴를 바라지는 않는다고 보는데 이는 미국 역시 그동안 WTO 체제하에서 많은 혜택을 누려왔기 때문이다. 따라서 WTO 분쟁해결제도의 개혁은 미국이 제기하는 문제를 중심으로 이를 해결하는 방향에서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으며, 이 기회에 보다 근본적으로 상소기구위원의 임기나 상소기구의 역할 등이 보다 명시적으로 규정될 것으로 보인다.

3) 개도국 세분화 논의

개도국 세분화도 개도국들의 강력한 반발이 예상되지만 선진국들의 바람대로 어느 정도의 진전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개도국 세분화는 사실 WTO의 오래된 숙제의 하나였으며, 이 점은 개도국들도 잘 인식하고 있다.

⁸³⁾ 미국이 여러 차례에 걸쳐 상소기구에 대한 불만을 표명한 것은 사실이나 그렇다고 현행 분쟁해결제도 가 어떻게 바뀌어야 하는지 구체적인 입장을 명확하게 제시한 적은 없다. 이에 따라 향후 WTO 분쟁해 결제도가 어떻게 변할지를 예측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지금까지는 개도국들이 단합하여 선진국들의 개도국 세분화 주장에 강력히 반발해 이를 잠재워왔다. 개도국들은 개도국 세분화가 될 경우 현재 개도국 우대를 받고 있다고 해도 세분화로 인해 언젠가는 개도국을 졸업해 선진국 의무를 이행하게 될 것이라는 점을 우려해 개도국 세분화를 강하게 반대해왔다. 그러나 최근 상황은 지금까지와 다르게 흐르고 있다. 개도국들 사이에서도 개도국간 이질성이 뚜렷이 부각되고 있으며, 점차 선진국들의 논리에 수긍을 하는 개도국들이 늘어나고 있다. 이는 지난 무역자유화 동안 중국이나 인도, 브라질등 거대 개도국이 출현해 무역자유화의 혜택이 개도국 사이에서도 일부 거대 개도국에 편중되고 있다는 비판이 커졌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개도국들도 세분화에 반대만 하기는 어려운 상황이고, 특히 겉으로는 조용히 하고 있으나 실제로 공산품 시장개방 확대로 중국산 저가상품의 수입 증가를 우려하는 개도국들이 상당수 존재하기도 한다.

이에 따라 개도국간 이질성이 점차 확대되는 현실에서 개도국들도 그들간의 발전수준 격차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고, 이에 따라 모든 개도국이 동일한 의무이행을 하는 데 따른 문제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기도 하다. 따라서 개도국 세분화 논의는 비록 개도국의 저항이 있겠지만 부분적으로 진전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개도국 세분화가 진행된다고 해도 최빈개도국에 대한 의무면제는 변하지 않을 것이며, 아울러 최근 가입국(RAMs), 소규모 취약경제국(SVEs), 식량순수입개도국(NFIDC) 등 개도국 안에서도 추가로 융통성을 받을 수 있는 소규모 그룹들이 많이 존재하기 때문에 개도국 세분화로 인해 실제 개도국이 받을 부정적 영향은 일부 거대 개도국 또는 선진 개도국에 한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점도 개도국 세분화 진전 가능성을 높이는 점이다.

4) 복수국간협상방식의 활성화

복수국간협상도 기존 DDA의 일괄타결방식과 병행해서 활발히 추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복수국간협상은 그동안 개도국들의 반대로 활성화되지 못했다. 개도국들이 복수국간협상방식을 반대하는 이면에는 DDA에 대한 선진국들의 관심 저하와 함께 협상력 저하에 대한 우려가 내재해 있다. 개도국들은 복수국 간협상이 활성화될 경우 그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농업 등 기존 DDA 이슈에 대해 선진국들의 관심이 떨어지고 이에 따라 그만큼 합의 도출이 늦어지거나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반면 복수국간협상의 의제로 부상하고 있는 전자상거래, 투자원활화 등은 주로 선진국들의 관심사항으로 개도국들은 이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부족해 협상에 임하기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자칫 선진국의 들러리로 전략할 수 있음을 우려하고 있다.

따라서 복수국간협상이 이전보다는 활성화되겠지만 그와 동시에 개도국들이 원하는 DDA 일부 이슈에서는 현재와 같은 일괄타결방식의 협상도 동시에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최근 EU가 미국과 WTO 체제 개혁을 논의하면서 '신축적 다자주의(flexible multilateralism)'를 제시하고 있음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EU는 전자상거래, 투자원활화 등 선진국이 원하는 분야에서는 복수국간협상을 통해 성과를 도출하는 한편 개도국이 원하는 기존 DDA 이슈에 대해서는 일괄타결방식을 그대로 사용하는 신축적 다자주의 내지 '조화된 다자주의(harmonized multilateralism)'를 제시하고 있다.

한편 아직도 상당수 개도국들은 DDA가 계속되어야 한다고 믿고 있으며, 이에 DDA의 성과 도출을 희망하고 있다. 따라서 WTO 개혁 논의에 개도국들의 참여를 높이기 위해서는 개도국의 관심사인 DDA 이슈 내지는 개발 이슈를 포함시킬 수밖에 없을 것이다. 다만 미국 등은 이에 대해 강력히 반발하고 있기때문에 그 수준은 종전의 DDA와는 성격이 다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같은 신축적 다자주의 내지 조화된 다자주의가 실현될지는 미지수이나 최소한 복수

국간협상방식을 통한 논의가 이전보다 더욱 활성화될 것임은 분명하다.

5) WTO 체제 붕괴로 연결될 가능성

선진국 주도의 WTO 체제 개혁 논의가 선진국이 원하는 최소한의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WTO 개혁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WTO 다자체제는 선진국 연합 및 거기에 동조하는 국가들과 그 외의 개도국 연합으로 양분될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 경우 현재의 WTO 다자체제는 사실상 더 이상의 존속이 어려워지는 최악의 상황을 맞을 수도 있다.

WTO 체제의 개혁이 순조롭게 진행되지 않을 경우 미국은 비록 많은 회원국들의 반발이 있더라도 상소위원 임명 저지를 통해 가장 쉽게 상소기구를 정지시킬 수 있으며, 이는 곧 바로 WTO 분쟁해결기능 정지로 이어진다. 그리고 현 WTO 체제의 문제점을 들어 유사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국가끼리의 복수국간협상을 통해 그들만의 새로운 무역규범과 제도를 만들어낼 수도 있다. 과거 미국이 포함된 TPP나 미·EU TTIP, 또는 최근 미국이 제시하고 있는 인도-퍼시픽도 그와 같은 한 예가 될 수 있다. 이 경우 DDA는 더 이상 진전이 불가능해무산될 것이고 WTO 체제는 그 틀만 남은 채 선진국 연합 및 거기에 동조하는국가와 그 외 개도국 연합의 양분 내지 중도그룹 등 3개 그룹으로 나누어져 사실상 존속이 어려울 수도 있을 것이다.

나. 정책 시사점

최근 선진국 주도의 WTO 체제 개편 논의는 그 종착점이 자칫 WTO 다자체 제의 붕괴로까지 연결될 수 있다는 점에서 무역과 통상이 경제성장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다른 국가보다 큰 관심을 가지고 이를 면밀 히 검토해 보지 않을 수 없다. 지금까지의 논의 및 이슈별 향후 전망에 기초해 볼 때 이러한 WTO 체제 개혁 논의가 우리에게 주는 정책 시사점은 다음과 같 이 요약해 볼 수 있다.

1) 보조정책의 재점검 및 통보시한 준수

투명성 제고 및 통보 강화의 이면에는 미국 등 선진국들의 중국이 운용하고 있는 다양한 산업보조금에 대한 정보를 입수하고자 하는 목적이 내재해 있다. 통보 강화를 통해 중국이 운용하는 또는 중국의 국영기업을 통해 지급하는 산업보조금의 정확한 실체를 파악하는 것이 주목적이다. 이후 당연히 보조금의 특성을 파악하여 문제를 발견할 경우 상계관세를 부과할 것으로 예상되며, 설령 상계관세 부과가 여의치 않다고 해도 기존 보조금의 개념을 재정립하고 금지보조금의 범위를 이전보다 확대하는 등의 조치를 통해 중국의 산업보조금을 최대한 규제하려고 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향후 보조금에 대해서는 보다 엄격한 분류 및 국제적 검토가 예상 되고, 우리나라도 이에 대비해 현재 운용 중인 보조정책이 WTO 규정에 합치 하는지 등을 엄격한 잣대로 재검토하여 사전에 다른 WTO 회원국의 상계관세 부과 가능성을 최소화해야 할 것이다. 특히 국가의 산업발전 전략에 따라 핵심 산업 부문을 지원하는 정부의 보조정책은 사전에 WTO 보조금 협정과의 합치 성이 충분히 담보되지 않으면 향후 강화된 보조금 규정에 의거하여 상계관세 부과대상이 될 수도 있음에 주의해야 한다.

통보시한 미준수에 따른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 우리나라의 정책적 노력도 필요하다. 향후 통보시한을 지키지 않으면 또는 통보내용이 부실할 경우 다양 한 형태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상대국이 우리나라의 보조제도를 역통 보할 경우 자칫 역통보된 보조금이 자동적으로 상계관세 부과대상 보조금이 될 수 있어 이에 대한 철저한 통보 준비가 필요하다. 이러한 준비는 농업보조금에도 적용된다. 따라서 농업보조금도 허용보조금 의 경우 농업협정문에 제시된 기준에 합치하는지 여부를 철저히 재검토할 필요 가 있으며, 특히 통보시한은 가급적 준수할 필요가 있다.84)

2) 개도국 세분화에 대비

개도국 지위의 유지는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DDA 농업협상 대책의 기본 전 제였다. 이는 개도국 지위 결정에 대한 WTO의 명시적 기준이 없어 자체적으로 선언하고 난 다음 이해당사국과의 양자협상을 통해 상호 타협하면 개도국 지위 유지가 가능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최근 선진국들의 개도국 세분화 논의 주장을 감안해볼 때 향후 우리나라의 개도국 지위는 유지되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다. 특히 농업부문은 개도국과 선진국 간 의무이행의 수준 차가 매우 크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선진국 의무이행 시 농업부문에 상당한 부정적 영향이 예상된다. 따라서 이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 개도국을 졸업하더라도 일정한 유예기간을 확보하는 등의 조치 마련이 필요한데, 특히 개도국 세분화 논의에 반대하기보다는 오히려 적극적으로 임하면서 개도국을 졸업하더라도 일정한 유예기간을 확보하는 전략이 중요하다. 아울러 협상을 통해 개도국졸업을 결정할 심사기간, 이후 유예기간, 유예기간 동안의 의무부담 수준 등에서 유리한 조건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3) 관련 WTO 논의에 적극 참여

향후 WTO 체제 개혁 논의는 세부 이슈별로 활발한 논의가 전개될 전망이므로 우리의 이해가 걸린 부분, 특히 투명성 및 통보, 개도국 세분화 등의 의제에

⁸⁴⁾ 우리나라의 농업보조금 통보는 2011년까지만 되어 있어 미국, EU의 2014~15년에 비해 3~4년이 늦은 상태이다.

대해서는 논의에 적극 참여하여 우리나라의 입장을 최대한 반영시켜야 한다. 그동안 WTO 다자통상은 양자 FTA나 RTA 등 양자 또는 지역간 자유무역협정에 밀려 소외되어왔다. 그러나 최근 WTO 체제 개편 논의는 우리나라의 이해와 직접 연계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이를 통해 중국 내수시장에서의 불공정한환경개선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⁸⁵⁾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우리의 이해를 효과적으로 반영시켜야 한다.

⁸⁵⁾ 중국 내수시장에서 중국기업과의 불공정한 경쟁환경을 개선한다는 측면에서 관련 논의에 우리나라가 적극 참여할 필요가 있다. 다만 개도국 졸업에 따른 부담 측면에서는 신중한 접근도 요구된다.

제4장 **《**

우리나라 다자통상정책의 신 방향



WTO 체제는 출범 이후 괄목할 만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제2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자체의 구조적 문제점을 가지고 있었으며, 아울러 글로벌 통상환경의 변화에도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는 한계를 표출하고 있다. 한편 우리나라의 다자통상정책은 WTO와 불가분의 관계이고, 따라서 WTO 체제 개혁의 근본 방향에 대한 우리나라의 입장을 생각해보지 않고 우리나라의 다자통상정책 방향을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이에 따라 이 장에서는 먼저 1절에서 WTO 체제가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한계를 감안해 WTO 체제 개혁에 대한 우리나라의 입장을 모색해보았다.

2절에서는 최근 선진국 주도로 추진되고 있는 WTO 체제 개편방안에 대하여 주요 이슈별로 우리나라의 대응방안을 제시하였다. 이 절은 우리나라의 WTO 협상 대책으로 의미가 크다.

3절에서는 WTO 체제의 한계와 최근 논의되고 있는 WTO 체제 개혁방안, 급속히 변화하고 있는 글로벌 통상환경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우리나라의 다자 통상정책 방향을 제시하였다. 먼저 중견 통상국가로서 WTO 체제 안에서 우리 나라의 위상을 강화시키는 것이 중요하며, 아울러 글로벌 통상의 화두인 포용적 무역을 선도해 나가면서 지역무역협정의 다자화를 추진해 분절된 FTA의 단점을 보완하는 것이 큰 방향이 되어야 함을 제시하였다. 이와 함께 기후변화 등환경을 감안한 지속가능한 다자통상을 제안하고 각각에 대하여 구체적인 정책방안을 기술하였다.

1. WTO 체제 개혁의 근본 방향

가. 의사결정방식의 개선: 참여 국가 수 확대 및 투명성 제고

WTO의 의사결정방식 문제는 오래전부터 지적되어온 WTO가 안고 있는 대

표적인 문제 중 하나이다. 핵심은 WTO의 모든 개별 회원국이 각각 동등한 지위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대부분의 회원국들이 WTO의 주요 의사결정과정에서 배제되는 이율배반적 상황이다. 이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WTO의사결정이 '총의(consensus)'에 의해 이루어지긴 하지만 동시에 실제 의사결정에서는 '힘(경제력)'이 작용하기 때문이다. 결국 의사결정이 총의를 따른다고 해서 모든 회원국이 동등한 지위를 갖는 것은 아니다. 경제 규모가 작고 협상력이 약한 개도국은 특정 사안에 대해 아무리 명백하게 반대의사를 밝힌다고해도 나머지 회원국이나 또는 의장에 의해 얼마든지 배제당할 수 있다. 결국 표면상 WTO의 모든 개별 회원국이 평등하다고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개별 회원국의 경제력에 비례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를 종종 '평등과 경제적 이익 간의미묘한 균형'이라 말하기도 하며 중요한 전통이자 관례이기도 하다.

이에 따라 WTO의 주요 의사결정은 전체 회원국이 모이는 각료회의나 일반 이사회에서 이루어지지만 이것은 형식적인 것이고 대개는 그 이전에 다양한 비 공식회의를 통해 의견을 모으는 과정을 거친다. 대표적인 비공식회의가 주 제 네바 대사들로 구성된 수석대표회의(HOD: Head of Delegation)이다. 수석 대표회의는 모든 회원국에게 공개되어 있으나 실제는 사안별로 주요국 대사들 만으로 구성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는 WTO의 회원국 수가 증가하면서 전체 회원국이 모여 합의를 도출하는 것이 그만큼 어려워졌고 또한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합의 도출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자연스러운 결과이다.

문제는 여기에 초대받지 못한 회원국의 불만이다. 공표되기 이전까지 회의 내용은 물론 합의 결과를 알 수 없고, 이에 따라 자국의 이해를 반영시킬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는다. 이러한 이유로 WTO의 의사결정과정이 비민주적이라고 비난을 받는다. 그러나 그렇다고 모든 회원국의 대표가 모여 회의를 통해 합의를 도출하기를 기대하는 것도 무리한 주장이다. 지금껏 전체 회원국이 모여 주요 의제에 대한 합의를 도출한 적은 한 번도 없기 때문이다. 이것이 다양한 비공식회의나 소규모 그룹회의를 통한 의사결정이 계속 유지되는 이유이기도 하다.

따라서 비공식회의를 통한 의사결정 프로세스를 일방적으로 무시하기는 어렵다. 결국 비공식회의에 참여하는 회원국의 수를 늘리거나 또는 참여하지 못한 국가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조치를 제도적으로 확보하는 것이 실현 가능한 의사결정방식의 개혁방안이 될 것이다. 아울러 비공식회의라 해도 그 절차적 투명성을 높일 경우 그만큼 반발을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 내부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는 조치도 중요하다. 이러한 관점에서 의사결정방식의 개선방향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주요국 비공식회의에 참여하는 국가의 수를 일정 부분 확대시킬 필요가 있다. 이는 비록 합의 도출의 효율성이 다소 낮아진다고 해도 보다 많은 수의 국가들이 참여함으로써 비공식회의의 정당성을 높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그만큼 참여하지 못하는 국가의 반발도 무마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세계무역을 기준으로 일정 규모 이상인 국가들을 주요국 비공식회의에 참여하는 국가로설정하되, 지역별 안배 및 선진국과 개도국 간의 안배도 필요하다. 물론 의제에따라 큰 이해관계가 없는 경우 이해관계가 큰 다른 국가를 비공식회의에 참여하는 국가의 수를 확대시키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둘째, 비공식회의에 참여하지 못하는 회원국을 위하여 회의 소집 및 논의 주제 등이 사전에 충분한 기간을 가지고 공지되어야 한다. 비공식회의에 초대받지 못한다고 해도 사전에 어떠한 의제가 논의되는지 그리고 어떤 회원국이 참여하는지를 알면 참여하지 못한 국가들도 사전에 대비할 수 있는 시간을 갖게된다. 예를 들어 논의 주제가 자국의 이해가 걸린 민감한 사안이라면 이에 대한대책을 만들어 그것을 대신 언급해줄 참여 회원국과 사전 접촉을 할 수도 있다.이를 통해 비공식회의에 초대받지 못한 회원국들의 반발을 상당히 줄일 수 있음은 물론이다.

셋째는 비공식회의에 참가하지 못한 회원국이 사후 의견을 개진할 기회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것이다. 위의 첫째와 둘째 방안이 보장되어 잘 운영된다 면 사후 의견 개진의 필요성은 그만큼 떨어질 것이다. 그러나 위의 두 가지 개선방안에도 불구하고 회원국의 능력에 따라 이를 적절히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예를 들면 통보나 분석능력이 떨어져 자국의 입장을 적절히 제시하지 못할 수도 있다. 이러한 회원국이 다른 선진 회원국이나 또는 다른 국제기관, NGO 등의 도움을 받아서 자기의 입장을 제시할 기회가 제도적으로 주어지면 그만큼 비민주적 의사결정이라는 불명예를 줄일 수 있다.

이에 WTO 의사결정방식의 개혁과 관련된 우리나라의 입장은 기존 비공식회의를 지지하되 여기에 참여하는 회원국 수의 확대와 사전 통보 등 운영절차의 투명성을 제고하며, 사후 의견표명 기회를 제도적으로 만드는 것이 되어야할 것이다.

나. 일괄타결방식의 개혁: 신축적 다자주의

WTO의 일괄타결방식은 지금까지 다자무역협상의 핵심 원칙으로 사안이 복잡한 다자협상의 타결에 크게 기여하였다. 그러나 WTO 회원국 수 확대로 사안별 · 협상의제별 참여국의 이해관계가 복잡해지면서 일괄타결방식에 의한 합의 도출 가능성에 회의가 발생하기 시작하였다. 뿐만 아니라 현재의 DDA 부 진도 합의 도출을 어렵게 만드는 일괄타결방식 때문이라는 지적도 제기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괄타결방식이 갖는 장점은 뚜렷하다. 협상 내에서는 물론 협상간에도 상호 주고받기가 가능하기 때문에 비록 일부 의제나 협상에서 만족하지 못한다고 해도 나머지 의제나 협상에서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으면 전체적인 이익의 균형을 맞추어 협상 전체를 일시에 타결할 수 있다는 점이 그것이다. 특히 개도국들은 그들이 상대적으로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농업 등 1차 산업 관련 시장개방협상에서 선진국들로부터 확실한 이익을 확보해야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떨어지는 다른 분야에서 손해를 보더라도 전체적으로 이익의 균형을 맞출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따라서 일괄타결방식에 의한 합의

도출이 어렵다고 해도 개도국들이 이를 포기하기란 쉽지 않으며, 개도국들이 반발하는 한 DDA에서 일괄타결방식을 포기하는 것도 사실상 실현 가능성이 매우 낮다.

결국 일괄타결방식을 인정하는 틀 안에서 새로운 협상방식을 도입하는 것이 타협의 방향이다. 즉 개도국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DDA 일부 의제에 대해서는 종전과 같이 일괄타결방식을 따르되, 합의 도출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의제나 또는 선진국들이 새롭게 논의하자고 주장하는 신 무역 이슈 등의 의제에 관해서는 복수국간협상방식을 도입하는 것이 그것이다. 개도국으로서는 그들의 관심분야에서 일괄타결방식이 적용됨으로써 일종의 협상 레버리지를 확보할 수 있게 된다. 선진국도 그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야에 복수국간협상 방식이 적용되므로 나름 균형을 이루고 있다. 따라서 일괄타결방식과 복수국간협상을 섞어서 진행하는 것이 타협점이 될 수 있다.

문제는 미국 등 일부 선진국의 입장이다. 미국은 지난 발리 각료회의에서 회원국들이 DDA 연장에 대해 구체적으로 합의한 바 없기 때문에 DDA는 종료되었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더 이상 DDA에 대한 논의는 존재하지 않으며 만일논의가 된다면 그것은 WTO하에서의 새로운 다자협상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미국의 시각에서 본다면 비록 DDA 일부 이슈에 한해 일괄타결방식을 적용한다 해도 그 자체가 DDA 연장을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미국이 받아들일지는 의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원하는 전자상거래 등 신 무역 이슈에서 복수국간협상이 적용된다는 점은 미국을 유인할 수 있는 좋은 레버리지가 됨은 물론이다.

최근 EU는 미국과 WTO 체제 개혁방안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신축적 다자주의(flexible multilateralism)를 제안하면서 위에서와 유사한 논의를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를 고려하면 일괄타결방식의 개혁방안은 그 자체를 폐기하거나 없애버릴 수 있는 사안은 아니며, 개도국들의 관심을 반영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일정 부분에서 적용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대신 선진국들이 관심을 가

지고 있는 주요 의제에 복수국간협상이 적용된다면 나름 선진국과 개도국 간 이익의 균형이 맞추어졌다고 볼 수 있다. 이런 의미에서 일괄타결방식의 개혁방안은 신축적 다자주의 또는 균형 잡힌 다자주의(balanced multilateralism)가될 수 있다. 이에 우리나라도 일괄타결방식의 개혁과 관련하여 일괄타결방식에 복수국간협상이 적절히 가미된 신축적 다자주의 또는 균형 잡힌 다자주의의 입장을 견지할 필요가 있다.

다. 분쟁해결 이행체계의 개선: 보복조치의 다자간 확대

상소기구를 포함, 소송절차상의 다양한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WTO 분쟁해 결제도가 활성화되면서 발생한 이전에 예상하지 못한 구조적 문제가 바로 이행 체계와 관련된 문제이다.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WTO 분쟁해결제도는 법적인 구속력을 가지는 동시에 회원국들이 실제 판결을 준수ㆍ이행하게 함으로써 WTO 체제를 지탱하는 중추로 작용하였다. 그러나 분쟁해결에 따라 설치된 패널과 상소기구의 판결이 제대로 이행되지 못하면서 이행패널소송이 증가하게 되었다. 특히 미국에 의한 미이행 문제가 반복되고 보복중재가 증가하자 기존의 보복절차가 판결이행을 촉진하는 중요한 장치라는 믿음에도 금이 가기 시작하였다.86)

이행체계 문제가 가장 극명히 대두된 계기는 미국의 독특한 WTO 판결 이행 관련 국내법 때문이다. WTO 회원국 대부분은 패널이나 상소기구 위반 판정이 내려지면 관련 국내법이나 행정조치를 수정한다. 특히 반덤핑관세 부과와 같은 행정조치는 입법절차가 수반되는 경우와 달리 정부의 관련 행정절차를 통해 대부분 신속하게 판결결과를 이행할 수 있다. 그러나 미국의 경우 무역구제조치

⁸⁶⁾ 미국과 안티구아 간 패널에서 미국이 패소해 안티구아가 매년 약 34억 달러에 달하는 보복조치 승인을 신청했으나 2,100달러만이 승인되면서 보복조치가 사실상 의미 없는 수준으로 전략하였고 이후 WTO 분쟁해결의 이행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게 된 것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는 WTO 판결을 이행하는 구조가 매우 복잡하다. 미국의 UR 이행법 제129조 'WTO 패널보고서 이행조치' 조항은 반덤핑관세, 상계관세, 세이프가드와 관련하여 상무부나 국제무역위원회의 조치가 WTO 의무 위반이라고 판정되는 경우, USTR이 해당 기관에 문제가 되는 조치의 수정을 지시하게 되어 있다. 이에 따라 해당 기관이 국내법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판결이행안을 제출하면 WTO가 설정한 이행기간 종료시점 이후부터 거래되는 물품에 대해 수정관세가 적용된다.87) 따라서 미국의 제로잉 방식에 의한 계산방식이 WTO 위반 판정을 받아도 USTR은 제129조하에서 개별적으로 상무부와 ITC에 판정이행을 지시한 후에야 관세의 수정을 기대하게 된다. 2001년 7월 캐나다는 이러한 미국의 제129조 절차를 WTO에 제소했다. 그러나 패널은 미국의 제129조가 반드시 WTO 의무 위반을 강제하는 조치라는 점을 캐나다가 입증하지 못했다고 판결하면서 사실상 헌법체계상 회원국들이 제각기 다른 이행체계를 운용할 수 있다는 점을 재확인했다.88)

현재 WTO 체제에서는 장래교정제도(prospective remedial system)만 허용되고 있다. 즉 특정 조치가 WTO 위반으로 판결되었다고 해도 해당 조치를 이행기간 종료 시까지 WTO 협정에 합치하는 방식으로 수정하기만 하면 된다. 따라서 패널 패소에도 불구하고 소송절차 소요기간 동안(약 2~4년) WTO 협정을 위반함으로써 경제적 혜택을 기대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문제는 무역구제 조치의 경우 더욱 심각하다. 불법적 반덤평관세의 경우 불법 판결이 내려지기까지 2~3년 기간이 소요되는데 이행기간 종료시점까지만 해당 조치를 철폐하면 판정 결과를 모범적으로 이행한 셈이 되지만 그 기간 동안 불법으로 징수한 관세는 환급하거나 보상할 의무가 없어 상당한 재정적 이득을 취하게 된다.89)

⁸⁷⁾ 이러한 미국 국내법 절차에 대한 WTO분쟁해결 판결은 WTO(2002) 참조.

⁸⁸⁾ *Ibid.*, pp. 34-65.

⁸⁹⁾ 한 · 미 세탁기 반덤핑관세 분쟁에서 미국은 패소한 후로부터 15개월의 이행기간 종료시점(2017년 12월 26일)까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이후 삼성과 LG가 피해 최소화를 위해 미국 내 세탁기 생산공장을 설립하자, 미국은 이를 빌미로 보복중재에서 두 기업이 미국 내에서 세탁기를 생산 · 판매를 할 예정이기 때문에 불법 반덤핑관세에 의한 한국 측의 수출 피해가 없다고 주장하기도 하였다.

다른 한편 미국과 인도네시아의 패널90)에서 보듯이 미국과 인도네시아가 상대방의 불법조치를 상호 묵인하기로 합의하고 양국이 만족할 만한 합의를 WTO 분쟁해결기구에 통보하고 사안을 종결하는 경우도 있다.91) 또한 미국-브라질 간 면화보조 분쟁에서 보듯이 미국이 브라질 면화연구소에 3억 달러를 송금하는 조건으로 양국이 분쟁합의 결과를 통보한 예도 마찬가지이다.92) 이는 WTO 협정에 위반되는 조치들이 이해당사국간 합의로 묵인되는 상황으로, WTO 체제의 정합성과 공정성을 크게 훼손하는 행위이다. 특히 미국-브라질 면화보조 사례는 EU의 설탕보조금과 함께 WTO 내 대표적인 불법 농업보조금으로 간주되던 미국의 2008년 농업법(US Farm Bill)하의 면화보조금이 WTO 분쟁해결기구의 판결을 통해 개편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름을 바꾸어 유지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이는 WTO 농업협정문에서 제시된 세계농업의 개혁이라는 근본 원칙을 손상시키는 행위임이 명백하다.

따라서 향후 WTO 분쟁해결제도 개혁의 핵심에는 이행담보 문제가 있으며, 우선적으로 분쟁해결 이행체계를 강화해 의도적으로 판결을 이행하지 않거나 지연하는 문제를 제도적으로 방지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패널의 승소 국에게만 보복권한을 허용하는 것을 확대하여 WTO 전체 회원국 차원에서 보 복조치를 할 수 있게 만들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패소국이 이행의무를 준수할 수 있게끔 유도하는 것이다. 이 같은 문제는 분쟁해결 판결이 다자 차원에서 진 행되는 데 비하여 이행의 최종 단계인 보복조치만은 양자차원에서 허용되기 때 문에 발생하는 구조적 문제이기 때문이다.

분쟁해결기구의 권고사항이 이행되는 경우 그 혜택은 모든 WTO 회원국에 게 돌아가며, 즉각적 이행이 어려워 보상조치에 합의하게 되는 경우에도 기본

WTO 판결의 소급적용과 구제조치와 관련해서는 Mavroidis(2017) 참고.

⁹⁰⁾ 당시 원래 패널 분쟁에 제3자 참여를 했던 EU가 미국에 대해 보복중재 신청을 한 인도네시아에 대해 이행패널절차를 먼저 진행하지 않고 중재절차를 요청했다는 사유로 인도네시아 정부를 제소했다. WTO(2014a) 참고.

⁹¹⁾ WTO(2014b).

⁹²⁾ WTO(2014c).

적으로 보상조치로 인한 시장개방안은 모든 회원국에게 적용된다. 그러나 패소국이 끝까지 이행을 하지 않으면 보복조치는 소송을 제기한 제소국에게만 승인된다. 즉 피소국이 패소하였으나 이행을 하지 않는 경우 무역관계가 없는 제소국은 사실상 보복권한을 받을 근거가 없어 판결을 실제로 이행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다.

따라서 분쟁해결제도 개선은 이행체제, 특히 보복조치 승인에 있어 최소한 제3자 참여국도 포함시키거나 또는 보복조치를 다자차원으로 확대하여 피소국의 이행을 보다 효과적으로 유인할 수 있어야 한다. 보복조치가 제3자 또는 다자간으로 확대될 경우 피소국이 제소국에 대해 무역상 피해를 촉발한 것보다 과도한 무역보복을 받게 되는 문제가 있으나, 이는 중재판결을 통해 국별 보복조치 한도를 설정하는 방식 등으로 상호 어렵지 않게 풀 수 있는 문제이다. 결국 보복조치는 그 자체로 제소국이 혜택을 얻는 것보다는 피소국의 불법조치를 WTO 의무에 합치하는 방식으로 개편하는 것이 근본 취지다. 따라서 판결을 미이행하는 경우 초래될 수 있는 일정 수준의 과도한 부담은 이행을 유인할 수 있어 법적으로 충분히 타당한 대안이 될 수 있다.93)

2. WTO 협상 대책

이 절에서는 우리나라 다자통상정책의 일환으로서 현재 WTO에서 논의되고 있는 WTO 체제 개혁에 대한 우리나라의 협상 대책을 모색하는 차원에서의제별로 우리나라의 협상 대책 방향을 제시한다. 이는 우리나라의 WTO 협상대책 수립에 직접적으로 기여할 것이다.

⁹³⁾ 경쟁법 또는 공정거래법의 경우, 흔히 세배 보상(Treble Damage) 혹은 징벌적 보상(Punitive Damage)을 통해 이러한 위법행위를 제한하고 있다.

가. 투명성 제고 및 통보 강화

투명성 제고 및 통보 강화에 대해 우리나라는 원칙적으로 지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는 해당 사안이 WTO 체제가 적절히 작동하기 위한 전제 조건이기 때문이다. 규범에 기초한 다자통상체제를 선호하는 입장에서 WTO 회원국으로서 동 협정에 제시된 기본 통보의무를 철저히 준수하자는 제안에 반대할명분은 없다. 이러한 이유로 중국을 비롯한 개도국들도 선진국들의 투명성 제고 및 통보 강화를 명시적으로 반대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세부 사안을 두고 우리 입장을 구체적으로 밝힐 이유는 없다. 특히 통보 요건을 준수하지 못할 경우 논의될 벌칙조항에 대해서는 우리 입장을 명시적으로 밝히기보다 전체적인 논의 동향을 보아가며 우리 입장을 전략적으로 표명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 이는 우리나라도 투명성 제고 및 통보 강화에서 완전히 자유롭지는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전체적인 논의과정에서 개도국이 선진국의 제안에 강력히 반발할 것으로는 예상되지 않는다. 그러나 미통보 시의 벌칙, 즉 통보요건을 제대로 준수하지 못할 경우 선진국들이 주장하는 벌칙의 강도를 놓고서는 선진국과 개도국 간 침예한 대립이 예상된다. 특히 중국, 인도 등 개도국들은 벌칙조항 도입에 강력히 반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벌칙의 세부 사안에 우리나라가 나서서 구체적인 입장을 명시적으로 밝히기보다는 개도국과 선진국 간 대립을 지켜보면서 대체로 투명성을 제고하고 통보를 강화하는 기본 취지에 찬성하는 입장을 견지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세부 이슈별 입장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원칙적으로 투명성 제고 및 통보 강화는 WTO 체제의 기능과 역할 정 상화에 필수적인 부분이므로 이에 적극 찬성할 필요가 있다.

둘째, 다만 통보능력이 부족한 국가의 경우 적절한 고려가 필요하며. 이와 함

께 해당 국가에 대한 WTO 무역정책검토기구(TPRB: Trade Policy Review Body)의 기술지원이 필요함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즉 통보능력이 부족한 국가와 WTO TPRB를 제도적으로 연계시키는 장치를 통해 WTO TPRB가 해당국가에게 필요한 기술을 지원할 뿐만 아니라 해당국의 무역 및 국내조치 현황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로서 TPRB 활용이 중요하다. 이는 해당국의 무역정책 검토는 물론 역통보 및 통보 내용의 평가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

다른 한편 사실상 제네바 주재 대사들의 사교모임으로 전략한 TPRM을 정상화시키는 측면에서도 TPRB를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다. 이를 기회로 WTO 회원국의 통보만을 전담으로 관리, 평가하는 전담국의 설치 및 관련 데이터베이스 구축도 필요하다.

셋째, 역통보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적극 지지 입장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역통보는 고의로 통보를 늦추거나 또는 불성실한 통보를 방지하는 효과적인 대 응조치가 될 수 있다. 특히 이를 통해 지금까지 제대로 통보되지 않던 보조금 등 WTO 회원국의 다양한 국내 조치들이 투명하게 공개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94) 우리나라도 일부 국내 조치들에 문제가 있다면 이번 기회를 통해 WTO의 해당 규정 및 통보 규정과의 합치성을 검토하여 운용방향을 적절히 수정하고 이를 철저히 통보할 필요가 있다.

넷째, 통보의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벌칙조항에 대해서는 선진국과 개도 국의 입장을 조정해주는 역할을 해야 한다. 선진국의 강한 벌칙조항은 사실상 중국 등 개도국들의 반대에 따라 쉽게 관철되기 어려울 것이다. 그렇다고 통보 를 하지 않은 국가를 그대로 두는 것도 문제이다. 통보능력이 부족한 국가는 이미 벌칙 적용의 예외를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나머지 통보를 미준수하는 경 우는 통보능력 부족이 아니라 고의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따라서 일정한

⁹⁴⁾ 특히 중국의 국영기업을 통한 다양한 보조금 등이 투명하게 드러날 것으로 예상되어 우리나라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벌칙 적용이 필요하다는 점에는 공감한다. 그리고 그 강도는 굳이 우리가 나서 지 않더라도 선진국과 개도국 간 대립과 타협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조정될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벌칙 관련 구체적인 입장 표명은 적절히 제어될 필요가 있다.

다만 회원국 자격정지와 같은 강한 벌칙이 없더라도 기존 행정·정치적 제재 효과가 예상 밖으로 상당히 클 수 있다는 점은 밝힐 필요가 있다. 실제 미통보 국으로 분류되어 WTO 분담금을 증액하고 거기다가 정기적으로 WTO 사무국이나 TPRB에서 관련 미통보 사실을 적시하여 WTO 전체에 공개하며, 언제 통보할지를 계속 추궁당하면서 WTO 내 각종 위원회의 정례회의와 일반이사회 등에서 정식 의제로 미통보국에 대한 협의를 한다는 것은 행정적으로나 정치적으로 상상 이상의 과도한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통보 문제는 앞서 언급한 TPRM과 연계시켜 근본적으로 통보결과를 사후 평가하는 안정적인 제도 마련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결국 통보결과 평가가 엄격할수록 통보 자체가 정확해지고 그만큼 허점이 생길 가능성이줄어들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사후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그 과정에서 문제가발생할 경우 관련 WTO에 규정에 의거 자동적으로 상계관세나 그 밖의 제재대상으로 간주되는 제도적 장치를 만드는 것이 현행 통보 문제를 해결하는 중장기 해법이 될 수 있다.

나. WTO 분쟁해결제도의 개혁

WTO 분쟁해결제도 개혁은 우리나라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안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WTO 분쟁해결이 미국의 영향력에서 벗어나 보다 객관적이기 위해서 우리나라도 적절한 역할을 해야 할 것이다.

일단 분쟁해결제도가 갖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점, 특히 이행의 효과성을 제

고하기 위한 입장은 앞에서 언급한 방향을 따르면 될 것이다. 문제는 미국이 구체적으로 불만을 제기한 상소기구의 개혁 논의에 대한 우리나라의 입장이다. 일단 상소기구의 역할과 관련하여 미국이 제기한 문제점이 해소되지 않거나 회원국간에 이에 대한 어떤 타협점이 만들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2019년 말이 되면 상소기구의 정지라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진다. 즉 미국이 2019년 말까지 계속해서 상소기구위원 선임을 거부하는 가운데 WTO의 분쟁해결기능은 정지될수도 있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나라를 포함한 WTO 회원국들은 이러한 사태를 방지하기 위하여 일차적으로 상소기구의 개편을 포함한 분쟁해결제도의 개혁에 관심을 기울여야 하며, 우리도 이를 강조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전반적으로 미국의 불만을 적절히 수용하는 선에서 우리나라의 입장을 정립하는 것이 우리의 협상대책 방향이 될 것이다.

첫째, DSU 제17.5조에서는 "상소기구 절차는 예외 없이 90일 이내에 종료 되어야 한다(In no case shall the proceedings exceed 90 days)"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그동안의 상황을 보면 상소심 심리 90일을 준수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판단된다. 일반적으로 1년이 소요되도록 규정한 패널절차도 거의 대부분의 경우 1년 반에서 2년의 기간을 소진하는 상황에서, 그나마 상소심이 90일 요건을 최대한 맞출 수 있도록 노력해온 것은 사실이다.95) 최근들어서야 90일 기한을 맞추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상소심 심리기간은 현행 90일 시한을 준수하는 것에 동의하되 현실적으로 이를 지키기 어려운 상황을 감안하여 상소심 설치 결정이 있은 직후 1주일 이내에 상소기구와해당국 간의 협의를 통해 시한 연장을 허용할 필요가 있다.

둘째, 임기가 만료된 상소기구위원의 상소심 관여 역시 상소기구위원의 정원

^{95) 2000}년대까지도 EC - Hormones(DS37), US - Lead Bars(DS35), EC - Asbestos(DS), Thailand - Steel(DS) 등의 일부 상소심에서 90일을 초과하여 최종보고서가 회람된 적이 있었으나 대부분 기한을 충족했다. 그러나 2014년부터는 거의 대부분의 상소심에서 90일 기한을 초과하고 있는데 EC - Aircraft 이행분쟁에 대한 상소심의 경우 579일이 소요되었다.

을 대폭 늘리지 않는 이상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 상소심리 추세를 감안할 때 현실적으로 그 필요성이 충분히 인정된다. 상소기구작업절차(Working Procedures for Appellate Review)% 제15조에 따르면 임기가 만료된 상소기구위원에 대해서 상소기구가 승인하는 경우 분쟁해결기구에 통보하고 해당 분쟁의 상소절차가 종결될 때까지 계속 위원직을 수행하도록 허용하고 있다.97) 이에 대해 미국은 상소기구위원의 임기 문제는 분쟁해결기구가 결정할 사안이며, 상소기구 승인에 의한 사실상의 임기 연장은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미국이 제기하는 문제를 수용하여 상소기구에서의 결정보다는 분쟁해결기구나 또는 일반이사회에서의 결정을 통해 이를 인정하는 것을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 단 상소심 개입이 가능한 사안은 임기 중 설치된 상소심으로 제한할 필요가 있다.

셋째, 위의 상소심 심리기간 준수 및 임기 만료 상소위원 개입 등의 문제는 근본적으로 분쟁이 1심인 패널에서 끝나지 않고 대부분이 상소하기 때문에 일어난 결과이며, 상소기구위원의 부족도 원인 중하나이다. 따라서 근본적으로 캐나다가 제안한 것처럼 상소를 자제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그러나 회원국의 상소권리를 침해할 수 없기 때문에 상소심에 준하는 중재 등의 제도적 장치를 만드는 것도 생각해볼 수 있다. 현행 7명으로 되어 있는 상소기구위원의 정원을 두 배로 늘리는 것도 필요하며, 현재 4년 임기에 연임이 가능하게 되어 있는 임기도 대폭 늘려 단임제를 추진하되 매 2년마다 3명씩 교체되도록 해서 연속성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다.

넷째, 그 외 상소기구의 역할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미국의 입장을 존중해 줄 필요가 있다. 미국이 제기한 상소기구의 판결권한에 대한 문제는 상소기구 가 조정할 수 있는 사안으로서 DSU의 규정을 개정하거나 제도 자체를 수정할

⁹⁶⁾ 상소기구 작업절차는 지금까지 6차례 개정을 했는데 가장 최신의 절차는 WTO(2010) 참고.

⁹⁷⁾ 예를 들어 2017년 12월 11일자로 임기가 종료된 Peter van den Bossche 위원의 경우 여전히 5건의 상소심을 맡은 바 있다. 사실 이처럼 van den Bossche 위원이 임기 종료 이후에도 과중한 부담을 지게 된 데에는 김현종 상소기구위원이 2017년 7월 사퇴하고 Ricardo Ramírez-Hernández 위원의 임기가 2017년 6월 종료된 데 기인한다.

사안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적절한 절차를 통해 미국의 입장을 부분적으로 받아들이는 것도 문제 해결을 위해 중요하다. 사실 UR 협상 결과 인준 시 미 의회에서 WTO 분쟁해결제도에 대해 심각한 우려가 제기되었고, 결국 공화당 상원의원이던 Robert Dole 의원이 제안한 Dole Commission 구성을 당시 클린턴 대통령이 수용함으로써 UR 결과가 미 의회에서 가결되었다. 98) Dole Commission 제안은 WTO 분쟁에 대한 판결을 연방판사들로 구성된 Commission에서 심사하여 패널이나 상소기구가 권한을 초과한 판결을 하거나 절차규정 또는 심사기준(standard of review)을 위반했다고 간주되는 판결이 5년 동안 3개 이상 발견되면 미국의 WTO 탈퇴를 고려할수 있도록 하는 것이었다.

실제로 동 제안은 "WTO Dispute Settlement Review Commission Act"로 구체화되어 1995년 6월 의회에 제출되었다.9》 Dole Commission은 미의회뿐만 아니라 산업계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아 실제 의회에서 통과될 것으로 기대되었다.100》 그러나 절차적인 사유로 Byrd 상원의원이 상원에서 투표를 거부하는 등 일련의 논란을 거치면서 사실상 동 법안은 폐기되었다.101》 이러한 과거를 감안하면 미국과 같은 핵심 WTO 회원국이 트럼프 대통령 임기하에 상소기구에 대한 불만을 빌미로 WTO 분쟁해결제도와 관련해 어떠한 조치를 단

⁹⁸⁾ 당시 미 의회에서는 WTO 설립이 초래할 미국 주권의 훼손에 대해 큰 격론이 벌어졌다. Jackson (2000), pp. 367-398. 현 시점과 같은 글로벌화된 국제통상체제에서 국가 주권의 적절한 확립과 국 제법체계에서의 조화로운 정립에 대해서는 국제통상법 분야를 개척하고 발전시킨 석학 John H. Jackson 교수가 기념비적인 저술을 남겼다. Jackson(2009) 참고.

⁹⁹⁾ U.S. Government Printing Office(1995), "World Trade Organization(WTO) Dispute Settlement Review Commission Act," https://www.finance.senate.gov/imo/media/doc/Hrg104-124.pdf(검색일: 2018. 8. 1).

¹⁰⁰⁾ Horlick(1995), p. 47.

¹⁰¹⁾ Robert Byrd 의원은 민주당 출신 상원의원으로서 후에 'Byrd 수정법'으로 알려진 U.S. Continued Dumping and Subsidy Offset Act of 2000을 입안해 반담핑관세와 상계관세를 국내기업들에게 배분하는 조치를 시행했다. 동 조치는 EU, 호주, 브라질, 칠레, 인도, 인도네시아, 일본, 태국, 캐나다, 멕시코, 우리나라 등 11개국이 WTO 소송(United States - Continued Dumping and Subsidy Offset Act of 2000: DS217, 234)을 제기하는 초유의 통상마찰을 초래했는데, 패소 후에도 이행기간 동안 해당 법안에 대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서 인도네시아, 태국, 호주 3개국을 제외한 8개국이 무역보복승인을 받았다. 한국에 대한 무역보복승인 액수 판결은 WTO(2004) 참고.

행할 수 있다고 예상되며, 따라서 이를 사전에 막는 차원에서도 미국의 불만을 부분적으로 들어줄 필요는 있다.

마지막으로 WTO 분쟁해결제도 개혁의 핵심에는 미국이 있으며, 미국의 입장이 적절히 반영되지 않으면 WTO의 분쟁해결 기능이 정지될 수 있다는 점을 직시할 필요가 있다. 특히 미국이 아직까지도 WTO 분쟁해결제도의 개혁에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음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가능성은 높지 않지만 미국이 자국의 국내법에 우선되는 현행 WTO 분쟁해결 판결 자체에 불만을 가지고 이것을 고쳐보려고 할 경우 미국은 현행 WTO 분쟁해결제도의 폐지는 물론 WTO 체제 자체를 원하지 않을 수도 있다. 즉 과거 GATT 체제처럼 힘에 의한다자체제로의 회귀를 원할 수도 있다. 이럴 경우 WTO 다자체제는 사활의 중대한 기로에 놓이게 될 것이다. 다만 미국도 WTO 체제의 붕괴를 바라지는 않는다고 보는데, 이는 미국 역시 그동안 WTO 체제하에서 많은 혜택을 누려왔기 때문이다.

다. 개도국 세분화 논의

UR에서 합의한 농산물 관세감축은 개도국이 선진국에 비해 1/3이 낮은 수준이다. 102) 현재 도하협상에서도 개도국에 대한 농산물시장 개방의무는 개도국 특혜대우하에 선진국에 비해 낮게 책정되어 있다. 이러한 상황은 자연스럽게 WTO 회원국 간에 개도국 지위에 관한 논란을 초래하였다.

지난 30년 동안 우리나라는 GATT 가입에 이어 OECD에 가입했을 뿐만 아니라, 2010년에는 개도국의 개발을 지원하는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 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에도 가입했다. 이로써 우리나라는 개발원조를 받는 개도국에서 공여국으로 지위가 바뀐 유일한 국가가 되었다.

¹⁰²⁾ 우루과이라운드 농업협상에 따른 분야별 의무는 WTO(2016a), pp. 60-61 참고.

이러한 경제성장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WTO 농업협상과 환경 문제에 있어서는 개도국 우대 확보를 위해 개도국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아직도 이러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UR 협상 당시 농업부문에서 우리나라가 개도국으로 인정된 것은 당시 경제 상황과 농산물 시장개방에 대한 정치적 여건을 감안할 때 불가피한 결정이었다. 103)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의 경제 상황을 감안할 때 개도국 특혜를 인정받기에는 문제가 많다는 인식이 지배적이다. 더욱이 우리나라가 현재까지 체결한 FTA 가운데 인도, 페루, 베트남, 콜롬비아 등 개도국들과 체결한 FTA도 WTO 지역무역협정위원회에 개도국간 FTA에 대해 적용하는 권능조항(Enabling Clauses)을 이용해 통보하지 않았다. 104) 이러한 관행은 우리나라가 WTO 내에서도 개도국 지위에 대해 일관성 있는 입장을 견지하지 못하는 것으로 비춰지고 있다.

현재 WTO에서 개도국 지위 결정은 여전히 관행적으로 유지해오던 자기선택방식(self-selection)에 의존하고 있다. 그러나 자기선택방식에 의해 회원국스스로 개도국이라고 선언하더라도 실제 개도국 특혜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그러한 결정을 여타 회원국들의 양자합의로 인정받아야 하는 절차가 있다. 이와같은 상황을 종합적으로 감안하면 우리나라의 개도국 지위 유지가 향후 WTO에서 수용될 수 있을지 불분명하다. 다만 최근의 선진국 주도의 개도국 세분화논의는 중국 등 개도국들의 강력한 반발이 예상된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진국들의 바람대로 일정한 정도의 진전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는

^{103) 1990}년 우루과이라운드협상 당시 전국농어민후계자협의회장 이경해 씨가 GATT(현 WTO) 사무국 건물에서 할복자살을 기도했다(「UR協商 妥結 앞두고 國內外서 큰 波長 일 듯」(1990. 11. 6), 온라인 기사(검색일: 2018. 8. 23)). 이러한 사건들은 WTO 농업협정의 부속서 5:B에서 한국의 쌀 관세화를 유예하는 규정을 포함하는 배경이 되었다.

이후 한국농업경영인 중앙연합회 회장직을 수행하던 이경해 씨는 멕시코 칸쿤에서 개최된 WTO 각료회의에서 도하협상 차원의 농산물 시장개방 반대 시위 도중 자살로 유명을 달리했다(「칸쿤회의 시위 한국농민 자살」(2003. 9. 11), 온라인 기사(검색일: 2018. 8. 23)). 도하협상 중간점검 성격의 칸쿤회의는 수많은 NGO 대표들의 반대 시위 속에 아무런 합의를 도출하지 못하고 종료되었다.

¹⁰⁴⁾ 실제로 인도정부가 우리 정부와의 FTA 체결 이후 권능조항하에 WTO 통보의사를 표명했으나 우리 정부가 거절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개도국 세분화가 WTO의 오래된 숙제 중 하나였으며, 특히 개도국간 이질성이 확대됨에 따라 개도국 자신도 모든 개도국이 동일한 의무를 이행하는 것의 문제를 잘 알게 되었기 때문이다.

개도국 세분화는 앞서 언급한 바대로 우리나라에도 매우 민감한 이슈이다. 특히 농업부문은 사실상 지금까지의 협상 대책이 암암리에 우리나라의 개도국 지위 유지를 전제로 준비되어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특히 현재 논의되고 있는 DDA 농업협상의 경우 선진국과 개도국 간 의무이행의 차가 상당히 크기 때문에 개도국 세분화를 통해 우리나라가 개도국을 졸업하게 되어 선진국 의무 를 이행하게 된다면 그 영향이 농업부문에 미치는 영향력은 상당히 클 것으로 예상된다.

예를 들어 농산물 시장개방의 경우 개도국에게만 인정되는 특별품목이 있다. 개도국은 자국의 농산물 전체 세번의 12%를 특별품목으로 지정할 수 있고 그중 다시 5%는 관세를 전혀 감축하지 않아도 된다. 우리나라의 농산물 중 관세가 100% 이상인 품목이 농산물 전체의 9%라는 점을 감안할 때 특별품목이 갖는 중요성은 절대적이라고 할 수 있다. 국내보조금 감축에서도 선진국과 개도국의 감축의무에 상당한 차이가 있다. 예를 들어 현재 1조 4,900억 원인 우리나라의 보조금 감축 상한은 선진국 의무를 적용하면 5년 안에 8,195억 원으로 줄여야하는 반면, 개도국 지위를 유지하면 8년에 1조 430억 원으로 줄이면 된다.

이에 따라 개도국 세분화의 경우 우리나라의 입장 표명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 대부분의 이슈에서 구체적인 입장 표명을 자제하되 대신 개도국을 졸업할경우에 대비해 졸업 관련 논의에서는 우리나라의 입장을 정립해 이를 적극 관철시켜야 한다. 개도국 졸업과 관련된 우리나라의 입장의 큰 그림은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해야 한다.

첫째, 개도국 세분화가 진전된다면 우리나라는 선진국 또는 선발개도국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따라서 일단 선진국으로 분류되는 것을 최대한 방 지할 필요가 있다. 만일 선진국으로의 분류가 불가피한 상황이라면 실제 이행

을 최대한 늦추는 것이 필요하다.105)

둘째, 우리나라가 선발개도국으로 분류될 경우 이는 곧 조만간 개도국 졸업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 경우는 졸업까지의 기한을 최대한 늦추는 것이 필요하며, 그 사이 적절한 의무이행 수준을 결정하는 것도 중요하다. 졸업까지의 시간을 늦추기 위해서는 WTO 위원회 차원에서 졸업기한을 심사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것을 제안할 필요가 있다. 과거 우리나라가 국제수지보호(BOP) 조항을 졸업할 때에도 GATT BOP 위원회에서 때 2년마다 우리나라의 BOP 상황을 점검하여 졸업 여부를 결정한 바 있다. 마찬가지로 개도국 졸업을 결정하는 WTO 내 정식 위원회를 구성하여 때 2년마다 선발개도국의 개도국 졸업 여부 (즉 선진국으로 이동)를 결정하는 제도를 만드는 방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기술적으로 위원회를 구성하고 심사하는 기간을 벌수 있으며, 졸업 결정 시 유예기간 확보 차원에서도 우리에게 유리한 대안이 될 수 있다. 아울러 개도국 졸업의 제도적 장치를 만든다는 의미도 있다.

셋째, 선발개도국으로 잔류하는 동안 개도국 우대를 활용할 수 없다고 해도 그렇다고 선진국의 의무를 이행하는 것도 합리적이지 않다. 결국 현행 개도국과 선진국의 중간 수준에 해당하는 의무를 이행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해당 중간수준의 의무를 우리나라의 농업 현실에 맞추는 것도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선발개도국의 의무수준을 결정하는 것에도 우리나라가 신경을 써야 한다.

라. 복수국간협상방식의 활성화

비록 개도국들이 반대한다고 해도 향후 WTO에서 복수국간협상은 기존 DDA의 일괄타결방식과 병행해서 활발히 추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복수국간

¹⁰⁵⁾ 이러한 점에서 대만과 같이 우리 스스로가 다음 다자협상에서 개도국 우대를 요청하지 않겠다는 선언을 함으로써 이번 다자무역협상까지는 개도국으로 남아 있겠다는 전략을 생각해볼 수도 있다.

협상은 그동안 선진국들이 주장해온 협상방식으로 특히 전자상거래나 투자원 활화 등에서 이러한 협상방식이 도입되어 논의가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물론 이러한 협상에 개도국의 참여는 제한적일 것으로 보이지만, 그렇다고 해도 협상은 빠르게 전개될 수 있다. 이는 미국 등 선진국이 복수국간협상을 통해 빠른 성과를 도출하고 그 결과를 점차 다자화해가는 방법으로 WTO의 현행 개도국 중심 체제를 개혁시켜나갈 수 있을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선진국들이 주도하는 복수국간협상에 적극 참여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개도국들이 여전히 일괄타결방식을 선호하고 있기 때문에 개도국들이 원하는 DDA 일부 이슈에서는 현재와 같은 일괄타결방식의 협상도 동시에 추진될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최근 EU가 제시한 '신축적 다자주의(flexible multilateralism)'를 지지할 필요가 있다. 즉 전자상거래, 투자원활화 등 선진국이 원하는 분야에서는 복수국간협상을 통해 성과를 도출하는 한편 개도국이원하는 기존 DDA 이슈에 대해서는 일괄타결방식을 그대로 사용하는 신축적다자주의 또는 '조화된 다자주의(harmonized multilateralism)'를 의미하고있기 때문에 향후 선진국과 개도국 간 좋은 타협점이 될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복수국간협상을 활용한 디지털 무역협정 추진에 우리나라가 적극 참여할 필요가 있다. 디지털 무역협정은 미국이 WTO에서 적극 제기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최근 미국-멕시코-캐나다 FTA(USMCA)에서 명문화된 '디지털 무역(Digital Trade)' chapter가 도입됨에 따라 향후 WTO 협상에서도 협정 도입 작업이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되며 경제적으로도 우리에게 중요하기 때문이다. 다만 미국과 중국이 서로 상반된 접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경우에따라 우리나라가 중간 입장에서 양측을 적절히 조정할 필요가 있다. 즉 미국은 기본적으로 자유로운 정보이전에 기초한 디지털 무역활성화를 추구하고 있는 반면 중국은 2017년 사이버보안법을 발효, 인터넷 주권을 강조하며 개인정보보호를 강화하는 등 미국과는 반대 방향의 디지털 정책을 추구하고 있다.106)

¹⁰⁶⁾ 사이버보안법 관련 상세한 설명은 무역협회(2017)를 참고.

현 시점에서 디지털 무역에 관한 논의는 미국이 그 어느 회원국보다도 한발 앞서 주도하고 있다. 107) 특히 TPP에서 상당히 급진전한 전자상거래 규범 108)을 선보인 미국정부가 USMCA에서는 디지털 무역이라는 명칭으로 이름을 바꾸고 데이터 자유전송, 서버 국내유지 금지, 온라인 소비자보호뿐 아니라 상호 연계컴퓨터 서비스(Interactive Computer Service)까지 다루고 있다. 이에 우리나라도 이러한 새로운 디지털 무역규범을 수용하는 것은 시간 문제로 보인다.

우리나라는 아직 국가안보를 이유로 구글 지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우 버, 에어비엔비, 모바일결제 등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신기술의 사업모델이 허용되지 않는 몇 안 되는 OECD 회원국이다. 즉 인터넷이나 보다 광범위하게 정보기술 산업분야에서의 기술 호환성이 낮고 북한과 대치하는 특수한 안보상황때문에 다소 낙후한 보안기술체계로 인터넷 환경을 제한함에 따라 국내 정보기술 표준이 외국의 최신 기술진보와 분리되는 문제가 점차 심화되고 있다. 이에따라 원격진료 등 신산업 분야에서 진취적인 정책을 도입하려는 그룹과 공공성을 강조하며 보수적으로 규제환경을 유지하려는 그룹 간의 정책 충돌 문제가 앞으로도 계속 불거질 수 있다.

따라서 관련 복수국간협상에 적극 참여하여 우리의 입장을 반영시키고자 노력함과 동시에 국내 디지털 무역환경을 정비하여 국제 규범화 작업에 편승할수 있는 수준과 그보다 점진적으로 수용해야 하는 의제를 구분해서 협상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현실적으로는 디지털 무역 관련 규범화 작업에서 우리 정부가 주도할 수 있는 분야는 제한적일 것으로 보이는바 조속히 국제규범화하고 있는 핵심 규범들을 분석하여 국내 정책으로 수용하는 방안을 모색할

¹⁰⁷⁾ 미국의 국제무역위원회는 2013년 미국경제에 디지털 무역이 미치는 영향에 대해 심도 있는 분석을 수행하여 그 결과를 제시하였다. USITC(2013)와 USITC(2014). 더욱이 미국산업계도 적극적으로 디지털 무역 자유화 논의를 지원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 미국 상공회의소는 체계적인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하여 강력한 지지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U.S. Chamber of Commerce(2017), "The Dynamic Gains from Free Digital Trade for the U.S. Economy," https://www.uschamber.com/sites/default/files/09.12.17_-_testimony_by_sean_heather_on_digital_trade_to_jec.pdf(검색일: 2018. 10. 4).

¹⁰⁸⁾ Elms and Nguyen(2017) 참고.

필요가 있다.

3. 다자통상정책의 신 방향

가. WTO 체제 내 위상 강화

우리나라는 GATT/WTO 체제에서 자유무역의 확대로 경제성장을 일군 대표적인 사례국가이다. 특히 GATT 가입 당시 최빈개도국이었던 국가가 이후 선진국 수준으로 발전하면서 GATT/WTO 체제의 글로벌 통상규범을 수용해온 우리나라는 명실상부한 국제통상체제의 교과서적 성공모델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상징적인 위상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가 GATT/WTO 다자체제의 발전에 특별히 기여를 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뿐만 아니라 다자체제의 발전과정에서 우리나라가 어떤 역할을 했다고 볼 수도 없다. 이하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돌아보고 중견 통상국가로서 다자통상정책의 신 방향으로 WTO 다자체제 내에서 우리나라의 위상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본다.

1) 다자통상 전문인력 확충 및 WTO 사무국 진출 확대

가) WTO 파견을 통한 다자통상 전문인력의 배양 및 확충

무역과 통상의 경제적 중요성이 큰 우리나라 입장에서 WTO 관련 사안은 정책적으로 우선순위가 되어야 하는 사안이다. 특히 대부분의 경제정책이 국제통상과 관련이 깊어지면서 WTO 규범의 해석과 적용에 관한 법률적 전문성은 물론 WTO 내 다양한 회원국들과의 접촉을 위한 국제 정치 및 외교적 식견을 요

구하고 있다. 따라서 WTO 다자통상체제에 대한 체계적인 전문인력의 육성은 그 중요성이 점차 커지고 있으며, 이를 위해 체계적이고 정책적인 접근이 요구되고 있다.

우선 WTO에 특화된 국제통상법 관련 인력의 역량 배양을 정책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특히 WTO의 핵심 기능이자 실질적으로 이해가 걸려 있는 다양한 분쟁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WTO 규범의 해석과 적용에 정통한 법무인력 양성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또한 실제 정책 입안과시행에 있어서 WTO 규범과의 합치성을 점검하는 업무는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이기 때문에 관련 전문인력이 지속적으로 양성되는 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측면에서 일본의 사례는 정책적으로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일본은 WTO 출범 초기부터 공무원들의 해외공관 근무 인사제도를 활용해 법률 지식이 있는 과장급 인력을 WTO 법률자문관으로 WTO에 파견하고 파견 종료후 정부로 복귀시킴으로써 정부 내 WTO의 전문성을 꾸준히 배양해왔다. WTO에서 일한 경험은 향후 정책입안이나 시행시 국제법적 정당성과 공정성에 대한인식을 높이는 데 중요한 기회가 될 뿐만 아니라 향후 WTO 내 각종 위원회 진출에도 유리하게 작용하여 WTO 진출에도 결정적 영향을 준다. 일본이 WTO설립부터 상소기구위원으로 일본 출신 위원을 꾸준히 진출시킴으로써 WTO의핵심 기능인 분쟁해결절차의 유용에 깊이 개입해온 것은 잘 알려져 있다.109)

이에 우리나라도 정책적으로 관련 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공직자들의 WTO 파견이나 패널 진출 기회를 적극 지원하여 내부적으로 WTO 전문역량을 증진하는 한편, 대외적으로도 WTO 내 우리나라의 위상을 제고할 수 있는 수단으

¹⁰⁹⁾ 동경대 법대 교수 출신의 Mitsuo Matsushita 위원(1995~2000)을 시작으로 교토대 법대 교수 출신 의 Yasuhei Taniguchi 위원(2000~2007), 주한 일본대사 출신 Shotaro Oshima 위원(2008~2012)이 17년간 연이어 상소기구에서 활동했다. WTO(2018), "Appellate Body Members," https://www.wto.org/english/tratop_e/dispu_e/ab_members_descrp_e.htm(검색일: 2018. 9. 20).

로 활용해야 한다. 특히 WTO는 비용과 편의성 때문 제네바에 근무 중인 회원 국의 공무원을 패널로 선호하고 있으며, WTO 내 각종 위원회 의장 등의 경험이 있는 공무원을 패널로 선임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관련 분야 전문성이 있는 제네바 주재 공직자들이 WTO 패널로 진출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아울러 국책 연구기관들의 관련 연구인력을 WTO에 파견하는 방안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전문인력을 다수 확보한 국책연구기관의 자원을 활용해 WTO 내 다양한 부서에 파견하고 공동연구, 사업 등을 추진한다면 국책연구기관의 WTO 전문성 제고는 물론 유효한 협력 네트워크 형성에도 근 도움이 될 것이다.

나) WTO 진출 확대

WTO의 주요 부서에 한국인 전문가 진출을 확대하는 것도 적극 추진해야 한다. WTO는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주요 직책을 선임하는 데 지역적 안배를 고려하고 있으며, 아울러 WTO 분담금의 규모에 따른 영향력도일정 부분 받고 있다.

2018년 예산 기준 우리나라의 WTO 분담금은 약 590만 스위스프랑으로 WTO 전체 분담금 중 약 3%를 담당하고 있는데, 이는 164개 WTO 회원국들 중 7번째로 큰 규모이다. 반면 2018년 현재 WTO 사무국에 진출한 한국인은 총 625명의 WTO 사무국 직원 중 4명으로 0.64% 수준에 불과하다.¹¹⁰⁾

단일 국가로 WTO 사무국 직원을 가장 많이 배출한 국가는 프랑스인데, 이는 영어와 함께 공용어로 지정된 프랑스어와 스페인어에 대한 통역 인원들이 대거 포함되었기 때문이다. WTO에서 아시아 지역 대표성은 여타 국제기구들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이다. 미국 다음의 최대 분담금 제공국인 중국은 15명, 4번째 분담금 기여국인 일본도 5명에 그치고 있다.

¹¹⁰⁾ WTO(2018a), pp. 196-197, pp. 200-201.

표 4-1. WTO 사무국 직원의 국가별 분포

(단위: 명. %)

출신 국가	직원 수 (명)	분담금 비중(%)	출신 국가	직원 수 (명)	분담금 비중(%)
프랑스	163	3.80	아르헨티나	8	0.39
영국	53	3.79	호주	8	1.37
스페인	45	1.89	네덜란드	6	2.96
미국	34	11.38	일본	5	4.14
이태리	23	2.68	포르투갈	5	0.40
독일	21	7.13	핀란드	5	0.46
중국	15	9.84	불가리아	5	0.16
인도	15	2.29	그리스	5	0.33
필리핀	15	0.34	오스트리아	4	0.99
캐나다	14	2.54	한국	4	3.03
브라질	13	1.29	폴란드	4	1.08
아일랜드	13	1.09	벨기에	4	1.89
스위스	13	1.90	이집트	4	0.25
멕시코	8	1.85	파키스탄	4	0.18

자료: WTO(2018a), pp. 196-201.

물론 자국 출신 사무국 직원들이 출신 국가의 이익을 위해 일하는 것이 아니므로 반드시 회원국들의 영향력에 비례하여 사무국 직원의 비중을 맞출 필요는 없다. 그러나 WTO 사무국에서 근무하며 전문성을 갖춘 인력을 꾸준히 확보하는 차원에서 정책적으로 사무국에 한국 출신 인력을 진출시키는 것은 그 의미가 남다르다. 이는 비단 WTO만의 문제가 아니라 여타 국제기구들에 대해서도마찬가지다. 현재 외교부를 비롯하여 다양한 정부 부처들이 다방면에서 한국출신자의 국제기구 진출을 지원하고 있다. 다만 WTO의 경우 아직 이와 같은우리 정부의 지원정책에 의한 신진인력들의 진출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한편 WTO는 비록 공식적으로는 언급하지는 않지만 주요 직책 선임에 사실 상 지역 안배를 고려하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지역 안배 고려로 인해 우리나라 가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점이다. 일례로 WTO 사무총장과 사무차장의 구성을 보면 일견 지역적 안배가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111) 중요한 특징은 미국은 항상 사무차장 자리를 차지하고 있으나 사무총장은 맡지 않고 있으며112), EU는 사무총장을 맡거나 그렇지 않을 경우 사무차장직을 맡는다는 점이다. 문제는 WTO 내 중국의 위상이 급부상하면서 상소기구위원뿐만 아니라 사무차장직에도 중국 출신이 임명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를 지역적으로 생각하면 아시아 개도국 중에는 인도와 ASEAN 10개국이 핵심 역할을 수행하며, 오세아니아를 대표해서 호주와 뉴질랜드가, 아시아를 대표해 중국이, 그리고 일본이 아시아 선진국을 대표한다면 사실 우리나라는 WTO 체제에서 제대로 된 역할을 맡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향후 우리나라 출신 인사가 상소기구위원에 진출하는 것은 용이하지 않을 것으로 보며, 이러한 점을 감안해 관련 분야의 전문

표 4-2. WTO 역대 사무총장 및 사무차장 구성

사무총장	Renato Ruggierro (Italy) (1995–1999)	Mike Moore (New Zealand) (1999-2002)	Supachai Panitchpakdi (Thailand) (2002–2005)	Pascal Lamy (France) (2005-2009/ 2009-2013)	Roberto Azevêdo (Brazil) (2013-현재)
사무차장	Chul-su Kim (Korea)	P. Ravier (France)	R. Abbott (UK)	H. Singh (India)	K. Brauner (Germany)
	A. Hoda (India)	A. Ouedraogo (Burkina Faso)	K. Rana (Kenya)	V. Rugwabiza (Rwanda)	Y. Agah (Nigeria)
	J. Seade (Mexico)	M. Mendoza (Venezuela)	F.Thompson- Flores (Brazil)	A. Jara (Chile)	X. Yi (China)
	W. Lavorel (US)	Andrew Stoler (US)	R. Yerxa (US)	R. Yerxa (US)	A. Wolff (US)

자료: WTO(2018), "Previous GATT and WTO Directors-General," https://www.wto.org/english/thewto_e/dg_e/exdgs_e.htm(검색일: 2018. 11. 16); WTO(2018), "Former Deputy Directors-General," https://www.wto.org/english/thewto_e/dg_e/ddgs_e.htm(검색일: 2018. 11. 16) 자료를 참고하여 저자 작성.

¹¹¹⁾ WTO 지배구조에 대한 보다 상세한 논의는 안덕근(2012) 참고.

¹¹²⁾ GATT에서도 미국은 사무총장직을 맡은 바 없다.

성을 가지고 있는 공무원들이 WTO에 진출할 수 있도록 필요한 역량과 이력을 갖추는 데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중요하다.

2) WTO 주관 사업 참여 확대

가) 공공포럼(Public Forum)에 적극 참여

WTO가 주관하는 다양한 사업에 우리가 적극 참여함으로써 우리나라의 위상을 제고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WTO가 후원하는 대표적 행사로 연례행사인 퍼블릭포럼(Public Forum)이 있다. 퍼블릭포럼은 매년 10월에 열리는 정례행사로 WTO 회원국 정부나 연구기관, 또는 시민단체, NGO 등이 주도하여 대주제하에 다양한 소주제를 정해 단체별로 소형 세미나를 개최하여 논의를 이끄는 행사이다. 2018년의 경우 빠른 기술혁명과 2030년 세계무역 전망이 대주제였으며, 그 아래 약 120여 개 주제를 정해 소규모 세미나가 진행되었다.

우리나라도 국책연구기관이나 교육기관 또는 무역 관련 협회나 단체 등을 활용하여 WTO 퍼블릭포럼에서 한국 기관이 주관하는 세션을 확보하고, 지속적으로 참여해 해외 WTO 전문가들과의 네트워킹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무역과 관련하여 다양한 협회와 연구기관을 운용하고 있는 우리 정부가 현재까지 18회나 개최된 퍼블릭포럼에서 개별 세션을 만들어 참석한 사례가 한두 차례에 지나지 않는 점은 반성할 부분이 아닐 수 없다.113)

퍼블릭포럼에서의 활동이 WTO와 직접 연관성을 가지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WTO가 주관하여 행사를 진행하며 관련 학계, 정부 및 다양한 기관들이 네

¹¹³⁾ WTO의 대외활동의 일환으로 2001년 최초 개최되어 2005년까지는 공식적으로 'Public Symposium'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다가 2006년부터 'Public Forum'으로 명명되었다. 지난 Public Forum 관련 내용은 WTO의 홈페이지에서 참고할 수 있다. WTO(2018), "Public Forum," https://www.wto.org/english/forums_e/public_forum_e/public_forum_e.htm(검색일: 2018. 9. 1).

트워킹 차원에서 꾸준히 참여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우리나라도 관련 분야 연구기관이나 유관기관에서 공공포럼에 참여해 세션을 기획하고 운영하는 것은 WTO 회원국들과 관련 분야에서의 네트워킹은 물론 최근의 WTO 동향과 주요 전문가의 입장을 파악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적극 추진되어야 할 사안으로 판단된다.

나) WTO의 교육역량 강화사업에 참여

WTO가 신경을 써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교육역량 강화사업이 있다. 현재 WTO는 개도 회원국 공무원의 교육을 전담하는 부서에서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수립, 추진 중에 있으며, 우리 정부는 여전히 교육대상으로 이들 사업에 참여가 허용된다. 그러나 이처럼 개도 회원국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교육과정에서 우리나라가 수혜자로 혜택을 받기보다는 교육프로그램을 위한 재정지원이나 인력지원 등을 통한 우리나라의 위상 제고방안을 강구해 추진할 필요가 있다.

현재 WTO 차원의 역량강화사업에 대규모 재정지원을 하는 회원국은 노르웨이, 핀란드, 뉴질랜드 등이다. 우리나라가 이 분야에 추가로 예산지원을 하면우리나라의 위상 제고에 큰 도움이 될 것은 분명하다. 특히 현재 우리 정부가관심을 가지고 있는 신남방정책의 주요 대상국들이 포진한 아시아지역 역량 강화사업에 특화된 예산지원을 확대하는 경우 해당국 통상정책 담당공무원의 교육을 통해 유용한 네트워킹을 확대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될 것이다. 1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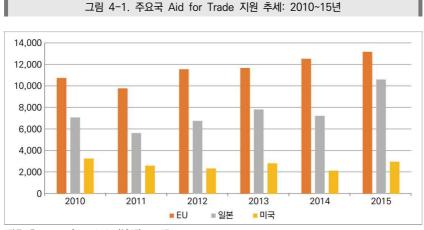
아울러 이러한 사업에 우리나라의 전문적 인력지원도 가능하다. 무역위원회의 국제포럼은 2000년 초반부터 우리 정부가 지속적으로 추진하면서 구축한

¹¹⁴⁾ 현재 WTO는 제네바에 본부에서 수행하는 역량강화과정인 Trade Policy Course 외에도 지역별로 차별화된 Regional Trade Policy Course(RTPC)를 아프리카, 중남미, 중동, 아시아 등지에서 시행하고 있다. RTPC의 경우 WTO 사무국 전문가와 현지 전문가들이 공동으로 교육과정을 수행하도록 되어 있는데, 아시아에서는 홍콩, 싱가포르, 인도, 태국이 정부 차원의 지원으로 해당 국가 교육기관에서 RTPC 사업을 수행한 바 있다.

중요한 통상외교 자산이다. 최근 TBT 정책역량을 대폭 강화한 국가기술표준 원,115) SPS 정책의 전문성과 조직위상을 제고한 식품의약품안전처116) 등의 기관도 관련 분야에 있어 WTO와의 협력을 통해 대외적 역할을 할 가능성이 큰 기관이다.

다) 개도국 무역지원(Aid for Trade) 참여 확대

개도국 무역지원(Aid for Trade)은 우리나라가 ODA 예산 중 해당 사업 비중을 늘려 무역과 개발의 연계성을 다루는 방안으로서¹¹⁷⁾ WTO 내 우리나라의 위상을 높이는 데 효과적인 방안이다. WTO 홍콩 각료회의를 계기로 출범한 개도국 무역지원은 이후 무역원활화협정 이행과 맞물리면서 더욱 주목을 받



자료: European Commission(2017), p. 17.

¹¹⁵⁾ 우리나라의 국가기술표준원은 TBT 업무에 특화된 4개 과로 구성된 기술규제대응국을 설치하고 있는데, 표준정책 담당기관 중 TBT 정책을 전담하는 이러한 체계적인 조직을 갖추고 있는 정부는 혼치 않다. 이와 관련한 보다 구체적인 논의는 안덕근, 김민정(2017), (2019) 참고.

¹¹⁶⁾ 우리 정부는 식품의약품 안전정책의 중요성이 한층 강조되면서 2013년 3월 기존의 식품의약품안전 청을 개편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로 승격하였다.

¹¹⁷⁾ Aid for Trade 관련 쟁점과 현황에 대해서는 Lammersen and Roberts(2015) 및 WTO and OECD(2017) 참고.

고 있다. EU와 일본은 2010년부터 개도국무역지원을 위한 지원예산을 꾸준히 확대하고 있다. 주요 선진국에 비해 아직 개발원조 규모가 크지 않은 우리나라 로서는 개도국 무역지원을 적극 활용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

3) WTO 각료회의의 개최

WTO 체제하의 최고의결기구로서 매 2년마다 개최되는 WTO 각료회의는 지금까지 모두 11차례 개최되었다. 제12차 각료회의(MC12)는 2020년 6월 8~11일 동안 카자흐스탄의 수도 아스타냐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GATT/WTO 체제 최대 수혜국인 우리나라는 아직 WTO 각료회의를 유치한 적이 없다. 그동안 G20, APEC, ASEM 등 다양한 국제행사뿐 아니라 올림픽과 월드컵 등 다양한 스포츠 행사를 유치하기 위해 국력을 집중해온 점을 감안하면 이례적인 일이 아닐 수 없다. 사실 WTO 출범의 계기가 된 우루과이라운드는 원래는 코리아라운드가 될 수도 있었다. 118) 그러나 정치적인 이유로 새로운 다자무역협상을 출범하는 역사적 행사유치 기회를 잃어버린 이후 지금까지 WTO 행사에 대해서는 항상 소극적인 입장을 견지해왔다. 이에 우리나라의 WTO 각료회의 유치는 WTO 내에서 우리의 위상을 높일 수 있는 효과적이 방안이 될 수 있다.

¹¹⁸⁾ 당시 GATT 일반이사회 의장으로 선출된 주 제네바 한국대표부 박건 대사는 서비스무역과 지재권을 포괄하는 매우 담대하고 의욕적인 새로운 다자간무고협상이 출범하는 상징적 행사 장소로 서울을 제안했고 이는 GATT 체약국들로부터 전폭적인 지지를 받았다. 그러나 전두환 대통령에 반대하는 민주화시위가 고조되자 청와대는 각료회의를 계기로 국제사회의 이목이 집중되는 것을 우려하여 각료회의 유치를 불허했다. 「'WTO 모범국' 한국의 역할」(2010. 6. 24), 온라인 기사(검색일: 2018. 9. 23).

표 4-3. WTO 각료회의와 주요 내용

개최 장소	개최 시기	주요 내용		
싱가포르	1996. 12. 9-13	- 최초 각료회의, 싱가포르 의제 합의 - WTO 로고 합의, ITA 협정 타결		
제네바	1998. 5. 18-20	- GATT 설립 50주년 - 클린턴 미 대통령 및 주요국 정상 각료회의 참석		
시애틀	1999. 11. 30-12. 3	- '뉴라운드' 출범 시도 좌절		
도하	2001. 11. 9-13	- '도하개발어젠더(도하라운드 협상)' 출범		
칸쿤	2003. 9. 10-14	- 도하라운드 중간점검 회의*		
홍콩	2005. 12. 13-18	- 도하라운드타결 실패*		
	2007	- 각료회의 비 개최		
제네바	2009. 11. 30-12. 2	- 제네바, 형식적 개최		
제네바	2011. 12. 15-17	- 러시아 WTO 가입		
발리	2013. 12. 3-6	- 무역원활화협정 타결		
나이로비	2015. 12. 15-19	- 최빈개도국에서 개최된 최초의 각료회의 - 각료회의 선언문에 DDA의 지속에 대한 회의 표명		
부에노스 아이레스	2017. 12. 10-13	- 각료회의 선언문 채택 실패 - 전자상거래, 투자원활화, 중소기업 등 새로운 의제 발표		
아스타냐	2020. 6. 8-11 예정			

주: * 도하라운드 출범 시 2005년 1월 1일을 협상 타결시한으로 설정하고 5차 각료회의에서 중간점검 성격으로 그간의 진전 상황을 종합하기로 합의했다.¹¹⁹⁾

자료: WTO(2018), "Ministerial Declarations and Decisions," https://www.wto.org/english/thewto_e/minist_e/min_declaration_e.htm(검색일: 2018. 11. 16) 자료를 참고하여 저자 작성.

특히 자유무역을 통해 경제성장을 일군 대표적 국가인 우리나라가 다자체제가 위기를 맞고 있는 현 시점에서 WTO 각료회의를 유치하는 것은 의미가 크다. 아울러 각료회의 유치를 계기로 미국 주도하에 급격하게 바뀌는 국제통상환경에 우리 산업 및 경제가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전기가 마련될 수도 있다. 뿐만 아니라 그동안 상대적으로 개방이 더뎠던 서비스부문의 실질적개방 확대와 규제 개혁을 통해 국내제도의 개혁 및 생산성 제고를 위한 계기로활용할 수 있다는 점도 WTO 각료회의 유치의 중요한 이유가 될 수 있다.

¹¹⁹⁾ WTO(2001b), p. 10.

4) 교착상태에 빠진 다자무역협상의 진전에 기여

교착상태에 빠진 DDA에 활력을 불어넣는 것도 WTO 내 우리나라의 위상을 높일 수 있는 유효한 방안이다. 또한 비공식회의에 참여하는 회원국 수가 확대되는 경우에도 우리나라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다. 여기에서는 서비스 및 지재권 분야의 아이디어 차원에서 새로운 제안을 하고자 한다.

가) 서비스 시장개방 방식의 새로운 제안: 모범 시장개방안 제시

서비스 시장개방은 다양한 산업에 걸쳐 국내 법제도와 규제 개편을 수반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통상당국이 권한을 가지고 시장개방을 추진하기 어려운 분야이다. 즉 통상당국이 주도권을 가지고 협상에 임할 수 있는 상품 관세감축과 달리 서비스 시장개방은 서비스 공급자의 자격요건이나 투자 기준 등 해당 사안에 대해 관할권을 가지고 있는 전 부처의 법규를 개정해야하기 때문에 그만큼 통상협상을 통해 성과를 내기 어려운 구조적 문제가 있다. 이와 같은 이유로 서비스 시장개방은 전 세계적인 FTA 확산에도 불구하고 실질적 개방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분야이기도 하다. 120)

또한 상당수 서비스 산업은 아직도 공공성을 기초로 국가의 독점사업으로 운영되거나 매우 엄격한 법규가 적용되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방송서비스인 데, 대부분 국가에서 방송서비스는 공영성에 대한 엄격한 기준이 설정되어 있 으며, 관련 규제가 통상협상 차원에서 허용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 121)

이와 같은 구조적 문제점을 감안할 때, 서비스 시장개방에 대해 기존 상품무

¹²⁰⁾ 예를 들어 우리나라의 경우 약국에서 의약품을 파는데, 단순히 의약품 판매만은 유통서비스에 해당 하나 처방전에 따른 의약품 조제나 판매는 의료서비스에 해당한다. 따라서 소관부처인 보건복지부 외에 유통서비스에 대한 제반 법규가 연계되어 산업통상자원부, 공정거래위원회, 국토교통부 등 다 양한 부처들의 이해가 얽히게 된다.

¹²¹⁾ 그러나 최근 급격히 발전한 정보통신기술에 의해 방송컨텐츠가 인터넷을 통해 쉽게 유포되면서 정부 차워의 방송규제가 사실상 효력을 상실하고 있다.

역협상에서와 같은 '주고받기식(request-offer)' 협상을 통해 실질적 진전을 이루기는 매우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서비스 시장의 실질적 개방을 위해서는 지금과는 차원이 다른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며, 다음과 같은 2단계 접근을 생각해볼 수 있다.

먼저 현 시점을 기준으로 각 서비스별로 세계 교역구조를 분석하여 하나의 공통적인 '모범시장개방안(Model Market Access)'을 마련한다. 이후 회원국 별로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양허제한을 허용하는 방식이다. 즉 현행 GATS에서는 개방에 합의한 서비스 분야에 한해 네거티브 방식을 적용, 구체적인 양허제한사항을 기재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를 서비스 세부 분야별로 공동화하여 경제성 분석이나 투자지분제한 등 대부분 국가에서 필요한 규제는 양허제한사항으로 도입하되 현재 회원국별로 모두 상이한 양허표는 가급적 최대한 통합하는 것이다.

이에 따를 경우 향후 WTO 서비스협상은 산업별 특수 규제상황만을 점검하고, 그 결과에 기초해 공통분모를 도출한 다음 이를 토대로 규격화된 양허안을 수립하는 데 초점을 맞추게 된다. 이는 교착상태에 빠진 현행 서비스협상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해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WTO 내에서 우리나라의 위상을 제고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나) 서비스 무역구제제도의 제시

서비스협정의 무역구제제도 마련은 보다 적극적인 형태의 기여로 우리나라 가 주도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사실 서비스 무역구제제도는 GATS 내 기설 정의제로 포함되어 있어 WTO 출범 이후 가장 먼저 협상이 재개된 사안 중 하나이나 반면 사안의 복잡성으로 인해 DDA 협상에서 가장 빨리 협상이 포기된 분야이기도 하다. 122) 그러나 서비스 세이프가드는 서비스 시장개방 확대를 위

¹²²⁾ 도하협상에서의 서비스 무역구제제도 논의는 WTO(2011b) 참고. 전반적인 서비스 협상 관련 논의

해서 필수적인 요건으로 조속한 논의를 통해 빠르게 도입될 필요가 있다. 특히 우리나라가 서비스 무역구제제도 수립을 위한 논의에서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할 경우 향후 협상 전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다른 한편 서비스 무역구제제도의 확립은 우리나라가 지난 20여 년간 추진해온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추동력 확보에도 유리하다. 우리나라는 WTO 체제 수립 이후 서비스 시장개방 양허안을 마련한 후, 미국 및 EU와 FTA를 타결하는 과정에서도 서비스시장의 추가개방은 사실상 없었다. 123) 이것은 비단 우리나라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며, 서비스 시장개방에의한 피해를 구제할 방도가 없는 상황에서 대부분의 WTO 회원국들이 서비스시장개방에 극도로 신중한 입장을 고수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향후 우리나라의 혁신성장을 위한 경제정책 추진에 필수불가결한 서비스시장 경쟁력 강화를위해서도 서비스 무역구제제도 구축에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처음부터 완벽한 서비스 무역구제제도의 모델을 제시할 필요는 없다. 최소한의논의 전개를 위한 핵심 의제를 마련한 다음 이후 계속협상을 통해 참여국들의지속적인 관심을 유도함으로써 제도 마련을 위한 기본 틀을 만들어가는 방향으로 논의를 선도할 수 있을 것이다.

다) 규범 협상의 논의 구조 개편 : 각종 해당 위원회의 활용

WTO 체제의 핵심 기능 중 하나는 통상규범의 수립과 시행이다. UR까지 이 러한 규범 개정과 수립은 거의 10년 주기로 다자무역협상을 통해 추진되어왔

는 WTO(2011c) 참고.

¹²³⁾ 한・미 FTA는 협상 개시 당시 노무현 대통령이 천명한 협상 목적 중 중요한 부분으로 서비스시장 개방을 통한 서비스시장 경쟁력 강화가 제시되어 강력한 정치적 의지를 표명했다. 그러나 실제 협상에 서는 매우 보수적인 협상이 이루어졌다. 우리 정부가 발간한 『한・미 FTA 상세설명자료』에서도 "서비스 교역 확대를 위한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경쟁력 제고가 필요한 분야에 대해서는 단계적 개방"을 추진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는데, 미국 측 유보 개수가 현재유보 12개, 미래유보 6개인반면 우리 측 유보 개수는 현재유보 47개, 미래유보 44개로서 총 91개에 달하고 있다. 관계부처 합동 (2012), p. 108.

다. 그러나 앞서 지적한 대로 향후 대규모 회원국이 모인 다자무역협상을 통한 신통상규범의 수립은 구조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WTO의 규범개편 작업은 다음과 같이 두 가지 차원으로 나누어 추진할 필요가 있다.

우선 현행 규범의 운용과정에서 나타난 문제를 개선하는 부분은 해당 소관 위원회나 이사회 등으로 넘겨 그 곳에서 전적으로 다루도록 한다. 예를 들어 분쟁해결양해 운용 과정에서 제기된 명백한 문제는 124) 이를 다루는 분쟁해결기구에서 결론을 내리는 것이 적절하다. 특히 이러한 문제를 DDA로 가지고 가서전체 다자무역협상을 교착상태로 빠지게 만드는 상황은 조속히 바꿔야 한다. 아울러 규정 자체를 명확히 해야 하는 사안들은 다자무역협상의 종결을 기다릴것이 아니라 해당 사안을 다루는 위원회에서 적극적으로 규범 개편 작업을 할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125) 보조금위원회, TBT위원회, 세이프가드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서 해당 협정에 관한 명료화 작업을 담당하고 이에 대한합의안을 만들어 상품이사회를 거쳐 일반이사회에 회부하면 회원국이 그 합의안을 검토해 합의를 도출하는 방식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러한 위원회 방식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먼저 위원회 운영에 대한 회원국의 신뢰가 제고될 필요가 있다. 126) 위원회 의장선출과 합의도출 과정의 절차적정당성이 확보되고 전문성에 입각한 관련 규범의 개편 작업이 추진되는 환경조성이 중요하다. 아울러 WTO 사무국의 지원을 통해 관련 사안을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합리적이고 공정한 규범 개편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규범 개편 작업은 이러한 위원회 방식을 통해서 상당한 성과를 기대할수 있으며, 불필요하게 다자무역협상 틀 속에 포함됨으로써 정치적으로 풀기어려운 여타 의제들의 희생양이 되는 것을 방지할 수도 있다. 또한 위원회 방식

¹²⁴⁾ 대표적인 사례로, 제21.5조하의 이행패널과 제22.6조하의 보복중재절차 간의 순서 문제나 현재 첨예한 논란을 초래한 상소기구위원 선임절차 문제 등의 시안이 여기에 해당한다.

¹²⁵⁾ 실제로 최근 EU의 WTO 개혁방안에 대한 제안에서도 위원회를 활용한 점진적인 규범 개정안을 제시하고 있다. EU, "Concept Paper," http://trade.ec.europa.eu/doclib/docs/2018/septembe r/tradoc_157331.pdf(검색일: 2018. 8. 20).

¹²⁶⁾ WTO 위원회의 의장 선출 및 현재까지의 구성 등에 대해서는 Jones(2015), pp. 115-156 참고.

으로 규범 개편을 점진적으로 추진할 경우 회원국간 과도한 논란을 사전에 방지하여 현재 WTO가 겪는 것과 같은 전례 없는 미국의 일탈행위 — 또는 미래에 중국이나 여타 다른 핵심 회원국의 과도한 위반행위 — 등을 사전에 예방하는 부차적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나. 포용적 무역의 선도

포용적 무역은 우리나라 다자통상정책이 지향해야 될 또 다른 큰 방향이다. 세계는 이제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 과거와 같이 무역을 통해 어느 국가가 일방적으로 혜택을 보는 것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환경이다. 일방적 혜택은 곧바로불만을 낳고 상대 교역국과의 관계는 비단 경제적인 측면만이 아니라 외교적이나 국제정치적인 측면에서도 얼마든지 악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향후어떠한 글로벌 정책도 함께 성장하는 포용성을 무시할 수는 없다.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나라의 다자통상정책도 글로벌 포용성을 적극 도입해 이를 선도해나갈 필요가 있다.

1) 포용적 성장의 논의 배경: 무역과 소득불평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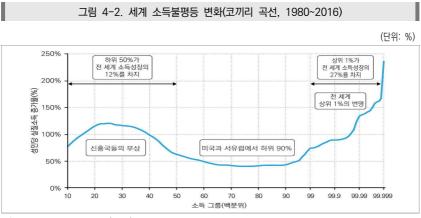
소득 불평등 문제는 보통 두 가지 측면에서 논의되어왔다. 하나는 국가간의 소득불평등(between-country inequality)이고 다른 하나는 국가 내의 소득 불평등(within-country inequality)이다. 일반적으로 국가간 소득불평등은 선진국과 개도국 간 소득격차로 인한 불평등을 의미하고, 국가 내 소득불평등 은 한 국가 내에서 소득분배의 불평등을 의미한다.

최근 무역을 통한 시장개방 확대가 한 국가 내 소득분배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에 관심이 집중되어왔다.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세계경제가 부진한 가운데 이러한 어려움이 자산이나 소득이 적은 중산층 이하에 가중되어 나타난

반면 상위 1% 계층의 소득은 오히려 증가하는 현상이 나타났기 때문이다.

국가간 소득불평등과 국가 내 소득불평등은 상호배타적이지 않으며 서로 연결되어 있는데, 이러한 연계관계를 보여주는 것이 Milanovic(2016)의 연구를 기초로 한 일명 '코끼리 곡선(elephant curve)'이다. 코끼리 곡선은 글로벌 불평등도를 나타낸 그래프로서 세계 인구를 소득 기준으로 구분해 1980~2016년 동안의 실질 소득 변화를 나타내고 있다.

코끼리 곡선이 의미하는 바는 두 가지이다. 첫째는 지난 약 30년 동안 최상 위 소득군의 실질소득 증가가 다른 소득군에 비하여 압도적으로 높다는 것이다. 둘째는 신흥국 (emerging countries) 소득군이 집중되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하위 50% 소득군의 소득 증가가 미국 및 서유럽 등 선진국의 하위 90%에 해당하는 소득군이 집중되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약 50~90%소득군의실질 소득 증가보다 상당히 높다는 점이다. 실제『세계불평등보고서(World Inequality Report)』(World Inequality Lab 2018)에 따르면 지난 약 30년간 세계소득성장중약 27%가상위 1%소득군의소득증가로 설명되는반면하위 50%소득군의소득증가는세계소득증가의약 12%정도만을 설명한다고밝히고 있다.



자료: World Inequality Lab(2018), p. 5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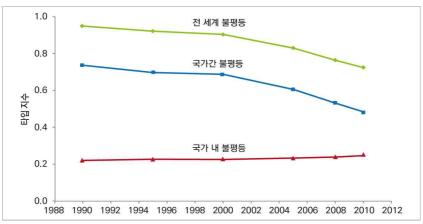
경제학 이론에 따라 지금까지 무역은 선진국과 개도국 간의 불균형 문제를 해 결할 수 있는 핵심 메커니즘으로 이해되어왔으며, 이에 따라 가능한 한 많은 국 가가 자유무역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되었다. 127) 다만 이 외중에도 개도국이 나 저개발국들은 2차 세계대전 이후 지속되어온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고. 경제 개발의 기반을 확보하기 위하여 특혜조치 부여를 계속해서 주장해왔다. 이러한 맥락하에서 GATT/WTO 일반특혜관세제도(GSP)와 개도국우대조치(S&DT) 에 대한 논의가 발전되어왔다. 128) 그러나 2001년 중국이 WTO에 가입하면서 중국의 교역량과 성장률이 급격히 확대되고 동시에 거대 신흥시장국가로 세계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커지자 무역이 소득불평등에 미치는 영향도 단순한 선진국과 개도국 간 소득격차 문제에서 국내 소득불평등 문제와 연계되기 시작 하였다. 선진국의 중산층 이하 저임금 노동자들이 개도국 노동자와 경쟁하면서 선진국 국내의 소득불평등이 악화되었다는 주장이 그것이다. 129) 실제 1980년 대 이후 국가간 불평등은 지속적으로 완화된 반면 국가 내 불평등은 점진적으 로 악화되어왔다. 특히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한 경기침체는 각국에 일 자리와 투자확대를 위한 보호주의 정책을 확산시켰으며, 동시에 개도국에 대한 과도한 혜택과 의무면제 등 GSP 및 S&DT의 효율성에 관해서도 논란을 증폭 시켰다.

¹²⁷⁾ 국제무역의 스톨퍼-사무엘슨(Stolper-Samuelson) 정리에 따르면 선진국과 개도국 간 무역은 양국 간 소득 격차를 줄이며, 선진국 국가 내에서 소득불평등을 심화시키는 역할을 한다. 다만 상위 1%의 소득 급증은 2000년대 이후 가용한 데이터가 풍부해지면서 본격적인 연구가 진행 중이다. 무역과 관련해서는 Melitz(2003)가 생산성 차이가 나는 이질적 기업(heterogeneous firms) 연구에 관한 이론 기반을 제공한 후 다양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¹²⁸⁾ GSP와 S&DT는 각각 케네디라운드와 도쿄라운드에서 논의가 진전되었으며, 1979년 도쿄라운드 결과로 선진 GATT 회원국의 법률적 의무(legal obligation)로 정착되었다.

¹²⁹⁾ 국제무역에서 중국의 부상이 개별국의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대표적으로 Autor, Dorn, and Hanson(2016)은 미국 데이터를 이용하여 수입경쟁부문 (import competing sectors)의 경우 단기적으로 노동시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실증적으로 보이고 있다.





자료: Bourguignon(2015), p. 42.

포용적 무역(inclusive trade)은 위와 같은 배경에서 나오게 되었다. 그러나 그 기저에는 선진국에 대한 개도국들의 뿌리 깊은 불신과 함께 지금까지의 무역자유화(시장개방)로 인한 혜택의 대부분이 선진국(그중에서도 중소기업보다는 다국적 대기업)에게로 돌아갔다고 하는 시각이 있다. 개도국들은 지난 30여년간의 무역자유화로 인해 관세 등 국경에서의 장벽이 낮아지기는 했으나그렇다고 개도국이 그 혜택을 본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개도국들은 시장개방 확대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선진국) 시장에 접근하지 못한 이유로 (선진국) 국경과 그 너머에 존재하는 다양한 비관세장벽을 지목하고 있다. 눈에 보이는 국경장벽인 관세는 철폐되었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장벽인 통관절차, 검사, 검역 등의 기술적 조치와 국경 너머 실질적인 시장접근을 제한하는 제도와법규 등의 다양한 비관세장벽 때문에 실제 시장에 접근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선진국들은(또는 선진국의 다국적기업들은) 개도국(또는 개도국의 중소 영세기업)에 비해 인력이나 자본 등 풍부한 인적 ·물적 자원을 가지고 있어 비관세장벽을 넘는 것이 개도국에 비해 수월하다. 결국 시장개방의

실질적인 혜택은 비관세장벽을 넘을 수 있는 능력과 자원을 가지고 있는 선진 국과 대기업에게로 돌아갔다는 것이 개도국들의 주장이다.

이러한 주장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세계적인 소득 불평등과 맞물려 기존의 시장개방 자체에만 중점을 둔 무역협상과 그 결과를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고, 결국 포용적 성장(inclusive growth)과 유사하게 '포용적 무역(inclusive trade)'이 대두되게 되었다. 이에 따라 2017년부터 WTO 다자무역협상에서도 기존의 '개발'과 달리 개도국들이 실질적으로 선진국 시장에 접근할 수 있는 내용의 시장개방조치들이 논의되기 시작했으며, 그 처음이 인도가 제시한 서비스시장 개방의 인력이동에 대한 선진국의 규제 완화였다. 사실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지난 발리 각료회의에서 타결된 무역원활화협정이 갖는 의미는 상당하다. 무역원활화가 적절히 이행될 경우 개도국들의 선진국 시장진출이 보다원활해질 수 있으며, 이 때문에 개도국들도 무역원활화협정에 조기 합의한 것이다. 이러한 시각에서 이하에서는 우리나라가 포용적 무역을 선도하기 위해추진해야 하는 세부 정책들을 제시한다.

2) 포용적 무역정책의 주도

가) 무역원활화협정의 이행 확산

무역원활화협정은 WTO로 대표되던 다자무역체제가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던 시점에서 유일하게 선진국과 개도국이 합의한 통관 관련 비관세장 벽을 해소하기 위한 협정으로 지난 2017년 2월 22일 정식 발효되었다. 동 협 정은 수출입과 관련된 규제와 정보의 공표와 시행을 비롯하여 수출입 관련 절 차의 간소화 및 수수료의 합리화, 통과의 자유보장 등 개도국의 선진국 시장 진 입을 위한 첫 관문인 통관 관련 다양한 절차를 보다 용이하게 하여 관련 비용을 낮추기 위한 실질적인 조치를 포함하고 있다. 이에 따라 그 이행 여부에 따라 개도국의 실질적 시장접근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

무역원활화협정의 이행 확산은 우리나라에게도 직접 도움이 된다. 통관과 관련하여 애로를 겪고 있는 기업은 비단 개도국들만이 아니기 때문이다. 관세 청에 접수된 우리 기업들의 통관애로 건수는 점차 증가하고 있어 우리나라도 무역원활화협정이 효과적으로 작동되고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제2장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현재(2018년 11월 기준) 무역원활화협정에 대한 국내 비준절차를 마친 국가는 139개국으로 이 가운데 114개 개도국이 A/B/C 의무 및 이행일을 통보한 상태이다. 130) 개도국과 최빈개도국이 제출한 통보문을 분석한 WTO 통계에 따르면 A의무의 비중은 47.7%로 개도국 및 최빈개도국에서 이행하고 있는 무역원활화 조치의 비중은 절반 이하로 나타났다 (그림 2-2 참고). B의무와 C의무의 비중도 각각 12.1%, 16.4% 수준이었으며, 미결정이 23.8%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131) 특히 개도국 및 최빈개도국들이 요청한 C의무 중 가장 많이 통보한 조치는 싱글윈도우, 위험관리, 인가된 영업자, 평균 반출시간 측정 및 공표, 인가된 영업자, 사후 심사 등이었다(그림 4-4 참고). 이러한 조치는 고도의 위험관리 능력, 정보처리 능력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 ICT 활용 등 이행비용이 상대적으로 많이 들고 복잡한 조치이지만 무역원활화의 핵심 조치이기도 하다. 132)

무역원활화협정의 이행은 다른 WTO 협정과 달리 이행능력이 부족할 경우 이행능력이 획득될 때까지 이행의무가 부과되지 않는 구조로 만들어졌기 때문 에 개도국 및 최빈개도국이 무역원활화협정을 효율적으로 이행하여 통관환경 이 개선되기 위해서는 이들 국가에 대한 이행지원이 필수적이다. 따라서 우리 나라는 우선적으로 개도국들이 C의무에서 가장 많이 요청한 조치를 중심으로

¹³⁰⁾ 개도국 및 최빈개도국은 스스로가 자국의 상황에 맞추어 무역원활화 조치를 A의무, B의무, C의무로 분류하고, 각 의무와 이행일자를 WTO 무역원활화위원회에 통보하도록 되어 있다.

¹³¹⁾ WTO Trade Facilitation Agreement Database(2018), Implementation Notifications (Categories A, B, C)(검색일: 2018. 11. 21).

¹³²⁾ 김민성(2018), p. 10.

개도국과의 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WTO 무역원활화협상에서 싱글윈도우, 위험관리, 평균시간 측정 및 공표 등을 제안하였으며, 5개분야(사전공표 및 협의, 수출입 관련 수수료 및 요금, 도착 전 처리, 통관 후 심사, 사업서류의 복사본 수용)의 공동 제안국으로 무역원활화협상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왔다. [133] 또한 선진화된 통관시스템과 기술을 바탕으로 2005~18년동안 12개국, 14건에 대해 3억 8,885만 달러의 전자통관시스템 및 싱글윈도우시스템을 컨설팅하고 수출한 경험이 있다. [134] 따라서 우리나라가 상대적으로 강점을 가지고 있는 이와 같은 분야를 중심으로 개도국 및 최빈개도국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물론 이때의 지원은 뒤에 나오는 양자및 지역 GSP 프로그램의 운영 및 ODA와 연계하여 정합성 및 효율성을 기해야 한다.

표 4-4. C의무로 가장 많이 통보된 조치

 조치	일부 조항 통보	전체 조항 통보
제10.4조 싱글윈도우	1	55
제5.3조 시험절차	3	36
제7.4조 위험관리	-	38
제7.7조 인가된 영업자	2	35
제7.6조 평균 반출시간 측정 및 공표	1	33
제8조 국경 기관간 협력	5	27
제1.2조 인터넷을 통한 정보이용가능성	2	29
제3조 사전심사	2	29
제1.3조 질의처 설립	1	30
제7.5조 통관 사후 심사	-	26

자료: WTO Trade Facilitation Agreement Database(2018), Most Notified vs. Least Notified Measures(검색일: 2018. 11. 28).

¹³³⁾ 서진교 외(2013), p. 166.

¹³⁴⁾ 관세청(2018. 7. 4).

한편 WTO는 개도국 및 최빈개도국의 무역원활화협정 이행 지원을 위해 무역원활화협정의 이행지원 신탁기금(TFAF: Trade Facilitation Agreement Facility)을 설치, 운영 중이다. 현재 총 기금액은 약 717만 스위스프랑으로 주요 기부국가는 노르웨이, 중국, 호주, 영국, 오스트리아, 핀란드, 대만 등이다. WTO 분담금 비중을 고려할 때 우리나라도 이행지원 신탁기금을 적절히 분담함으로써 무역원활화협정 이행 의지와 함께 WTO에서의 위상을 높이는 것이필요하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 수출기업의 교역환경도 개선될 수 있음을 물론이다.

표 4-5. TFAF 지원 국가 및 지원 금액

(단위: 스위스프랑)

			(= 0/
국가	금액	국가	금액
호주	738,937	노르웨이	4,082,665
오스트리아	193,146	뉴질랜드	43,340
중국	933,812	대만	30,822
핀란드	160,393	영국	327,966
아일랜드	31,640	미국	39,578

자료: WTO Trade Facilitation Agreement Facility(2018), "Annual Report 2017," 온라인 자료(검색일: 2018. 11. 28).

나) 비관세장벽 중심의 시장개방 추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세계 경제의 저성장 기조에 따라 보호무역주의 성향의 조치들이 확산되어왔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특히 과거와 달리 관세보다 다양한 형태의 비관세장벽 활용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데, 그 유형도 지금까지 많아 사용되어왔던 기술조치(예: TBT, SPS 등)와는 다른 투자나 서비스 제한, 유통 제한, 지재권 제한, 원산지 및 환경, 노동 등 제도적인 비관세조치가 활발히 활용되고 있다. 이러한 비관세조치는 진화하면서 과거보다 더욱 다양해지고 은 밀해져 개별 기업 차원에서 파악하기가 힘들어졌다. 또한 하나의 비관세조치를

해결하기 위하여 법과 제도는 물론 정치적 관계까지 함께 고려해야 하는 종합 적 성격의 비관세조치가 늘어나 개도국은 물론 선진국의 다국적 기업 역시 이 를 해결하기가 점차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향후 다자무역협상에서는 논의의 중심을 지금까지의 관세감축에서 비관세장벽 철폐 쪽으로 바꾸어나갈 필요가 있다. 비관세장벽은 NAMA(Non-Agricultural Market Access: 비농산물 시장접근)에서 주요 의제 중 하나였다. 따라서 NAMA에서 우리나라가 비관세장벽 철폐그룹을 만들어 복수국간협상방식을 통해 비관세장벽의 철폐를 목표로 논의를 주도해나갈 필요가 있다.

비관세장벽 철폐 논의는 우선 관련 비관세조치의 실태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다행히 WTO와 UNCTAD에서 비관세조치 분류 및 정량화 작업을 해왔으며, 데이터베이스(DB)도 일부 구축되어 있다.135) 비관세장벽의 DB 구축은 많은 시간과 돈, 관련 국가들의 협조를 필요로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비관세조치 DB를 구축하고 나면 비관세조치의 남용을 방지하여 실질적 시장접근을 실현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비관세장벽 철폐그룹을 주도하면서 WTO와 UNCTAD의 통계를 일치시키는 작업을 병행하고 동시에 관련 비관세조치에 대한 통보의무를 강화해 1단계로 비관세조치의 DB 구축 및 투명성 제고를 목표로 비관세장벽 철폐 논의를 주도하면 될 것이다. 특히 WTO 체제 개혁논의에서 선진국들이 투명성 제고 및 통보 강화를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각국이 운용하고 있는 통관 관련 또는 비관세조치를 통보하도록 할 경우시너지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이후 2단계는 비관세조치를 철폐하는 단계로 회원국별로 자율적으로 일정 기간 안에 자국의 비관세장벽 철폐를 이행하는 계획서를 제출하게 하여 실질적 시장개방 논의를 추진해갈 수 있다. 이 때 일시에 비관세장벽 철폐를 추진하기

¹³⁵⁾ MAST에 따르면 비관세조치는 총 16개 군으로 분류(총 236개의 하위 조치로 구성)되고 이는 크게 수입 관련 조치(기술적 조치, 비기술적 조치)와 수출 관련 조치로 구분되며, 현재는 MAST에 참여한 모든 국제기구들이 이러한 분류체계를 채택하고 있다. 조문희 외(2017) 참고.

보다는 국가별 여건을 감안하여 즉시 철폐, 3년, 5년, 10년 철폐 등 철폐기간을 다양화하여 신축성을 부여할 수도 있다. 이렇게 1단계에서는 우선 현황을 파악하고 2단계에서 신축성을 가진 철폐를 추구할 경우 비록 시간이 걸린다고 해도 개도국의 실질적인 시장접근에 도움이 될 것임은 물론 우리 기업들의 대 선진국이나 개도국 진출도 보다 원활해질 것이다. 물론 이로 인해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비관세조치도 WTO에 통보되고 경우에 따라 WTO 규정에 합치, 운용해야 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이를 통해 비관세조치를 무역장벽으로인식하기보다 반드시 필요한 기술적 조치로 인식하여 이 목적을 달성하는 데만사용한다는 인식의 개혁도 필요하다.

다) 우리나라 특성에 맞는 양자 및 지역 GSP 프로그램 추진

포용적 무역정책의 적극적 조치로 우리나라가 주도적으로 GSP를 실시하는 방안을 생각해볼 수 있다. 예를 들어 최빈개도국과 특정 개도국을 대상으로 이들을 2~3개 그룹으로 나누고, 각각의 그룹에 적합한 GSP를 실시할 수 있다. 각각의 그룹에 속하는 국가들로부터 그들이 원하는 시장개방 요청품목 및 기술 지원 요청목록을 제출받고 그것을 중심으로 우리나라의 내부 사정을 감안해 선 별적인 GSP를 실시할 수 있을 것이다.

이 때 일부 개방이 어려운 품목의 경우 그동안 우리나라가 FTA를 통해 관세를 철폐한 스케줄에 맞추어 시장개방을 한다면 그만큼 국내 반발도 줄일 수 있다. 대안으로 시장개방 대신 그에 상응한 수준의 기술지원(특히 ODA를 병행활용)을 제공함으로써 개도국을 배려한 우리나라식 GSP 프로그램을 운영할수 있다.

다른 한편 이러한 양자 GSP 프로그램은 전 품목에 걸친 시장개방을 의미하는 FTA에 대한 보완 프로그램으로서의 역할도 기대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대부분의 중요한 무역 파트너와 FTA를 체결했기 때문에 특별히 추가 FTA를 추

진할 대상국은 사실 거의 없는 상태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예상하지 못한 국가가 FTA를 추진하자고 요청해오면 FTA보다 해당국의 요청을 상품 및 서비스시장개방과 기술지원 측면에서 검토하여 FTA 대신 양자 GSP를 추진하여 상호원-윈 할 수도 있다. 이러한 양자 및 지역 GSP 프로그램은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부담을 줄이면서 상대국과의 협력을 증진시킬 수 있으며, 상대국 역시 비록원하는 모두를 얻지 못한다고 해도 부분적 성과를 얻는 동시에 경우에 따라 기술지원 등을 확보할 수 있어 포용적 무역정책의 좋은 사례가 될 수 있다.

라) 중소기업의 세계화 추진 및 관련 기술 지원

포용적 무역정책의 중심에는 결국 중소기업이 있다. (다국적)대기업에 비해 자본과 기술은 물론 인적자원마저 수준이 떨어지는 특성상 동일한 조건에서 대기업과 경쟁해 시장에 정착하기란 결코 쉽지 않으며 시각에 따라 불가능하다고 볼 수도 있다. 따라서 이러한 부족함을 가지고 있는 중소기업만을 위한 특성화된 조치가 필요하다. 다만 이러한 특별한 조치가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는데 그쳐야 함은 물론이다.

이러한 정책의 예로 중소기업의 세계화를 위한 지원(기술지원 포함)을 생각해볼 수 있다. 특히 중소기업의 세계화는 국내 대기업의 수요독점구조에 영향을 미쳐 국내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불공정 경쟁기조를 근본적으로 바꿀수 있는 방안이기도 하다는 점에서 적극 추진해야 하는 이유가 있기도 하다.

중소기업 세계화의 기본 전제는 글로벌 생산성 확보이다. 글로벌 경쟁에서 생산성이 떨어지는 기업을 중소기업이라는 이유로 지원해서 세계화에 편입 시켜도 해당 기업은 오래 버티지 못하고 곧바로 퇴출된다. 따라서 글로벌 경쟁이 가능하지 않은 유망기업이라면 일단 국내 중소기업정책을 이용해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것이 우선이다. 이 부분에서 무역이나 통상정책이 관여할 여지는 없다.

그러나 일단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기업 중에 해외 마케팅이나 수출 경험이 부족해 글로벌 가치사슬에 편입되지 못하는 기업은 통상정책 차원에서 적극 지원이 가능하다. 해외 마케팅은 국내외 다양한 지사를 가지고 있는 한국무역투 자진흥공사와 연결하면 대부분의 문제는 해결될 수 있다. 136) 무역과 통상에서는 이러한 기업들이 실제 경험하는 통관 및 수출 애로점을 모아 해당 국가와의 양자적 접근 또는 WTO 다자 차원에서 이를 시정 내지 해결하는 노력을 통해 중소기업 세계화를 기업별 맞춤 형식으로 도울 수 있다. 또한 국내 대기업과 관련 중소기업을 연계해 해외시장에 동반 진출하는 경우 문제가 되는 통관이나 해당국의 비관세조치 해결을 위한 협상을 요청하는 방안도 있다. 이를 위해서는 한국무역투자진흥공사와 중소기업벤처부, 각국 주재 대사관을 연계해 중소 기업의 시장접근 애로사항을 해당국-해당기업-해당사안으로 만들고 맞춤형으로 접근하여 해결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해결 건수와 금액별로 실적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보완제도가 필요함은 물론이다.

다. 양자ㆍ지역무역협정의 다자화

WTO 출범 이후 DDA 부진과 다자통상체제에 대한 신뢰 손상은 양자 및 지역 FTA의 확산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러한 양자 또는 지역 FTA 역시 자체적인 한계를 보이고 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스파게티 볼 효과의 확산이다. 특히 글로벌 가치사슬이 확산되면서 양자 FTA가 갖는 특혜관세의 혜택이 국가별로상이한 양자 FTA로 인한 거래비용의 증가라는 손실에 미치지 못해 다시금 다자체제의 중요성이 재인식되는 계기가 되고 있다. 물론 이에 대응하여 광범위한 지역을 포함하는 메가 FTA도 추진되고 있지만 실제 협상이 타결되어 발효를 앞두고 있는 메가 FTA는 미국이 빠진 CPTPP가 유일하다.

¹³⁶⁾ 물론 기초 인프라라고 할 수 있는 우수 인력의 지원은 또 다른 문제로, 이는 별도의 관련 인력정책이 있어야 한다.

그렇다고 WTO 다자체제가 정상궤도에 올라 조만간 가시적 성과를 기대하기도 용이하지 않음은 앞에서 본 바와 같다. 이러한 상황에서 향후 우리나라의 다자통상정책 방향은 지금까지 우리에게 주어진 양자 FTA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으면서 다자체제가 갖는 장점을 지향하는 바와 모순이 없어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양자·지역무역협정의 다자화는 우리나라 다자통상정책의 새로운 방향으로 남다른 의미가 있다.

일단 개별 양자 또는 지역무역협정의 다자화를 추진할 경우 지금까지 FTA 별 서로 상이한 기준(예: 상이한 원산지 기준) 등으로 인해 발생한 거래비용을 낮출 수 있다. 궁극적으로 여러 FTA를 묶어 단일 제도나 기준으로 통합할 수 있다면 사실상 단일의 메가 FTA 또는 지역 내에서 소규모 다자협상을 한 결과와 동일한 경제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이는 또한 궁극적으로 WTO 차원에서 다양한 양자 또는 지역무역협정의 협상 결과를 다자화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

양자 또는 지역무역협정의 다자화를 위해서는 먼저 지금까지 우리나라가 추진했던 FTA를 하나로 묶을 수 있는 공통의 틀이 필요하다. 관세의 경우 개방 폭이 가장 큰 품목을 기준으로 모든 FTA에서 해당 상품의 관세감축 스케줄을 하나로 통일할 수 있을 것이다. 서비스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단일의 틀을 만들수 있으며, 기타 관련 제도나 기준 역시 같은 방법을 적용할 수 있다.

한편 이를 통해 WTO 관세감축협상도 가속화시킬 수 있다. FTA를 통해 이미 낮아진 실행관세 수준을 WTO의 양허관세에 반영하는 방식을 통해 양자 FTA를 다자화할 수 있는 것이다. 예를 들어 특정 FTA를 통해 대폭 자유화된 상품의 관세를 WTO 양허관세로 하거나 이미 주요 FTA 교역상대국들과의 무역거래가 90% 이상이 되는 상품의 관세를 무관세 양허로 확정하는 등의 방식을 취할 수 있다. 즉 대표적인 수입 축산물인 쇠고기의 경우 미국, 호주, 뉴질랜드 등 3개국으로부터의 수입이 우리나라 전체 쇠고기 수입의 98%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그 외 캐나다, 멕시코, 우루과이 등 여타국으로부터의 수입은 다 합

해도 채 2%가 되지 않는다. 반면 이들 국가와의 양자 FTA를 통한 관세감축 스케줄은 서로 상이하다. 이 경우 최대로 미국과 호주의 관세감축 스케줄에 맞추어 WTO 양허관세를 2028년 즉 10년 후 철폐하는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다.

이러한 방식은 이미 수입의 90% 이상을 점유하고 있는 국가로부터 관세가 철폐되어 추가 개방의 효과가 거의 없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국내 관련 산업분야로부터의 저항을 최소화할 수 있어 WTO 협상의 진전을 원활하게 하는 장점이 있다. 아울러 수입국간 경쟁을 심화시켜 수입의 효율성을 높일수 있다는 점에서 수입국 입장에서는 소비자후생을 제고시킬 수도 있다. 따라서 교착상태에 빠진 현재의 DDA 협상에 새로운 촉매제 역할을 하기는 충분하다. 한편 양자ㆍ지역 FTA 결과를 일치화ㆍ다자화하는 과정에서 MFN 원칙 적용이 부담이 될 경우 일정한 기간 동안 유예를 구하는 신축성을 이용해 예상되는 충격을 완화시킬 수 있다.

표 4-6. 주요 FTA별 쇠고기 관세감축 스케줄 및 양허세율, 수입점유율

	수입액	수입 비중	수입 비중		시점
	(2016~17 평균) (백만\$)	(2016~17 평균) (%)	WTO 양허관세 (%)	2018년 현행 관세 (%)	철폐연도
미국	2,291	48.3		21.3	2026
호주	2,148	45.3		26.6	2028
뉴질랜드	216	4.6		29.3	2029
캐나다	51.1	1.1		29.3	2029
우루과이	22.4	0.5	40	40	-
멕시코	9.8	0.2	40	40	-
칠레	6.6	0.1		미양허	200톤까지 0세율
EU	0.0	0.0		22.5	2026. 7.1
기타	0.0	0.0		40	-
총계	4,745	100.0			

자료: 수입액 및 수입비중은 한국무역협회 무역통계(http://stat.kita.net/main.screen, 검색일: 2018. 11. 16)와 관세율 및 철폐 관련된 정보는 관세청 Yes FTA 협정별 세율정보(https://www.costoms.go.kr/kcshome/ftaportalkor/ft aTrtyManage/ImportTariff.do?layoutMenuNo=30739, 검색일: 2018. 11. 16)를 참고하여 저자 작성.

라. 지속 가능한 다자통상정책

그동안 우리나라는 통상정책에서 지속가능성을 크게 고려하지 않았다. 그러나 새롭게 추진할 다자통상정책에서는 기후변화를 포함하여 환경보전과 통상정책이 함께 가야할 지속가능한 다자통상정책을 추구할 필요가 있다. 특히 최근 들어 빈번히 일어나는 기후변화에 의한 재난과 온실가스 감축이 구체적인 제약으로 다가올 파리협약 등을 감안한다면 통상정책의 지속가능성은 더 이상 미루기 어려운 과제이기도 하다.

1) 환경상품협상(EGA)의 재개 및 주도

환경보호를 위한 다양한 국제협약과 GATT/WTO 무역협정은 상호 자신이 토대로 하고 있는 기본원칙에서 근본적인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1980 년 이후 다양한 환경보호협약 등이 체결되었으나137) 다자무역협정과의 배치로 타협점을 찾지 못한 상태가 계속되고 있다. 138) DDA 출범 이후에도 무역환경위원회를 중심으로 환경과 무역 간 조화를 위해 다양한 논의가 전개되었으나특별한 성과를 도출하지는 못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나라가 다자통상정책의 지속 가능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중단된 환경상품협정 협상을 조속히 재개해 협상을 주도해 나갈 필요가 있다.

¹³⁷⁾ 대표적으로 1975년 발효된 워싱턴협약(CITES,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종의 국제무역규제), 몬 트리올 의정서, 바젤협약, 로테르닦협약, 스톡홀름협약 등이 있다.

¹³⁸⁾ 환경협약의무의 원활한 이행을 보장하기 위한 수단으로 무역규제를 포함하고 있는 다자환경협약 (MEA: Multilateral Environmental Agreements)의 근본 원칙인 오염자 부담원칙, 사전예방원칙과 전과정접근법 등은 최혜국대우, 내국민대우, 수량규제 불인정 등 WTO 다자무역협정의 기본원칙과 상충되어 환경과 무역을 연계시키려는 국제 논의 초기부터 많은 논쟁을 불러일으켰다.

표 4-7. MEA와 다자무역협정 주요 원칙 간의 상충관계

	۵۱۱ مح	
	주요 내용	
오염자 부담원칙	·MEA는 오염유발 책임소재를 기준으로 경제주체를 차별하는 특성 (기후협약의 경우 공통의 차별화된 책임과 역량) ·다자무역협정은 회원국간 동등대우에 기초한 최혜국대우(MFN) 유지	
사전예방 원칙	·MEA는 특정 상품(예: 유전자조작 식품)이 소비자의 건강 혹은 자연환경에 유해한 효과를 초래한다는 명백한 과학적 근거가 없어도 유해하다는 우려가 있을때, 예방조치 차원에서 해당 상품의 수입금지 조치 가능 ·다자무역협정은 수입국 소비자의 건강 혹은 자연환경의 유해한 효과를 초래한다는 명백한 과학적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규제조치 가능하도록 설계되어 수입품차별을 금지하는 내국민대우원칙(NT)과 배치	
전과정접근법	·MEA가 수용하는 전과정접근법(LCA)은 제품 자체의 환경친화성은 물론 제조: 정이나 사용 후 폐기 단계에서의 재활용 또는 환경오염 물질의 배출 정도에 대 과정접근법 라 제품의 환경성을 평가하고 관련 규제를 설정 ·제조공정을 고려하지 않고 최종 제품의 특성을 기준으로 상품차별을 금지하는 다자무역협정과 대립	

자료: 강상인(2015), p. 11을 참고하여 저자 정리.

WTO 환경상품협정 협상은 2014년 1월 다보스 통상장관 회의를 계기로 2014년 7월 복수국간협상(EGA)이 개시되었다. 협상 초기 우리나라를 포함한 14개국이 환경상품협정 협상에 참여하였다. 139) 협상 개시 이후 2016년 12월 까지 17개국이 18차례의 협상을 통해 환경상품 대상을 304개로 축소하였으며, 2016년 말 협상 타결을 목표로 집중적인 논의가 이루어졌으나, 참가국간 관심품목 및 민간품목에 대한 입장 차이가 커 최종 관세철폐 대상품목 리스트를 확정하는 데 실패하였다. 140) 이후 환경협상은 중단된 상태이다.

일단 중단된 환경상품협상 재개를 위해서는 우리나라가 앞장서서 분위기를 조성할 필요가 있다. 2014년과 마찬가지로 주요국 정상들이 모이는 자리에서

¹³⁹⁾ 당시 협상 참여국의 교역량은 세계 환경상품교역의 86%를 차지하였다. WTO(2014. 7. 8), "Azevêdo welcomes launch of plurilateral environmental goods negotiations," https://www.wto.org/english/news_e/news14_e/envir_08jul14_e.htm(검색일: 2018. 11. 16).

¹⁴⁰⁾ 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2016. 12. 5).

환경상품협상의 재개를 선언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보스 포럼이나 G20 등 적절한 정상회의를 골라서 우리나라가 주도하여 재개 선언을 이끌어내는 것이다. 우리나라가 단독으로 하기 어려우면 유사한 생각을 가진 국가와 협력하여 협상 재개를 이끌어내는 방법도 생각해볼 수 있을 것이다.

이후 실질 협상은 제네바 베이스에서 이루어지되 협상 실패의 주원인이 관세철폐 대상 환경상품을 설정하는 것이었던 만큼 이를 직접 논의하기보다 간접적인 접근을 할 필요가 있다. 즉 현재까지 논의되어왔던 환경상품은 환경이 주요 목적인지 불분명한 것이 대부분이라는 비판에 직면해왔다. 141) 따라서 이를 환경상품협상안에서 논의하기보다 외부의 환경전문그룹에 맡기고 그들에게보다 넓은 범위의 환경상품목록 제출을 요청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후 그목록에 기초해 관세철폐 내지 감축협상을 하면 지금과 같은 순수 환경상품인지의논란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며, 명분이 그만큼 확실해지기 때문에 협상이 수월해질 수 있다.

물론 최종적으로는 자국의 민감 품목에 대한 예외를 주장하는 어려운 타협을 거쳐야 하지만 환경상품과 관련해 예외를 인정하기보다는 관련 기술지원을 통해 공통의 타협점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2) 분쟁해결의 신축적 운영에 기초한 무역과 환경의 조화

무역과 환경 간 갈등이 심화됨에 따라 이들간의 조화를 연구하는 국내외 관련 연구도 많다. 특히 가장 많은 연구가 이루어진 주제는 WTO 규범과 MEA 무역 관련 조치의 관계, WTO 규범과 국내 환경정책 및 환경조치와의 관계 등 환경보호를 위한 무역 관련 조치들이 현행 WTO 결과 규범과 상충될 경우 조화로운 정책 방향을 찾는 것이었다.

¹⁴¹⁾ 노르웨이의 환경전문연구소(Vista Analysis)는 분석 결과 현재 논의 중인 환경상품 가운데 순수 환경 상품으로 볼 수 있는 것은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고 비판하고 있다(백윤정 2014, p. 55).

이와 관련하여 Holzer(2014)는 WTO 규정에 불합치하는 탄소 관련 국경조치에 대한 해결책으로 다음 6가지 대안을 제시하고 각 대안의 장단점에 대해기술하였다. 142) 이러한 6가지 대안은 ① WTO 분쟁해결기구가 환경 분쟁에서 WTO 규범을 친(親)환경적으로 해석 ② WTO 회원국간 협상을 통해 관련 WTO 규정 개정 ③ WTO 설립협정 9.2조에 따른 WTO 규범에 대한 유권해석도입 ④ WTO 설립협정 9.3조에 따른 의무면제의 부여 ⑤ 복수국간협정체결(GPA 방식과 ITA 방식) ⑥ 가입의정서에 환경보호에 따른 관련 조항 삽입 등이다.

표 4-8. WTO 불합치 환경보호 관련 무역조치에 대한 WTO 차원의 해결방안

옵션 1. 판정

- 개념: WTO 분쟁에 관한 패널과 상소기구의 결정을 환경보호 목적으로 활용.
- 장점: △ 법 개정 없이 현 체제를 유지하는 방안으로 가장 현실 가능성이 높음.
 - △ 피고(해당 조치가 부과된 국가)를 포함한 분쟁 당사자들은 소송의 결과로 아무것도 잃지 않음. 즉 해당 조치가 WTO 규정 위반으로 판정되더라도 과거 행위에 대해 한 국가에 제재가 부과되지 않으며, 해당 국가는 패널 또는 상소기구의 최종 결정에 따라 자국법을 바꾸거나 DSU 제22조에 의거 결정을 따르지 않는 대신 보상 제안 가능
- 단점: △ 매 사건마다 분쟁에 대한 결과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소송결과 예측이 어려움.
 - △ 환경보호에 대한 대중의 큰 관심으로 인해 WTO 패널이 영향을 받을 수 있음.
 - △ WTO가 분쟁해결에 수년이 걸릴 수 있으며, 동 기간 동안 당사국들은 WTO에 위배되는 조치와 대응 조치를 계속 적용할 수 있음. △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당사국은 기후변화에 맞서는 일에 소홀해지므로, WTO 분쟁해결제도가 과도한 업무에 시달리게 될 수 있음. △ 환경 관련 사안에 대한 결정은 WTO에게 큰 부담이 될 수 있음. 즉 환경보호와 연계
 - 된 일방적 무역 제한 조치를 허용하면 위장된 보호주의를 포함한 제도 남용이 속출할 수 있고 반대로 부정적인 결정이 내려진다면 기후변화 문제를 다루는 WTO의 능력이 의심 받을 수 있음.

옵션 2. 관련 WTO 규정의 개정

- 개념: 환경보호 관련 WTO 규정을 개정하여 환경보호 관련 무역조치를 수용. 특히 GATT 제1, 제3조에 따라 PPM을 기준으로 한 제품의 차별을 허용, GATT 제20조 일반예외 규정의 보완.

¹⁴²⁾ Holzer가 WTO법에 불합치하는 탄소 관련 국경조정에 대한 해결책으로 제시한 6개의 대안을 참고 하여 본 연구에서는 대상을 환경보호 관련 무역조치로 확대하여 정리하였다(Holzer 2014, 번역: 박 덕영 외 2016).

옵션 2. 관련 WTO 규정의 개정

- 장점: 환경보호조치와 WTO 규정의 불일치를 해결하는 가장 명료한 방법으로 절차적, 실체적 규정의 명확화를 통해 예측가능성을 높일 수 있음.¹⁴³⁾
- 단점: △ 협정의 핵심 규정을 개정하기 위해서 WTO 회원국 전체의 동의 필요 △ 회원국의 실체적 권리와 의무에 영향을 주는 기타 규정의 개정은 전체 WTO 회원국 2/3의 동의가 필요하며 그것을 수락한 회원국에게만 적용 △ 개도국과 선진국 간에도 의견이 엇갈리는 상황에서 규정 개정은 사실상 불가능

옵션 3. WTO 규범에 대한 유권해석 도입 내지 환경보호 관련 무역조치 사용에 관한 결정

- 개념: WTO 설립협정 제9조 2항에 따라 WTO 회원국은 환경보호 문제 포섭이 가능한 WTO 규범상의 유권해석을 채택하는 방안. 이는 1998년 EU가 시도한 방법으로 유럽 의회는 WTO 회원국에게 '동종상품' 개념 해석에 관한 양해각서 채택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통과 시켜, 환경 목적을 위해 동일 상품을 PPM에 따라 구분할 수 있도록 한 사례 존재
- 장점: △ WTO 규범의 유권결정이나 유권해석의 도입이 WTO협정의 개정에 비해 가지는 장점 은 WTO 설립협정 제9조 2항에 따라 각료회의에서 결정하고 WTO 회원국의 비준 없이도 효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것임. △ WTO 회원국 전체에 대한 구속력이 있으며, DUS의 제3조 2항과 제19조 2항에 따른 패널 및 상소기의 결정 해석과 달리 WTO 협정에 따른 WTO 회원국의 권리와 의무를 추가하거나 제외할 수 있음. △ 유권해석은 패널 또는 상소 기구가 내린 해석을 정정할 수도 있는데, 패널과 상소기구의 결정을 가로막는 실질적 수단 이 없다는 점을 고려해볼 때 유권해석은 WTO 결정에 대한 견제와 균형이 될 수 있음.
- 단점: WTO 규정의 해석에 관한 결정과 양해에는 WTO 회원국 3/4의 동의가 필요한데, 개도국 대부분이 환경보호를 위한 무역 제한에 반대하고 있는 현실에서 그와 같은 결정이 통과 되기 어려움.

옵션 4. 의무면제 부여

- 개념: WTO 설립협정 제9조 3항에 따라 어떤 회원국을 대상으로 지정된 기간 동안 대상 협정에 명시된 특정 의무를 면제하는 방안. 단 조건이 따르며 예외적 상황 또는 면제 결정문에 명시된 정책 목표가 있을 때에 한함.
- 장점: △ 법을 신설하거나 대상 협정이나 부표에 따른 의무를 더하거나 수정하지 않으며 기존 규정을 변경하지 않음. △ 의무면제는 오직 예외적인 상황에서만 한시적으로 부여되며, 연장에는 타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는 임시적인 성격으로 인해 면제 수용이 용이
- 단점: △ 환경보호조치가 WTO가 권리의 무효나 손상으로 이어지는 비위반을 근거로 GATT 제 23조 (b)호하에 여전히 공격 대상이 될 수 있음. △ 의무면제의 성격이 임시이기 때문에 환경보호 관련 무역조치와 WTO 규정의 불일치 문제를 해결할 영구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함. △ WTO 협정 제9조 3항에 따라 의무면제에는 회원국 3/4의 찬성이 필요

-

¹⁴³⁾ 박덕영(2015), p. 28.

옵션 5. 환경보호 관련 무역 조치에 관한 모범관행 규약

- 개념: 환경보호 관련 무역조치에 대한 분쟁해결을 위해 WTO 모범관행규약을 제정하는 방안. 이 러한 모범관행규약의 법적 형태는 WTO 설립협정의 부속서 4의 복수국간무역협정과 같이 가입한 국가에게만 혜택이 공유되는 방식(GPA 방식)과 결정적 다수(critical mass) 원칙 에 따라 협정의 혜택을 전체 WTO 회원국이 공유하는 방식(ITA 방식)으로 나뉨.
- 장점: 다자간 단계적 협정 체결(side-by-side)은 GATT협상의 도쿄라운드에서 유행했던 관행으로 WTO 규정의 상호 해석을 통해 환경보호 관련 무역조치 수용 가능
- 단점: △ 핵심 다수 국가 확보 문제 △ WTO 법체계의 분절화 △ WTO 분쟁해결제도는 그 협정에 서명한 WTO 회원국에 대해서만 분쟁해결제도를 적용 △ GPA 방식에 따라 복수국 간협정이 WTO 부속서 4에 추가되기 위해서는 WTO 설립협정 10조 9항에 따라 WTO 회원국의 총의로 승인을 받아야 하나 총의에 도달할 가능성이 매우 낮음 △ ITA 방식에 의한 복수국간협정은 협정에 서명하지 않은 회원국도 MFN 원칙에 따라 그것의 혜택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점에서 무임승차 문제가 발생

옵션 6. 가입의정서에 환경보호에 따른 관련 조항의 삽입

- 개념: WTO 가입을 신청하는 일부 국가와 환경보호 조치에 관한 협정을 체결하는 방안임. 러시 아의 WTO 가입 협상 시 EU는 러시아가 교토의정서를 비준하는 조건으로 양자 의정서에 서명한 사례가 있음.
- 이러한 방안은 범위가 제한적임. 주요 개도국(중국, 인도, 브라질, 러시아 등)이 이미 WTO에 가입하였고, WTO 교섭력이 에너지, 대규모 시장에 대한 접근성 등 지리적, 전략적 이해관계의 제약을 받을 가능성이 높음.

자료: Holzer(2014), pp. 250-262, 번역: 박덕영 외(2016), pp. 240~250을 바탕으로 추가 보완하여 저자 정리.

이러한 6가지 대안 중 단기적으로 가장 현실적인 해결책은 WTO 분쟁해결을 통한 환경보호 관련 무역조치의 수용이다. 이미 많은 국가들이 WTO 규범이 환경보호를 위한 관련 내용을 충분히 포함하고 있어 굳이 규범을 개정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144) 아울러 무역조치를 포함하고 있는 MEA의수가 많지 않다는 점과 지금까지 MEA 이행을 둘러싸고 분쟁이 야기된 적이 없다는 점에서 분쟁해결을 통한 환경 관련 무역조치의 수용이라는 방안이 설득력이 있다. 145) 더욱이 WTO 분쟁해결기구가 GATT 제20조의 예외조항 (b), (g)를 중심으로 협정의 취지나 목적 범위 내에서 환경보호, 사람의 안전과 건강을

¹⁴⁴⁾ 박덕영(2015), p. 28.

¹⁴⁵⁾ 위의 자료(2015), p. 28.

도모하기 위한 무역제한조치가 WTO 규범에 합치되기 위한 기준, 범위, 요건 등에 관해 일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방법을 통해 환경과 무역 간의 조화를 추구해왔다는 평가도 있다. 146)

무역과 환경 간의 정합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궁극적으로 WTO 회원국간 협상과 합의를 통해서 WTO 협정을 개정하는 것이 근본 해법이 될 것이다. 그러나 164개의 WTO 회원국 간 갈등을 고려한다면 그러한 해결방안보다는 당분간 분쟁해결판례를 통한 점진적 변화를 도모하는 것이 현실적인 대안이다.147)

다른 한편 무역과 환경의 연계뿐만 아니라 MEA의 이행 및 준수, 환경 관련 분쟁해결에 있어 전문성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어 장기적으로 무역과 환경의 잠재 충돌 및 관련 분쟁을 환경 중심의 관점에서 독립적으로 다룰 수 있도록 새로운 분쟁해결기관을 설립하는 방안도 고려해볼 수 있다. 148) 특히 새로운 분쟁해결기관이 설립될 경우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WTO 분쟁해결기구의 부담을 경감해줄 수 있다. 다만 새로운 분쟁해결기관은 WTO 무역환경위원회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함으로써 무역과 환경 간의 균형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

3) 신 다자무역규범의 추진: 환경보조금의 허용

2015년 파리 기후변화협약의 채택 이후 대부분의 국가가 기후변화 문제에 대한 대응 방안의 하나로 신재생에너지 산업을 육성하고 있다. 이에 2017년 기준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세계 신규 투자는 약 2,800억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¹⁴⁶⁾ 심영규(2015), pp. 90~92; 이은섭 외(2012), pp. 265~266을 참고하여 작성.

¹⁴⁷⁾ 박덕영(2015), p. 28.

¹⁴⁸⁾ 오선영(2011, pp. 211~212)은 단기적인 관점에서 무역과 환경 사이의 충돌을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적절한 분쟁해결기관으로 유엔 산하의 유엔지속개발위원회(UNCSD: UN Commission on Sustainable Development)를 활용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이에 대한 근거로 UNCSD가 무역과 환경의 적절한 조화, 즉 지속가능한 개발을 도모하기 위해 설립된 조직으로 WTO 무역환경위원회와 유엔환경계획(UNEP: United Nations Environment Program)과의 지속적인 연계를 통해 환경과 무역의 적절한 조화를 도모하기 위한 구심적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나타나고 있다. 149) 그러나 신재생에너지 육성은 초기에 기존의 화석연료에 기초한 발전 단가와의 차이가 커 국가 차원의 보조금 지급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WTO 다자무역체제에서 환경과 관련된 정부의 보조금에 대해서는 기존 일반보조금과 같이 수출이나 특정 산업을 위한 보조금으로 보아 엄격한 잣대로 사실상 WTO 위반으로 간주하는 경향이 있었다. 다행히 최근에들어올수록 환경의 중요성이 인식되는 분위기에서 환경 관련 보조금이 WTO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결정도 있으나 WTO 체제에서 환경 관련 지원조치는 여전히 통상법적 합치성이 모호한 상태이다.

따라서 기후변화 대응체제와 WTO의 신무역규범은 조화되어야 하며, 환경 및 지속가능성을 고려할 때 환경 관련 보조금의 당위성이 더욱 강조되어 신규 규범에 반영될 필요가 있다. 이의 대표적인 방안이 WTO에서 환경 관련 지원조치나 보조금을 엄격히 정의하고 이를 허용화하는 것이다. 과거에도 WTO 보조금협정에서 환경 관련 보조금은 일시 허용보조금으로 간주되었으나 2000년 이후 허용되는 보조금은 없는 실정이다. 그러나 기후변화 대응을 감안할 때 중장기적으로 환경보조금의 허용화는 불가피하다고 판단된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WTO 환경과 무역분야에서 사안별로 기후변화 전문가들과의 밀접한 대화가 필요하며, 이를 통해 허용해야 되는 환경보조금의 범위나 수준 등의 초안을 마련하는 방안을 생각해볼 수 있다. 무역협상 당사국만의논의에 맡긴다면 환경상품협상과 같이 참가국들의 이해만을 고려하는 경향이었어 보다 큰 틀에서의 기후변화 대응과 지속가능성 고려에 실패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이러한 환경 관련 보조금의 허용화를 신무역규범에 담는 것은 상당한 시간을 요한다. 따라서 그때까지 기다리기보다 그와 동시에 병행하는 과제로서 각료회의나 일반이사회의 결의를 통해 잠정조치를 만들어 내는 것도 좋은 대안 이 될 수 있다. 각료회의를 통해서 모든 회원국이 인정할 수 있는 각료결정을

¹⁴⁹⁾ 이석호, 조일현(2018), p. 1 인용.

도출하는 것은 새로운 규범을 만드는 것보다 수월할 뿐만 아니라 즉각적 이행이 가능한 장점이 있다. 아울러 평화조항을 이용하여 최종 규범이 만들어지기까지 서로 제소를 자제하는 방안도 환경과 무역자유화를 조화시키는 실천적인대안이 될 수 있다.

제5장 **K**

정책 제언



이 장에서는 정책연구보고의 목적을 충실히 이행하기 위해 지금까지의 연구결과를 정책제언 형식으로 요약 정리하였다. 1절에서는 현재 WTO에서 체제개혁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또한 앞으로도 주요 이슈가 될 것이기 때문에이와 관련하여 우리나라 입장에서 WTO 체제 개혁 논의에 어떠한 전략을 가지고 임해야 하는지를 큰 방향에서 제시하였다. 2절에서는 이 연구보고서의 핵심목적인 우리나라 다자통상정책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한 4장을 정책제언 형태로 바꾸어 제시하였다.

1. WTO 체제 개혁 논의에 대한 우리나라의 입장

의제 1. 투명성 제고 및 통보 강화 ⇒ 사후 통보평가제도 제안

우리나라는 투명성 제고 및 통보 강화 논의를 원칙적으로 지지하되 개도국의 입장을 고려하여 통보능력이 미비한 개도국의 경우 사전에 WTO의 무역정 책검토기구(TPRB)와 협의하에 기술적 협력과 지원을 전제로 벌칙부과대상에서 제외할 것과 통보된 내용을 사후적으로 엄격히 평가하는 '통보평가제도'를 보완적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가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것은 투명성 제고 및 통보 강화가 양날의 칼이라는 점이다. 이를 통해 중국정부가 지급하고 있는 보조정책, 특히 '중국 제조 2025'를 위해 투입되는 보조정책(보조금 포함)이 상당 부분 드러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중국시장 또는 세계시장에서 우리 기업과 중국기업 간의 불공정경쟁이 그만큼 완화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 반면 우리나라 역시 4차 산업 육성을 위해 다양한 보조정책을 운용하거나할 계획에 있기 때문에 통보 강화가 우리의 산업정책 운용에 부정적 영향을 초

래할 수 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투명성 강화를 지지하되 적극 나설 필요까지는 없으며, 특히 미통보와 관련된 벌칙조항에 관해서는 전체적인 논의 동항을 보아가며 전 략적 입장표명이 필요하다. 아울러 해당 보조금 및 농업보조금의 국제기준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는바, 관련 국내 대책도 철저히 마련되어야 한다.

이와 함께 우리나라는 사후 통보된 내용의 평가 강화를 제안할 필요가 있다. 통보된 내용의 엄격한 평가는 통보 내용의 정확성 및 투명성 제고와 직접 연관 되어 있다는 점에서 무역정책검토기구(TPRB)에 의한 통보내용 평가전담을 제 안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협상 대응 1: 사후 통보평가제도 제안

- □ 투명성 제고 및 통보 강화: 원칙적으로 지지
 - 단 통보능력이 부족한 국가에 대한 적절한 고려 필요
 - . 통보능력 부족국가의 경우 WTO 무역정책검토기구(TPRB)에 기술지원을 요청하고 TPRB는 해당국과의 협의를 통해 통보 문제 해결 및 기술지원을 제공 (TPRB와의 협의기간 중에는 벌칙조항 미적용)
 - TPRB가 회원국의 사후 통보내용 평가를 전담하여 발표
- □ 역통보: 원칙적으로 지지
 - 단 우리나라도 일부 국내 조치들이 문제가 될 소지가 있어 이번 기회를 통해 WTO 해당 규정과의 합치성 여부를 검토하여 필요시 운용 방향을 적절히 수정
- □ 통보의무 미준수 시 벌칙조항
 - 일정 수준의 벌칙은 필요하지만 그 강도는 선진국과 개도국 간 타협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조정될 수 있도록 유도
 - 다만 행정제재의 효과도 상당히 클 수 있다는 점은 밝힐 필요는 있음.
- □ 사후 모니터링 및 통보평가제도 제안
 - 통보 문제는 TPRM과 연계, 통보 결과를 사후에 엄격히 평가하는 것이 중요
 - 궁극적으로는 사후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그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할 경우 관련 WTO 규정에 의거 자동적으로 상계관세나 그 밖의 제제대상으로 간주되는 제도적 장치를 만드는 방안을 제안

의제 2. 분쟁해결제도의 개혁 ⇒ WTO 공정성 유지 전제하에 미국 입장 지지

우리나라는 원칙적으로 미국의 불만을 해소하는 방향에서 WTO 분쟁해결 제도 개혁을 지지하되 WTO 분쟁해결절차나 결과가 미국의 일방적인 영향력에서 벗어나 보다 객관적이고 공정해야 한다는 원칙은 고수해야 한다.

협상 대응 2: WTO 공정성 유지 전제하에 미국 입장 지지

- □ 상소심 90일 시한
 - 원칙적으로 상소심 심리기간은 현행 90일 시한을 준수 : 미국 주장 반영
 - 단 상소심 설치 결정 이후 1주일 이내 상소기구와 해당국 간 협의를 통한 시한 연장은 가능
- □ 임기 만료 상소위원의 상소심 관여
 - 분쟁해결기구 또는 일반이사회에서 관련 사안을 결정: 미국 주장 반영
 - 단 상소심 개입이 가능한 사안으로 임기 중 설치된 상소심 관여는 가능
- □ 상소제한 유도 및 상고기구 위원 임기 등
 - 상소를 자제하는 제도적 장치(예: 상소심에 준하는 중재 등)를 구성
 - 상소기구위원의 정원 증가: 전체 논의를 따라감(7명 → 12명 이상)
 - 상소기구임원 임기: 전체 논의를 따라감(4년 연임 가능 → 8년 단임)

의제 3. 개도국 세분화 ⇒ WTO 개도국 졸업 심사위 제안

개도국 세분화는 우리나라에게도 매우 민감한 이슈로 전체적인 논의 흐름을 보아가며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농업과 수산부문에 미칠 영향을 고려하여 대부분의 논의에서 구체적인 입장 표명을 자제하되 대신 개도국 졸업이 논의될 경우 관련 논의에 적극 참여하여 졸업을 최대한 지연시키는 전략이 필요하다. 즉 개도국 졸업이 구체화될 경우 이를 지연시키기 위하여 개도국 졸업을 심사할 WTO 내 기구를 제도화하여(예: WTO 개도국 졸업 심사위) 이 기구에서 졸업 여부 및 유예기간 등을 결정하는 방안을 제안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선

발개도국으로 개도국 졸업을 최대한 늦추되 졸업 시 적절한 유예기간을 확보하는 전략이 유효하다.

협상 대응 3: 개도국 졸업 심사위 제안

- □ 선진국으로의 분류를 최대한 억제
 - 선진국으로의 분류를 최대한 억제하기 위해 우리 스스로 다음 다자협상에서 개도국 우대를 요청하지 않겠다는 선언을 함으로써 이번 다자무역 협상까지는 개도국으로 남아 있겠다는 대만식 전략도 고려
- □ 개도국 졸업을 결정하는 제도적 장치를 제안: WTO 개도국 졸업 심사위원회
 - 우리나라가 선발개도국으로 분류될 경우 이는 곧 조만간 개도국 졸업을 의미
 - 따라서 졸업까지 시간을 최대한 늦추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 WTO 차원에서 위원회를 만들어 이를 심사, 결정하는 제도적 장치를 제안 (BOP 위원회와 유사한 운영)
 - . 개도국 졸업을 결정하는 위원회를 구성, 매 2년마다 선발개도국의 개도국 졸업 여부, 여타 개도국의 선발개도국으로 이동 등을 결정
 - 졸업 결정 시 유예기간 부여도 제도적으로 확보
- □ 선발개도국의 의무수준 확보
 - 현행 개도국과 선진국의 중간 수준에 해당하는 의무를 확보

의제 4. 복수국간협상방식 ⇒ 신축적 다자주의 지지

복수국간협상방식 도입에 대하여 여전히 개도국들의 강한 반발이 예상되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기존 DDA의 일괄타결방식과 병행해서 복수국간협상을 추진하는 신축적 다자주의, 또는 조화된 다자주의를 지지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복수국간협상은 그동안 선진국들이 주장해온 전자상거래나 투자원활화 등의 부문에서 조기 도입될 전망이고, 향후 빠른 전개가 예상되기 때문에(미국 등 선진국이 복수국간협상을 통해 빠른 성과도출과 다자화를 추구할 것으로 전망됨) 이에 적극 참여하는 것이 중요하다.

협상 대응 4: 신축적 다자주의지지 및 복수국간협상 적극 참여

- □ 일괄타결방식과 복수국간협상방식이 섞여 있는 신축적 다자주의를 지지
 - 개도국이 일괄타결방식을 선호, DDA 일부 이슈에서는 현재와 같은 일괄타결방식의 협상이 불가피할 전망
 - 따라서 복수국간협상과 일괄타결방식의 협상이 공존하는 '신축적 다자주의(flexible multilateralism)'를 지지
 - . 전자상거래, 투자원활화 등 선진국이 원하는 분야에서는 복수국간협상을 추진
 - . 기존 DDA 이슈: 일괄타결방식을 그대로 사용
- □ 선진국 중심의 복수국간협상에 적극 참여
 - 특히 디지털 무역협정 논의에 적극 참여하여 이 기회를 계기로 국내 디지털 무역환경을 정비, 국제 규범화 작업에 편승할 수 있도록 협상 전략을 수립

기타 1. WTO 의사결정 방식 ⇒ 비공식회의 참여 국가 수 확대 및 투명성 제고

WTO의 의사결정방식 문제는 오래전부터 지적되어온 WTO가 안고 있는 대표적인 문제로 우리나라는 비공식회의에 참여하는 회원국 수의 확대 및 운용의투명성 제고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다.

협상 대응 5: 비공식회의 참여 국가 수 확대 및 절차 투명성 제고 □ 주요국 비공식회의의 참여국 수 확대 - 합의 도출의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해도 보다 많은 회원국의 참여로 비공식회의의 정당성 제고 및 반발 무마(선정 기준: 세계무역 비중과 지역별 안배를 동시 고려) □ 비공식회의 진행의 투명성 제고 - 회의 소집 및 논의 주제 등을 사전에 충분한 기간을 두고 공지 및 회람. 이를 통해 참여하지 못하는 회원국이 대응할 시간을 부여 □ 사후 의견 개진의 기회 보장 - 비공식회의 불참 회원국이 사후라도 의견을 개진할 기회를 제도적으로 보장

이를 통해 비공식회의에 초대받지 못한 회원국의 불만을 완화시켜줄 필요가 있으며, 특히 전략적으로 우리나라가 비공식회의에 자동 초대받게 만드는 작업 도 중요하다. 이러한 의미에서 회원국 수 확대 시 세계 무역에서의 비중을 고려 하는 것을 적극 제안해야 하며, 지역별 안배를 감안하되 그렇다고 아시아지역에서 우리나라가 배제되는 경우는 적극 피해야 할 것이다.

2. 우리나라 다자통상정책의 신 방향

방향 1. WTO 체제 내 위상 강화

WTO 체제 내에서 우리나라의 위상을 강화하기 위해서 ① 다자통상 전문 인력의 확충 및 WTO 사무국 진출 확대 ② WTO 주관사업에 적극 참여 ③ WTO 각료회의 개최 ④ 다자협상 진전에 실질적 기여 등의 방안을 모색해 볼 수 있다.

1) 다자통상 전문인력의 확충 및 WTO 사무국 진출 확대

무역과 통상의 경제적 중요성이 높은 우리나라의 상황과 경제정책의 대부분이 국제 통상과 관련성이 깊어져가는 추세 속에서 WTO 규범의 해석과 적용에 관한 법률적 전문성 제고를 포함하여 WTO 다자통상체제에 대한 체계적인 전문역량의 육성은 그 중요성이 점차 커지고 있으며, 이를 위해 체계적이고 정책적인 접근이 요구되고 있다.

이에 우리나라도 정책적으로 관련 분야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공직자의 WTO 파견이나 패널로의 진출 기회를 적극 지원하여 내부적으로 WTO 전문

역량을 증진시키는 한편, 대외적으로도 WTO 내 우리의 위상을 제고하는 수단으로 활용해야 한다. 한편 WTO의 주요 부서에 한국인 전문가 진출을 확대하는 것도 적극 추진해야 한다.

2) WTO 주관사업에 적극 참여

WTO가 주관하는 다양한 사업에 적극 참여함으로써 우리나라의 위상을 제고하는 것도 적극 고려할 필요가 있다. 대표적인 WTO 주관사업으로 WTO 공공포럼과 교육역량사업이 있다. 우리나라도 국책연구기관이나 교육기관 또는 무역 관련 협회나 단체 등을 활용하여 WTO 공공포럼에서 한국 기관이 주관하는 세션을 확보하고, 지속적으로 참여하여 해외 WTO 전문가들과의 네트워킹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최근 TBT 정책역량을 대폭 강화한 국가기술표준원, SPS 정책의 전문성과 조직위상을 제고한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의 기관은 관련분야에서 WTO와 협력을 통한 우리나라의 대외적 위상제고 가능성이 큰 기관들이다. 마찬가지로 개도국 무역지원(Aid for Trade)분야도 우리나라가 ODA 예산 중 해당 사업 비중을 늘려 무역과 개발의 연계성을 다툼으로써 WTO 내 우리나라의 위상을 높이는 데 효과적인 방안이 될 수 있다.

3) WTO 각료회의 개최

우리나라가 WTO 각료회의를 개최하는 것도 의미가 있다. 자유무역을 통해 경제성장을 이룩한 대표적인 국가로서 다자체제가 위기를 맞고 있는 현시점에 서 WTO 각료회의 유치는 의미는 남다르다.

4) 교착상태에 빠진 다자무역협상의 진전에 실질적으로 기여

가) 서비스시장 개방방식의 새로운 제안

서비스 시장개방의 실질적 진전을 위해서는 지금과 차원이 다른 새로운 2단계 접근이 필요하다. 1단계로 현 시점을 기준으로 각 서비스별로 세계교역구조를 분석하여 하나의 공통적인 '모범시장개방안(Model Market Access)'을 마련한다. 이후 2단계로 회원국별 예외적인 양허제한을 허용한다. 즉 네거티브 방식을 적용해 구체적인 양허 제한사항을 기재하고 이를 서비스 세부 분야별로 공동화하여 경제성 분석이나 투자지분제한 등 대부분의 국가에서 필요한 규제는 양허제한사항으로 도입하되 현재 회원국별로 상이한 양허는 가급적 최대한 통합하는 방안이다.

나) 서비스 무역구제제도 제시

서비스협정의 무역구제제도 마련은 우리나라가 주도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분야이다. 서비스 무역구제제도 마련에 처음부터 완벽한 모델을 제시할 필요는 없다. 최소한의 논의 전개를 위한 핵심 의제를 마련한 다음 이후 계속된 논의를 통해 참여국들의 지속적인 관심을 유도함으로써 제도 마련을 위한 기본들을 만들어가는 방향으로 논의를 선도할 수 있다.

다) 규범 협상 논의에서 현행 WTO 내 각종 해당 위원회 적극 활용

WTO 규범 개편 작업 중 현행 규범의 운용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를 개선하는 부분은 해당 소관 위원회로 넘겨 그곳에서 전적으로 다루도록 우리나라가 적극 제시할 필요가 있다. 보조금위원회, TBT 위원회, 세이프가드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서 해당 협정에 관한 명료화 작업을 담당하고 이에 대한 합의안을 만들어 상품이사회를 거쳐 일반이사회에 회부하면 회원국이 그 합의안을 검토해 합의를 도출하는 방식을 통해 규범 협상의 실질적 진전이 가능하다.

정책 제언 1. WTO 체제 내 우리나라의 위상 강화 방안

다자통상 전문인력의 확충 및 WTO 사무국 진출 확대
- WTO 파견 : 우선 제네바 현지 근무 중인 공무원 및 국책연구기관 대상
- WTO 사무국 진출 : 우선 제네바 현지 근무 중인 공무원 대상

WTO 주관 사업에 적극 참여
- 공공 포럼에 적극 참여
- WTO 주관 교육프로그램에 예산 및 인력 지원
- 개도국무역지원(Aid for Trade)에 적극 참여

WTO 각료회의 개최
- WTO 채제 위기에서 중견 통상국가로서 각료회의를 개최 : 이미지 개선
- 국내외 새로운 개혁의 계기로 활용

WTO 다자무역협상 진전에 기여
- 서비스시장 개방방식의 새로운 제안: 모범 시장개방안 방식
- 서비스 세이프가드 제안

방향 2. 포용적 무역의 선도

- 규범 개정에 있어서 기존 WTO 위원회를 적극 활용

포용적 무역(inclusive trade)은 개도국의 실질적 시장접근 기회를 확대하는 데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 우리나라가 중점을 가지고 추진해야 될 새로운 정책방향은 ① 무역원활화 협정의 이행 확산 ② 비관세장벽 중심의 시장개방 선도 ③ 한국식 양자 및 지역 GSP 프로그램 추진 ④ 중소기업의세계화 추진 등을 생각해볼 수 있다.

1) 무역원활화협정의 이행 확산

무역원활화협정은 수출입과 관련된 규제와 정보의 공표와 시행을 비롯하여수출입 관련 절차의 간소화 및 수수료의 합리화, 통과의 자유 보장 등 개도국의 선진국 시장진입을 위한 첫 관문인 통관 관련 다양한 절차를 보다 용이하게 하여 관련 비용을 낮추기 위한 실질적인 조치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대표적인 포용적 무역정책이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무역원활화협정이 효과적으로 작동되고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구체적으로 우리나라는 우선적으로 개도국들이 C 의무에서 가장 많이 요청한 조치를 중심으로 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특히 우리나라가 상대적으로 강점을 가지고 있는 분야를 중심으로 개도국 및 최빈개도국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한편 무역원활화협정의 이행지원신탁기금(TFAF)을 적절히 분담함으로써 무역원활화협정 이행의 의지와 함께 WTO에서 우리나라의 위상을 높이는 방안도 필요하다.

2) 비관세장벽 중심의 시장개방 선도

우리나라가 주도하여 비관세장벽 철폐그룹을 형성한 다음 비관세장벽의 철폐를 목표로 논의를 주도하되 다음과 같은 2단계 접근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1단계로 먼저 비관세장벽 현황을 파악한다. 이를 위해 WTO와 UNCTAD의 비관세장벽 통계를 일치시키는 것이 필요하며, 이와 함께 관련 비관세장벽의 통보의무를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 이후 2단계로 회원국별로 자율적으로 일정기간 안에 자국의 해당 비관세장벽 철폐를 단행하는 이행계획서를 제출하게 함으로써 실질적 시장개방을 추진한다. 이 때 국가별 여건을 감안해 즉시 철폐, 3년, 5년, 10년 철폐 등 철폐기간을 다양화하여 신축성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

3) 한국식 양자 및 지역 GSP 프로그램 추진

최빈개도국과 특정 개도국을 대상으로 이들을 2~3개 그룹으로 나누고 각각의 그룹에 적합한 GSP를 실시할 수도 있다. 각각의 그룹에 속하는 국가로부터 그들이 원하는 시장개방 요청품목 및 기술지원 요청목록을 제출받고, 그 것을 중심으로 우리나라의 내부 사정을 감안해 선별적인 GSP를 실시할 수 있을 것이다.

이 때 일부 개방이 어려운 품목의 경우 그동안 우리나라가 FTA를 통해 관세를 철폐한 스케줄에 맞추어 시장개방을 한다면 그만큼 국내 반발을 줄일 수 있으며, 대안으로 시장개방 대신 그에 상응한 수준의 기술지원(특히 ODA 병행활용)을 제공함으로써 개도국을 배려한 한국식 GSP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4) 중소기업의 세계화 추진

포용적 무역정책의 중심에는 중소기업이 있으며, 대표적인 예로 중소기업의 세계화를 위한 지원(기술지원 포함)을 생각해볼 수 있다. 중소기업의 세계화는 국내 대기업의 수요독점구조에 영향을 미쳐 국내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불 공정 경쟁기조를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는 방안이기도 하다.

글로벌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중소기업의 글로벌 가치사슬 편입을 위해서는 통상정책 차원에서의 지원이 중요하다. 해외 마케팅은 국내외 다양한 지사를 가지고 있는 한국무역투자진흥공사와의 연결을 통하고, 통관 및 수출 애로점은 해당 국가와의 양자 또는 다자 차원에서 이를 해결하는 노력을 통해 중소기업의 세계화를 도울 수 있다.

정책 제언 2: 포용적 통상의 선도

- □ 무역원활화협정 이행 확산
 - 개도국 및 최빈개도국들이 요청한 C의무 중 가장 많이 통보한 조치를 중심으로 지원 (싱글윈도우, 위험관리, 인가된 영업자, 평균 반출시간 측정 및 공표 등)
 - 무역원활화협정의 이행지원신탁기금(TFAF) 지원
- □ 비관세장벽 위주의 상품시장개방 복수국간협상 추진
 - 비관세장벽 철폐 그룹 형성 및 복수국간협상을 주도
 - 1단계: 국제기구의 비관세장벽 데이터 통일 및 WTO 통보의무 강화
 - 2단계: 철폐대상 비관세장벽 선정 및 신축적 철폐
- □ 한국식 양자 및 지역 GSP 프로그램 추진
 - (최빈)개도국을 2~3개 그룹으로 분류
 - 해당 그룹별로 우리나라에 대한 요청사항을 시장개방 및 기술협력지원으로 구분
 - FTA를 감안하여 부분 상품시장 개방 및 보완적인 기술협력 지원
- □ 중소기업의 국제화를 사안별로 지원
 - 생산성이 있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여 해당 기업-코트라-현지 대사관을 연계, 건별 실적 중심의 양자/다자 협상으로 해결
 - 인센티브 시스템 도입

방향 3. 양자 및 지역무역협정의 다자화

지금까지 추진한 FTA마다 서로 상이한 기준(예: 상이한 원산지 기준) 등으로 인해 발생한 거래비용을 낮추기 위해 개별 양자 또는 지역무역협정의 다자화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지금까지 우리나라가 추진했던 FTA를 하나로 묶을 수 있는 공통의 틀이 필요하다. 관세의 경우 개방 폭이 가장 큰 품목을 기준으로 모든 FTA에서의 해당 상품 관세감축 스케줄을 하나로 통일시킬수 있다. 서비스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단일의 틀을 만들 수 있으며, 기타 관련제도나 기준 역시 같은 방법을 적용할 수 있다.

정책 제언 3: 양자·지역무역협정의 다자화

- □ 상품 및 서비스 양허 스케줄의 일치
 - 동일 상품의 경우 FTA별로 개방 스케줄을 비교하여 가장 빠른 개방 스케줄로 점진적으로 일치화(이를 통해 수입의 효율성 제고를 기할 수 있음)
- □ 규범 및 원산지규정의 일치
 - 가장 앞선 기준으로 규범의 일치화를 점진적으로 추구
 - 원산지 기준의 경우 일치화를 위해 지속적인 개별 FTA의 업그레이드 필요

방향 4. 다자통상정책의 지속 가능성 강화

파리 기후변화협약으로 인해 다자통상정책도 이제는 기후변화 및 환경을 고려해야 하는 상황에 이르렀다고 판단된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의 다자통상정책도 지속가능성을 강화시킬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한 실천적 방안으로 ① 환경상품협상(EGA)의 재개 및 주도 ② WTO 분쟁해결의 신축적 운영에 기초한 무역과 환경의 조화 ③ 환경보조금 허용화 등을 생각해볼 수 있다.

1) 환경상품협상 재개 및 주도

다자통상정책의 지속 가능성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중단된 환경 상품협정 협상을 우리나라가 주도적으로 재개해 협상을 이끌어나갈 필요가 있다. 일단 분위기조성을 위해 주요국 정상들이 모이는 자리(다보스 포럼이나 G20 등)에서 환경상품협상의 재개를 선언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후 실질 협상은 환경전문가그룹을 이용해 그들의 제출한 넓은 범위의 환경상품목록에 기초해 관세철폐 내지 감축협상을 추진한다.

2) WTO 분쟁해결의 신축적 운영에 기초한 무역과 환경의 조화

무역과 환경 간 정합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궁극적으로 WTO 협정을 개정해야 하지만 단기적으로 WTO 분쟁해결을 통한 환경보호 관련 무역 조치의 수용을 추구하되, 무역과 환경 관련 분쟁을 환경 중심의 관점에서 독립적으로 다룰 수 있도록 새로운 분쟁해결기관을 설립하는 방안도 고려해볼 수 있다.

3) 신 다자무역규범의 추진: 환경보조금 허용

신 무역규범을 통한 WTO의 환경 보조금 허용을 추구하되 잠정조치로 각료 선언문이나 일반이사회 결정문 형식을 통해 WTO 회원국 모두의 공동행동 (collective action)으로 환경보조금을 상호 허용하는 내지는 환경보조금에 대해 상호 제소하지 않는 평화협정문 등의 합의를 추구하는 것을 생각해볼 수 있다.

정책 제언 4: 다자통상정책의 지속 가능성 강화

- □ 환경상품협상(EGA)의 재개 및 주도
 - 1단계로 환경상품협정 재개 분위기 조성
 - 2단계로 환경전문가그룹에게 넓은 의미의 환경상품대상을 요청, 이를 기초로 협상 (관세 감축 및 철폐)
- □ WTO 분쟁해결의 신축적 운영에 기초한 무역과 환경의 조화
 - 환경에 보다 중점을 둔 WTO 분쟁해결 기능에 기초한 무역과 환경의 조화
 - 환경 관련 전문 분쟁해결기구의 설치 및 운영도 고려 가능
- □ 신 다자무역규범의 추진: 환경보조금 허용
 - 장기적으로 신 다자무역규범의 추진 아래 환경보조금 허용
 - 잠정적으로 각료회의나 일반이사회의 결정을 통해 환경보조금의 상호 허용 내지는 상호 제소 자제를 위한 평화협정문 추진

참고문헌

[국문자료]

- 강상인. 2015. 「Post-2020에 관한 WTO 동향과 전망」. 제29차 정책토론회 자료. 국회기후변화포럼. (4월 23일)
- 고준성, 김인철, 유진근, 김계환, 유이선, 김바우, 정선인, 윤정현, 강문성, 공수진. 2017. 『미국의 신보호주의 부상에 대한 대응 연구』.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미래사회 협동연구총서 17-09-01. 경제·인문사회연구회.
- 관계부처합동. 2012. 「한·미 FTA 주요내용」.
- 관세청. 2018. 「관세청, '기회의 땅' 아프리카 가나에 전자통관시스템(UNI-PASS) 수출」. 보도자료. (7월 4일)
- 김민성. 2018. 「WTO 무역원활화협정의 이행 현황과 시사점」. KIEP 기초자료 18-14.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무역협회. 2017. 『중국 사이버보안법 관련 법규 해설』.
- 박덕영. 2015. 「Post-2020에 관한 WTO 동향과 전망」. 제29차 정책토론회 자료. 국회기후변화포럼. (4월 23일)
- 박성훈, 한홍렬, 송유철, 강문성, 송백훈. 2017. 『최근 국제통상 환경의 변화에 따른 한국의 새로운 통상정책 방향』.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박혜리. 2018. 「'Buy National' 정책의 확산과 최근 정부조달의 국제 논의 동향」. KIEP 기초자료 제18-12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백윤정. 2014. 「자유화와 환경보호, 두 마리 토끼잡기」. 『나라경제』, 6월호. KDI 경제정보센터.
- 산업통상자원부. 2015. 「정보기술협정 확대협상 품목리스트 최종합의」. 보도참고 자료. (7월 27일)
- _____. 2016. 「WTO환경상품협정(EGA) 장관회의 결과」. 보도자료. (12월 5일) 서진교, Sherzod Shadikhodjaev, 이경희, 박지현, 윤창인. 2008. 「WTO 체제의 개혁 방향과 한국의 대응』. 연구보고서 08-05.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서진교, 박지현, 김민성. 2018. 「최근 WTO 체제 개편 논의와 정책 시사점」. KIEP

- 오늘의 세계경제 제18-40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서진교, 오수현, 박지현, 김민성, 이창수. 2013. 『DDA협상 조기수확 패키지의 경제적 효과분석과 정책 대응』. 연구보고서 13-06.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서진교, 이효영. 2016. 「WTO 나이로비 각료회의 평가와 정책 시사점」. KIEP 오늘 의 세계경제 제16-7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심영규. 2015. 「WTO 다자간 무역규범체제에서의 환경보호의 규범적 실효성 GATT 제20조 환경관련 무역분쟁 해결사례를 중심으로」. 『국제경제법연구』, 13(2), pp. 77~99. 한국국제경제법학회.
- 안덕근. 2012. 『세계무역기구의 지배구조 관련 문제점과 한국의 정책대안』. 무역투 자연구시리즈 12-02.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안덕근, 김민정. 2017. 『국제통상체제와 무역기술장벽』. 박영사.
 _____. 2019. 『WTO 체제의 표준정책과 기술규제 대응체제』. 서울대학교 출판부 (출간 예정).
- 오선영. 2011. 「다자간환경협약(MEAs)과 WTO 협정 충돌 문제에 대한 접근-환경 줌심의 새로운 분쟁해결기관 설립에 관한 검토」. 『국제경제법연구』, 9(2), pp. 189~216. 한국국제경제법학회.
- 유지영. 2017. 「국가 안보 위협 논란에 따른 미국의 1962년 무역확장법 232조 수입조치에 대한 통상법적 쟁점」. 『통상법률』, 제138호, pp. 9~42. 법무부 국제법무과.
- 이석호, 조일현. 2018. 『국제 신재생에너지 정책변화 및 시장분석』. 기본연구보고 서 18-27. 에너지경제연구워.
- 이은섭, 오병석, 이양기, 김선옥. 2012. 「WTO 체제하의 환경과 자유무역간의 조화」. 『통상정보연구』, 14(1), pp. 247~271. 한국통상정보학회.
- 조문희, 김종덕, 박혜리, 정민철. 2017. 『신보호무역주의하에서의 비관세조치 현황과 영향에 관한 연구: UNCTAD 비관세조치 분류체계를 중심으로』. 연구보고서 17-24.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영문자료]

- Ahn, Dukgeun. 2008. "Foe or Friend of GATT Article XXIV: Diversity in Trade Remedy Rules." *Journal of International Economic Law*, Vol. 11, No. 1.
- Ahn, Dukgeun, Jihong Lee, and Jee-Hyeong Park. 2013. "Understanding Non-litigated Disputes In the WTO Dispute Settlement System."

- Journal of World Trade, Vol. 47, No. 5, pp. 985-1012.
- Autor, David H., David Dorn, and Gordon H. Hanson. 2016. "The China Shock: Learning from Labor Market Adjustment to Large Changes in Trade." *Annual Review of Economics*, Vol. 8(1).
- Bacchus, James. 2018. "Might Unmakes Right The American Assault on the Rule of Law in World Trade." Centre for International Governance Innovation(CIGI) Papers, No. 173.
- Bourguignon, F. 2015. *The Globalization of Inequality*. Princeton and Oxford: Princeton University Press.
- Bown, Chad P. 2004. "On the Economic Success of GATT/WTO Dispute Settlement." *The Review of Economics and Statistics*, 86(3), pp. 811-823.
- Bown, Chad P. and Kara M Reynolds. 2017. "Trade Agreements and Enforcement: Evidence from WTO Dispute Settlement." *American Economic Journal: Economic Policy*, 9(4), pp. 64-100.
- "Canada's WTO Reform Proposal." 2018. Washington Trade Daily. (September 7).
- Cartland, Michel, Gerard Depayre, and Jan Woznowski. 2012. "Is Something Going Wrong in the WTO Dispute Settlement?" *Journal of World Trade*, Vol. 46, No. 5, pp. 979–1016.
- Chaudoin, Stephen, Jeffrey Kucik, and Krzysztof Pelc. 2016. "Do WTO Disputes Actually Increase Trade?" *International Studies Quarterly*, Vol. 60, Iss. 2, pp. 294-306.
- Cooper, Richard N. 1989. "An Appraisal of Trade Policy during the Reagan Administration." *Harvard International Review*, Vol. 11, No. 3.
- Croome, John. 1995. Reshaping the World Trading System: A History of the Uruguay Round. World Trade Organization.
- Deardorff, Alan. 1991. "Trade Policy of the Reagan Years." Anandi P. Sahu and Ronald L. Tracy eds. *The Economic Legacy of the Reagan Years: Euphoria or Chaos?* pp. 187-203. New York: Praeger Publishers.
- Ehlermann, Claus-Dieter and Lothar Ehring. 2005. "Decision-Making in

- the World Trade Organization: Is the Consensus Practice of the World Trade Organization Adequate for Making, Revising and Implementing Rules on International Trade?" *Journal of International Economic Law*, Vol. 8, Iss. 1, pp. 51–75.
- Elms, Deborah and M. Nguyen. 2017. "Trans-Pacific Partnership Rules for Digital Trade in Asia." ADBI Working Paper Series, No. 746.
- Elsig, Manfred. 2010. "WTO Decision-Making: Can We Get a Little Help from the Secretariat and the Critical Mass?" *Redesigning the WTO for the 21st Century*, pp. 67-90. Wilfrid Laurier University Press.
- European Commission. 2017. Aid for Trade-Report 2017.
- Evenett, Simon J. and Johannes Fritz. 2016. *The 19th Global Trade Alert Report: Global Trade Plateaus*.
- Footer, Mary. 2005. *An Institutional and Normative Analysis of the World Trade Organization*. Martinus Nijhoff.
- Government of Australia. 2018. Initial comments on Canada's Draft Discussion Paper: "Strengthening and Modernizing the WTO."
- Government of Brazil. 2018. "Strengthening and Modernizing the WTO." Draft Discussion Paper.
- Government of Canada. 2018. "Strengthening and Modernizing the WTO." Draft Discussion Paper.
- Government of Chile. 2018. Chile's views regarding the current WTO situation.
- Government of Japan. 2018. Japan's Preliminary Comments on Canada's Draft Discussion Paper.
- Government of Korea. 2018. Korea's Preliminary Comments on Canada's Paper.
- Government of Mexico. 2018. "Strengthening and Modernizing the WTO." Discussion Paper.
- Government of New Zealand. 2018. "Strengthening and Modernizing the WTO." Draft Discussion Paper.
- Government of Norway. 2018. Norway's Preliminary Comments on Canada's Paper.
- Government of Singapore. 2018. Singapore's Preliminary Comments on Canada's Draft Discussion Paper on "Strengthening and

- Modernising the WTO."
- Government of Switzerland. 2018. Switzerland's Preliminary Comments on Canada's Draft Discussion Paper.
- Holzer, Kateryna. 2014. *Carbon-Related Border Adjustment and WTO Law.* Edward Elgar. 번역: 박덕영, 박영덕, 이주윤, 이준서. 2016. 『탄소 관련 국경조정과 WTO법』. 박영사.
- Horlick, Gary. 1995. "WTO Dispute Settlement and the Dole Commission." *Journal of World Trade*, pp. 45-48.
- Howse, Robert L. 1999. "The House That Jackson Built: Restructuring the GATT System." *Michigan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Vol. 20, Iss.2.
- Hufbauer, Gary and Jeffrey Schott. 2012. "Will the World Trade Organization Enjoy a Bright Future?" Policy Brief, 12-11. Petersen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s.
- _____. 2013. *Payoff from the World Trade Agenda 2013.* Peterson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s.
- Jackson, John H. 1990. *Restructuring the GATT System*. New York: Council on Foreign Relations Press.
- _____. 2000. The Jurisprudence of GATT and the WTO: Insights on Treaty
 Law and Economic Relations. Cambridge University Press.
- _____. 2009. Sovereignty, the WTO and Changing Fundamentals of International Law. Cambridge University Press.
- Johannesson, Louise and Petros C. Mavroidis. 2015. "Black Cat, White Cat: The Identity of the WTO Judges." *Journal of World Trade*, Vol. 49, No. 4, pp. 685-698.
- Jones, Kent. 2015. Reconstructing the World Trade Organization for the 21st Century: An Institutional Approach. Oxford University Press.
- Kucik, Jeffrey and Krzysztof J Pelc. 2016. "Measuring the Cost of Privacy: A Look at the Distributional Effects of Private Bargaining." *British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46(4), pp. 861-889. Cambridge University Press.
- Lammersen, Frans and Michael Roberts. 2015. "Aid for Trade 10 Years on: Keeping It Effective." OECD Development Policy Papers, No. 1. OECD Publishing.

- Lawrence, Robert. 2006. "Rulemaking amidst Growing Diversity: A Club-of-Clubs Approach to WTO Reform and New Issue Selection." *Journal of International Economic Law*, Vol. 9, Iss. 4, pp. 823-835.
- Lewis, Meredith Kolsky. 2012. "Dissent as Dialectic: Horizontal and Vertical Disagreement in WTO Dispute Settlement." *Stanford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48(1).
- Linarelli, John. 2011. "Redesigning Global Trade Institutions." *Southwestern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18(1).
- Mavroidis, Petros. 2017. "The Gang that Could Not Shoot Straight: the Not So Magnificent Seven of the WTO Appellate Body." *European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pp. 1107-1118.
- Marco Bronckers, 2000. "The WTO Reference Paper on Telecommunications:

 A Model for WTO Competition Law?" In *NEW DIRECTIONS IN INTERNATIONAL ECONOMIC LAW: Essays in Honour of Professor John H. Jackson*, pp. 371–389. Bronckers & Quick eds. Kluwer.
- Melitz, M. 2003. "Impact of Trade on intra-industry reallocations and Aggregate Industry Productivity." *Econometrica*, Vol. 71, No. 6, pp. 1695-1725.
- Milanovic, B. 2016. Global Inequality. Harvard University Press.
- OECD. 2015. Implementation of the WTO Trade Facilitation Agreements: The Potential Impact on Trade Costs.
- Oxfam. 2000. "Institutional Reform of the WTO." Oxfam GB Discussion Pager. (March)
- Patterson, Eliza. 2010. "What's Wrong with the WTO?: Rethinking the Institutional Design." *Global Policy*. (October 4)
- Pauwelyn, Joost. 2003. "The Limits of Litigation: "Americanization" and Negotiation in the Settlement of WTO Disputes." *Ohio State Journal on Dispute Resolution*, 19(1), pp. 121-140.
- Reich, Arie. 2018. "The Effectiveness of the WTO Dispute Settlement System: A Statistical Analysis." *Transnational Commercial and Consumer Law: Current Trends in Business Law*, pp. 1-43. Springer.
- Saika, Naoto. 2017. "Seeds, Trade, Trust: Regionalization Commitments

- under the SPS Agreement." *Journal of International Economic Law*, Vol. 20, Iss. 4, pp. 855-881.
- Schott, Jeffrey and Jayashree Watal. 2000. "Decision-Making in the WTO." Policy Briefs, PB00-2. Peterson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s.
- Shin, Wonkyu and Dukgeun Ahn. 2018. "Trade Gains from Legal Rulings in the WTO Dispute Settlement System." *World Trade Review*, pp. 1-31.
- Sutherland, Peter, Jagdish Bhagwati, Kwesi Botchwey, Niall FitzGerald, Koichi Hamada, John H. Jackson, Celso Lafer, and Thierry de Montbrial. 2004. *The Future of the WTO: Addressing Institutional Challenges in the New Millennium.* WTO.
- USTR. 2017. 2017 Trade Policy Agenda and 2016 Annual Report.

 _____. 2018. 2018 Trade Policy Agenda and 2017 Annual Report.

 USITC(US International Trade Commission). 2013. "Digital Trade in the
- U.S. and Global Economies, Part 1." USITC Publication 4415.
- _____. 2014. "Digital Trade in the U.S. and Global Economies, Part 2." USITC Publication 4485.
- World Inequality Lab. 2018. World Inequality Report 2018.
- WTO. 1995a. Minutes of Meeting(WT/GC/M/6).
- _____. 1995b. Accession of Ecuador(WT/ACC/ECU/6).
 _____. 1995c. Decision Making Procedures Under Articles IX and XII
- of the WTO Agreement(WT/L/93).
- _____. 1996. European Communities- Regime for the Importation, Sale and Distribution of Bananas(WT/DS27/1).
- _____. 2001a. Accession of the separate customs territory of Taiwan, Penghu, Kinmen and Matsu(WT/L/433).
- _____. 2001b. *Ministerial Declaration*(WT/MIN(01)/DEC/1).
- _____. 2002. United States Section 129(c) of the Uruguay Round Agreements Act(WT/DS221/R).
- _____. 2004. United States Continued Dumping and Subsidy Offset Act of 2000(WT/DS217/ARB/KOR).
- _____. 2006. Transparency Mechanism for Regional Trade Agreements (WT/L/671).

	. 2007. World Trade Report 2007- Six Decades of Multilateral Trade
	Cooperation: What Have We Learnt?
	. 2010. Working Procedures for Appellate Review(WT/AB/WP/6).
	. 2011a. World Trade Report 2011 - The WTO and Preferential
	Trade Agreements: From Co-existence to Coherence.
	. 2011b. Report by the Chairperson of the Working Party on GATS
	Rules(S/WPGR/21).
	. 2011c. Negotiations on Trade in Services(TN/S/36).
	. 2014a. Indonesia-Recourse to article 22.2 of the DSU in the US-
	Clove Cigarettes Dispute(WT/DS481/1/DS481/1).
	. 2014b. United States- Measures Affecting the Production and Sale
	of Clove Cigarettes(WT/DS406/17).
	. 2014c. United States-Subsidies on Upland Cotton(WT/DS267/46).
	. 2015a. The WTO at Twenty.
	. 2015b. 20 Years of the WTO A Retrospective.
	. 2015c. World Trade Report 2015 - Speeding up Trade: Benefits
	and Challenges of Implementing the WTO Trade Facilitation
	Agreement.
	. 2016a. The WTO Agreements Series: Agriculture(Third edition).
	. 2016b. "United States - Measures related to price Comparison
	methodologies." WT/DS515/1.
	. 2017a. Procedures to Enhance Transparency and Strengthen
	Notification Requirements under WTO Agreements(JOB/GC/148).
	. 2017b. "Trade in Food and Agricultural products joint statement
	of undersigned Ministers." WT/MIN(17)/52.
	. 2018a. <i>Annual Report 2018</i> .
	. 2018b. EU's proposals on WTO Modernisation.
	. 2018c. Strengthening and Modernizing the WTO: Discussion
	Paper(JOB/GC/201).
	. 2018d. World Trade Report 2018.
	. 2018e. World Trade Statistical Review 2018.
WTO	and OECD. 2017. Aid for Trade at a Glance 2017: Promoting Trade,
	Inclusiveness and Connectivity for Sustainable Development.

[온라인 DB]

- 한국무역협회. 무역통계. http://stat.kita.net/main.screen(검색일: 2018. 11. 16) 관세청 Yes FTA. 협정별 세율정보. https://www.costoms.go.kr/kcshome/fta portalkor/ftaTrtyManage/ImportTariff.do?layoutMenuNo=30739 (검색일: 2018. 11. 16)
- IMF. World Economic Outlook Database. https://www.imf.org/external/pubs/ft/weo/2018/01/weodata/index.aspx(검색일: 2018. 8. 2).
- UN Comtrade. https://comtrade.un.org/data(검색일: 2018. 11. 15).
- WITS. https://wits.worldbank.org/WITS/WITS/Restricted/Login.aspx(검색일: 2018. 11. 15).
- WTO. The Regional Trade Agreements Information System. http://rtais.wto.org/UI/charts.aspx#(검색일: 2018. 10. 17).
- WTO Trade Facilitation Agreement Database. 2018. Notifications List. https://www.tfadatabase.org/notifications/list?notificationtype=a (검색일: 2018. 11. 21).
- . 2018. Implementation Notifications(Categories A, B, C). https://www.tfadatabase.org/notifications/implementation(검색일: 2018. 11. 28).
- _____. 2018. Most Notified vs. Least Notified Measures. https://www.tfada tabase.org/notifications/most-notified-and-least-notified(검색일: 2018. 11. 28).

[온라인 자료]

- 「칸쿤회의 시위 한국농민 자살」. 2003. 『연합뉴스』. (9월 11일).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4&oid=001&aid=0000456016(검색일: 2018. 8. 23.)
- 「UR協商 妥結 앞두고 國內外서 큰 波長 일 듯」. 1990. 『연합뉴스』. (11월 6일).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01&aid=0003459168(검색일: 2018. 8. 23).
- 「'WTO 모범국' 한국의 역할」. 2010. 『동아일보』. (6월 24일). http://news.dong a.com/3/all/20100624/29342313/1(검색일: 2018. 9. 23).

- Bown, Chad P. and Melina Kolb. 2018. "Trump's Trade War Timeline: An Up-to-Date Guide." https://piie.com/blogs/trade-investment-policy-watch/trump-trade-war-china-date-guide(검색일: 2018. 7. 5).
- EU. "Concept Paper." http://trade.ec.europa.eu/doclib/docs/2018/sept ember/tradoc_157331.pdf(검색일: 2018. 8. 20).
- "EU and Japan Join U.S. in Criticizing China at WTO Summit." 2017. *The Wall Street Journal.* (December 12), https://www.wsj.com/articles/eu-and-japan-join-u-s-in-criticizing-china-at-wto-summit -1513122372(검색일: 2018. 8. 20).
- European Commission. 2018. "Joint Statement on Trilateral Meeting of the Trade Ministers of the United States, Japan, and the European Union." http://trade.ec.europa.eu/doclib/docs/2018/may/tradoc_156906. pdf(검색일: 2018. 8. 2).
- ICTSD. https://www.ictsd.org(검색일: 2018. 7. 12).
- IMF. 2018. "IMF Executive Directors and Voting Power." http://www.imf. org/external/np/sec/memdir/eds.aspx(검색일: 2018. 8. 2).
- ITU releases 2018 global and regional ICT estimates. https://www.itu.int/en/mediacentre/Pages/2018-PR40.aspx(검색일: 2018. 12. 12).
- "Old Fault Lines Re-Emerge Ahead Of TISA Deadline For Revised Offers." 2016. Inside US Trade. (April 22). https://insidetrade.com/daily-ne ws/old-fault-lines-re-emerge-ahead-tisa-deadline-revised-offers (검색일: 2018. 7. 12).
- UNCTADstat. http://unctadstat.unctad.org/wds/TableViewer/tableView.a spx(검색일: 2018. 11. 16).
- U.S. Government Printing Office. 1995. "World Trade Organization(WT O) Dispute Settlement Review Commission Act."
 https://www.finance.senate.gov/imo/media/doc/Hrg104-124.pdf
 (검색일: 2018. 8. 1).
- U.S. Chamber of Commerce. 2017. "The Dynamic Gains from Free Digital Trade for the U.S. Economy." https://www.uschamber.com/sites/default/files/09.12.17_-_testimony_by_sean_heather_on_digital trade to jec.pdf(검색일: 2018. 10. 4).
- WTO. 2014. "Azevêdo welcomes launch of plurilateral environmental go ods negotiations." (July 8). https://www.wto.org/english/news_e/

news14_e/envir_08jul14_e.htm(검색일: 2018. 11. 16). ____. 2016. "Statement by the United States at the Meeting of the WTO Dispute Settlement Body." https://www.wto.org/english/news_e/ news16_e/us_statment_dsbmay16_e.pdf(검색일: 2018. 7. 15). . 2017. "Eleventh WTO Ministerial Conference." https://www. wto.org/english/thewto_e/minist_e/mc11_e/mc11_e.htm(검색일: 2018. 7. 15). . 2018. "Appellate Body Members." https://www.wto.org/english/ tratop_e/dispu_e/ab_members_descrp_e.htm(검색일: 2018. 9. 20). . 2018. "Former Deputy Directors-General." https://www.wto.org/e nglish/thewto e/dg e/ddgs e.htm(검색일: 2018. 11. 16). _____. 2018. "Information Technology Agreement." https://www.wto. org/english/tratop_e/inftec_e/inftec_e.htm(검색일: 2018. 11. 16). . 2018. "Ministerial Declarations and Decisions." https://www.wto.or g/english/thewto_e/minist_e/min_declaration_e.htm(검색일: 2018. 11. 16). ___. 2018. "Previous GATT and WTO Directors-General." https://www.w to.org/english/thewto_e/dg_e/exdgs_e.htm(검색일: 2018. 11. 16). . 2018. "Public Forum." https://www.wto.org/english/forums_e/ public forum e/public forum e.htm(검색일: 2018. 9. 1). WTO Trade Facilitation Agreement Facility. 2018. "Annual Report 2017." http://www.tfafacility.org/annual-report-2017(검색일: 2018. 11. 28). WTO 분쟁해결제도 홈페이지. https://www.wto.org/english/tratop_e/dispu _e/dispu_status_e.htm(검색일: 2018. 11. 30) https://www.shopify.com/enterprise/global-ecommerce-statistics(검색 일: 2019. 3. 1). https://kinsta.com/blog/ecommerce-statistics/(검색일: 2019. 5. 1).

[협정문]

세계무역기구 설립을 위한 마라케쉬 협정. Marrakesh Agreement Establishing the World Trade Organization.

http://worldtradelaw.net/databases/searchcomplaintscompliance.php

(검색일: 2018. 11. 30).

[관련 자료]

- 김준경, 차문중 편. 2010.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서비스산업 선진화 방향』. 연구보고서 2010-06. 한국개발연구원.
- 박정준. 2016. 「스위스 제네바 WTO 유치 비화」. 『함께하는 FTA』, Vol. 49. 신원규 외. 2018. 『무역협정 내 개발협력 기제에 대한 연구』. 한국개발연구원(출판 예정).
- 이지순. 2018. 『국가경제의 흥망성쇠』. 문우사.
- 조윤제. 2017. 『생존의 경제학』. 한울.
- 차문중 편. 2007. 『개방화 시대의 한국 경제』. 연구보고서 2007-01. 한국개발연구원.
- 한국개발연구원. 2016. 『서비스경제 발전전략 수립을 위한 실태조사 및 정책과제 제안』.
- Adlung, Rudolf and Hamid Mamdouh. 2017. "Plurilateral Trade Agreements: An Escape Route for the WTO?" WTO Working Paper ERSD-2017-03.
- Ahn, Dukgeun. 2006. "Restructuring the WTO Safeguard Mechanism."

 Mitsuo Matsushita, Dukgeun Ahn & Tain-Jy Chen eds. *The WTO Trade Remedy System: East Asian Perspectives.* Cameron May Publisher.
- Ahn, Dukgeun and Patrick Messerlin. 2014. "United States Anti-Dumping Measures on Certain Shrimp and Diamond Sawblades from China: Never Ending Zeroing in the WTO?" World Trade Review, Vol. 13, No. 2.
- Ahn, Dukgeun and Maurizio Zanardi. 2017. "China-HP-SSST: Last Part of Growing Pains?" World Trade Review, Vol. 16, No. 2.
- Ahn and Gnutzmann-Mkrtchyan. 2019. "Indonesia Import Licensing Regimes: GATT Rules for Agricultural Trade?" World Trade Review, Vol. 18, No. 2. (forthcoming)
- Amirfar, Catherine and Ashika Singh. 2018. "The Trump Administration and the 'Unmaking' of International Agreements." *Harvard International Law Journal*, Vol. 59, No. 2.
- Bagwell, Kyle and Petros C. Mavroidis. 2005. "U.S. Section 129(c)(1) of the Uruguay Round Agreements Act: Beating Around(The)

- Bush." The WTO Case Law of 2002, pp. 12-35. Cambridge Press.
- Bagwell, Kyle and Robert Staiger. 2017. *Handbook of Commercial Policy*, Vol. 1A. North Holland.
- Baier, S. L. and J. H. Bergstrand. 2007. "Do Free Trade Agreements Actually Increase Members' International Trade?" *Journal of international Economics*, 71(1), pp. 72-95.
- Charnovitz, Steve. 2003. "The WTO's Problematic "Last Resort" Against Noncompliance." http://www.worldtradelaw.net/document.php? id=articles/charnovitzlastresort.pdf.
- Chauffour, J. and J. Maur. 2011. "Beyond Market Access." *Preferential Trade Agreement Policies for Development: A Handbook*. World Bank.
- Cimino-Isaacs, Cathleen D. 2018. "The World Trade Organization (WTO): U.S. Participation at Risk?" CRS Insight. (July 31)
- Draper, P. and M. Dube. 2013. *Plurilaterals and the Multilateral Trading System*, E15 background paper.
- Francois, Joseph, Bernard Hoekman, and Miriam Manchin. 2006. "Preference Erosion and Multilateral Trade Liberalization." *The World Bank Economic Review*, Vol. 20, No. 2.
- Gao, Henry. 2018. "Digital or Trade? The Contrasting Approaches of China and US to Digital Trade." *Journal of International Economic Law*, Vol. 21, Iss. 2.
- Hillman, Jennifer. 2009. "Conflicts between Dispute Settlement Mechanisms in Regional Trade Agreements and the WTO What Should WTO Do." *Cornell International Law Journal*, Vol. 42, Iss. 2.
- Hoekman, Bernard and Petros Mavroidis. 2015. "WTO 'a la carte' or 'menu du jour'? Assessing the Case for More Plurilateral Agreements." *The European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Vol. 26, No. 2.
- International Monetary Fund, World Bank and World Trade Organization. 2018. *Reinvigorating Trade and Inclusive Growth*.
- Jackson, John H. and Steve Charnovitz. 2012. "The Structure and Function of the World Trade Organization." *The Ashgate Research Companion to International Trade Policy*, pp. 387-404. Ashgate.

- Krugman, Paul, M. Obstfeld, and M. Melitz. 2016. *International Economics: Theory and Policy*. (10th ed.)
- Kuijper, Peter. 2018. "From the Board: The US Attack on the WTO Appellate Body." *Legal Issues of Economic Integration*, Vol. 45, Iss. 1, pp. 1-11.
- Lamy, Pascal. 2013. *The Geneva Consensus: Making Trade Work for All.*Cambridge University Press.
- Loungani, Prakash, S. Mishra, C. Papageorgiou, and K. Wang. 2017. "World Trade in Services: Evidence from A New Dataset." IMF Working Paper(WP/17/77, 2017).
- Malacrida, Reto. 2015. "WTO Panel Composition." G. Marceau ed. *A History of Law and Lawyers in the GATT/WTO*, pp. 311-333. Cambridge Univ. Press.
- McMahon, Joseph. 2007. *The WTO Agreement on Agriculture: A Commentary*. Oxford University Press.
- Mulligan, Stephen. 2018. "International Law and Agreements: Their Effect upon U.S. Law."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Report 32528.
- OECD. 2017. Services Trade Policies and the Global Economy.
- Payosova, Tetyana, Gary Hufbauer, and Jeffrey J. Schott. 2018. "The Dispute Settlement Crisis in the World Trade Organization: Causes and Cures." https://piie.com/publications/policy-briefs/dispute-settlement-crisis-world-trade-organization-causes-and-cures(召科 일: 2018. 7. 20).
- Raina, Akhil. 2018. "Mediations in an Emergency: The Appellate Body Deadlock What It Is, Why It Is a Problem, and What to Do about It." Leuven Centre for Global Governance Studies, Working Paper No. 199.
- Scollay, Robert and John P. Gilbert. 2001. New Regional Trading Arrangements in the Asia Pacific?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s.
- Shin, W. and D. Ahn. 2019. "Trade Gains from Legal Rulings in the WTO Dispute Settlement System." World Trade Review, 1. pp. 28-59. (forthcoming)

- Van Grasstek, C. 2011. "The Political Economy of Services in Regional Trade Agreements." OECD Trade Policy Papers, No. 112. OECD Publishing. Paris. http://dx.doi.org/10.1787/5kgdst6lc344-en.
- Vermulst, Edwin and Folkert Graafsma. 2018. "EU Safeguard Law and Practice: 1995-2018." *Global Trade and Customs Journal*, Vol. 13, No. 9.
- Yoo, Ji Yeong and Dukgeun Ahn. 2016. "Security Exceptions in the WTO System: Bridge or Bottle-neck for Trade and Security?" *Journal of International Economic Law*, Vol. 19, No. 2.
- WTO. 2008. World Trade Report 2008 Trade in a Globalizing World.

부 록 **K**

WTO 체제 개혁 제안에 대한 주요국 반응



1. 일본150)

일본은 캐나다의 제안 사항들에 대해서 공감하나 모든 이슈들을 하나의 패키지로 묶기보다는 논의 진전을 위해 이슈의 성격에 따라서 분리하여 참여를 원하는 회원국들이 각 이슈별로 자유 토론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일본은 현재 상태에서는 현실적인 목표수준과 우선순위를 정하고, 비슷한 생각을 갖고 있는 회원국(like-minded member)간에 WTO 개혁에 대한 기본 생각을 공유한 뒤 미국 및 중국을 포함한 중요한 회원국들의 논의 참여를 요청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G20 및 기타 국제포럼에서 향후 논의를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 최종적으로 제12차 각료회의에서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을 목표로 삼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지적하였다.

캐나다가 제시한 요소 중 투명성 개선과 관련해서는 통보의 위반 시 처벌 (disincentive)의 필요성과 무역정책검토제도(TPRM: Trade Policy Review Mechanism)의 활용을 제안하였다. 분쟁해결제도 강화와 관련해서는 우선순 위를 정해 장단기 이슈를 구별하고, 고위급회의에서는 분쟁해결제도의 개혁을 위한 방향 제시에 집중하며, 기술적인 상황은 제네바 현지에서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2. 칠레151)

칠레는 현재 공석인 상소위원을 가능한 빠른 시간에 임명하여 분쟁해결제 도를 안정화하는 것을 가장 시급한 이슈로 꼽았다. 개도국 우대와 수산보조금, 농업보조금과 같은 기존 이슈의 경우 모든 회원국간에 논의가 필요하며, 과거

¹⁵⁰⁾ Government of Japan(2018)을 바탕으로 요약 정리.

¹⁵¹⁾ Government of Chile(2018)를 바탕으로 요약 정리.

경험상 기존 이슈가 해결되지 않고선 새로운 협상을 시작하는 것이 어려운 일임을 언급하였다. 또한 새로운 WTO 체제가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많은 어려움이 존재하는바, 새로운 조직이나 절차를 만들기보다는 이미 WTO 차원에서존재하는 것을 강화하고 향상시키는 제안서 작업에 집중할 것을 제안하였다. 더불어 WTO 사무국의 중립성은 회원국 주도인 WTO 특성에 필수적인바, 사무국에 새로운 기능을 부여하자는 제안에 대해서는 주의할 필요가 있음을 언급하였다. 복수국간협정에 대해서는 복수국간협정이 좋은 차선책이 될 수 있으나 이를 다자화하기 위해 복수국간협정을 다자체제 안에서 논의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WTO 전체 회원국에게 개방을 허용하는 메커니즘이 필요하다고 언급하였다.

3. 브라질152)

브라질은 회원국간에 경제수준, 요구, 새로운 협상에 대한 참여 의지에 있어 차이가 점차 증대되고, 세계경제체제와 기술의 변화로 권리와 의무의 균형에 대한 인식이 변화하고 있음에 동의하면서도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새로운 균 형을 주장하며 캐나다의 제안과 이견을 보였다.

투명성과 관련해서는 △ 통보의무 위반에 대한 처벌 규정 누락 △ 역통보에 대한 신중한 고려 필요 △ 사무국의 업무 과중과 중립성 훼손 △ 의장과 부의장 임명 절차에 대한 검토 △ 특정무역현황의 제한적인 효율성 등을 지적하였다. 분쟁해결제도의 강화와 관련해서는 더 많은 자원으로 현재 제도의 근본적인 특성을 지키는 것이 중요한바, 상소위원의 증원, 더 많은 자원 투입으로 업무량과 보고서의 질을 향상시켜 제도의 수용 능력을 강화시키는 것을 제안하였다. 21세기에 맞는 무역규범의 현대화와 관련해서는 캐나다의 제안서에서 DDA 지

¹⁵²⁾ Government of Brazil(2018)을 바탕으로 요약 정리.

침에 대한 언급이 누락되어 있고, 협상이 단일합의방식과 라운드 방식으로 운영되지 않을 경우 회원국간 이익의 균형을 어떻게 달성할 수 있는지에 대해 문의하였다. 더불어 비MFN 방식의 복수국간협정에 대해 더 많은 유연성을 허용할 경우 이것이 WTO의 특성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하였다. 개발수준에따른 차별적인 개도국우대는 향후 새로운 이행약속(commitments)에 대한 논의 시 필요한 것으로, UR 협상 결과 전체적인 권리와 의무의 균형으로부터 비롯된 현재의 이행의무에 대해 적용하는 것에는 반대 입장을 밝혔다.

4. 한국¹⁵³⁾

한국은 캐나다의 제안 내용을 단기적인 이슈와 중장기적인 이슈로 구분하여 작업계획을 세우고 현재는 단기적인 이슈에 집중할 것을 제안하였다. 단기적인 이슈 중 상소위원의 공백을 가장 중요하고 긴급한 이슈로 생각하고 있는바, 이 에 대한 해결책을 찾기 위한 논의가 우선시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투명성 관련해서는 통보체제의 종합적인 검토와 WTO 위원회의 구조조정은 WTO 모니터링 기능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개선하기 위해 유용한 제안이나장기적인 이슈로 논의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한 주제별 이슈를 촉진하고외부국제기관과 이해 관계자의 참여를 통한 위원회의 심의 기능 개선은 WTO 제제의 변화 없이도 세미나 또는 워크숍과 같은 기존의 툴(tool) 활용을 통해서도 가능한바, 기존 툴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강화하는 방법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언급하였다. 분쟁해결 이슈와 관련해서는 새로운 상소위원 임명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상소기구 이슈를 중심으로 DSU 17 개정에 대한 EU의 제안과 연결하여 관련 이슈들을 논의할 것을 제안하였다. 상소기구 관련 이슈들을 해결한 뒤에 분쟁해결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대체 절차의 개발과 판

¹⁵³⁾ Government of Korea(2018)를 바탕으로 요약 정리.

결 절차의 간소화와 같은 제안 사항을 논의할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 또한 오래된 WTO 규범으로 인해 불필요한 분쟁이 증가하고 있는바, 우리나라는 통상규범의 현대화에 대한 필요성을 지지하나 의제 범위, 우선순위, 전체적인 균형에 대한 WTO 회원국 간의 총의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5. 멕시코154)

멕시코는 일부 사항을 제외하고 WTO 모니터링 기능의 효과성과 효율성 개 선을 위해 캐나다가 제안한 조치에 대해 대부분 동의하는 입장이다. 그러나 의 장의 임기 2년 연장 및 부의장 임명, 기타 국제기구 및 이해 관계자의 참여 증 진. WTO 기구간 정보 공유에 있어서는 다른 의견을 제시하였다. 멕시코는 회 원국마다 대표의 배경과 주재 기간이 다른 점을 고려한다면. 의장의 2년 임기 는 적당한 후보를 찾는 것에 문제가 될 수 있으며 장기적으로 실현가능하지 않 다고 설명했다. 즉 새로 온 대표는 많은 이슈에 대한 세심함(sensitivity)이 없 으며 경험이 풍부한 대표는 파견 기간이 거의 끝나가는 시점이 될 수 있기 때문 이다. 국제기구와 이해관계자의 참여 개선과 관련해서는 현재까지 WTO에 국 제기구의 참여가 있어왔으나 그 기여가 제한적이었던바, 참여를 높이기 위한 기준을 설립할 필요가 있는 것에는 동의하나 NGO. 민간분야와 같은 이해관계 자의 참여는 필요할 때마다 진행되는 방식(in an ad hoc manner)으로 진행 되어야 한다고 언급하였다. WTO 기구간의 정보 공유 촉진과 관련해서는 일반 이사회와 DSB를 제외하고 2개 이상의 위원회와 연관되어 있는 이슈는 거의 없 으므로 예외적인 경우에 대해 필요할 때마다 진행하는 방식이 적절하다는 입장 이다. 관련 기구간 중재 및 조정을 위한 메커니즘은 보다 명확히 할 필요가 있 음을 언급하였다.

¹⁵⁴⁾ Government of Mexico(2018)를 바탕으로 요약 정리.

상소기구의 부담 경감, 판결 절차의 간소화, 분쟁해결의 신속화와 관련하여 캐나다가 제안한 사항에 대해 구체화와 명확화를 요구하거나 질의하고 특별한 찬반 입장을 보이진 않았다. WTO 의무의 해석에 대한 회원국의 감시 강화를 위해 제안된 조치 중 분쟁 이슈에 대한 주제별 토론회는 지지하나 투명성과 분쟁해결시스템의 공정성과 독립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하였다. 또한 정정을 위한 유권해석 절차의 강화가 명백한 실수를 정정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갖고 있는 반면 공정한 분쟁해결절차를 해치지 않을 수 있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언급하였다.

무역규범의 현대화와 관련해서 멕시코는 복수국간 이니셔티브는 차선책으로 고려되어야 하며 보충적인 방법이지 다자체제를 대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동시에 복수국간 이니셔티브가 WTO 핵심 이슈의 수정 없이 WTO 체제에 포함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주의해야 한다고 언급하였다. 개도국 차별화와 관련해서는 무역원활화협정 방식은 향후 협상에서 적용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방식을 지지하는 입장이다. 다자협상을 위한 작업계획 파악, 새로운 규범에 대한협상, 복수국간협상에서 규정 개발을 위한 이슈 파악의 논의에는 적극적인입장이다. 그러나 WTO 기구의 비구속적인 문서(instrument)의 채택에 대한제안 사항에 대해서는 반대의 의견을 표출하였다. 구속력이 없는 법(soft law)이라도 이러한 문서는협상의 결과로일부회원국은혜택을받을 수 있기때문에, 캐나다의 제안 사항은 권리포기(disclaimer)로협상과정을통해획득된체제의가치를훼손하는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6. 싱가포르¹⁵⁵⁾

싱가포르는 캐나다가 제시한 모든 사안을 장·차관급 회의에서 논의하는 것

¹⁵⁵⁾ Government of Singnfore(2018)를 바탕으로 요약 정리.

은 현실적이지 않다고 지적하며, 장관회의의 결과물로 분쟁해결제도를 효율적 으로 작동시키기 위해 시급히 취해야 할 조치를 파악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싱가포르는 회원국의 통보의무 개선을 위해 기술지원 및 능력 배양, 통보 양 식(format)과 필요한 정보를 명확화하기 위한 기술 작업. 통보 양식의 간소화 를 강력히 선호한다고 밝혔다. TPR의 질문과 답변에서 통보의무 준수 여부에 대한 문제 제기뿐만 아니라 현재 규정이 없는 분야에서의 자발적인 통보 가능 성에 대해서도 살펴볼 수 있다고 덧붙여 언급하였다. 사무국이 통보를 준비(회 원국이 이러한 방식을 선택한 경우)하고 관련 회원국이 이러한 통보문이 WTO 에 제출되기 전에 이를 검토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에 대해서는 지지를 표하였 다. 심의를 위한 능력과 기회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전자상거래(CTG, CTS, CTF 등), 비관세장벽 조치(SPS, TBT, 수입 라이센싱, TRIMS 등) 등과 같은 포괄적인 이슈(cross-cutting issues)에 대한 정례위원회(regular committees)간의 더 많은 조정과 협력이 필요하며. 회의의 빈도와 시기에 대한 검토 논의에도 긍정적인 입장이다. 그러나 모든 WTO 의장을 조정하는 조정위원회 의 설립 제안에 대해서는 더 많은 공식적인 단계(laver)가 생기는 관료적인 구 조를 경계해야 하며, 필요성이 제기될 때마다 기존의 체제나 지침(mandate) 을 유연하고 창의적인 방식으로 활용하는 것을 선호한다고 밝혔다. 싱가포르는 회원국 주도라는 WTO의 특성을 손상시키지 않고 WTO 사무국의 전문 지식 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언급하였다. 더불어 관련 기구간에 특정무역현안에 대한 정보 공유 장려, 제3자 조정 및 중재를 위한 메커니즘 개 선에 대한 제안에도 긍정적인 입장이다.

싱가포르는 시스템의 기능에 대해 제기되는 우려를 해결하기 위해 분쟁해결체제 개선을 위한 캐나다의 제안 사항에 동의하며, 분쟁해결제도의 보호가 가장 시급한 우선순위가 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상소위원이 2018년 9월 이후부터 3명, 2019년 12월에는 1명으로 감소함에 따라 분쟁해결기구의 기능이사실상 마비되기 때문에 분쟁해결제도 강화에 대한 기술적인 논의와 병행하여

상소기구의 분쟁해결 기능이 지속되는 것을 보호하기 위한 논의가 장관회의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설명하였다.

싱가포르는 현재의 무역 현실을 반영하기 위해 WTO 체제의 개선이 중요하 며. 통상 현안 이슈에 대한 논의를 위해 비공적인 HOD 프로세스. WTO와 기 타 관련 포럼 간의 협업을 통해 효율적인 방법을 개발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현재의 상황을 고려해 본다면 현실적인 방법은 뜻이 맞는 국가들이 연합 (coalitions of the willing)하여 논의를 주도하고 복수국간 성과를 수확하는 것이 될 수도 있다고 설명하였다. 더불어 이러한 작업은 기존의 WTO 체제 안 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일반이사회와 위원회의 결정에 대한 총의 를 달성하는 것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에서 복수국가협정이 WTO 체 제에 편입할 수 있도록 WTO 체제를 개선하고 이를 위한 방안에 대해 질의하 였다. 무역원활화협정이 새로운 다자체제 규범의 협상에서 개발 이슈를 해결하 기 위한 창의적이고 현실적인 접근 방법 중 하나이기는 하나. 이슈에 따라 전후 상황과 고려해야하는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향후 WTO의 모든 협정에 대한 청 사진으로 고려하기에는 시기상조라는 입장이다. 또한 현 시점에서 DDA와 새 로운 이슈를 포함하여 새롭게 균형 잡힌 작업 계획의 구성 요소에 대해 총의를 도출하기는 매우 어렵다고 언급하였다. 싱가포르는 향후 미래에 새로운 이슈를 추가하는데 제약이 될 수 있는 작업계획 대신 우리가 할 수 있고 WTO의 핵심 지침에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으며 WTO 개혁에 기여할 수 있는 분야에서 진전 을 이룰 필요가 있다고 제안하였다.

7. 스위스¹⁵⁶⁾

스위스는 캐나다의 제안서가 기술적인 사항과 더불어 많은 이슈를 포괄하고

¹⁵⁶⁾ Government of Switzerland(2018)를 바탕으로 요약 정리.

있는데, 이러한 제안 사항들이 WTO 현대화와 무관한 것은 아니지만 실무급에서 논의되는 것이 보다 적합하며 고위급에서는 이니셔티브의 윤곽을 잡고 우선 순위를 파악하여 추가적인 작업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하는 것이 보다 바람 직하다는 입장이다.

스위스는 상황의 긴급성을 감안했을 때 분쟁해결제도에 대한 해결책을 가능한 빨리 도출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상소기구 관련 이슈와 EU의 제안서에서 제시된 주요 요소에 대한 논의에 집중하고 이러한 과정에서 기존 분쟁해결제도의 근본적인 특성과 본래의 모습(integrity)이 훼손되어서는 안 된다고 언급하였다.

스위스는 투명성을 강화하고 WTO 정례기구(ordinary body)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한 제안 사항에 동의하며, 통보를 장려하기 위한 인센티브와 역통보에 대한 논의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입장이다. 또한 정례기구의 기능과 관련된접근 방법은 가능한 실용적이고 현실적이어야 하며 캐나다의 제안 사항은 향후논의의 기초 자료가 될 수 있다고 언급하였다. 또한 각료회의에서는 실무급에서 논의를 심화하기 위한 지침을 제공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한편 스위스는 현재의 문제를 해결하고 긴장을 완화하기에 충분한 수준의하나의 균형 잡힌 패키지를 만들지 않으면 이와 관련된 이슈를 해결하기 어렵다고 보았다. 따라서 본 이니셔티브에서는 완전한 해결책을 제시하기보다는 제안된 프로그램의 실현가능성을 고려하여 향후 협상의 목적 및 원칙, 관련 이슈를 파악하는 데 중점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하였다. 협상 접근 방식과관련해서는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채택된 이니셔티브에서 사용된 확장가능성이 있는 형식(open-ended format)이 바람직한데, 이는 논의가 심화됨에따라 회원국이 점진적으로 그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 위해서이다. 또한 스위스는 현대화 이니셔티브의 성과는 복수국간협상을 기반으로 이행 가능성과 함께 WTO 제도(WTO institutional umbrella) 안에서 논의되어야하며, 현대화 작업에 대한 내용과 참여가 보다 구체화되면 제도적 형식과 관련

된 이슈와 MFN 적용에 대해 고려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스위스는 개발은 WTO의 중요한 요소이긴 하지만 WTO 회원국간 개발 수준에 차이가 존재하며 기존의 WTO 협정에서 모든 개도국에 대해 일반적인 예외를 적용하는 것은 더 이상 적절한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언급하였다. 따라서 개도국 우대를 고려할 때 기존 협정과 미래의 협정으로 구분하고 새로운 협정에서는 통상 규범의 강화에 기여할 수 있는 능력과 이행 약속의 수준 정도 (deepening of commitments)에 따라 회원국간에 차별을 두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기존의 협정의 경우 EU가 제안한 개별 사안에 따른 접근법(case by case approach)이 보다 적절하다는 입장이다.

8. 호주157)

호주는 초기에는 현실적이고 성과 달성이 가능한 단기적인 제안을 중점적으로 논의할 것을 제안하였다.

WTO의 모니터링 기능은 WTO의 신뢰성을 보존하기 위해 중심이 되는 기능이라는 것에 동의하는 입장이다. 캐나다는 불필요하고 부담이 되지 않으면서 관련된 정보만을 요구하기 위해 통보요건의 검토 필요성, 사무국의 적극적인 개입, 역통보 허용 등에 대해 동의를 표하였다. 그러나 많은 개도국 특히 최빈 개도국은 자원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지원이 통보 의무 능력이 부족한 회원국의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언급하였다. 더불어 단기적인 목표로 회원국이 아직 통보하지 않은 통보문을 제출할 수 있도록 제한된 기간(limited period)을 규정하고 중기적으로는 제도적인 변화가 필요한데, 예를 들면 회원국이 통보문에 대한 의견(comment)에 대해 실질

¹⁵⁷⁾ Government of Australia(2018)를 바탕으로 요약 정리.

적인 답변을 제공하고 이러한 의견과 답변이 공개적으로 이용 가능하도록 하는 조치를 제안하였다. 호주는 현재 위원회간에 충분한 조율이 없기 때문에 모든 WTO 의장으로 구성된 조율위원회의 설립이 중복되는 주제를 논의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에 동의하는 입장이다. 그러나 이로 인해 또 다른 관료체제 단계가 만들어지는 것에 주의해야하며, 위원회의 역할과 목적에 대해서도신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호주는 사무국이 중복되는 주제에 대한 통합안 (initial compilation)을 제공할 수 있다고 제안하였다. 의장의 임기 연장 및의장의 역할 강화, 사무국의 의장에 대한 추가적인 지원에 관한 논의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입장임을 표명하였다.

호주는 WTO 분쟁해결절차의 가장 핵심 우려 사항을 미국이 제기한 절차적 이슈와 관련된 것으로 간주하고 분쟁해결기구 결정의 활용과 상소기구의 작업 절차 개정에 대해 지지하는 입장을 보였다. 즉 캐나다 제안 사항 중 절차적 논쟁에 대한 작업이 가장 우선적으로 논의되어한다고 강조하였다. 비구속적인 재판 회부에 대한 자제를 강조하는 비구속적 성명서에 찬성하나 이러한 성명서가 WTO 회원국의 권리와 의무에 영향을 주어서는 안 된다고 덧붙여 설명하였다. DUS의 제5조에 따른 중재와 조정 같은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대체 메커니즘의 활용을 지지하며, 심사관할권으로부터 특정 유형의 분쟁을 제외시키기 위한 메커니즘에 대해서는 추가 정보를 요청하였다. 호주는 분쟁해결 제도의 신속화, WTO 의무의 해석에 대한 회원국의 감시 강화와 관련하여 캐나다가 제안한 내용에 대해 대체적으로 긍정적인 입장임을 표명하였다.

호주는 무역원활화협정의 선례를 기반으로 개도국 우대에 대한 일반화된 플랫폼을 제시한 캐나다의 제안을 좀 더 구체화할 필요가 있으며, 분야별로 미래의 개도국 우대에 대해 살펴 볼 필요가 있다고 언급하였다. 단 일반화된 플랫폼에 대한 논의는 모든 회원국에 의한 모든 미래의무 조항의 완전한 이행과 수렴이라는 장기적인 목표를 염두에 두어야 한다고 덧붙여 설명하였다. 또한 호주는 개발 단계에 따른 개도국 세분화는 필요하지만 개도국에 대한 새로운 공식

적인 카테고리를 만드는 것은 상황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하였다. 호주는 최빈개도국과 경제구조가 취약한 국가는 다른 회원국보다 더많은 신축성과 과도기간이 필요하나, 경제 규모가 크고 보다 발전된 개도국에 대해서는 과도기간을 단축하고 가능한 한 개도국 우대 신축성을 부여하지 않는 것을 권장하는 입장이다.

9. 노르웨이158)

노르웨이도 장차관급 회의에서 모든 사항을 전부 논의하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으며, 제네바의 실무급 회의에서 논의되어야 할 이슈를 선별하고 분류하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10월 각료회의에서는 가장 중요한 결과는 WTO를 강화하고 통상규범을 현대화기 위한 제안 사항과 총의를 발전시키는 데 참여하고자 하는 정치적인 의지를 확인하는 것이라고 언급하였다. 최소 미국과중국은 물론 더 많은 WTO 회원국에 대한 아웃리치와 더불어 보다 구체화된제안 사항에 대해 논의하고, 장관회의의 중요한 메시지는 WTO의 현대화가 긴급히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현대화과정이 협정국이 다자시스템이나 기존의 규범에 의해 구속력이 남아 있는 이행약속(commitment)에 대한 준수 의무를 부정하는 방식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덧붙여 설명하였다.

노르웨이는 우선순위로 분쟁해결제도의 기능과 관련된 제안사항 개선에 중점을 두어야 하며, 10월 장관회의 때 상소기구의 기능 마비와 관련하여 어떠한정치적 신호를 보내는 것이 적절한 것인지에 대한 논의와 상소위원의 재임명이진행될 가능성이 없을 경우 향후 이번 장관회의에 소집된 중견국가들이 어떠한역할을 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더불어 회원

¹⁵⁸⁾ Government of Norway(2018)를 바탕으로 요약 정리.

국마다 현재 분쟁해결제도의 기능에 대한 견해가 다르기 때문에 적절한 조치를 취하기 위해서는 현 상황에 대한 정확한 진단 작업이 필요하다고 설명하였다.

노르웨이는 다자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다자적으로 해야 하지만 중단기적으로 복수국간 협상이 현실적이고 건설적인 방식이라는 입장이다. 노르웨이는 MFN 기반이 실현가능하지 않을 경우도 있을 수 있으나 폐쇄된 복수국간협상 (closed plurilaterals)보다는 개방된 복수국간협상(open plurilateralism)을 원칙으로 하는 것을 선호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노르웨이는 개발 이슈와 관련해서 개발과 개도국 우대의 3가지 목적에 대해 설명하고, 성공적인 WTO의 현대화를 위한 노력에 있어 개발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러한 개발 이슈는 독립된 이슈로 선별되어야 한다고 언급하였다.

또한 WTO의 투명성 개선은 중요한 우선순위며, 통보문 개선뿐만 아니라 회원국의 규제에 대한 투명한 정보를 위해 정보의 공개 방법과 관련 국가와의 협의방식에 대해서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하였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 실무급 차원에서 구체적인 제안 사항에 대해 논의하고 장관회의에서는 실무급논의를 위한 지침을 전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주장하였다. 더불어 투명성에 대한 회원국간의 사고방식에 있어 중요한 변화가 필요하다고 믿으며 이는 정치적 수준에서 논의되어야 한다고 설명하였다.

10. 뉴질랜드159)

뉴질랜드는 통보가 WTO의 투명성 기능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는 것에 동의하며 통보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회원국에 대한 처벌보다는 통보를 위 한 인센티브를 선호하는 입장이다. 뉴질랜드는 자원이 부족한 국가에 대한 기 술 지원의 필요성과 기술 지원 유형, TPR과 같은 기존의 툴과 기존 위원회의

¹⁵⁹⁾ Government of Newzealand(2018)를 바탕으로 요약 정리.

활용, 사무국의 기술 지원 시 통보 유형(예를 들면 농업보조금 또는 수산보조 금)의 우선순위 파악, 사무국의 정보 수집 활동이 정치화될 위험성을 고려하여 공식 출처의 활용, 수집된 정보에 대한 회원국 검토 및 의견 제시 기회 제공에 대해 제안하였다. 뉴질랜드는 심의를 위한 캐나다의 제안 사항에 대해 장단점 을 언급하며 최대한 기존의 위원회 구조와 툴을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하였다. 예건대 최근 서비스 분야의 경험에서 보듯이 명확한 의제 없이 부 속기구 회의 빈도와 시기에 관한 논의는 일부 위원회와 작업반의 작업을 정지 시키고 재개를 어렵게 만들기 때문에 인위적으로 회의의 빈도 수와 시기를 조 정하는 것은 주의해야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또한 의장의 임기 2년이 특정 제안 사항의 논의에 대한 모멘텀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으 나, 지역 순환(regional rotation) 측면에서는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수 있다 고 언급하였다. 특정무역현안과 관련된 제안에 대해서는 논의에 긍정적인 입장 이다. 예컨대 여러 위원회에서 제기된 조치도 존재하는 바 모든 위원회에서 제 기된 장벽에 대한 보고서 등을 통해 특정무역현안에 대해 보다 깊은 감시가 가 능할 수도 있다고 설명하였다. 또한 몇 년 동안 지속적으로 제기된 특정무역현 안의 경우 TRIMS 위원회에서와 같이 처음 특정무역현안으로 제기된 시간, 특 정무역현안으로 제기한 회원국 수, 해결 방법 및 시기 등에 대한 정보를 보유하 는 것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제안하였다.

뉴질랜드는 분쟁해결제도와 관련해서 분쟁해결에 대한 대체 매커니즘 개발에 동의하며, 증거나 서류 제출 등의 의무적인 제한에 대한 논의에도 긍정적인입장이다. 분쟁해결의 신속화와 관련해서는 일부 제안의 경우 DSU의 개정을요구하는 바 회원국의 반대로 인해 단기에는 적용하기 힘들다고 언급하였다. 유권 해석 논의에 대해 긍정적이며, 절차적인 측면에서 미국의 우려 사항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도 지지한다고 언급하였다. 또한 추가적으로 향후 WTO 회원국이 상소 위원을 충원하는 과정을 막지 못하도록 임명 과정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다고 제안하였다.

뉴질랜드는 다자무역체제를 지원하고 보충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개방된 복수국간협정(open plurilateralism)으로 WTO 플러스 조항, 가능한 많은 회 원국의 참여, MFN 기반 이행, 향후 다자화될 수 있는 제도적 메커니즘을 지지 하는 입장이다. 무역원활화협정이 차별화에 대한 메커니즘을 만들었다는 점에 서 유용하지만 무역원활화협정보다는 좀 더 엄격한 접근법이 향후 앞으로 나아 가기 위한 모델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뉴질랜드는 특별히 수산보조금과 서비스 국내규제협상을 보다 건설적으로 개도국 우대를 재구성할 수 있는 기회 라 생각한다고 덧붙여 설명하였다. 또한 보다 발전된 개도국은 자발적으로 새 로운 협상에서 개도국에 대한 신축성 부여를 사용하지 않는 것을 권장한다고 언급하였다. 한편 뉴질랜드는 농업 국내보조. 수산보조금. 시장 접근과 같은 일 부 이슈는 DDA하에서 논의를 이어갈 필요성이 있다는 데 동의하며, 환경협정 (EGA)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이러한 논의가 전자상거래, 국내 규제 등 새로운 이슈에 대한 작업을 진행하지 못 하게 하는 원인이라고는 보지 않는다고 언급 하였다. 더불어 포괄적(cross cutting)이거나 수평적(horizontal) 접근법으로 협상을 일괄적으로 묶을 수 있는(package negotiation) 새로운 방법이 있는 지 여부에 대한 논의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입장이라고 밝혔다. 예를 들면 전자 상거래, 환경보호 상품, 서비스, 지재권 및 규범과 연관되어 있는 이슈라고 설 명하였다.

Executive Summary

Reshaping the Multilateral Trade Policy for Korea

Jin Kyo Suh, Jong Duk Kim, Ji Hyun Park, Min-Sung Kim, and Dukgeun Ahn

The World Trade Organization (WTO), launched in 1995 as a successor of the GATT system, has ambitiously begun its first multilateral trade negotiation round, Doha Development Agenda (DDA) in 2001. Since then, notwithstanding with its great ambition, the DDA has failed to draw visible results for more than 17 years, and hence confidence in the WTO-centered multilateral trading system has been declining accordingly. Nevertheless, there are some of the accomplishments of the WTO. The liberalization of the commodity markets has expanded and deepened through the conclusions of plurilateral negotiations under the WTO such as the Information Technology Agreement (ITA) and the Government Procurement Agreement (GPA), and rules in service and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have been set-out and established. As a result of these achievements, the volume of global commodity trade has increased by more than three times, and the market share of developing countries has also increased from 28% in 1995 to 43% in 2017. The expansion of the number of member states is another achievement of the WTO. Although such expansion may have increased the difficulties and complexity of decision making in the WTO, it is clear that the expansion of new business opportunities by successfully incorporating developing countries into the global

economy and applying unified WTO rules and standards is an achievement of the WTO. Along with the strengthening of the dispute settlement system, the Agreement on Trade Facilitation (TFA) and its implementation are the greatest achievements of the WTO system. The Trade Facilitation Agreement is the first multilateral trade agreement concluded after the establishment of the WTO and the launch of the DDA negotiations, while the Information Technology Agreement and the Government Procurement Agreement are plurilateral agreements. Economically, it is expected of the increase in exports by more than \$1 trillion, the creation of 20 million export-related jobs, and the increase in the world's GDP by about \$960 billion due to the reduction of trade costs and the improvement of trade environment.

The limitations and problems of the WTO system are as clear as these achievements. In particular, governance issues that have long been pointed out are such typical examples. Decisions in the WTO system are in fact made by consensus, and enlarging the number of Member States has become a decisive factor in hindering efficient decision-making in the WTO. Although The 'Single Undertaking' principle of concluding the agreement contributed to maintaining the consistency and stability of the multilateral trade system, it caused the problem of the rigidity of the WTO system at the same time. The dispute settlement procedure is also increasingly problematic. Recently, the dispute settlement implementation process is increasingly followed by the retaliation process. In such processes, the situation in which the complainant must observe the implementation failure of the defendant until the retaliation is approved is undermining the fairness of the WTO system. Not only that, the lack of safeguard measures in service trade and the limitations and problems of special and differential treatment for developing countries have been pointed out as major challenges related to the current WTO system. In addition to the challenges of the WTO system itself, the fact that the WTO does not adequately respond to the rapidly changing global trade environment is also a major problem of the current WTO system. The reason why the FTAs around the world in the 2000's have rapidly expanded is the WTO multilateral system has failed to respond effectively to the new trading environment. Since the early 2000s, the Global Production Networks have rapidly spread out and the 'made in world' has become common due to such international division of production, and hence the set-out of new trading rules and further tariff concessions in accordance with such development has long been awaited. However, the progress of DDA has fallen far short of expectation due to the confrontation between developed and developing countries. As the global economic slowdown has been prolonged since the global financial crisis in 2008, countries around the world have strengthened their protectionist policies for their industries and jobs. Notwithstanding, the WTO failed to issue a proper prescription for them. WTO members have constantly bashed protectionism and stated the importance of strengthening multilateral trade system whenever there is opportunity, but this is only an empty declaration; non-tariff measures have steadily increased since the financial crisis and have not returned to pre-2008 levels.

Furthermore, the trade liberalization that has been pursued so far has mainly focused on trade barriers, especially tariff concession. However, in terms of market access, behind-the-border or non-tariff measures and regulations such as customs procedures and domestic regulations has persistently remained. In this situation, the abolition of tariff barriers has rather created a favor-

able environment for large companies. Large companies have more human and physical capital than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to deal with customs procedures and domestic regulations. As a result, SMEs have failed to enter the foreign markets due to complex customs procedures and regulations behind the border, while large companies have succeeded in entering those markets. Such imbalance results in the concentration of benefits from trade liberalization into large corporations. The same stark reality applies between capital and labor; since the share of labor income after trade liberalization is gradually decreasing, the issue of unequal distribution of benefits from trade liberalization between labor and capital has been pointed out in multilateral trade negotiations. Therefore, inclusiveness and sustainability of international trade have become main topics. The need for discussions about reform of the WTO system are invigorated among developed and developing economies alike.

Nevertheless, the current WTO reform discussion is to be characterized as the multilateralization of the U.S-China bilateral trade conflict. According to the proposals submitted by developed countries regarding WTO reform, transparency and notification enhancements are on the table. A set of regulations is to be strengthened in order for the WTO member states to comply with the notification duty. In spite of how the reform of the WTO Appellate Body will be done is controversial, that reform will move in the direction of mitigating the complaints of the United States. In that regard, a certain extent of differentiation among developing states will be inevitable. It is obvious that such a discussion will face strong opposition from developing countries. However, as the economic heterogeneity across developing countries is widening up, it is difficult for developing economies to ignore the disparity in their

levels of development and to assert the same obligation among all developing countries. In addition, plurilateral negotiations will also be actively pursued in parallel with the existing DDA. Since some issues that developing countries argue to keep on the DDA negotiation table will be there as they are now, the "flexible multilateralism" referred to by the EU will also be at the center of the debate. Considering the current conflicts between developed and developing economies, it cannot be ruled out the possibility that the multilateral system could be divided into alliance among developed economies and a group of developing countries if the WTO reform initiative led by developed countries such as the United States is not reaching to their desired level due to the opposition of developing economies. In this case, the current WTO regime may demise indeed.

Therefore, Korea needs to be strategically prepared for the reform of the WTO system. With regard to transparency enhancement and notification enhancement, obtaining information on industrial subsidies across member states is intended and according to them more stringent classification and international review of subsidies is expected to be set-out. Therefore, Korea should review whether the current supplementary policies are strictly in accordance with the WTO regulations and minimize the possibilities of countervailing duties from other WTO members in advance. Maintaining the status of developing countries has been the principal premise of the DDA agriculture negotiations of Korea. However, given that recent development of the discussion with regard to the differentiation of developing countries, keeping Korea as a developing country will not be an option any longer. Since the obligations between developing and developed countries is considerably different in the agricultural sector, the implementation of Korea's obligations as a developed country will not show a favorable impact on the agricultural sector for a while. Therefore, there is a need for thorough preparation of the agricultural sector for such changes. Since the discussions on reform of the WTO system will go through every detailed issues, it is necessary for Korea to actively participate in the discussions on the agenda of our interests, especially transparency and notification and differentiation of developing countries, and reflect our interests in those discussions as much as possible.

Moreover, the direction of Korea's multilateral trade policy, taking into consideration of the WTO system reform and the changes in the global trade environment, should include strengthening the status of Korea in the WTO, promoting inclusive trade within the WTO system, multilateralization of bilateral and regional trade agreements, and embracing the sustainability issues in the multilateral trade agenda. In order to strengthen Korea's status within the WTO system, it is necessary to cultivate multinational trade experts and expand the dispatch to the WTO Secretariat. In addition, it is necessary to increase the contribution of Korea by actively participating in various projects managed by the WTO. It is also a good idea for Korea to lead the WTO ministerial meeting. At the same time, it is an effective way to substantially promote Korea's position in the multilateral trade stage with new proposals supported by developed and developing countries that can break through the deadlocked DDA.

To pursue and lead inclusive trade, it is necessary for Korea to contribute to promoting the implementation of the trade facilitation agreement first. In particular, it is effective to provide customized consulting services to developing countries focusing on the e-Customs clearance system or 'single window' system that

Korea has strengths with and developing countries are in need of. It is also important to develop a Korean GSP program for developing countries. For example, Korea opens up commodity markets developing countries desire and provide technical and financial support contents in those sectors so that encourage them to experience the benefits of trade liberalization. Along with these efforts, a customized bilateral solution system for SMEs as well as large companies to resolve the difficulties with regard to access to those markets should be pursued together.

In order to multilateralize bilateral or regional trade agreements, a unified framework is needed to connect the FTAs together that Korea has been promoting so far. In the case of tariffs, for instance, the tariff concession for all products in all FTAs could be uniformly set at the most liberalized schedule Korea has offered to any WTO members. In the case of services, a unified liberalization framework can be created as well with applying the MFN principle.

Last but not least, in order to strengthen the sustainability of trade, we have to consider the resumption of Environmental Goods Agreement (EGA) negotiations, the harmonization of trade and environment, and the promotion of new rules for permitting environmental subsidies. Furthermore, we must now consider sustainability issues i.e. the implementation of the Paris Climate Accord in the multilateral trading system.

서진교(徐溱敎)

고려대학교 농업경제학과 졸업 미국 메릴랜드대학교 농업 및 자원경제학 석사 및 박사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무역통상실 무역협정팀 선임연구위원 (現, E-mail: jksuh@kiep.go.kr)

저서 및 논문

『글로벌 통상환경의 변화와 포스트 나이로비 다자통상정책 방향』(공저, 2016) 『포스트 발리 DDA 협상의 전개방향 분석과 한국의 협상대책』(공저, 2014) 외

김종덕(金鍾德)

고려대학교 경제학 학사 및 석사 미국 Michigan State University 경제학 박사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무역통상실 무역투자정책팀 연구위원 (現, E-mail: kim.jd@kiep.go.kr)

저서 및 논문

『한국의 비관세조치 현황 분석: NTM-HS코드 연계를 중심으로』(공저, 2017) 『브렉시트의 경제적 영향 분석과 한국의 대응전략』(공저, 2016) 외

박지현(朴芝賢)

중앙대학교 일반대학원 경제학 석사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무역통상실 무역협정팀 전문연구원 (現, E-mail: jhpark@kiep.go.kr)

저서 및 논문

『디지털상거래가 무역과 고용에 미치는 영향』(공저, 2017)

『글로벌 통상환경의 변화와 포스트 나이로비 다자통상정책 방향』(공저, 2016) 외

김민성(金敃成)

이화여자대학교 국제대학원 국제학과 석사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무역통상실 무역협정팀 전문연구원 (現, E-mail: mskim411@kiep.go.kr)

저서 및 논문

『원산지 누적 조항의 무역비용 추정과 경제적 효과』(공저, 2017)

『포스트 발리 DDA협상의 전개방향분석과 한국의 협상대책』(공저, 2014) 외

안덕근(安德根)

서울대학교 국제경제학 학사 미국 University of Michigan 경제학 박사/Juris Doctor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국제통상금융센터 소장 (現, Email: dahn@snu.ac.kr)

저서 및 논문

『국제통상체제의 무역기술장벽』(박영사, 2018)

"The Legal and Economic Analysis of the WTO/FTA system" (World Scientific, 2016) 외

★★₽ 연구보고서 발간자료 목록

■ 2018년

- 18-01 글로벌 부동산 버블 위험 진단 및 영향 분석 / 정영식 · 김경훈 · 김효상 · 양다영 · 강은정
- 18-02 리쇼어링의 결정요인과 정책 효과성 연구 / 이수영·최혜린·김혁황·박민숙·남시훈
- 18-03 디지털혁신의 국제비교와 시나리오별 무역영향 분석 / 최낙균ㆍ이규엽ㆍ김혁황ㆍ장윤종
- 18-04 미국 통화정책이 국내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 및 자본유출입 안정화방안 / 강태수·김경훈·서현덕·강은정
- 18-05 ASEAN 지역의 인프라 시장 확대와 한국기업의 진출방안 / 곽성일 · 정재완 · 이재호 · 김제국 · 김미림
- 18-06 통화정책이 환율에 미치는 영향분석과 정책적 시사점: 기축통화 보유 여부를 중심으로 / 윤덕룡·김소영·이진희
- 18-07 국제사회의 기후변화 대응 인프라 투자와 한국의 정책과제 / 문진영·나승권·이성희·김은미
- 18-08 소득주도성장 관련 유럽 및 미국의 정책사례 연구 / 조동희·김종혁·김흥종·문성만·윤여준·임유진
- 18-09 개도국 SDGs 이행 지원을 위한 개발재원 확대방안 / 정지원 · 정지선 · 이주영 · 유애라
- 18-10 중동 주요국의 중소기업 육성정책과 한-중동 협력 확대방안 / 이권형 · 손성현 · 장윤희 · 유광호
- 18-11 아프리카 농업 가치사슬 분석과 한국의 농정경험을 활용한 정책제안 / 박영호·정재욱·김예진
- 18-12 비핵화에 따른 대북경제제재 해제: 분석과 시사점 / 정형곤·김병연·이 석·조남훈·이정균·김범환
- 18-13 푸틴 집권 4기 극동개발정책과 한·러 신경제협력 방향 / 박정호·강부균·민지영·세르게이 루코닌·올가 쿠즈네초바

- 18-14 북한의 무역제도 연구: 남북한 CEPA 체결에 대한 시사점 / 최장호 · 최유정 · 임소정 · 이효영
- 18-15 한국의 대인도 수출경쟁력과 애로요인 분석 / 조충제 · 송영철 · 이정미 · 윤지현
- 18-16 중국 공급측 구조개혁 평가와 시사점 / 현상백·박민숙·박진희·조고운·김부용
- 18-17 신보호주의하에서 미국 무역구제제도의 변화와 주요 사례 연구 / 배창권·엄준현·정민철·이장완
- 18-18 국경 간 데이터 이동에 관한 국제적 논의 동향과 대응방안 / 이규엽 · 조문희 · 강준구 · 강민지
- 18-19 한·중·일 산업협력 방안: 4차 산업혁명·전자상거래·문화콘텐츠를 중심으로 / 김규파·이현태·오윤미·김승현·이정은
- 18-20 WTO 체제 개혁과 한국의 다자통상정책 방향 / 서진교·김종덕·박지현·김민성·안덕근
- 18-21 개방경제하에서의 금융혁신 파급효과와 블록체인기술 발전의 시사점 / 안성배·김효상·신꽃비·김지수·장희수
- 18-22 금융불안지수 개발과 금융불안요인 변화 분석 / 정영식·최혜린·양다영· 강은정·고덕기
- 18-23 ASEAN 서비스산업 규제 현황과 시사점 / 라미령 · 신민이 · 신민금 · 정재완 · 김제국
- 18-24 자유무역협정의 구성요소가 교역에 미치는 영향 분석 / 조문회·김영귀·구경현·박혜리·금혜윤
- 18-25 한국의 대(對)동남아 소비재 수출 활성화방안: 한중일 비교분석을 중심으로 / 최보영·이수영·이형근·이보람·이정은
- 18-26 중국 인터넷융합 전략의 특징과 지역 사례 연구 / 이상훈 · 김홍원 · 김주혜 · 최재희

■ 2017년

- 17-01 대ASEAN FDI 결정요인의 특징과 정책적 시사점 / 정형고·방호경·이보람·백종후
- 17-02 중동지역의 전력산업 정책과 국내기업 진출 확대방안 / 이권형 · 손성현 · 장윤희 · 유광호
- 17-03 중국의 일대일로 전략 평가와 한국의 대응방안 / 이승신 · 이현태 · 현상백 · 나수엽 · 김영선 · 조고운 · 오윤미

- 17-04 한국 중소기업의 동남아 주요국 투자실태에 대한 평가와 정책 시사점 / 곽성일·김재완·김재국·신민이
- 17-05 부패 방지의 국제적 논의와 무역비용 개선의 경제적 효과 / 김상겸 · 박순찬 · 강민지
- 17-06 북한의 무역과 산업정책의 연관성 분석 / 최장호·임수호·이석기·최유정·임소정
- 17-07 주요국의 4차 산업혁명과 한국의 성장전략: 미국, 독일, 일본을 중심으로 / 김규파·이형근·김종혁·권혁주
- 17-08 세계 무역둔화의 구조적 요인 분석과 정책 시사점 / 최낙균 · 강준구 · 이홍식 · 한치록
- 17-09 환율변화가 한국기업에 미치는 영향분석과 정책적 시사점: 기업데이터 분석을 중심으로 / 윤덕룡·김효상
- 17-10 남미공동시장(MERCOSUR)의 경제환경 변화와 한·MERCOSUR 기업간 협력 활성화 방안 / 권기수·김진오·박미숙·김효은
- 17-11 국제금융시장 통합이 한국 통화정책과 장기금리에 미치는 영향 및 정책 시사점 / 김경훈·김소영·강은정·양다영
- 17-12 원산지 누적 조항의 무역비용 추정과 경제적 효과 / 정 철·박순찬·박인원·김민성·곽소영·정민철
- 17-13 아프리카 소비시장 특성 분석과 산업단지를 통한 진출방안 / 박영호 · 정재욱 · 김예진
- 17-14 미국 신정부 통상정책 방향 및 시사점: 미·중 관계를 중심으로 / 윤여준·김종혁·권혁주·김원기
- 17-15 한 · 유라시아경제연합(EAEU) 산업협력 증진방안 / 박정호 · 염동호 · 강부균 · 민지영 · 윤지현
- 17-16 ODA 성과평가 개선방안과 정책과제: 영향력평가를 중심으로 / 허윤선 · 정지선 · 이주영 · 유애라 · 윤상철 · 이종욱
- 17-17 인도 제조업의 세부 업종별 특성 분석을 통한 한 · 인도 협력방안 / 이 응·배찬권·이정미
- 17-18 수출이 국내 고용에 미치는 영향 / 황운중·이수영·김혁황·강영호
- 17-19 디지털상거래가 무역과 고용에 미치는 영향 / 이규엽·배찬권·이수영·박지현·유새별

- 17-20 북한 외화획득사업 운영 메커니즘 분석: 광물부문(무연탄 · 철광석)을 중심으로 / 임수호 · 양문수 · 이정균
- 17-21 뉴노멀 시대 중국의 지역별 혁신전략과 한국의 대응방안 / 정지현·이상훈·오종혁·박진희·이한나·노수연
- 17-22 대외개방이 국내 분배구조에 미치는 영향 / 김영귀·남시훈·금혜윤·김낙년
- 17-23 중국의 제조업 발전 현황과 한국의 대응방안 / 이현태·최장호·최혜리·김영선·오윤미·이준구
- 17-24 신보호무역주의하에서의 비관세조치 현황과 영향에 관한 연구: UNCTAD 비관세조치 분류체계를 중심으로 / 조문회·김종덕·박혜리·정민철
- 17-25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와 일본의 통상정책 / 김규판·이형근·이정은·김제국
- 17-26 아시아 주요국의 4차 산업혁명 추진전략과 협력방안: 중국, 인도, 싱가포르를 중심으로 / 조충제·정재완·송영철·오종혁
- 17-27 국제 에너지시장 구조변화의 거시경제효과 분석 / 안성배 · 김기환 · 김수빈 · 이진희 · 한민수
- 17-28 브렉시트 이후 EU 체제의 전망과 정책 시사점 /
- 조동희·이철원·오태현·이현진·임유진

 17-29 한·중·일의 서비스무역규제 분석 및 정책적 시사점 / 최보영·이보람·이서영·백종후·방호경
- 17-30 대중국 서비스무역 활성화 방안: 주요 업종별 · 지역별 분석 / 이상훈 · 정지현 · 김홍원 · 박진희 · 이한나 · 최지원 · 김주혜 · 최재희
- 17-31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국제사회의 탄소가격제 도입과 경제영향 분석 / 문진영·한민수·송지혜·김은미
- 17-32 투자주도 성장정책의 이론과 정책의 국제비교 / 표학길

KIEP 발간자료회원제 안내

- 본 연구원에서는 본원의 연구성과에 관심있는 전문가, 기업 및 일반에 보다 개방적이고 효율적으로 연구 내용을 전달하기 위하여 「발간자료회원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 발간자료회원으로 가입하시면 본 연구원에서 발간하는 모든 보고서를 대폭 할인된 가격으로 신속하게 구입 하실 수 있습니다.

■ 회원 종류 및 연회비

회원종류	배포자료	연간회비		
S	외부배포 발간물 일체	기관회원	개인회원	연구자회원*
		30만원	20만원	10만원
А	East Asian Economic Review	8만원		4만원

^{*} 연구자 회원: 교수, 연구원, 학생, 전문가풀 회원

■ 가입방법

우편 또는 FAX 이용하여 가입신청서 송부 (수시접수) 30147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세종국책연구단지 경제정책동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연구조정실 기획성과팀

연회비 납부 문의전화: 044) 414-1179 FAX: 044) 414-1144

E-mail: sklee@kiep.go.kr

■ 회원특전 및 유효기간

- · S기관회원의 특전: 본 연구원 해외사무소(美 KEI) 발간자료 등 제공
- · 자료가 출판되는 즉시 우편으로 회원에게 보급됩니다.
- ㆍ 모든 회원은 회원가입기간 동안 가격인상에 관계없이 신청하신 종류의 자료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 ㆍ 본 연구원이 주최하는 국제세미나 및 정책토론회에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 연회원기간은 加入月로부터 다음해 加入月까지입니다.

KIEP 발간자료회원제 가입신청서

기관명	(한글) (한문))		
(성명)	(영문: 약호 포함)				
대표자					
발간물 수령주소	우편번호				
담당자 연락처	전화 E-mail : FAX				
회원소개 (간략히)					
사업자 등록번호	종목				
회원분류 (해당난	에 ✓ 표시를	하여 주십시오)			
기 관 회 원 □ 개 인 회 원 □ 연 구 자 회 원 □		S 발간물일체	A 계간지		
* 회원번호		* 갱신통보사항			
			 (* 는 기재하지 마십시오)		
특기사항					



Policy Analysis 18-20



Reshaping the Multilateral Trade Policy for Korea

Jin Kyo Suh, Jong Duk Kim, Ji Hyun Park, Min-Sung Kim, and Dukgeun Ahn

최근 선진국 주도로 WTO 체제 개혁이 구체적으로 논의되고 있다. 이러한 WTO 체제 개혁 이면에는 글로벌 가치사슬의 확산, 세계 무역의 급속한 디지털화, 포용적 무역의 확산 등 글로벌 통상환경의 변화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WTO 자체의 문제점도 있지만 이와 함께 중국을 겨냥하여 과잉생산을 유발하는 산업보조금 및 국영기업의 불공정 행위에 대해 WTO 규정으로 규제하려는 선진국들의 의도도 내포되어 있다. 이에 본 연구보고서는 우리나라 입장에서 WTO 체제 개혁 논의에 대한 의제별 협상대응방안과 함께 글로벌 통상환경의 변화를 고려한 중장기 다자통상정책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였다.









ISBN 978-89-322-1719-2 978-89-322-1072-8(세트)

정가 10,000원